연구총서 15-B-1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4

최수형 | 김지영 | 황지태 | 박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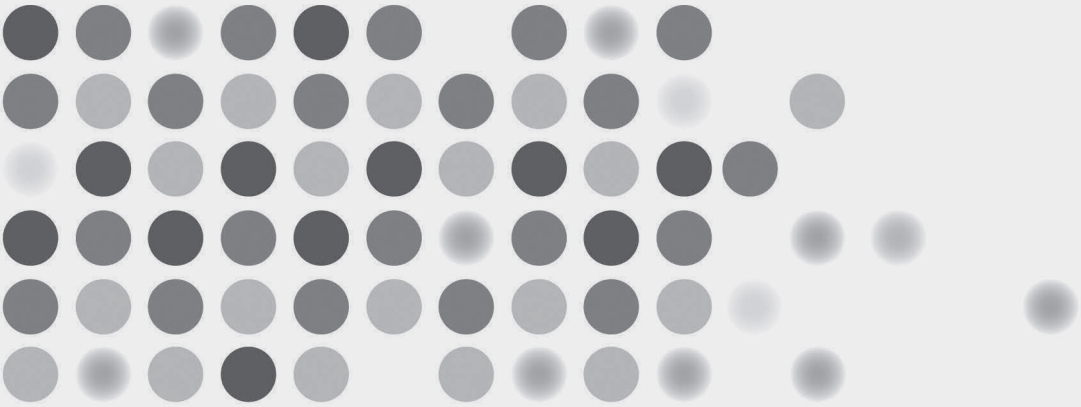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발간사

범죄피해조사는 일반인의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 관련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는 조사입니다. 이는 경찰청의 「범죄통계」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같은 범죄 관련 공식 통계자료와는 달리 피해자 중심의 조사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한국의 범죄피해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4년부터 전국규모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지난 2008년에는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조사규모를 확대하여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수행한 본 연구는 개편 이래 네 번째 진행하는 범죄피해조사로 2014년 한 해 동안의 범죄피해 경험을 살펴보고 범죄 관련 인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개편 이후에도 제1차(2008년 기준), 제2차(2010년 기준), 제3차(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수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는 개편 이후 수정 및 보완작업의 결과물인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내용과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연도별 범죄피해양상의 변화 및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발생한 범죄피해의 실태와 범죄자의 특성, 범죄피해자의 특성, 범죄피해로 인한 결과뿐 아니라 범죄 관련 인식 및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결과뿐 아니라 이전 조사연도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피해양상의 변화 분석 및 인식의 변화 요인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및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범죄 관련 공식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범죄통계정보DB시스템에 구축하여 일반인 및 학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자료의 높은 접근성으로 관련 학문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통계청 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 관계자 여러분과 실사를 담당하였던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연구원들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를 수행한 최수형 연구위원과 김지영 연구위원, 황지태 부연구위원, 박희정 연구원, 온지수 인턴연구원, 권도희 인턴연구원, 손소영 인턴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강 진 환

목 차

국문요약 ····· 1

| 제1장 | 서 론 (최수형) ·····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 13

| 제2장 | 조사내용 및 방법 (최수형·박희정) ····· 15

제1절 조사내용 ····· 17
1. 조사표의 구성 ····· 17
2. 조사내용 ····· 19
가. 기초조사표 ····· 19
나. 사건조사표 ····· 25
제2절 모집단 및 표본설계 ····· 28
1. 모집단 규정 및 표본추출틀 작성 ····· 28
2. 표본규모의 산출 ····· 30
가.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오차분석 ····· 30
나.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표본규모 산출 ····· 32
3. 층화 및 표본 배분 ····· 33
4. 표본조사구 및 가구의 추출 ····· 34
가. 표본조사구 추출 ····· 34
나. 표본가구 추출 ····· 36

5. 가중치의 작성 및 추정 ····· 36
가. 가중치 작성 ····· 36
나. 추정 방식 ····· 37
제3절 조사준비 ····· 38
1. 조사도구 준비 ····· 38
가. 가구명부 및 요도 준비 ····· 38
나. 조사지침서 ····· 39
다. 조사협조 공문 준비 ····· 40
라. 답례품 준비 ····· 40
마. 비밀보호용 봉투 ····· 40
바. 조사원증 ····· 41
2. 조사홍보활동 ····· 41
가. 조사안내문 발송 ····· 41
나. 조사 관련 사항 홈페이지 게시 ····· 42
다. 조사 지역 특성별 홍보 방안 ····· 42
라. 부재중 가구에 대한 조사 진행 안내문 ····· 42
제4절 조사진행 ····· 43
1. 조사수행체계 ····· 43
2. 추진일정 및 주요 내용 ····· 45
3. 면접원 투입 인원 ····· 46
가. 면접원 선발 기준 ····· 46
나. 면접원 투입인원 산출 시 고려 요인 ····· 47
다. 지역별 투입 조사인력 ····· 47
4. 조사원 교육 ····· 48
가. 면접원 교육 개요 ····· 48
나. 면접원 교육 구성 ····· 48
다. 면접원 교육 방법 ····· 49
라. 세부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 50
마. 교육내용 및 시간표 ····· 50
5. 자료수집방법 ····· 51
6. 조사기간 ····· 53
제5절 실사결과 ····· 54
1. 조사 완료 현황 ····· 54
2. 조사구 대체 및 가구 불응률 ····· 55

가. 지역별 조사구 대체현황 ····· 55
나. 조사구 대체 사유 ····· 56
다. 가구대체현황 및 불응률 ····· 59
3. 실사지도 및 입력자료 내검 실시 ····· 62
가. 실사지도 ····· 62
나. 내검 실시 ····· 66
다. 사후 검증 ····· 68
제6절 표본의 대표성 평가 및 특성 ····· 70
1. 표본의 대표성 평가 ····· 70
2.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 73
가.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 특성 ····· 73
나.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 75
3. 조사대상자의 특성 ····· 76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76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78
제7절 범죄피해유형 추출방법 ····· 80
1. 범죄유형의 분류체계 및 판별조건식 ····· 80
2. 공표 범죄유형 ····· 85

| 제3장 | 주요 범죄 피해발생률 (황지태) ····· 87

제1절 2014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89
1. 2014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피해건수 및 피해율 전체 요약 ····· 90
2. 주요 범죄 유형들의 피해건수 및 피해율 ····· 91
가. 폭력범죄 내 주요 범죄 피해율 ····· 91
나. 재산범죄 내 주요 범죄 피해율 ····· 92
다. 범죄유형 상세 분할 ····· 93
3. 중복피해와 상습피해 ····· 95
제2절 2014년 지역별 및 도시규모별 피해율 ····· 98
1. 지역별 피해율 ····· 98
2. 도시규모별 피해율 ····· 101

제3절 주요 범죄피해 발생 변화 분석 ····· 103
1. 2012년도 기준 조사와의 범죄피해율 비교 ····· 104
2. 1993년 기준 조사 이래 모든 범죄피해조사 결과들과의 범죄피해율 비교 ···· 108
제4절 범죄피해율에 관한 요약 · 소결 ····· 110

| 제4장 | 폭력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 결과 (황지태) ··· 113

제1절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 115
1. 사건발생 일시 ····· 115
2.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 118
제2절 피해 내용 및 피해결과 ····· 120
1.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공격 여부와 흉기 소지 여부 ····· 120
2. 피해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대응 ····· 123
3.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상해의 결과 ····· 128
4. 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 133
제3절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 135
1. 피해자의 특성 ····· 135
2. 피해자가 인지한 가해자의 특성 ····· 140
3.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 145

| 제5장 | 재산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 결과 (황지태) ··· 149

제1절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 151
1. 사건발생 일시 ····· 151
2.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 155
제2절 피해 내용 및 피해결과 ····· 157
1. 절도범죄피해의 내용 및 결과 ····· 157

2. 손괴범죄피해의 내용 및 결과 ····· 163
3. 사기범죄피해의 내용 및 결과 ····· 165

| 제6장 | 가구대상 범죄피해실태 (최수형) ····· 171

제1절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 173
제2절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 174
1.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 174
2. 피해상황 ····· 176
3. 피해가구의 특성 ····· 177
4.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 179
5. 범죄피해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 181
제3절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 183
1.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 183
2. 피해가구의 특성 ····· 184
3.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 186
4. 범죄피해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 188
제4절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내용 변화 분석 ····· 190
1. 연도별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 190
2.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내용 ····· 193
가. 연도별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 193
나. 연도별 피해상황 ····· 195
다. 연도별 피해가구의 특성 ····· 196
라. 연도별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 198
마. 연도별 범죄피해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 200
3.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내용 ····· 202
가. 연도별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 202
나. 연도별 피해가구의 특성 ····· 204
다. 연도별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 205
라. 연도별 범죄피해 경험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 207
제5절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내용 요약 및 소결 ····· 209

| 제7장 |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최수형) ····· 213

제1절 경찰신고율 ····· 215
1.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 215
2. 범죄피해를 신고한 이유 ····· 215
3.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 217
제2절 처리현황 및 만족도 ····· 218
1. 경찰조치 여부 및 내용 ····· 218
2.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이해 정도 ····· 219
3.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 219
4. 범인검거 여부 ····· 220
5.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및 손실 일수 ····· 221
제3절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변화에 대한 추세 분석 ····· 223
1. 연도별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 223
2. 연도별 범죄피해 신고 이유 ····· 225
3. 연도별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 226
4. 연도별 경찰조치 여부 및 내용 ····· 227
5. 연도별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 및 이해 정도 ····· 228
6. 연도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 229
7. 연도별 범인검거 여부 ····· 230
8. 연도별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및 손실 일수 ····· 231
제4절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요약 및 소결 ····· 233

| 제8장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김지영) ····· 235

제1절 지역특성과 범죄피해 ····· 240
1. 지역특성과 재산범죄피해 ····· 240
2. 지역특성과 폭력범죄피해 ····· 243
제2절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 245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 245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 246

제3절 생활양식요인과 범죄피해 ····· 248
1. 생활양식요인과 재산범죄피해 ····· 248
2. 생활양식요인과 폭력범죄피해 ····· 250
제4절 가구특성과 범죄피해 ····· 251
1.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 ····· 251
2.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 253
3.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 254
제5절 범죄취약성 요인의 연도 간 비교 ····· 255
제6절 범죄피해취약성 요인의 주요결과 ····· 258

| 제9장 |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김지영) ····· 263

제1절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66
1.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66
2.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26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66
나. 범죄피해경험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69
3.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269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69
나. 범죄피해경험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72
다. 지역사회특성 및 미디어 노출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73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74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형 ····· 274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77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77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80
다.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81
라. 지역사회특성 및 미디어 노출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82

제3절 범죄예방활동 ····· 283
1.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 283
2.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8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예방활동 ····· 284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 ····· 287
다. 지역규모 및 주택유형과 범죄예방활동 ····· 287
제4절 범죄인식 및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추세분석 ····· 289
제5절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의 주요결과 ····· 293

| 제10장 | 요약 및 결론 (최수형) ····· 30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 303
1. 2014년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피해결과 ····· 303
2. 2014년 범죄피해 신고율 및 연도별 변화 ····· 305
3. 2014년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및 연도별 변화 ····· 306
4. 2014년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과 연도별 변화 ····· 307
제2절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 308
1. 2014년 조사방법 및 실사과정에 대한 평가 ····· 308
2. 향후 개선 사항 ····· 310

참고문헌 ····· 317

Abstract ····· 319

부록 ····· 331

표 차례

〈표 2-1〉 조사표의 종류 ····· 18
〈표 2-2〉 기초조사표의 주요 변수 및 조사항목 ····· 20
〈표 2-3〉 사건조사표의 주요 변수 및 조사항목 ····· 26
〈표 2-4〉 조사 모집단 분포 ····· 29
〈표 2-5〉 조사구 분포 ····· 30
〈표 2-6〉 가구의 범죄유형별 피해발생률 추정값 및 상대표준오차 (2012년 기준 조사결과) ····· 31
〈표 2-7〉 개인의 범죄유형별 피해발생률 추정값 및 상대표준오차 (2012년 기준 조사결과) ····· 31
〈표 2-8〉 가구범죄피해율의 상대표준오차별 표본규모 ····· 32
〈표 2-9〉 표본배분 결과 ····· 34
〈표 2-10〉 분류기준 ····· 35
〈표 2-11〉 답례품 지급기준 ····· 40
〈표 2-12〉 조사안내문 발송 현황 ····· 42
〈표 2-13〉 조사수행기관별 주요 업무 분장 내용 ····· 44
〈표 2-14〉 추진일정 및 추진사항 ····· 45
〈표 2-15〉 면접원 수 및 조사관리자 현황 ····· 47
〈표 2-16〉 면접원 교육 구성 및 내용 ····· 48
〈표 2-17〉 면접원 교육 진행 방법 ····· 49
〈표 2-18〉 면접원 교육 일정 ····· 50
〈표 2-19〉 면접원 교육 일정 및 내용 ····· 51
〈표 2-20〉 지역별 실사진행결과(가구수 기준) ····· 55
〈표 2-21〉 지역별 조사구 대체율 ····· 56
〈표 2-22〉 조사구 대체 사유 ····· 57
〈표 2-23〉 연도별 불응률 및 대체율 ····· 59
〈표 2-24〉 가구 방문 횟수별 불응률 ····· 60
〈표 2-25〉 주택유형별 불응률 ····· 61
〈표 2-26〉 실사지도 내용 ····· 63
〈표 2-27〉 내검 규칙 ····· 67
〈표 2-28〉 사후검증 결과 ····· 69

〈표 2-29〉 전화검증 내용 ····· 69
〈표 2-30〉 가구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 ····· 71
〈표 2-31〉 인구표본과 모집단의 지역 분포 비교 ····· 72
〈표 2-32〉 인구표본과 모집단의 성별 분포 비교 ····· 72
〈표 2-33〉 인구표본과 모집단의 연령별 분포 비교 ····· 73
〈표 2-34〉 조사대상 가구의 도시규모별 주택유형 : 가구가중치 적용 ····· 74
〈표 2-35〉 조사대상 가구의 세대구성 및 거주안정성 : 가구가중치 적용 ····· 74
〈표 2-36〉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 가구가중치 적용 ····· 76
〈표 2-37〉 조사대상 가구원의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 가구원가중치 적용 ····· 77
〈표 2-38〉 조사대상자의 도시규모별 인구학적 특성 : 가구원가중치 적용 ····· 78
〈표 2-39〉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가구원가중치 적용 ····· 78
〈표 2-40〉 조사대상자의 도시규모별 사회경제적 특성 : 가구원가중치 적용 ····· 79
〈표 2-41〉 2014년 기준 범죄피해유형 ····· 81
〈표 2-42〉 2014년 기준 폭력피해 소분류에 따른 판별조건식 ····· 82
〈표 2-43〉 2014년 기준 재산피해 소분류에 따른 판별조건식 ····· 84
〈표 2-44〉 범죄피해유형별(중분류) 신뢰구간 ····· 86
〈표 2-45〉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별 신뢰구간 ····· 86
〈표 3-1〉 2014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및 피해자수와 피해자 비율 ····· 90
〈표 3-2〉 폭력범죄피해의 피해건수와 피해율 ····· 92
〈표 3-3〉 재산범죄피해의 피해건수와 피해율 ····· 93
〈표 3-4〉 범죄유형 상세 분할 ····· 94
〈표 3-5〉 중복피해 정리 : 피해횟수별 피해자수 분포 ····· 96
〈표 3-6〉 상습피해 관련 통계치 ····· 97
〈표 3-7〉 지역별 범죄피해율(응답자 현 거주지 기준) ····· 98
〈표 3-8〉 지역별 폭력범죄피해율과 재산범죄피해율(응답자 현 거주지 기준) ····· 100
〈표 3-9〉 조사된 전체 범죄 사건들의 도시규모별 피해율 ····· 101
〈표 3-10〉 폭력범죄피해의 도시규모별 피해율 ····· 102
〈표 3-11〉 재산범죄피해의 도시규모별 피해율 ····· 103
〈표 3-12〉 2012-2014 범죄피해율 비교 ····· 105
〈표 3-13〉 2012-2014 폭력범죄피해율 및 재산범죄피해율 비교 ····· 106
〈표 3-14〉 2008-2014 범죄피해율 비교 ····· 108
〈표 3-15〉 1993-2014 범죄피해율 비교 ····· 109
〈표 4-1〉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계절 ····· 116
〈표 4-2〉 폭력피해범죄가 발생한 시각 ····· 117

〈표 4-3〉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 ····· 118
〈표 4-4〉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의 자기 직장 (혹은 자기 영업장) 여부 ····· 120
〈표 4-5〉 폭력범죄피해에서의 신체공격 유무 ····· 121
〈표 4-6〉 사건 발생 시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 ····· 122
〈표 4-7〉 가해자가 소지한 흉기의 종류 ····· 122
〈표 4-8〉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와 실제 신체공격 여부 사이의 교차표 ····· 123
〈표 4-9〉 가해자 흉기의 사전 준비 여부 ····· 123
〈표 4-10〉 폭력범죄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음주 여부 ····· 124
〈표 4-11〉 폭력범죄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만 14세 미만은 제외)의 존재 여부 ··· 125
〈표 4-12〉 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만 14세 미만은 제외)의 동반피해 여부 ····· 126
〈표 4-13〉 폭력범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기보호 노력 ····· 126
〈표 4-14〉 폭력범죄피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피해자의 대응 ····· 127
〈표 4-15〉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대응의 결과 ····· 128
〈표 4-16〉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신체 피해 여부 ····· 129
〈표 4-17〉 구체적인 신체 피해 ····· 129
〈표 4-18〉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신체 피해 치료 여부 및 치료 장소 ····· 130
〈표 4-19〉 폭력범죄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여부 ····· 131
〈표 4-20〉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의료비 총액 ····· 131
〈표 4-21〉 가해자로부터의 신체상해 피해 배상 여부 ····· 132
〈표 4-22〉 폭력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 133
〈표 4-23〉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 134
〈표 4-24〉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심리상담 혹은 신경정신과 진료 경험 ····· 134
〈표 4-25〉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성별 ····· 135
〈표 4-26〉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연령대 ····· 136
〈표 4-27〉 폭력범죄피해자들의 혼인상태 ····· 137
〈표 4-28〉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직업 ····· 138
〈표 4-29〉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종사상 지위 ····· 139
〈표 4-30〉 폭력범죄피해자들과 나머지 응답자들 사이의 세대구성 차이 ····· 140
〈표 4-31〉 폭력범죄피해자들의 가해자 인지 여부 ····· 141
〈표 4-32〉 폭력범죄피해자들의 가해자 인지 경위 ····· 141
〈표 4-33〉 폭력범죄 가해자의 수 ····· 142
〈표 4-34〉 폭력범죄 가해자 성별 ····· 143
〈표 4-35〉 폭력범죄 가해자 연령 ····· 144
〈표 4-36〉 폭력범죄 가해자 음주상태 ····· 145

〈표 4-37〉 폭력범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 145
〈표 4-38〉 폭력범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중 가족-친인척 세분 ····· 146
〈표 4-39〉 폭력범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중 가족-친인척 외 아는 사람 세분 ····· 147
〈표 5-1〉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계절 ····· 152
〈표 5-2〉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각 ····· 154
〈표 5-3〉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피해 발생 밤낮 시각 비교 ····· 155
〈표 5-4〉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 ····· 156
〈표 5-5〉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의 자기 직장 여부 ····· 157
〈표 5-6〉 절도범죄피해 유형 상세 분류 ····· 158
〈표 5-7〉 절도범죄 기수와 미수 ····· 158
〈표 5-8〉 절도범죄 기수사건 상세유형별 피해사실 인지 시점 ····· 159
〈표 5-9〉 절도범죄 기수사건 피해물품 (중복응답) ····· 160
〈표 5-10〉 절도범죄 피해자들의 평균 재산 피해액 (모르겠다는 응답은 제외) ····· 162
〈표 5-11〉 절도피해물품 회수 여부 ····· 162
〈표 5-12〉 손괴범죄피해 유형 상세 분류 ····· 163
〈표 5-13〉 손죄범죄 피해물품 (중복응답) ····· 164
〈표 5-14〉 손괴범죄 피해자들의 평균 재산 피해액 (모르겠다는 응답은 제외) ····· 164
〈표 5-15〉 손괴피해물품 배상 여부 ····· 165
〈표 5-16〉 사기범죄(기수만 해당) 피해 내용 (중복포함) ····· 166
〈표 5-17〉 사기범죄(기수만 해당) 수법 (중복포함) ····· 167
〈표 5-18〉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평균 재산 피해액 (모르겠다는 응답 3건 제외) ··· 168
〈표 5-19〉 사기범죄 기수사건 피해액 회수 여부 ····· 169
〈표 6-1〉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수 ····· 173
〈표 6-2〉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당 피해횟수 ····· 174
〈표 6-3〉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 175
〈표 6-4〉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침입방법 ····· 176
〈표 6-5〉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사건발생 당시 현장상황 ····· 177
〈표 6-6〉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피해가구의 특성 ····· 178
〈표 6-7〉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범죄자 정보 인지수준 및 경로 ····· 179
〈표 6-8〉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범죄자의 특성 ····· 180
〈표 6-9〉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후 정신적 피해 ····· 182
〈표 6-10〉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후 감정 변화 (N=123) ····· 183
〈표 6-11〉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 183
〈표 6-12〉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피해가구의 특성 ····· 185

〈표 6-13〉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범죄자 정보 인지수준 및 경로 ····· 186
〈표 6-14〉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범죄자의 특성 ····· 187
〈표 6-15〉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후 정신적 피해 ····· 189
〈표 6-16〉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후 감정 변화 (N=120) ····· 190
〈표 6-17〉 연도별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수 ····· 191
〈표 6-18〉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당 피해횟수 ····· 192
〈표 6-19〉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
가구가중치 적용 ····· 193
〈표 6-20〉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침입방법 : 가구가중치 적용 ····· 195
〈표 6-21〉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사건발생 당시 현장상황 :
가구가중치 적용 ····· 196
〈표 6-22〉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피해가구의 특성 : 가구가중치 적용 ··· 197
〈표 6-23〉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범죄자 정보 인지수준 및 경로 :
가구가중치 적용 ····· 198
〈표 6-24〉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범죄자의 특성 : 가구가중치 적용 ····· 199
〈표 6-25〉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후 정신적 피해 : 가구가중치 적용 ···· 201
〈표 6-26〉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후 감정 변화 : 가구가중치 적용 ····· 201
〈표 6-27〉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
가구가중치 적용 ····· 203
〈표 6-28〉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피해가구의 특성 : 가구가중치 적용 ··· 204
〈표 6-29〉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범죄자 정보 인지수준 및 경로 ····· 205
〈표 6-30〉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범죄자의 특성 ····· 206
〈표 6-31〉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후 정신적 피해 ····· 207
〈표 6-32〉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후 감정 변화 ····· 208
〈표 7-1〉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 215
〈표 7-2〉 범죄피해 신고 이유 ····· 216
〈표 7-3〉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 217
〈표 7-4〉 경찰조치 여부 및 내용 ····· 218
〈표 7-5〉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 및 이해 정도 ····· 219
〈표 7-6〉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 220
〈표 7-7〉 범인검거 여부 ····· 221
〈표 7-8〉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 222
〈표 7-9〉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일수 ····· 223
〈표 7-10〉 연도별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 224

〈표 7-11〉 연도별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신고 건수 ····· 225
〈표 7-12〉 연도별 범죄피해 신고 이유 : 가구가중치 적용 ····· 226
〈표 7-13〉 연도별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 가구가중치 적용 ····· 226
〈표 7-14〉 연도별 경찰조치 여부 및 내용 : 가구가중치 적용 ····· 228
〈표 7-15〉 연도별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 및 이해 정도 :
가구가중치 적용 ····· 229
〈표 7-16〉 연도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 가구가중치 적용 ····· 229
〈표 7-17〉 연도별 범인검거 여부 : 가구가중치 적용 ····· 230
〈표 7-18〉 연도별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 가구가중치 적용 ····· 232
〈표 7-19〉 연도별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일수 : 가구가중치 적용 ····· 232
〈표 8-1〉 범죄피해취약성 요인 ····· 237
〈표 8-2〉 범죄피해의 종류 ····· 238
〈표 8-3〉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 239
〈표 8-4〉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 241
〈표 8-5〉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손괴범죄피해 ····· 242
〈표 8-6〉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주거침입범죄피해 ····· 243
〈표 8-7〉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 244
〈표 8-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 245
〈표 8-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 247
〈표 8-10〉 생활양식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 249
〈표 8-11〉 생활양식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 250
〈표 8-12〉 가구특성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 252
〈표 8-13〉 가구특성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 253
〈표 8-14〉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침입범죄피해 ····· 254
〈표 8-15〉 조사연도별 지역사회특성 비교 ····· 256
〈표 8-16〉 조사연도별 가구특성 비교 ····· 257
〈표 8-17〉 조사연도별 생활양식 비교 ····· 257
〈표 9-1〉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노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 265
〈표 9-2〉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문항 간 평균 차이 검증 ····· 266
〈표 9-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67
〈표 9-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68
〈표 9-5〉 범죄피해경험여부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69
〈표 9-6〉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70
〈표 9-7〉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71

〈표 9-8〉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우리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 273
〈표 9-9〉 지역사회 특성 및 미디어 노출과 우리나라 및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 273
〈표 9-10〉 범죄에 대한 두려움 유형별 기술통계 ····· 274
〈표 9-11〉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문항 간 평균 차이 검증 ····· 275
〈표 9-12〉 범죄 대상별 두려움에 대한 기술통계 ····· 275
〈표 9-13〉 범죄 유형별 두려움에 대한 기술통계 ····· 276
〈표 9-1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77
〈표 9-15〉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79
〈표 9-16〉 범죄피해경험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80
〈표 9-17〉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82
〈표 9-18〉 지역사회 특성 및 미디어 노출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 ····· 283
〈표 9-19〉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 284
〈표 9-20〉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 285
〈표 9-2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 286
〈표 9-22〉 피해경험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 287
〈표 9-23〉 지역규모 및 주택유형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 288
〈표 9-24〉 조사연도별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개별문항) 비교 ····· 292
〈표 9-25〉 조사연도별 범죄대상별 피해 두려움 비교 ····· 292
〈표 9-26〉 조사연도별 범죄예방활동 비교 ····· 293

그림 차례

[그림 2-1] 조사표 작성체계 ····· 18
[그림 2-2]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 경험 선별문항 23번~30번 ····· 23
[그림 2-3]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 경험 수 체크리스트 ····· 24
[그림 2-4] 사전 조사구 확인 과정 ····· 35
[그림 2-5] 가구명부 및 요도 이용 단계 ····· 39
[그림 2-6] 조사수행체계 ····· 43
[그림 2-7] 지역별 조사 대체율 ····· 60
[그림 2-8] 주택유형별 조사 대체율 ····· 61
[그림 3-1] 2012년도-2014년도 범죄피해율 비교 ····· 105
[그림 3-2] 2012년도-2014년도 폭력범죄피해율 및 재산범죄피해율 비교 ····· 106
[그림 3-3]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의 비중 변화 ····· 107
[그림 3-4] 중복·상습피해자의 비중 ····· 107
[그림 3-5] 2008년도-2014년도 범죄피해율 비교 ····· 109
[그림 3-6] 1993년도-2014년도 범죄피해율 비교 ····· 110
[그림 6-1]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사건발생 계절 ····· 194
[그림 6-2]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피해가구의 주택유형 ····· 198
[그림 6-3]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후 감정 변화 ····· 202
[그림 7-1] 범죄피해 신고율 연도별 추이 ····· 224
[그림 7-2] 연도별 신고 이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 230
[그림 7-3] 연도별 신고 이후 범인검거 여부 ····· 231
[그림 9-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연도별 추세 ····· 289
[그림 9-2] 우리동네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연도별 추세 ····· 290
[그림 9-3]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도별 추세 ····· 291

국문요약

1. 연구목적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조사의 안정적인 조사자료 구축을 위해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표집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의 조사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2014년 기준 조사결과뿐 아니라 2012년 기준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한 해 동안의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피해 내용과 피해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고자 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2012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08년 및 2010년 기준 조사의 결과와 비교분석이 가능한 경우는 분석내용에 포함하여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 범죄피해유형 분류체계에 따른 주요 범죄 피해율과 도시규모별 범죄피해율 및 범죄피해발생 변화 양상 분석
- 범죄피해유형별 발생 실태 및 피해결과와 연도 간 비교
- 신고율 및 사건처리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경험 및 만족도와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변화에 대한 추세 분석
-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분석 및 연도 간 비교
-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과 추세 분석 :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활동

3. 연구방법

▢ 모집단

- 목표모집단: 조사기준 시점(2015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영토 중 행정권

이 미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조사모집단: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 및 아파트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표집 방법

- 조사구 추출 방법: 층화확률비례추출법(16개 시도 및 동/읍면을 고려한 25개 층)
- 가구 추출 방법: 조사구 내에서 10가구를 계통추출

▢ 자료수집 방법: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방법과 자기기입식 병행

▢ 총 조사표본수

- 총 성공 가구 수 : 6,960가구
- 총 성공 개인 수 : 14,976명

▢ 조사 기간

- 조사원 교육: 2015. 5. 27. ~ 6. 10. (2주간)
- 조사 기간: 2015. 5. 29. ~ 7. 17. (7주간)
  ※ 중동호흡기중후군 메르스(Mers) 감염 우려로 조사기간 장기화

▢ 조사대상 시점 및 조사기준 시점

- 조사대상 시점: 2014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 조사기준 시점: 2015년 5월 29일

4. 주요 분석결과

1)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피해결과

- **주요범죄 피해율 및 변화 양상** : 전체 피해율은 3.7%(사건보고 기준으로 14,976명 중에서 555건, 혹은 44,039,786명 중 1,612,701건으로 추정) 정도

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의 피해율은 0.4%였고, 재산범죄의 피해율은 3.3%였다. 이 같은 결과를 설문지가 동일한 2012년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피해율과 비교하면, 전체 피해율(4.6%에서 3.7%로 감소)뿐만 아니라 폭력범죄의 피해율(0.7%에서 0.4%로 감소)과 재산범죄의 피해율(3.8%에서 3.3%로 감소) 모두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

- **가구대상범죄 피해율** :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은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유형과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으로 구분되며 2014년 조사결과,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전체의 1.6%였고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1.4%로 나타났으며, 총 피해건수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가 123건,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가 120건이었다. 2009년 개편 이후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내용 변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거침입 관련 범죄와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 **경찰 신고율** : 전체 555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123건을 신고하여 22.8%의 신고율을 나타냈으며, 폭력범죄피해 신고율(17.5%)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신고율(22.7%)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2008년 이후 신고율이 14.5%에서 2014년 22.8%로 증가하여 오늘날 범죄피해신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2014년도의 범죄피해 신고율이 2012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은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폭력범죄피해 사건의 피해자 신원 노출이나 보복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해당 범죄피해신고를 꺼리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 **신고사건 처리현황 및 만족도** : 2014년 기준 조사 결과,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율에 있어서는 폭력피해사건이 재산피해사건보다 더 높았고 이는 사건처리에 대한 정보 제공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에서 폭력피해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의 경우 재산피해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한편, 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율이나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율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4년 기준 조사 결과 증가하였고 2008년 이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2014년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들

- **지역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① 재산범죄의 경우,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모두 재산범죄피해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거주지역이 물리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5.1%가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반면 무질서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의 2.7%만이 피해를 당했다. 또한 경찰활동의 효율성도 재산범죄 피해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한 집단의 재산범죄피해율이 2.6%로 비효과적이라고 인식한 집단의 4.5%보다 낮았다. 한편, ② 폭력범죄의 경우, 이웃관계와 이웃참여, 경찰활동의 효과성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은 없었지만 물리적 무질서의 수준에 따른 피해율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물리적 무질서가 낮거나(0.2%), 보통인 경우(0.5%)에 비해서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경우(0.8%), 폭력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①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여자(3.6%)가 남자(2.6%)에 비해 피해율이 높았고 연령변수와 관련해서 40대의 응답자의 3.9%가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3.8%, 30대 3.7% 순이었으며 10대 응답자의 0.9%만이 재산범죄피해가 있다고 대답하여 가장 낮은 피해율을 보였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미혼의 집단이 기혼의 집단에 비해 피해율이 낮았고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피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유형 중에는 서비스나 판매업에 종사하는 집단의 피해율이 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직업군인(3.8%), 관리자/전문가(3.7%), 전업주부(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②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성별과 교육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모두 폭력범죄 피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0.8%), 20대(0.9%)가 다른 연령에 비해 피해율이 높았고 미혼집단의 응답자의 피해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직업유형의 경우 학생(0.8%), 사무종사자(0.4%)의 폭력범죄 피해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생활양식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①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피해율이 가장 낮았고 밤늦게 매일 귀가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피해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만취해서 귀가하는 빈도나 외출 시 화려한 옷을 입거나 유명브랜드의 옷을 입는 등의 생활양식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② 폭력범죄피해와 관련해서 볼 때,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일주일에 3-4일 이용하는 경우가 0.6%로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5일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집단이 0.5%, 1-2일 이용하는 집단은 0.3%, 2-3일 이용하는 경우는 0.1%의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거의 매일 늦게 귀가하는 집단의 피해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만취귀가의 경우는 폭력범죄피해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가구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①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월세나 전세, 무상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피해율이 더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재산범죄피해율이 가장 낮았다. ② 폭력범죄피해의 경우는 가구소득 수준만이 피해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피해율이 가장 낮았다.
- **범죄취약성 요인의 연도 간 비교 :** 이웃관계의 경우, 2013년 평균(M = 2.63, SD = 0.99)보다 2015년 평균이 높아(M = 2.79, SD = 0.98) 이전 조사 때보다 이웃 간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인식이 강했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의 수준은 2013년보다 2015년에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2년 전에 비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보다 지저분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소란스러워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경찰활동은 2013년(M = 9.54, SD = 2.35)보다 2015년(M = 10.21, SD = 2.12)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방범수준의 경우는 2013년(M = 4.01)에 비해서 2015년(M=3.87)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양식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2013년(M = 2.94, SD = 1.18)에 비해서 2015년(M = 2.76, SD = 1.21)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빈도는 2013년(M = 4.04, SD = 1.92)에 비해서 2015년(M = 4.37, SD = 1.71)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취해서 귀가하는 빈도도 2013년(M = 5.44, SD = 1.14)에 비해서 2015년(M = 5.49, SD = 0.99)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평소 외출 시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유명브랜드의 옷을 입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3년(M = 2.02, SD = 0.85)에 비해서 2015년(M = 2.14, SD = 0.92)에 다소 증가하였다.

3) 범죄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

-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전체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평균 3.45점, 표준편차 0.76)이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평균 3.06점, 표준편차 0.6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와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별, 가구소득, 직·간접적인 피해경험, 지역사회의 특성 및 미디어노출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직·간접적인 피해경험, 지역사회의 특성 및 미디어노출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우리나라 국민들이 밤에 혼자 있거나 돌아다니기 두렵다고 느끼는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는 평균 2.34점(표준편차 1.01)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 유형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면, 재산범죄 두려움은 평균 2.18(표준편차 0.80), 폭력범죄 두려움은 평균 2.11(표준편차 0.81), 성폭력범죄 두려움은 평균 2.01(표준편차 0.96)의 수준을 보였다.
-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남자보다는 여자가, 30대 이상의 연령집단보다 10대, 20대의 연령집단이, 미혼인 경우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졌다. 한편, 범죄피해경험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본인의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거나 가까이 지내는 타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간접적인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고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 왕래가 활발할수록,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이 효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물리적 무질서나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에 자주 노출될수록, 사람들과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할수록 모든 영역의 범죄 두려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예방활동 수준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 ① 소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의 경우 평균 2.52점, 표준편차 0.79로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높았고 10대에서부터 조금씩 증가하다가 30대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인 경우,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별이나 이혼을 한 경우로 갈수록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피해경험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예방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 비해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다. ②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의 경우에는 평균 1.97점, 표준편차 0.98로 남자보다 여자가, 10대와 60대, 7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았다. 또한 피해경험에 따라 살펴본 결과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다
- **범죄인식 및 두려움과 범죄예방활동의 조사연도별 변화** :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증가에 대한 응답치는 2009년에 75.7%로 가장 높았고, 2011년에 61.4%로 감소하였지만 2013년에 다시 63.7%로 약간 증가했다가 2015년에 50.2%로 감소하였다. 거주지역의 범죄 증가에 대한 인식도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발생 증가에 대한 인식과 같은 추이가 나타났다. 즉, 올해 조사에서 응답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두 번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역시 1996년부터 증감을 반복하다가 올해 조사 결과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소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은 2013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비해 올해 조사에서 더욱 감소하였고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은 증가하였다.

5. 향후 발전과제

범죄피해조사는 2년을 주기로 한 정례조사로 신뢰성 및 타당성을 위해서는 매 조사마다 개선작업을 진행하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조사 진행 경험과 조사결과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접근에서 정기적인 개선 방향을 설정한 후 수행해야 한다. 이에 향후 과제와 발전방안으로 1)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유형에 대한 검토, 2) 측정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유형에 따라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경험 선별질문과 사건조사표의 범죄피해 내용에 대한 재정비, 3) 조사응답자 친화적인 조사표 구성, 4) 조사홍보 방안 검토, 5) 조사기준 시점의 조기화, 6) 원표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7)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검토, 8) 실사기관의 안정화 등을 제시하였다.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 론

최 수 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범죄피해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 여부와 피해양상 및 범죄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함으로써 범죄피해율을 파악하고 범죄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범죄현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4년부터 전국규모의 범죄피해조사를 약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다가 2009년 표본규모 확대 및 조사표 항목 수정 등 조사방법의 전면 개편을 통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2년마다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3:33-34).[1] 본 조사는 정례적인 범죄피해조사의 일환으로 2009년에 수행한 '2008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2011년에 진행한 '2010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2013년에 수행한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에 이은 제4차 전국범죄피해조사로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이다.

지금까지 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통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하였다. 2011년에 수행한 제2차 피해조사는 범죄피해 선별질문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 관련 문항을 수정하였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형사사법단계별 시간손실을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조사표 수정 작업과 표본규모 확대, 회상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사 시기 조기화 등의 개선작업을 진행하였다(김지선 외, 2011).[2] 또한 2013년에 실시

1) 2009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개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김은경 외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Ⅵ)』(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란다.
2) 2011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구체적인 수정 및 보완사항은 김지선 외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 제3차 피해조사는 응답자의 적극적인 조사협조를 꾀하고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 조사 명칭을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하였고, 2차 조사에 이어 범죄피해선별문항 체계 수정 및 보완, 사기피해 관련 질문 개선 등의 조사표 수정 작업을 하였으며, 국립국어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표 해당 지문의 용어와 문장의 흐름을 순화하였고 조사 가이드라인 및 범죄피해 사건 수 결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판별조건식을 변경하였다(김은경 외, 2013).[3] 이처럼 개편 이후 지금까지의 범죄피해조사는 안정적인 조사자료의 구축보다는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유용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방법론 개선에 집중하였다.

이처럼 범죄피해조사는 개편작업 환경의 한계를 넘어 국가승인통계로서 보다 과학적이고 타당한 설문도구 및 조사방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례조사마다 조사표 및 조사방식의 수정 작업이 반복된다면 이전 조사결과와의 비교가 무의미하게 되는 등 조사결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정례조사에 있어서 조사방법상의 개선 및 수정 작업은 반복적인 조사시행과 조사자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분석결과가 축적되어 범죄피해조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 후 특정 시기에 집약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외국에서 수행 중인 범죄피해조사도 역시 정례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의 수정과 개선작업 후에는 안정적인 자료 생산에 집중하여 범죄피해율 및 피해양상 변화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는 2010년 기준 조사에 이어 조사방법론에 대한 수정과 보완 작업뿐 아니라 조사와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조사의 안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 완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조사의 안정적인 조사자료 구축을 위해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표집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의 조사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2014년 기준 조사결과뿐 아니라 2012년 기준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한 해 동안의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피해 내용과 피해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고자 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에

3) 2013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구체적인 수정 및 보완사항은 김은경 외 (20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2012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08년 및 2010년 기준 조사의 결과와 비교분석이 가능한 경우는 분석내용에 포함하여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 한국 범죄피해조사의 발전을 위해 조사방법이나 수행체계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2년을 주기로 한 범죄피해조사의 제4차 정례조사의 형태로 한국의 범죄피해양상과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조사자료 구축을 통해 학술자료의 가치뿐 아니라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마련에도 실질적인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제2절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2009년 개편 이후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의 네 번째 정례조사로 범죄피해 발생과 피해 내용을 살펴보고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전국단위의 대규모 표본조사의 네 번째 조사로 이전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범죄피해 발생 및 피해 내용과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연구의 목적 및 의의를 소개한 1장을 포함하여 총 10장으로 구성된다.

2장은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크게 7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1절은 조사표의 구성과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소개하였고 2절은 모집단 및 표본설계에 대한 것이다. 3절은 조사도구 준비 및 조사홍보활동과 같은 조사준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4절은 조사수행체계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조사 진행과정을 설명하였고, 5절에서는 조사완료 현황 및 내검 관련 내용의 실사결과를 정리하였다. 6절은 표본의 대표성 평가 및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7절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유형을 구분하여 추출방법을 설명하였다.

3장은 주요 범죄피해발생률을 살펴본 것으로 먼저 2014년 기준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을 살펴보았고 지역별 및 도시규모별 피해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2년 기준 조사와 2014년 기준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주요 범죄피

해 발생 변화 분석을 하였을 뿐 아니라 1993년 기준 조사 이래 범죄피해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4장과 5장은 개인을 단위로 범죄피해유형을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구분하여 해당 유형의 피해발생 일시 및 장소, 피해상황 및 피해 내용, 피해자의 특성과 범죄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6장은 가구대상 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 양상을 살펴본 것으로 크게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와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로 구분하여 가구대상 범죄피해율을 알아보고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이나 피해 상황 등의 구체적인 범죄피해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연도별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과 피해 내용에 대한 변화분석을 실시하였다.

7장은 경찰신고 및 처리 현황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과 범죄피해를 신고한 이유와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통해 경찰 신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신고 이후 처리 현황 및 만족도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으며, 세 번째로 조사 기준 연도별 경찰신고 및 처리 현황 변화에 대한 추세 분석을 진행하였다.

8장은 범죄피해 취약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즉, 지역특성과 가구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활양식과 같은 요인이 범죄피해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석하였고 조사연도별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9장은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과 범죄예방활동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과 관련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지역 특성 변인 등의 요인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10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2014년 기준 조사방법 및 실사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범죄피해조사의 발전을 위해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조사내용 및 방법

최수형·박희정

제2장

조사내용 및 방법

제1절 조사내용

1. 조사표의 구성

2014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전 조사인 '2012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와 동일하다. 다만, 조사대상 시점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시점을 수정하였고 응답자의 조사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스크리닝 질문 문항에 대한 설명문을 추가하였다. 조사표는 크게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 두 종류가 있다.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 응답자용과 가구원용이 있는데, 가구대표 응답자용 조사표에는 가구 구성, 방범수준, 주택 유형 등 가구대표만 응답하는 문항이 추가되어 있다. 모든 가구[4]는 1명의 가구대표 응답자와 그 외 가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며, 가구대표 응답자는 세대주, 호주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가구의 생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가구원은 현재 가구에서 취사 및 취침 등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주말 부부,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구대표 응답자용 기초조사표는 초록색, 가구원용 기초조사표는 연두색, 사건조사표는 파랑색으로 인쇄하여 조사표의 종류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조사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이다.

〈표 2-1〉 조사표의 종류

조사표 유형		실제 조사표
기초조사표	가구대표 응답자용	
	가구원용	
사건조사표		

아래는 조사표 작성체계를 나타낸 것으로, 응답자는 먼저 전반적인 일상생활과 범죄피해 스크리닝질문을 통해 2014년 범죄피해경험 유무를 확인하는 기초조사표를 작성한다. 기초조사표에서 범죄피해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사건조사표를 통해 범죄피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문항에 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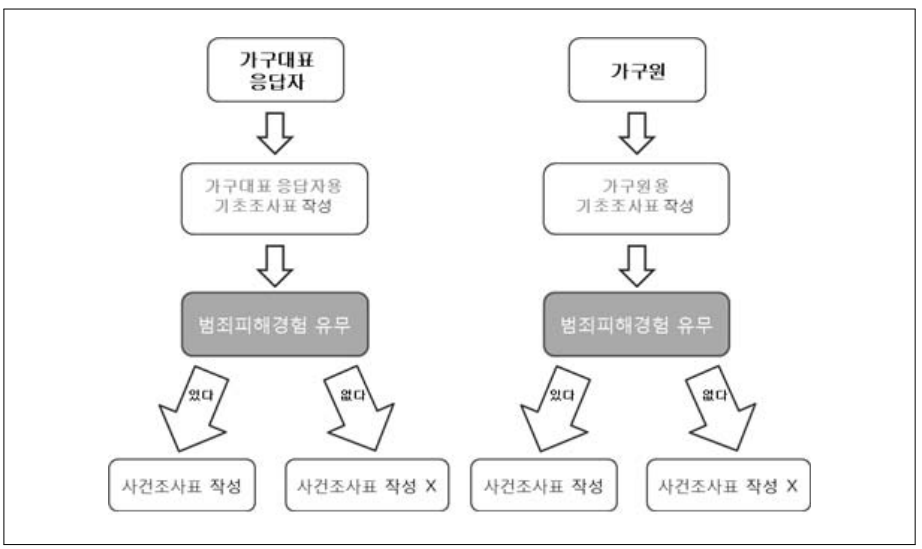

[그림 2-1] 조사표 작성체계

2. 조사내용

가. 기초조사표

1) 조사문항

기초조사표는 크게 가구 구성, 동네와 이웃 환경, 범죄증감 예상, 범죄피해 두려움, 일상생활 및 범죄예방활동, 거주 안정성, 개인 특성,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회상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네와 이웃 환경 : 환경적 요인과 범죄 발생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문항으로, 동네 주위환경(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동네 사람들(이웃 관계, 범죄 관련 활동 참여), 동네 경찰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범죄에 대한 증감 예상 : 우리나라와 동네의 범죄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질문함.
- 범죄피해 두려움 : 체감 안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일반적 두려움, 대상별 범죄피해 두려움,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두려움, 범죄피해 취약성 인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상생활 및 범죄예방활동 : 일상생활의 행동과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질문을 통해 범죄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 거주 안정성 : 현 동네 거주기간, 5년 이내 이사횟수, 거주지 영업활동 여부, 주택점유형태 등을 통해 거주의 안정성을 조사함.
- 범죄피해경험: 2014년 한 해 동안 겪은 범죄피해경험(속임, 물건, 주거침입, 손상, 장소, 방법, 지인, 성범죄 관련)을 묻는 질문으로, 피해경험 수와 상습피해 여부, 사건조사표 수를 결정하는 근거자료가 됨.

기초조사표의 구조와 구체적인 조사문항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로 표시된 부분은 가구대표 응답자용의 기초조사표에만 있는 문항이다. 즉, 성별이나 실제 생년월일, 혼인상태,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가구구성 관련 문항과 가구원 모두가 외출 혹은 출근하여 집이 비어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문항, 배경문항 가운데 학력수준을 제외한 동네 거주 기간과 이사경험, 주택

소유형태, 소득문항, 그리고 조사원 확인사항에서 조사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관련 문항의 경우 가구대표 응답자용 조사표에만 포함되어 있다.

〈표 2-2〉 기초조사표의 주요 변수 및 조사항목

주요 변수		세부 항목	
가구 구성(+)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실제 생년월일	
		혼인상태	
		직업	
		장애인 여부	
		외국인 여부 및 출신국가	
동네와 이웃 환경	1. 동네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	1) 물리적 무질서	어두운 거리, 쓰레기 등 물리적 환경
		2) 사회적 무질서	무질서 행위자나 불량청소년 등 사회적 환경
	2. 동네 사람들에 대한 인식	1) 이웃 관계	이웃 간 친밀도나 이웃돕기 등의 공동체 유대정도
		2) 이웃 참여	동네 아이 보호나 동네범죄사건 발생 시 신고하는 등의 이웃 참여 정도
	3. 동네 경찰 신뢰도	1) 순찰 활동 2) 신속한 출동 3) 범인검거 등에 대한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 정도	
	4.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일상 생활과 범죄 예방 활동	5. 일반적 두려움	1) 집 2) 동네 골목길	
	6. 대상별 범죄피해 두려움	1) 나 자신 피해 두려움 2) 배우자(애인) 피해 두려움 3) 자녀 피해 두려움	
	7.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두려움	1) 누군가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 것에 대한 두려움 2) 돈이나 물건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3) 구타당하여 다칠 것에 대한 두려움 4) 속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5)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6) 물건이나 재산을 부술 것에 대한 두려움 7) 내 집에 침입할 것에 대한 두려움 8) 나를 쫓아다니거나 괴롭힐 것에 대한 두려움	

주요 변수		세부 항목
	8. 범죄피해 취약성 인지	1)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 가능성 정도 2) 다른 사람에 비해 방어 능력 정도 3)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결과의 심각성 및 지속성 정도
	9. 지인 범죄피해 여부	1) 신체 피해 여부 2) 재산 피해 여부
	10. 대중교통 이용 빈도	
	11. 늦은 귀가 빈도	
	12. 만취 귀가 빈도	
	13. 집 비우는 정도(+)	
	14. 일상생활 만족도	
	15. 일상생활 행동	1) 외출 시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착용 정도 2) 유명 브랜드 제품 사용 정도 3) 범죄 관련 미디어 접촉 정도 4) 범죄 관련 이야기 접촉 정도
	16. 범죄예방 조치 및 활동 정도	1) 밤에 문단속 정도 2) 호신도구 사용 정도 3) 밤길 동행 정도 4) 위험지역 피해 다니는 정도 5) 야간 활동 정도 6) 야간 택시 이용 정도 7) 자율방범활동 참여 정도 8) 빈집 관리 정도
배경 문항	17. 거주기간(+)	
	18. 5년 이내 이사 횟수(+)	
	19. 거주지 영업활동 여부(+)	
	19-1. 영업표식 사용 여부(+)	
	20. 주택점유형태(+)	
	21. 교육정도	
	22. 월평균 가구소득(+)	
작년 (2014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23. 속임 관련 피해여부 및 피해 횟수	
	24. 물건 관련 피해여부 및 피해 횟수	
	25. 주거침입 관련 피해 여부 및 피해 횟수	
	26. 손상 관련 피해여부 및 피해 횟수	
	27. 장소 관련 피해여부 및 피해 횟수	
	28. 방법 관련 피해여부 및 피해 횟수	
	29. 지인 관련 피해여부 및 피해 횟수	

주요 변수		세부 항목	
	30. 성범죄 관련 피해여부 및 피해 횟수		
조사원 확인 사항	1. 점검 항목	23번 속임 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상습피해 수
		24번 물건 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상습피해 수
		25번 주거침입 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상습피해 수
		26번 손상 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상습피해 수
		27번 장소 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상습피해 수
		28번 방법 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상습피해 수
		29번 지인 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상습피해 수
		30번 성범죄 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상습피해 수
		총 피해 경험 수	피해여부 및 횟수
		총 사건조사표 수	
	2. 조사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수준(+)	1) 특수 잠금장치 있는지 여부	
		2) 방범창 있는지 여부	
		3)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보는 구멍 있는지 여부	
		4) 출입카드 사용 여부	
		5) 도난 경보시스템 있는지 여부	
		6) 경비원 있는지 여부	
		7) CCTV 등의 감시카메라 있는지 여부	
		8) 외부 조명 있는지 여부	
		9) 유흥업소 밀집지역 있는지 여부	
		10) 재개발 공사장 있는지 여부	
		11) 공단지역 있는지 여부	
		12) 대규모 재래시장 있는지 여부	
	3. 주택의 유형(+)		

* (+)는 가구대표 응답자용 조사표에만 있는 문항이다.

2) 범죄피해 경험 수 및 사건조사표 수 결정방법

기초조사표의 23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은 범죄피해선별문항(스크리닝 질문)으로 범죄피해 사건에 대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등의 구체적인 단서와 질문을 제공하여 응답자가 피해경험을 회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2014년 한 해 동안 관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와 그 피해횟수에 대해 질문한다.[5] 즉, 범죄피해선별문항은 범죄피해유형을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응답자가 피해경험을 정확히 기억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라는 문구를 넣어 동일 사건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범죄피해조사에서 범죄피해선별문항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응답자가 자기기입식방식으로 기초조사표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면접원이 기초조사표를 수거하러 갔을 때 범죄피해선별문항에 대한 별도의 면접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본 문항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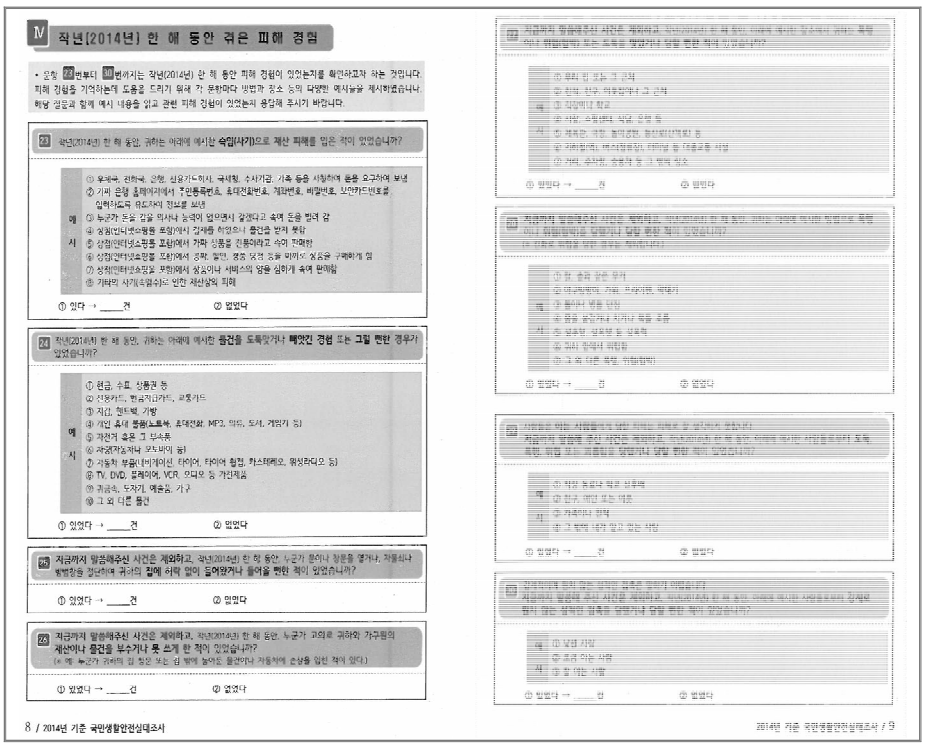

[그림 2-2]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 경험 선별문항 23번~30번

5) 구체적인 범죄피해선별문항의 내용은 부록 1 기초조사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조사원은 범죄피해선별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을 가지고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범죄피해 경험 수와 사건조사표 수를 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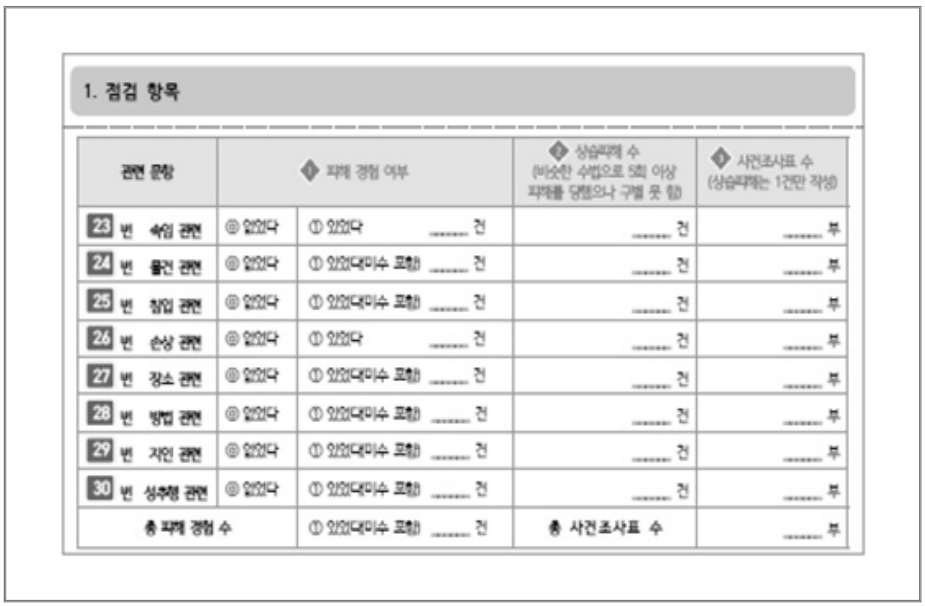

1. 점검 항목

관련 문항	❶ 피해 경험 여부		❷ 상습피해 수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피해를 당했으나 구별 못 함)	❸ 사건조사표 수 (상습피해는 1건만 작성)
23 번 속임 관련	⑩ 없다	① 있다 ____ 건	____ 건	____ 부
24 번 물건 관련	⑩ 없다	① 있다(대리수 포함) ____ 건	____ 건	____ 부
25 번 침입 관련	⑩ 없다	① 있다(대리수 포함) ____ 건	____ 건	____ 부
26 번 손상 관련	⑩ 없다	① 있다 ____ 건	____ 건	____ 부
27 번 장소 관련	⑩ 없다	① 있다(대리수 포함) ____ 건	____ 건	____ 부
28 번 방법 관련	⑩ 없다	① 있다(대리수 포함) ____ 건	____ 건	____ 부
29 번 지인 관련	⑩ 없다	① 있다(대리수 포함) ____ 건	____ 건	____ 부
30 번 성추행 관련	⑩ 없다	① 있다(대리수 포함) ____ 건	____ 건	____ 부
총 피해 경험 수		① 있다(대리수 포함) ____ 건	총 사건조사표 수	____ 부

[그림 2-3]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 경험 수 체크리스트

범죄피해 경험 수와 상습피해 여부, 사건조사표 수의 결정방법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와 동일하며, 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범죄피해 경험 수 결정방법

1. 범죄피해 경험 문항에서의 피해 경험 수를 옮겨 적는다.
2. 점검 항목 문항 중 2개 이상의 문항에 표시된 경우, 동일한 피해 경험인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강도가 자택에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의 문항에 표시될 수 있으나, 동일한 피해 경험인 경우 한 건으로 표시한다.
3. 문항별 피해경험 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경험 수에 적는다.
4. 총 피해경험 수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경험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한다.

❍ 상습피해 여부 결정방법

상습피해는 유사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예를 들어, 가정폭력, 학교폭력, 스토킹 등)를 입었으나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한다.

1. 문항별 피해경험 수가 5건 이상인 경우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한다.
2.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피해경험 수를 상습피해 수에 다 적는다.

❍ 사건조사표 수 결정방법

1. 2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같은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기입한다.
2. 문항별로 피해경험 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에 해당하면 사건조사표는 1부, 각 경험이 구별할 수 있는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기입한다.
3.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조사표 수에 기입한다.
4. 총 피해사건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의 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한다.

나. 사건조사표

사건조사표는 기초조사표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작성하게 된다. 사건조사표는 기초조사표에서 결정된 '사건조사표 수'와 같은 부수를 작성하며, 크게 9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초조사표 점검항목: 기초조사표의 점검항목에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며 기입하는 내용으로, 기초조사표에서 범죄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관련 문항 번호와 해당 범죄피해의 총 사건조사표 수, 그 중에서 몇 번째 사건인지를 작성함. 상습피해의 경우에는 피해횟수도 기입함.
-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지역, 장소에 대한 질문 문항임.
- 범행수법: 주거침입 여부, 침입방법, 흉기 소지 및 사용 여부, 신체공격 여부,

위협 내용 등에 대한 질문임.

- 신체피해: 신체피해 내용, 검사(치료) 장소, 병원 치료 및 입원 여부, 의료비 지출액, 시간손실 여부 및 일수, 피해배상 여부 및 비율에 대한 질문 문항임.
-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의 음주상태, 방어행동, 선제 공격, 신체피해 여부, 대응행동 등에 대한 질문 문항임.
- 재산피해: 속임피해 내용, 사기 수법, 재산피해 여부, 피해물품, 손상 물품, 수리비, 피해배상 여부 및 비율 등에 대한 질문 문항임.
- 정신적 피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내용, 상담 및 진료 경험 여부, 진료기간 및 진료비용, 사건 전후의 감정변화 내용 등에 대한 질문 문항임.
- 가해자의 특성: 가해자에 대한 인지정도, 가해자의 유형 및 인원, 성별, 연령대, 음주상태,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 문항임.
- 경찰 신고와 처리현황: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 신고 이유, 경찰의 조치 여부 및 내용, 경찰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가해자 검거 여부, 시간손실 여부 및 일수, 미신고 이유 등에 대한 질문임.

사건조사표의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3〉 사건조사표의 주요 변수 및 조사항목

주요변수	주요 항목	하위 항목
I.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1. 발생시점-현재 거주 집 여부	
	2. 발생시점-발생 월	
	3. 발생시점-시각	
	4. 발생지역	
	5. 발생장소	5-1. 발생장소 5-2. 상세 장소 5-3. 자기영업장 여부
II. 범행수법	6. 집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6-1. 주거침입 여부
	7. 실제 침입 여부	7-1. 침입방법
		7-2.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7-3. 현장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람

주요변수	주요 항목	하위 항목
	8. 흉기 소지 및 사용 여부	8-1. 흉기 종류
		8-2. 사전 준비 여부
	9. 신체공격 여부	
	10. 신체공격이 아닌 사건 내용	
	11. 위협(협박) 사건 내용	
	12. 신체공격 사건 내용	12-1. 폭행(성폭력) 전 위협 여부
III. 신체피해	13. 신체피해 내용	
	14. 검사(치료) 장소	14-1. 병원치료 여부
		14-2. 병원입원 여부
		14-3. 의료비 지출액
		14-4. 시간손실 여부 및 일수
		14-5. 피해배상 여부 및 비율
IV. 피해자의 대응	15. 음주상태	
	16.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	16-1. 타인피해 여부
	17. 방어행동 여부	17-1. 구체적인 방어행동
		17-2. 선제공격
		17-3. 신체피해 여부
		17-4. 대응행동 시점
		17-5. 대응행동 영향
V. 재산피해	18. 속임 재산피해	18-1. 속임 피해 내용
		18-2. 사기 수법
	19. 재산피해 여부	19-1. 피해인지 시점
		19-2. 피해물품
		19-3. 직접 물품 전달 여부
		19-4. 직접 접촉 여부
		19-5. 직접 접촉 피해물품
		19-6. 피해금액
		19-7. 피해물품 회수 여부
		19-8. 기타 재산피해 여부
	20. 손상 물품	20-1. 보험회사 신고 여부
		20-2. 손상된 물건 수리비
		20-3. 피해배상 여부 및 비율
		20-4. 수리 및 재구입 여부 및 수리 일수

주요변수	주요 항목	하위 항목
VI. 정신적 피해	21. 정신적인 피해 내용	21-1. 시간손실 여부 및 손실 일수
		21-2. 상담 및 진료경험 여부, 진료기간, 진료비용
	22. 감정 변화 내용	
VII. 가해자의 특성	23. 가해자 인지 여부	23-1. 가해자 인지 근거
		23-2. 가해자 유형
		23-3. 가해자 인원
		23-4. 가해자 성별
		23-5. 가해자 연령대
		23-6. 가해자 음주상태
		23-7. 가해자와의 관계
VIII. 경찰 신고와 처리현황	24. 신고 여부	24-1. 신고이유
		24-2. 경찰의 조치 여부
		24-3. 경찰의 조치 내용
		24-4. 경찰의 정보제공 여부
		24-5. 경찰의 설명 이해 여부
		24-6. 경찰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24-7. 가해자 검거 여부
		24-8. 시간손실 여부 및 손실 일수
		24-9. 미신고 이유

제2절 모집단 및 표본설계

1. 모집단 규정 및 표본추출틀 작성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 기준 시점인 2015년 5월 29일 0시 현재 대한민국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으로 설정하였고 이 중 군대, 감옥, 요양원 등의 집단 거주지 거주자는 제외하였다. 다만, 직장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부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직업군인은 포함하였다. 이에 조사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와 아파트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인 가구

원으로, 일반 조사구 중 섬 조사구, 기술시설 조사구, 특수사회시설 조사구,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의 조사구는 제외하였다. 조사모집단 분포를 살펴보면 17,343,558 가구, 42,394,232명이며 조사모집단 시도별, 동/읍면부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4〉 조사 모집단 분포

구분	동부		읍면부		전체	
	가구수	만 14세 이상 인구수	가구수	만 14세 이상 인구수	가구수	만 14세 이상 인구수
전 체	14,215,580	35,144,627	3,127,978	7,249,605	17,343,558	42,394,232
서울	3,504,841	8,705,067	-	-	3,504,841	8,705,067
부산	1,243,945	3,049,121	-	-	1,243,945	3,049,121
대구	868,396	2,142,117	-	-	868,396	2,142,117
인천	919,035	2,316,112	-	-	919,035	2,316,112
광주	515,903	1,269,029	-	-	515,903	1,269,029
대전	532,758	1,299,274	-	-	532,758	1,299,274
울산	373,700	931,402	-	-	373,700	931,402
경기	3,179,853	8,083,042	652,370	1,679,012	3,832,223	9,762,054
강원	346,359	797,395	211,465	481,023	557,824	1,278,418
충북	338,318	810,139	220,660	507,380	558,978	1,317,519
충남	287,643	680,311	461,819	1,086,015	749,462	1,766,326
전북	450,105	1,093,128	209,935	459,463	660,040	1,552,591
전남	286,294	684,039	395,291	843,197	681,585	1,527,236
경북	515,666	1,204,714	490,051	1,087,119	1,005,717	2,291,833
경남	715,454	1,744,672	436,308	988,308	1,151,762	2,732,980
제주	137,310	335,065	50,079	118,088	187,389	453,153

한편, 표본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 및 아파트 조사구(A)를 활용하여 총 306,433개 조사구를 사용하였다. 시도별, 동/읍면부별 조사구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5〉 조사구 분포

구분	동부		읍면부		전체	
	보통(1)	아파트(A)	보통(1)	아파트(A)	보통(1)	아파트(A)
전 체	127,529	121,294	41,835	15,775	169,364	137,069
서울특별시	37,817	23,485	-	-	37,817	23,485
부산광역시	11,763	10,095	-	-	11,763	10,095
대구광역시	7,929	7,440	-	-	7,929	7,440
인천광역시	7,542	8,059	-	-	7,542	8,059
광주광역시	3,653	5,464	-	-	3,653	5,464
대전광역시	4,311	4,709	-	-	4,311	4,709
울산광역시	3,235	3,371	-	-	3,235	3,371
경기도	25,480	29,968	6,780	5,216	32,260	35,184
강원도	2,816	3,319	3,139	923	5,955	4,242
충청북도	2,768	3,215	3,032	1,171	5,800	4,386
충청남도	2,091	3,008	6,149	2,516	8,240	5,524
전라북도	3,270	4,710	3,482	474	6,752	5,184
전라남도	2,006	2,968	5,643	1,111	7,649	4,079
경상북도	4,864	4,482	7,276	1,830	12,140	6,312
경상남도	6,193	6,360	5,473	2,490	11,666	8,850
제주도	1,791	641	861	44	2,652	685

2. 표본규모의 산출

가.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오차분석

범죄피해라는 특수한 경험을 측정하여 지역별 피해율을 공표하기 위하여 시도별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10%로 설정할 경우 표본규모는 42,567가구가 되며, 이는 1차 조사의 예산을 기준으로 10배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김은경 외, 2013:68). 그동안 1차 조사에 이은 2,3차 조사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오차분석 결과를 활용하되 제한된 예산과 조사기간에서 표본 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6] 이에 4차 조사에서 역시 예산대비 최적의 표본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지난 조사결과의 오차

6) 해외범죄피해조사의 전체 인구대비 표본규모 비율을 비교해보면 미국과 영국은 0.05% 수준이며 캐나다는 0.4%, 호주는 0.3% 수준으로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표본규모는 0.03%에 불과하다.

분석 결과뿐 아니라 한정된 예산과 조사기간, 그리고 실사주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2012년 기준 전국의 가구범죄피해 발생률의 상대표준오차는 7.98%(2010년 기준 조사는 6.03%)이며, 범죄유형별 피해 발생률의 상대표준오차는 주거침입절도와, 자동차손괴만이 최대허용수치인 25% 이내였고[7] 다른 유형의 경우는 상대표준오차가 상당히 커 신뢰도 있는 통계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이었다.

〈표 2-6〉 가구의 범죄유형별 피해발생률 추정값 및 상대표준오차(2012년 기준 조사결과)

유형	조사구수	표본 가구수	피해 가구수	피해발생률 (%)	상대표준 오차
전국 전체	630	6,300	153	2.43%	7.98%
주거침입강도	630	6,300	2	0.03%	70.69%
주거침입절도	630	6,300	78	1.24%	11.25%
주거침입손괴	630	6,300	5	0.08%	44.70%
단순주거침입	630	6,300	9	0.14%	33.31%
자동차손괴	630	6,300	44	0.70%	15.02%

한편, 2012년 기준 개인의 범죄피해 발생률의 상대표준오차는 3.99%이며, 범죄유형별 피해 발생률의 상대표준오차는 일반절도와 사기의 경우는 10% 미만이었고 손괴와 폭행 및 상해는 11%에서 13% 수준이었으며 성폭력은 21.8%, 강도는 35.34%였다.

〈표 2-7〉 개인의 범죄유형별 피해발생률 추정값 및 상대표준오차(2012년 기준 조사결과)

유형	조사구수	표본 가구원수	피해 가구원수	피해발생률(%)	상대표준오차 (%)
전국 전체	630	13,317	601	4.51	3.99
성폭력	630	13,317	21	0.16	21.80
강도	630	13,317	8	0.06	35.34
폭행/상해	630	13,317	63	0.47	12.57
일반절도	630	13,317	157	1.18	7.93
손괴	630	13,317	75	0.56	11.51
사기	630	13,317	111	0.83	9.45

7) 통계청에 의하면 상대표본오차 25%인 경우 공표범위를 재검토하고 셀 병합을 하거나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고려하여 신뢰도 높은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김은경 외, 2013:71 재인용).

나.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표본규모 산출

2012년 기준 조사의 표본규모는 2010년 기준 조사결과의 가구범죄피해 발생률 5.38%를 적용하여 목표 상대표준오차 6.6%인 6,300가구로 결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도 2012년 기준 조사의 범죄피해율을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살펴본 결과, 범죄 피해율 산정 기준 변경 등으로 2012년 기준의 가구범죄 피해율이 2.43%로 크게 낮아져 이전 조사의 상대표준오차 6.6%를 기준으로 표본규모를 산출하면 표본규모는 9,221가구가 되어 조사기간과 조사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예산과 기간을 고려하여 상대표준오차 7.6%를 적용하면 6,954가구가 되며, 이전 조사에 비해 상대 표준오차가 1% 커지나 여전히 10% 이하로 우수한 수준이다.[8] 이에 조사구 당 10가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최종 표본은 6,960가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696개 조사구를 추출하여 조사구 당 10가구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본 조사는 지난 조사와 표본설계방법 및 추출방법이 동일하므로 가구범죄피해 발생률의 상대표준오차 7.6%를 적용하여 표본규모를 결정하였다. 표본 규모를 결정한 식은 다음과 같다.

$$n_1 \times CV_1^2 = n_2 \times CV_2^2$$

n_1 : 630 (2012년 표본조사구 규모) CV_1 : 2.43% (2012년 가구범죄피해율의 CV)
n_2 : 새로운 표본규모 CV_2 : 목표 CV

〈표 2-8〉 가구범죄피해율의 상대표준오차별 표본규모

목표 상대표준오차	표본 규모(조사구)	표본 규모(가구)	예상 피해 가구수
6.60%	922	9,221	224
6.70%	895	8,948	217
6.80%	869	8,687	211
6.90%	844	8,437	205
7.00%	820	8,198	199
7.10%	797	7,968	194

8) 통계청에 의하면 상대표준오차 25% 이상인 경우 공표범위를 재검토하고 셀 병합하거나 내부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한편, 캐나다의 표본조사 기준을 보면 9.99% 이하인 경우 우수 수준으로 판단하며, 호주는 25% 이하면 대부분 목적에 그대로 사용하고 25%-50% 이하면 *표시를 하여 주의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3:71).

목표 상대표준오차	표본 규모(조사구)	표본 규모(가구)	예상 피해 가구수
7.20%	775	7,749	188
7.30%	754	7,538	183
7.40%	734	7,335	178
7.50%	714	7,141	173
7.60%	695	6,954	169
7.70%	677	6,775	165
7.80%	660	6,602	160
7.90%	644	6,436	156
8.00%	628	6,276	338

* 예상 피해 가구수는 가구범죄피해 발생률 2.43%를 적용하였다.

3. 층화 및 표본 배분

층화 방법은 2012년 기준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16개 시도 및 동부/읍면부를 고려하여 25개 층으로 구성했다. 다만, 표본의 배분은 다음의 4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1)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층화방법인 제곱근 비례배분 틀을 유지하였다. 2) 2012년 층별 표본수보다 적지 않게 배분하여 표본수가 적어도 같거나 늘어나는 것의 연속성 유지에 집중하였다. 3) 제곱근 비례로 과도하게 추출확률이 적어지는 서울과 경기 동부의 표본수를 추가로 배정하였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지리적 범위도 넓고 지역별 편차(분산)가 클 것으로 보이므로 많은 표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에 비해 경기도의 인구가 증가하여 2012년 기준 조사에 비해 경기도의 표본수 증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시도도 동부 인구의 증가와 범죄피해율 예상 등을 고려해 읍면부보다 동부, 대도시의 표본수를 상대적으로 더 배정하였다. 4) 업무량이나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통계적으로만 접근하였다. 서울에서 많이 조사하는 것이 비용과 일정 면에서 유리하지만 이러한 측면보다는 통계적 측면에서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즉, 이러한 원칙에 따라 표본배분은 전국의 표본 규모를 696개 조사구로 정한 후 25개 층별로 조사모집단 분포의 가구수 제곱근비례배분[9]을 기반으로 2012년 최종 표본배분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가구수 비례 대비 추출확률이 과대 감소하는 서울과 경기 동부를 추가로 배분하였다.[10]

9) 제곱근비례배분은 층별 크기를 반영하면서도 과도한 층별 표본크기의 편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인구가 적은 층(시도)도 적절한 표본수가 확보된다.

〈표 2-9〉 표본배분 결과

행정구역		조사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2012 기준 배분	제곱근 비례 배분	최종 배분
전국 전체		306,443	100.0%	17,343,558	100.0%	630	696	696
서울특별시		61,302	20.0%	3,504,841	20.2%	81	70	88
부산광역시		21,858	7.1%	1,243,945	7.2%	39	42	42
대구광역시		15,369	5.0%	868,396	5.0%	30	35	33
인천광역시		15,601	5.1%	919,035	5.3%	33	36	36
광주광역시		9,117	3.0%	515,903	3.0%	24	27	27
대전광역시		9,020	2.9%	532,758	3.1%	24	27	27
울산광역시		6,606	2.2%	373,700	2.2%	21	23	23
경기	동부	55,448	18.1%	3,179,853	18.3%	59	67	69
	읍면부	11,996	3.9%	652,370	3.8%	25	30	29
강원	동부	6,135	2.0%	346,359	2.0%	20	22	21
	읍면부	4,062	1.3%	211,465	1.2%	16	17	17
충북	동부	5,983	2.0%	338,318	2.0%	18	22	20
	읍면부	4,203	1.4%	220,660	1.3%	15	17	16
충남	동부	5,099	1.7%	287,643	1.7%	18	20	20
	읍면부	8,665	2.8%	461,819	2.7%	21	25	23
전북	동부	7,980	2.6%	450,105	2.6%	21	25	23
	읍면부	3,956	1.3%	209,935	1.2%	15	17	16
전남	동부	4,974	1.6%	286,294	1.7%	18	20	20
	읍면부	6,754	2.2%	395,291	2.3%	18	23	21
경북	동부	9,346	3.0%	515,666	3.0%	23	27	26
	읍면부	9,106	3.0%	490,051	2.8%	22	26	24
경남	동부	12,553	4.1%	715,454	4.1%	26	31	29
	읍면부	7,963	2.6%	436,308	2.5%	22	25	24
제주	동부	2,432	0.8%	137,310	0.8%	12	14	13
	읍면부	905	0.3%	50,079	0.3%	9	8	9

4. 표본조사구 및 가구의 추출

가. 표본조사구 추출

표본조사구의 추출 역시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층별로 조사구를 주택유형, 만

10) 2012년에는 제곱근 비례배분을 하고 최종 배분을 할 때 “층별 업무량 배정”이라는 통계적이지 않은 방법을 고려하였다. 서울의 경우 제곱근 비례를 하면 63.2개의 조사구를 배부해야 하지만 18개 정도 많은 81개의 조사구를 배정하였다. 반면, 인구와 시군이 많은 경기 동부의 경우에는 60.2개를 배분하야 하지만 오히려 이보다 적은 59개만 배분하였다.

14세 이상인 인구비율, 교육정도, 조사구 번호의 분류기준으로 정렬하고, 조사구 내 가구수를 기준으로 층별 표본규모에 해당하는 조사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systematic selection with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하였다.

〈표 2-10〉 분류기준

분류	분류내용
1차 분류	• 대표 주택유형(해당 유형이 구성비 높은 경우) ① 단독일반 ② 단독다가구 ③ 아파트(59㎡이하) ④ 아파트(86㎡이하) ⑤ 아파트(129㎡이상) ⑥ 연립다세대 ⑦ 기타주택
2차 분류	• 만 14세 이상 인구비율 ① P33미만 ② P33~P66미만 ③ P66이상
3차 분류	• 교육정도(대졸 구성비) ① P50미만 ② P50이상
4차 분류	• 조사구번호

최종 조사구 선정은 실사 전에 추출된 조사구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을 실시한 후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구 및 가구를 추출했기 때문에 추출된 조사구는 재개발 및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전 조사구 확인 작업을 통해 가구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사구 내 적격 가구수가 10가구 미만인 경우와 해당 조사구 지역이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철거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조사구 내 위험이나 조사장애 등이 발생하여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조사구를 변경하였다. 최종 추출된 조사구 요도에 원표본 가구를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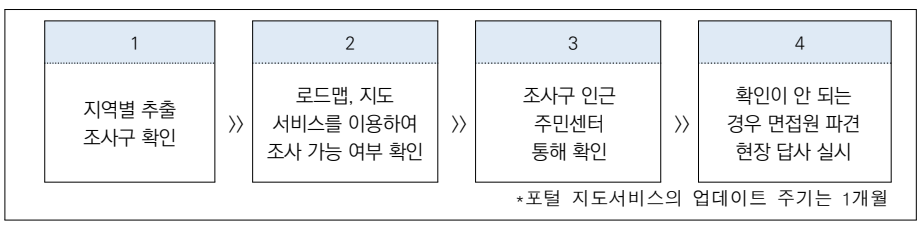

[그림 2-4] 사전 조사구 확인 과정

나. 표본가구 추출

조사구 내 표본가구의 추출은 추출된 조사구별로 전체 가구에 대해 거처번호를 부여한 후 계통표집을 통해 10가구를 추출하였고 조사구 내 추출간격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추출간격 } k = \frac{\text{조사구 내 가구수}}{10}$$
$$\text{랜덤번호 } r\text{(조사시작가구)}$$
$$\text{표본가구 } r,\ r+k,\ r+2k,\ \cdots,\ r+9k$$

5. 가중치의 작성 및 추정

가. 가중치 작성

본 조사에서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적용의 3단계를 거쳐 산출하였다. 설계가중값은 표본설계로부터 직접 산출되며, 조사구 내 가구수를 크기 척도로 하여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한 후 추출된 조사구 내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w_h^0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 \frac{S_h}{n_h \times m_h}$$

- h : 지역을 나타내는 첨자 (h= 1,2,⋯,16)
- i : 표본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i = 1,2,⋯, n_e)
- S_h : 표본추출에 사용된 크기 측도(설계 당시 가구 수)
- M_{hi} : h지역, i번째 표본조사구 내 전체 가구 수
- n_h : h지역 내 표본조사구 수
- $m_{hi,}$: h지역, i번째 조사구 내 표본 가구 수($m_{hi,}$=10)

무응답 조정가중치는 응답률의 역수를 이용하여 응답가구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정량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의 벤치마킹 모집단 가구 및 인구의 분포에 맞게 사후 층화 조정하였다.[11)]

$$w_{h,g} = w_h^0 \times \frac{X_{h,g}}{\hat{X}_{h,g}}$$

- W : 벤치마킹 추정치
- $\widehat{W}$: 표본에서 조사된 가구의 총 가중값
- g : 벤치마킹 시 고려할 그룹

나. 추정 방식

추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표준가중평균

$$\bar{y}_G = \frac{\sum_{h=1}^{H}\sum_{i=1}^{n_h}\sum_{j=1}^{m_{hi}} w_{hij}\, y_{hij}\, I[hij \in G]}{\sum_{h=1}^{H}\sum_{i=1}^{n_h}\sum_{j=1}^{m_{hi}} w_{hij}\, I[hij \in G]}$$

- h = 1, 2,....., H : 지역층 (H = 16)
- i = 1, 2, ..., n_h : 조사구(n_h는 h지역 내 조사구수)
- j = 1, 2, ..., m_{hi}: 대상 가구(m_{hi}는 h지역 내 총 가구 수)
- w_{hij} = h지역의 i 조사구 내 j번째 가중치
- y_{hij} = h지역의 i 조사구 내 j번째 관심변수의 관측값
- $I(hij) = \begin{cases} 1 \; i\; I[hij \in G] \\ 0 \; otherwise \end{cases}$

11) 2015년 통계청 16개 광역시도별 가구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 분산추정식 : Taylor series 방법

$$\widehat{Var}(\bar{y}_G) = \frac{\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w_{hiG}(\bar{y}_{hiG} - \bar{y}_G) - \frac{1}{n_h} \sum_{s=1}^{n_{hi}} w_{hsG}(\bar{y}_{hsG} - \bar{y}_G)]^2}{(\sum_{h=1}^{H} \sum_{i=1}^{n_h} w_{hiG})^2}$$

$$\cdot W_{hiG} = \sum_{j}^{m_{hi}} = w_{hij} I[hij \in G]$$

-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 \widehat{SE}(\bar{y}_G) = \sqrt{\widehat{Var}(\bar{y}_G)}$$

$$- \widehat{RSE} = \frac{\widehat{SE}(\bar{y}_G)}{\bar{y}_G} \times 100$$

제3절 조사준비

1. 조사도구 준비

가. 가구명부 및 요도 준비

본 조사에 필요한 조사구별 가구명부와 요도는 통계진흥원에서 구입하여 사용했으며, 원 조사구 696개의 가구명부와 요도를 넘겨받아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에서 약 2주간에 걸쳐 조사구별 주소 확인 및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대체 조사구 부족을 감안하여 1차 예비 조사구 696개, 2차 예비 조사구 696개를 미리 추출해 놓았으나, 무분별한 조사구 대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 조사구 자료는 실사팀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실사 진행 중 조사구 대체 상황이 발생하면 실사 담당자가 기록해 놓은 대체 사유를 확인한 후, 부족한 층에 대한 명부 및 요도를 전달하였다.

가구명부와 요도 구입은 http://mdss.kostat.go.kr 통계진흥원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방법은 MDSS 사이트 회원가입 후 마이크로데이터 사용신청서 및 보안서약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사이트에 등록해야 하고, 신청 후 필요 항목에 따른 이용 비용을 카드나 통장 입금 등을 통해 납부하면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승인이 완료된 후 제공되는 자료의 이용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 조사에서 원격접근을 이용하여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원격접근: 이용자의 연구실이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② 이용센터: 지정된 장소(통계진흥원 등)에 방문하여 해당 장소에서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이용 단계	비고
통계진흥원 담당자 연락	-
⮟	⮟
MDSS에 이용신청(2-3일 소요)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
승인 후 요청한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조사구) 추출	SAS 이용 필요
⮟	⮟
추출된 조사구를 통계진흥원 컴퓨터에 저장 후 연락	파일 저장 불가
⮟	⮟
추출된 조사구의 가구명부 및 조사구 요도 수령(2-3일 소요)	통계자료 파일 제공 불가
⮟	⮟
가구명부 파일로 변환(1주일 소요)	가구명부 스캔작업
⮟	⮟
표본 추출	-

[그림 2-5] 가구명부 및 요도 이용 단계

나. 조사지침서

조사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사가이드가 되는 조사지침서를 조사원 교육 전에 작성하여 조사원 교육 시 사용했다. 조사지침서의 경우 2012년 기준 조사에서 사용하였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조사대상 시점과 조사기준 시점의 변화로 인한 수정과 면접원의 범죄피해스크리닝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해당 범죄피해스크리닝 질문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들을 추가하여 면접원의 이해를 높였다.

다. 조사협조 공문 준비

조사 대상 가구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직인이 들어간 공문을 인쇄하여 조사원에게 배포하였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사 대상 가구를 위해 조사원이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문을 전달하고 조사 협조를 구하도록 하였다.

라. 답례품 준비

본 조사에 사용된 답례품은 홈팩 세트와 상품권을 사용하였으며, 조사응답가구 및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즉, 최초 조사 대상자인 가구대표는 전체 가구조사 성공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가구대표가 가구원 참여를 독려하게 하고, 가구원들의 참여 동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가구 조사 설문 완료 시 응답사례품(홈팩 세트)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가구원 조사표 작성 및 수거 시 조사 완료 가구원에게 1인당 5천 원 상품권 1매를 지급하였고 사건조사표 응답 시에는 추가적으로 1인당 1만 원 상품권 1매를 지급하였다. 한편,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조사 시 응답사례품인 홈팩세트를 지급하고 사건조사표 작성 시 1만 원 상품권 1매를 추가 지급하였다. 상품권은 1가지 종류로 일원화하지 않고 조사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리 배부하여 응답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상품권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

〈표 2-11〉 답례품 지급기준

구분	대상	답례품
기초조사표	• 가구대표응답자	• 홈팩 선물 세트
	• 만 14세 이상 가구원	• 조사표 1부당 5천 원 상품권 1매 지급
사건조사표	• 사건조사표가 있는 가구원 모두	• 조사표 1부당 1만 원 상품권 1매 지급

마. 비밀보호용 봉투

본 조사의 내용은 개인별 범죄피해와 관련한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을 원하거나 약속시간을 잡고 3회 이상 방문했으나 응답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밀보호용 봉투를 제작하여 조사표를 넣어 밀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조사원증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전원에게 조사원 패찰을 착용하도록 하여 응답자에게 조사원 신분임을 첫 눈에 알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2. 조사홍보활동

본 조사는 전국 6,960 가구의 응답을 확보해야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정해진 일정 안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특히, 가구방문 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공지 없이 응답자들과 접촉할 경우 조사거절은 물론 조사에 대한 항의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조사의 공익성을 알리는데 주력하였으며,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조사 문의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 조사안내문 발송

본 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나 초기 접촉 시 응답가구의 불응률을 낮추기 위하여 6,960개의 원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협조 및 안내를 위한 사전 홍보물을 실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송하였다. 홍보물은 조사에 대한 안내문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홍보물 2가지를 동봉하여 가구명부에 기입된 주소로 발송하였으며, 발송 결과는 아래와 같다. 즉, 발송 완료된 가구 수는 5,797로 전체의 83.3%가 성공하였고 가구명부 상의 주소 오류로 미발송된 경우가 883건이었고 반송함에 재투함되었거나 수취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가 280건이었다. 올해 조사의 경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현 시점과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주소 오류뿐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수신자란에 해당 주소의 '가구

주'라고 기입하여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반송 건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송 완료된 가구의 경우 면접조사 당시 사전 안내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조사 진행에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표 2-12〉 조사안내문 발송 현황

대상	수
발송 완료된 가구	5,797 (83.3%)
명부상 주소 오류로 인한 미발송 가구	883 (12.7%)
발송 후 반송된 가구	280 (4.0%)
전체 발송 가구	6,960 (100.0%)

나. 조사 관련 사항 홈페이지 게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및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의 홈페이지에 본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여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응답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본 조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허락하기도 하였다.

다. 조사지역 특성별 홍보 방안

아파트 지역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안내문 및 협조 공문을 통해 사전 조사 협조 요청하였고, 가능할 경우 아파트 전체 방송을 통해 조사를 홍보하고 게시판에 협조 공문을 게시하였다.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사전에 해당 조사구의 지역 통반장에게 조사에 대한 설명 및 협조를 구해 해당 주민들에게 조사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은 사전에 마을 이장을 방문하여 조사안내문 및 협조 공문을 통해 해당 지역의 조사 실시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지역 이장의 자택이나 마을회관에서 마을 전체 방송이 가능할 경우 방송을 통한 조사 홍보를 실시하였다.

라. 부재중 가구에 대한 조사 진행 안내문

부재중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 소개와 담당조사원의 연락처가 포함된 조사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여 본 조사에 대한 사전 이해도를 높이고 접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절 조사진행

1. 조사수행체계

영국과 미국, 캐나다의 범죄피해조사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관리함으로써 예산투입의 양, 인력 확보, 원활한 조사협조, 효율적인 조사관리 및 자료제공의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부터 2012년 기준 조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통계청 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조사대행과 명칭 변경) 및 표본과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2009년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초기 국가통계 생산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4차 조사부터는 통계대행과를 통한 실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민간사회조사 전문업체를 통한 조사가 불가피하였다.

한편, 국가통계 생산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대행과와의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이전의 범죄피해조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조사설계, 면접원 교육, 현장조사, 자료처리 등의 조사자료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이전 범죄피해조사에서 활용한 조사도구 및 홍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에 이번 범죄피해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과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진행되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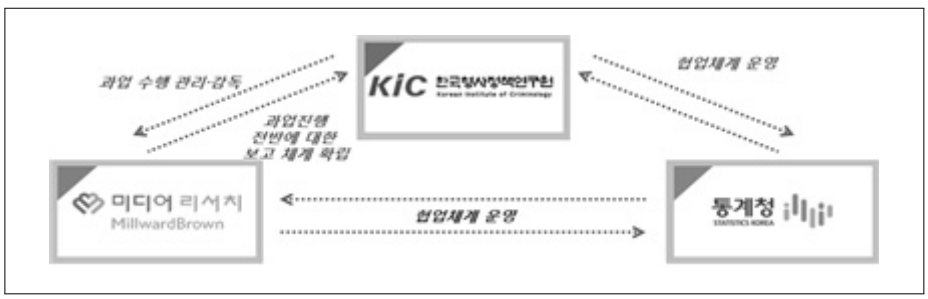

[그림 2-6] 조사수행체계

조사수행기관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전체 조사

12) 업체의 선정기준은 과업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수행 가능성과 조사구조사 및 국가승인 통계조사 수행 경험 등이며 조달청을 통한 입찰과 사업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다.

의 계획 및 조사수행 전략 수립, 조사표 수정, 조사지침서와 면접원 교육 자료 개발 및 보완, 면접원 및 조사관리자 교육, 조사홍보물 제작 및 발송 등 조사홍보 지원, 현장조사를 통한 실사지도 역할을 수행하고, 기존의 내검규칙을 점검하여 필요한 부분은 재개발하고 자료검증 과정을 점검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최종 검증 및 범죄피해 유형을 선정하고 추출식을 검토하여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는 표본추출을 하고(통계학과 교수에게 의뢰), 조사 진행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및 조사홍보, 면접원과 조사관리자 채용 및 교육 진행, 실사관리와 자료 처리 및 자료 검증작업을 수행하여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만의 조사관리 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표 2-13〉 조사수행기관별 주요 업무 분장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 전체 조사기획 및 조사수행 전략 수립 • 조사표 수정 및 조사지침서 보완 • 면접원 및 조사관리자 교육 • 조사홍보물 제작 및 발송 등의 조사홍보 지원 • 실사지도 및 질의사항 답변처리 • 내검규칙 개발 및 자료검증 지도 • 범죄피해유형 선정 및 추출식 개발 • 조사자료 분석 및 해석	
민간사회조사전문업체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연구팀	•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조사안내문 등 제작 • 가구명부, 조사구요도 확보 • 내검 실사지도 • 자료처리 및 조사결과 집계 • 표본설계, 표본추출 결과 분석
	실사팀	• 조사원 교육 장소 확보 • 조사답례품 및 조사용품류 구입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업무보조원 관리 • 현장조사 실시 • 조사표 입력 및 내검 • 통계조사검증 실시(전화검증) • 조사 진행 상황 및 완료 보고
통계청 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	• 민간조사업체 선정 및 조사설계와 자료처리 과정 등 조사통계 생산 전과정에 대한 자문과 점검 역할 수행	

2. 추진일정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추진일정 및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4월까지는 총괄 연구계획과 함께 조사수행업체 선정을 하였으며 5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수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6월부터 실사 진행과 함께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초기 조사 진행 독려에 집중하였고 6월 초부터 확산된 메르스(MERS) 감염 우려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였다.[13)]

〈표 2-14〉 추진일정 및 추진사항

일정	구분	주요 추진사항
1월~4월	총괄연구계획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개최 조사수행업체 선정	• 세부기본계획 • 제3회 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사전 준비 및 개최 • 조달청을 통한 조사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조달청을 통한 조사수행 업체 입찰공고(3.17-4.2) • 평가 과정을 통한 최종 조사수행 업체 선정 • 선정 업체와 본 용역 관련 계약 체결 • 표본설계방식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수행체계의 변화에 따른 실사 방안 등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진 회의 및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
5월 1주~2주	조사수행업체와의 업무 사항 협의 표본추출	• 연구진과 업체 담당팀 회의 • 세부수행계획 협의·확정 • 표본설계 - 모집단: 2010인구주택총조사
5월 3주~4주	실사준비	• 조사구 및 가구명부 수령(통계진흥원에서 구입) •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보완 - 기존 정례조사의 조사표를 유지하되 조사시행 시점의 변화로 조사표에 명시된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대상 시점 수정 - 면접원 교육을 위한 조사지침서 보완 및 교육 자료 개발 • 국가통계변경신청 - 표본규모 및 조사보고기간, 통계작성체계 등의 변화에 대한 국가통계변경 승인신청 및 허가 완료 • 기타 실사자료 준비 - 조사협조 공문, 집계구요도, 답례품 및 조사원증, 필기도구 등 • 최종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인쇄 -기초조사표(가구대표/가구원), 사건조사표 3종류 인쇄 • 면접원 선발 - 본 조사 경험자+승인통계(조사구 이용) 경험자 우선선발 • 면접원 교육

13) 메르스(Mers)는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 186명, 사망자 37명 발생하였다. 11월 4일 현재 치료 중인 환자 4명, 위기경보수준 "주의" 단계로, 공식적인 종식 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사 당시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조사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조사 진행의 어려움을 겪었다. (〈출처〉 메르스(MERS) 포털:http://www.mers.go.kr)

일정	구분	주요 추진사항
		- 조사원 교육은 2일에 걸쳐 조사지침서를 이용하여 이론교육, 조사절차 및 과정 교육, 조사표 교육, 실습 교육의 4단계로 나누어 진행
6월	실사진행 및 현장조사	• 가구방문 면접조사 진행 • 실사 관련 현장지도 병행 - 실사 관련 질문사항, 항의 등 상황 컨트롤 (조사 관련 전용 Hot-Line을 마련하여 응대) - 조사원 질의 사항 답변 - 조사원별 진행상황 등 실사진행 관리 • 조사 완료 후 조사원에 의한 현장검증 실시
7월	실사진행 및 통계조사 검증 (전화검증)	• 메르스 사태로 인해 7월 17일까지 조사기간 연장 • 조사의 정확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이원화된 내검 실시 - 각 지방 실사 사무소: 수거된 조사표 점검(누락항목, 이상치 등에 대해 확인) - 검증팀: 전체 표본의 20%에 대하여 사후 전화검증을 실시
8월	자료처리	• 자료 검증 - 전체 진행 부수의 10%에 대하여 전화검증 실시 - 조사참여 여부 및 범죄피해 여부 등 주요 문항을 중심으로 검증 실시 • 연구팀에 의한 종합 내검 실시 • 조사표 코딩/펀칭 실시 • 데이터 크리닝
9월 ~	자료분석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조사연구팀 자료 분석 업무분장 • 자료 분석 • 보고서 집필

3. 면접원 투입 인원

가. 면접원 선발 기준

본 조사에 투입된 면접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면접조사의 경험이 5년 이상이고 국가승인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원을 선발하고자 하였고, 본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계청에서 실사를 담당한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수행 경험이나 2014년 범죄피해조사방법론 비교연구 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원을 우선 선발하였다.[14)]

14) 실제 이번 조사에서 투입된 면접원 가운데 통계청 승인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원의 수는 서울수도권지역 53명, 부산/울산/경남 지역 35명, 대구/경북 지역 23명, 광주/전남/전북 지역 26명, 대전/충남/충북 지역 28명, 강원 13명, 제주 8명으로 총 186명이었으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2014년 전국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조사 수행 경험이 있는 면접원은 서울/경기 지역의 41명이었다. 한편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를 진행했던 면접원의 경우는 총 7명으로 대전 지역의 5명, 광주와 강원의 각 1명씩이었다.

나. 면접원 투입인원 산출 시 고려 요인

면접원 투입인원 산출 시 고려 요인은 다음과 같다. 본 조사는 조사내용의 난이도가 높고 단기간에 전국 6,960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전원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 동안 본 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면접원 1인이 가구별로 여러 번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 동안 본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면접원이 조사구 전체를 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조사구 기준으로 면접원 수를 산정하고 약 3주의 실사기간을 고려하여 실사기간 중 면접원 1인당 3개의 조사구, 즉 30가구를 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필요 면접원 수를 산출하였다.

다. 지역별 투입 조사인력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본 조사에 투입될 면접원의 수는 260명(예비인원 포함)이며 면접원을 관리하고 해당 실사 지역의 조사를 책임지는 조사관리자의 수는 23명이다.

〈표 2-15〉 면접원 수 및 조사관리자 현황

조사지역	조사구 수	가구수	면접원(명)			조사관리자 (수퍼바이저)
			필요인원	예비인원	전체 선발인원	
	696	6,960	235	26	260	23
서울/경기/인천	222	2220	74	7	81	7
부산/울산/경남	118	1180	40	4	44	4
대구/경북	83	830	28	3	31	3
대전/충남/충북	106	1060	36	4	40	3
광주/전남/전북	107	1070	36	4	40	3
강원	38	380	13	2	15	2
제주	22	220	8	1	9	1

한편, 조사구 특성별 전담 면접원을 배정하였다. 가령, 아파트 지역의 경우는 아파트 출입 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용모 단정한 면접원을 투입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면접원을 우선 배정하였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가구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 혹은 지리상 떨어져

있는 가구별 방문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 정보가 많은 면접원을 선발하였다. 원거리 지역의 경우는 운전경력이 있거나 차량을 소유한 면접원, 혹은 농어촌 등 시골지역이 많으므로 해당 지역 거주 면접원을 우선적으로 배정 투입하였다.

4. 조사원 교육

가. 면접원 교육 개요

표준화된 교육을 위해 서울(서울/인천/경기), 부산(부산/울산/경남), 대구(대구/경북), 대전(대전/충청), 광주(광주/전라), 강원, 제주 7개 각 지역에서 각각 1회당 2일간 집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15] 면접원의 자긍심 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해 본원의 연구진과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의 담당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나. 면접원 교육 구성

면접원 교육은 총 4단계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6〉 면접원 교육 구성 및 내용

단계	교육 구성	교육 내용
1단계	조사 목적/개요 등 이론 교육	- 본 조사에 대한 소개 및 목적 - 조사 취지 및 개요 부문 - 조사 방법 및 전체적인 흐름 - 본 조사의 내용 및 특징 - 조사구 및 원표본 가구 관리 요령 - 가구원명부 관리 방법 및 파라데이터 작성 방법 교육 - 조사원 기본자세 및 안전수칙 교육
2단계	조사절차/과정 및 현장조사 요령	-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에 대한 설명 - 조사표 구성에 대한 설명 - 가구 기초조사에서 사건조사표까지 받는 과정에 대한 설명 - 사건조사표 대상자 선정 방법 - 조사 불응, 항목 무응답, 가구원 부재 시 처리 방법 - 기타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 - 조사된 내용의 현장 검증 방법과 주의점
3단계	기초조사표 및 사건조사표에 대한 교육	- 기초조사표(가구대표용, 가구원용), 사건조사표 총 3가지로 조사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조사표의 개별 내용뿐 아니라 조사표 선정 절차도 함께 교육 - 조사 내용이 평소 쉽게 접하지 않는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주제이므로 주요 용어, 질문 방식, 범죄피해 경험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교육

15) 면접원은 각 지역 인근 거주민을 선발하여 2일간 출퇴근 교육을 실시하였다.

단계	교육 구성	교육 내용
		- 상습피해 여부 확인 방법 등 사건조사표 관련한 조사원 작성 부분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한 교육을 실시
4단계	실습(Role-playing) 및 Quiz 실시	- 가구 접촉 단계에서부터 대상자 선정, 조사표 배부 등 전체적인 조사 흐름 체험 - 5가지 정도의 상황별 예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사원들과 함께 각 상황별로 조사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한 체화 실시 - 조사원이 직접 기초조사표부터 사건조사표까지 작성하고, 현장 검증 방법을 같이 실시하여 이해도를 높임 - 8문항 정도의 각 과정별 조사 내용에 대한 Quiz를 풀게 한 후 교육내용 재확인

다. 면접원 교육 방법

전체 7개 지역에서 2일간 집체 교육을 모두 실시할 경우 약 14일이 필요하며, 휴일을 제외하면 약 3주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럴 경우 각 지역별 실사 시작일의 차이가 커져 실사 표준화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교육은 1일차, 2일차 교육 전체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과 본사 담당연구원이 실시하고 전체 지방 지역 실사 책임자가 참석하도록 하여 2일차 교육을 우선 받은 후, 나머지 6개 지역의 교육 시 2일차 실습 및 Role-Playing 교육을 해당 지역 실사 책임자와 조사관리자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지역별 교육 일정은 해당 지역의 조사 규모 및 조사인력 등의 요인을 고려하였다.

〈표 2-17〉 면접원 교육 진행 방법

<table>
<tr><th rowspan="2">조사지역</th><th rowspan="2">교육지역</th><th>1일차</th><th>2일차</th></tr>
<tr><th>교육자</th><th>교육자</th></tr>
<tr><td>서울/경기/인천</td><td>서울</td><td colspan="2">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선임연구원</td></tr>
<tr><td>부산/울산/경남</td><td>부산</td><td rowspan="7">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선임연구원</td><td rowspan="7">지방실사 실장/
수퍼바이저</td></tr>
<tr><td>대구/경북</td><td>대구</td></tr>
<tr><td>대전/충남/충북</td><td>대전</td></tr>
<tr><td>광주/전남/전북</td><td>광주</td></tr>
<tr><td>강원</td><td>강원</td></tr>
<tr><td>제주</td><td>제주</td></tr>
</table>

라. 세부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면접원 교육은 면접원의 자긍심 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해 본 연구진과 함께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담당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교육은 4단계의 표준화된 교육으로 조사에 대한 면접원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표 2-18〉 면접원 교육 일정

지역	교육 일자	교육장소
서울 - 서울/인천/경기	5월 27일~5월 28일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부산 - 부산/울산/경남	6월 1일~6월 2일	KTX 부산역사 내 2층 회의실 (2층 역사 내 오른쪽 신원문고 앞)
대구 - 대구/경북	6월 2일~6월 3일	대구 남구 봉덕3동 632-22번지 대영빌딩4층 미디어리서치 대구사무소
대전 - 대전/충청	6월 3일~6월 4일	대전 서구 탄방동 727번지 대청빌딩 7층 미디어리서치 대전사무소
광주 - 광주/전라	6월 4일~6월 5일	광주 남구 서동 71-14번지 화남빌딩 4층 미디어리서치 광주사무소
제주	6월 8일~6월 9일	제주 중앙로 217 벤처마루 5층 회의실
강원	6월 9일~6월 10일	강원 춘천시 중앙로 42 춘천시 자원봉사센터3층 회의실

마. 교육내용 및 시간표

면접원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일차에는 범죄피해조사를 소개하고 조사 목적을 설명한 후, 전반적인 조사방법을 전달하며 조사표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2일차에는 면접원의 실습을 목표로 1일차에 진행한 조사방법 및 조사표 항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여 가구 접촉 단계에서부터 조사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험하고 면접원별로 면접원과 응답자 역할을 맡아 각 상황별로 경험해 볼 수 있는 Role-Playing을 실시하였다.[16] 특히, 본 조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피해유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수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습하였다.

16) 보통 조사에 대한 면접원 교육은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진행되는 것에 비해 본 조사의 특성상 2일간 진행하여 교육을 준비하는 업체와 면접원, 조사관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충분한 실습시간을 통해 조사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실제로 현장조사 시 면접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실습교육의 효과가 있었다.

〈표 2-19〉 면접원 교육 일정 및 내용

교육 시간	1일차	2일차
10:00~11:00	조사개요/특징 및 가구방문 요령	가구방문 요령 실습
11:00~12:00	가구원 명부작성 및 관리방법	사건조사표 선정 및 배분 실습
12:00~13:00	점심시간	점심시간
13:00~14:00	가구/가구원 기초조사표 교육	조사표 작성 실습
14:00~15:00	사건조사표 선정 방법 교육	파라데이터 작성 실습
15:00~16:00	사건조사표 교육	교육내용에 대한 Quiz
16:00~17:00	간담회 및 질의사항	간담회 및 질의사항

5. 자료수집방법

외국의 범죄피해조사를 보면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범죄피해조사(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는 자료수집방법으로 2007년부터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사용하고 있고, 영국의 범죄피해조사(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CSEW)는 면접조사(Face to Face Survey)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범죄피해조사(ICVS)[17]는 국가간 피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조사방법의 표준화를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입체적 조사기법이라 할 수 있는 CATI(the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방식을 사용하였고 전화를 사용한 조사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국가는 면접조사로 진행하고 있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5; van Dijk, 2010).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조사는 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종이조사표로 면접조사를 진행하되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을 원할 경우에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초조사표의 조사원 점검사항은 반드시 조사원이 기재하도록 하였고, 범죄피해 스크리닝 질문의 경우는 반드시 별도의 면접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응답자가 다른 가구원이나 친구 등의 다른 사람과 함께 진행하지 않도록 하였다. 미국 범죄피해조사도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였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2). 한편, 영국의

17) 국제범죄피해조사(the 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ICVS)는 범죄피해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위한 것으로 1989년 12개국에 대한 범죄피해조사를 시작으로 이후 다섯 차례 반복되어 지금까지 국제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한 국가가 78여 개국에 달한다(van Dijk, 2010).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조사환경의 영향이 범죄피해 유형별로 다를 수 있다고 보고 가정폭력이나 성 관련 폭력피해의 경우는 자기완성형 조사형태로 노트북을 통해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일반 범죄피해의 경우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자동차 절도 등의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조사 진행 시 다른 가구원이나 친구 등이 함께 있는 것이 피해경험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5).

범죄피해조사 내용의 특성상 민감한 개인적 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기입식 조사방식의 진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원 조사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는 것 역시 오늘날 조사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범죄피해조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사환경으로 인해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도 하였다(van Dijk, 2010). 우리나라에서 역시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수집방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김은경 외, 2013; 김지선 외, 2011). 실제로, 2014년에 수행한 「전국범죄피해조사(iv):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최수형 외, 2014)에 의하면 성폭력이나 강도, 폭행 등의 폭력범죄피해의 보고 수준이 종이조사표를 통한 면접조사에 비해 온라인상의 조사방식에서[18] 더 높았고, 인터넷을 통한 조사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종이조사표를 통한 면접조사방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인터넷조사방식을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온라인상의 조사표를 어려워하거나 복잡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인터넷조사방식을 적용할 경우 종이조사표와는 다른 구성의 조사표 개발이나 선정된 표본가구의 접촉 방식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설계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조사는 기존의 다른 조사와는 달리 민간사회조사업체를 통한 실사진행이 불가피하여 업체선정 및 실사준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으며, 본 조사가 시계열 조사자료 구축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2012년 기준 조사의 조사기준 시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인터넷조사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라인조사방식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직접 방문한 후 가구원 전원에게 개별 ID를 부여하여 인터넷 접속을 통해 조사 응답하는 방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부족하였다. 또한 본 조사는 실사진행이 통계청에서 민간사회조사 전문업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첫 번째 조사로, 자료수집방법의 변화까지 더해진다면 조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혼란을 가지고 올 것으로 판단되어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조사방식의 최대 효과로 보이는 비밀보장의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사현장에서 면접원은 응답자에게 응답에 대한 비밀보호의 원칙을 강조하고 비밀보호용 봉투를 적극 사용하였다.[19]

올해 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정해진 조사표로 조사를 진행하는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요일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3번 이상 방문을 했음에도 만나지 못한 가구원이나, 응답자 본인이 직접 '자기기입식 조사'(self-reported survey)를 원하는 경우, 그리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 응답자가 본인이 구체적인 범죄피해 내용을 알리기 꺼려하는 경우에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한편, 자기기입식 조사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가족 간에도 응답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개인별 비밀보호용 봉투를 같이 배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사표 수거 시 기초조사표 중 범죄피해선별질문과 체크리스트 부분은 조사원이 기재하도록 하였고, 사건조사표 작성내용은 조사원이 현장에서 바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6. 조사기간

본 조사의 경우 과거 조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조사시기를 가능한 한 2013년에 수행한 3차 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하려고 노력하였다. 3차 조사의 경우 5월 29일~6월 12일에 실행되었기 때문에[20], 본 조사의 조사 시점은 동일한 5월 29일에 조사를 시작했지만 현장실사를 담당하는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의 실사조직 및 자체 일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3차 조사보다 2주 정도 더 긴 5월 29일~6월 30일을 본조사의 조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2015년 6월 전국적인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본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인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19) 특히,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자료검증을 위함이라 하더라도 전화번호 기입에 거부감이 높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20) 통계청의 경우 전국 지청별 조사율 관리가 가능하여 단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수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가구를 방문할 때 문조차 열어주지 않거나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 외부인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곳이 다수였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다. 따라서 메르스 사태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6월 18일~7월 2일까지 전국의 모든 실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사태를 지켜본 후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7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조사를 진행하여 7월 17일에 조사가 완료되었다.

제5절 실사결과

1. 조사 완료 현황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는 '실사통제시스템(Web System)'을 통해 일일현황 집계와 보고가 가능하여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였다. 또한 면접원의 개별적 대처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 등 문제 상황 발생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처 역시 가능하여 조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었다.

본 조사는 2014년 5월 29일~7월 17일(약 7주) 동안 목표 표본인 696개 조사구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6,960개 가구가 조사되었다. 조사 기간 중인 6월 3주차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여 서울 및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조사대상 가구가 조사원에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조사에 대한 거절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가구방문면접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6월 3주차에 조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21] 이후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6월 4주차부터 조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전체 조사기간은 약 7주 정도 소요되었지만 실제로 실사를 수행한 기간은 약 5주 정도였다. 지역별 실사진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

21) 이 시기 동안 통계청에 의한 조사통계의 경우도 「재난,재해 시 대응방안 통계 작성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대면조사를 최소화하여 비대면 조사방식을 취하였다.

〈표 2-20〉 지역별 실사진행결과(가구수 기준)

지역	6월				7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서울특별시	92	36	-	341	507	725	880
부산광역시	93	22	-	286	393	420	420
대구광역시	57	13	-	181	264	319	330
인천광역시	26	8	-	141	188	330	360
광주광역시	-	18	-	120	180	270	270
대전광역시	-	-	-	30	120	270	270
울산광역시	45	17	-	166	230	230	230
경기도	119	41	-	378	548	883	980
강원도	-	3	-	24	157	326	380
충청북도	31	7	-	130	260	360	360
충청남도	5	10	-	50	230	430	430
전라북도	15		-	80	160	390	390
전라남도	12	21	-	190	270	410	410
경상북도	121	19	-	259	454	498	500
경상남도	149	48	-	360	472	530	530
제주도	9	33	-	123	206	220	220
합계	**774**	**296**	**-**	**2,859**	**4,639**	**6,611**	**6,960**

2. 조사구 대체 및 가구 불응률

가. 지역별 조사구 대체현황

완료된 696개 조사구 중 표본설계 시 최초로 추출된 원표본 조사구 가운데 대체된 조사구(대체 받은 조사구를 다시 대체하는 경우도 포함)는 37개로 전체의 5.3%였다. 대구지역의 대체율이 21.2%로 가장 높았고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도의 경우 원표본 조사구 내 조사가 100% 가능하였다.

〈표 2-21〉 지역별 조사구 대체율

지역	원표본 조사구	대체 조사구	조사구 대체율
서울특별시	88	6	6.8%
부산광역시	42	1	2.4%
대구광역시	33	7	21.2%
인천광역시	36	4	11.1%
광주광역시	27	1	3.7%
대전광역시	27	1	3.7%
울산광역시	23	1	4.3%
경기도	98	1	1.0%
강원도	38	6	15.8%
충청북도	36	-	0.0%
충청남도	43	5	11.6%
전라북도	39	-	0.0%
전라남도	41	1	2.4%
경상북도	50	2	4.0%
경상남도	53	1	1.9%
제주도	22	-	0.0%
합계	**696**	**37**	**5.3%**

나. 조사구 대체 사유

조사구가 대체된 37곳의 사유를 살펴보면 재건축이나 주거단지가 아니어서 조사가능 가구수가 10가구 미만인 경우가 총 20곳이었으며, 나머지의 경우는 응답자 장기부재 등으로 조사가구 접촉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강력한 집단 조사불응으로 인한 대체였다. 집단불응 조사구의 경우 담당 조사구 면접원, 조사관리자, 실사관리 담당 연구원에 의해 총 3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하였고 동시에 공문 등을 활용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했으나 강력한 거절로 해당 조사구 전체의 조사가 불가능하여 대체가 불가피하였다. 올해 조사의 경우 조사불응으로 인한 조사구 대체율이 높은 이유는 메르스에 대한 감염 우려로 낯선 면접원과의 접촉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22〉 조사구 대체 사유

no.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대체사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043-1	- 고급주택가로 가구 접촉 불가 - 모든 가구에서 조사 불응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1동	068-A	- 재건축으로 인한 가구 이주 - 가구수 10가구 미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	032-1	- 재건축으로 인한 가구 이주 - 가구수 10가구 미만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	054-1	- 재건축으로 인한 가구 이주 - 가구수 10가구 미만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1동	063-A	- 재건축으로 인한 가구 이주 - 가구수 10가구 미만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076-1	- 대학교 앞 고시원/원룸촌 - 방학으로 인해 거주 가구수 10가구 미만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059-A	- 관리사무소 강력 거절 -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협조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076-1	- 준대형마트 조성으로 가구 이주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014-1	- 고급주택가로 가구 접촉이 불가 - 접촉 가구 10가구 미만
10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2동	005-A	- 관리사무소에서 강력하게 거절함 -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협조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095-1	- 재건축으로 인한 가구 이주 - 가구수 10가구 미만
1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035-A	- 고급아파트 단지로 입주 주민의 항의로 관리소 측에서 단지 출입을 불허함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028-A	- 관리사무소에서 강력하게 거절함 - 주민 민원 발생을 이유로 단지 출입 불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032-A	- 관리사무소에서 강력하게 거절함 - 주민 민원 발생을 이유로 단지 출입 불허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1동	025-A	- 관리사무실에서 가구별 방문 불허 -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협조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053-A	- 관리사무소에서 강력하게 거절함 - 주민 민원 발생을 이유로 단지 출입 불허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010-A	- 아파트 단지 전체가 소송 중인 상황 - 단지 주민들끼리 서로 소송 중이어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출입을 불허함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051-A	- 관리사무소에서 강력하게 거절함 - 주민 민원 발생을 이유로 단지 출입 불허
1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047-A	- 재개발 지역으로 인한 가구 이주 - 가구수 10가구 미만
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001-A	- 관리사무소에서 강력하게 거절함 -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협조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21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002-1	-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으로 철거 준비 중 - 가구수 10가구 미만
22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045-A	- 관리사무소에서 강력하게 거절하였으며, 이후 동대표와 접촉하여 공문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함
23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79-1	- 신축 원룸단지로 아직 가구 입주 전 - 가구수 10가구 미만
24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065-1	- 강원대학교 앞 원룸촌 - 건물주에게 문의한 결과 방학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구가 비어있는 상황으로 8월이 돼야 다시 들어온다고 함
25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95-1	- 대학교 앞 원룸촌 - 건물주에게 문의한 결과 방학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

no.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대체사유
26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075-1	- 대학교 앞 원룸촌으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물어본 결과 방학으로 인해 현재 거주 가구가 거의 없다고 함
27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220-1	- 대학교 앞 원룸촌으로 건물 대부분이 각 층별로 번호키가 달려있어 출입이 불가능하며, 3번의 방문 시 거주자를 1명도 만나지 못했음
28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006-1	- 대학교 앞 원룸촌으로 건물 대부분이 각 층별로 번호키가 달려있어 출입이 불가능하며, 3번의 방문 시 거주자를 1명도 만나지 못했음
29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안동	075-1	- 상가가 대부분인 상업지역으로 일반가구가 10가구 미만임
30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006-A	- 회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로 입주민 대부분이 3교대 근무라 만남이 어려우며, 관리사무소에서 치안문제로 단호히 거절함
31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031-1	- 대학교 기숙사로 조사기간이 방학기간으로,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
32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058-1	- 고시원 분위기의 오피스텔로 관리실에서 민원제기가 들어온 것을 이유로 출입을 허가하지 않음
33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1동	005-1	- 시장지역으로 가게 및 상가가 대부분임
34	전라남도	여수시	서강동	016-1	- 시장지역으로 가게 및 상가가 대부분임
35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1동	122-A	- 관리사무실에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협조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36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044-1	- 상가밀집지역으로 거주하는 가구가 10가구 미만으로 조사 불가
37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044-1	- 펜션단지 공사 중인 지역으로 아직 건물도 미완공이며 거주하는 가구가 없음

다. 가구대체현황 및 불응률

표본으로 추출된 전체 6,960가구 중에서 가구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조사기간 중 장기부재, 불응 등의 조사 불능사유로 대체된 가구는 2,999가구로 원표본 가구 대체율은 43.1%로 나타났다. 이 중 조사에 불응하여 대체된 경우는 1,165가구이다. 아래의 〈표 2-23〉에서 나타나듯이 1,2,3차 조사 모두 통계청에 의한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기준 연도에 따라 불응률과 대체율의 증감이 반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2014년도 기준 조사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응률(16.7%)과 대체율(43.1%)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실사 기관이 통계청에서 민간기관으로 변화됨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신뢰도가 낮아진 점과 모집단 틀을 현재 시점으로 부터 5년 전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점을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본 조사의 실사기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2] 즉, 다른 연도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메르스'라는 외부 요인 발생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커 다른 연도에 비해 불응률이 상승하였고 대체율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2-23〉 연도별 불응률 및 대체율

	대상가구	불응 가구		대체 가구	
		가구 수	불응률	대체 가구수 (불응가구포함)	대체율
1회(2008년 기준)	4,710	559	11.9	1,770	37.6
2회(2010년 기준)	7,550	1,060	14.0	3,221	42.5
3회(2012년 기준)	6,300	434	6.9	1,599	25.4
4회(2014년 기준)	6,960	1,165	16.7	2,999	43.1

한편, 조사과정자료(paradata)에서 방문횟수별 불응률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24〉에 나타나듯이 3차 방문 시 불응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설계과

22) 실제로 메르스 사태와 맞물려 진행된 본 조사의 진행 과정에서 조사에 대한 항의전화가 실사업체뿐 아니라 해당 연구진에게 수차례 연결되기도 하였다.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조사응답자의 안정 및 조사원의 보호를 위해 조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조사기간을 조정하였다.

정에서 가구방문면접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3차 방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방문에서 조사에 대한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다른 가구로 대체하지 않고 2차, 3차 방문을 통해 조사응답에 대한 설득과정을 거쳐 조사를 완료하였다.[23] 즉, 1차 방문의 불응률은 8.7%로 가장 낮았고 2차 방문 시에는 26.9%, 3차 방문 시에는 43.3%, 4차 방문 시에는 21.1%로 나타났다.

〈표 2-24〉 가구 방문 횟수별 불응률

가구 방문 횟수별 불응률	1차 방문		2차 방문		3차 방문		4차 방문		전체	
	가구수	불응률	가구수	불응률	가구수	불응률	가구수	불응률	가구수	불응률
	101	8.7	313	26.9	505	43.3	246	21.1	1,165	100.0

아래의 그림은 지역별 조사 가구 대체율을 살펴본 것으로, 전라남도(56.1%)와 인천지역(54.7%), 강원도(54.7%), 대전지역(52.6%)의 대체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지역의 경우 가장 낮은 대체율(29.1%)을 보였다.[24] 이처럼 지역별 조사가구 대체율이 달리 나타난 것은 표준화된 대체 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실사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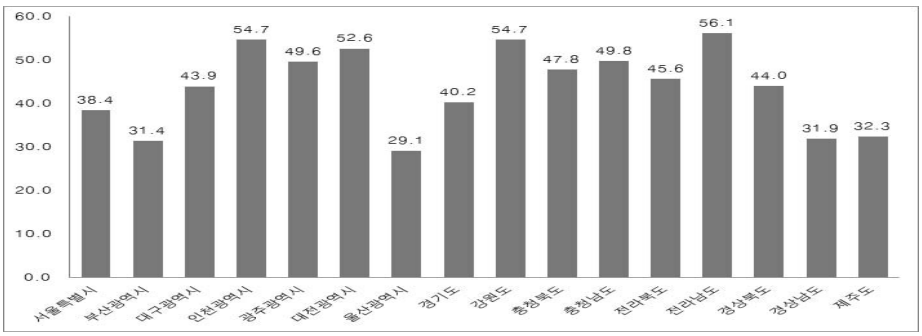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2015년도 국가통계역량강화사업 통계컨설팅 결과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림 2-7] 지역별 조사 대체율

23) 조사현장에서 최초 접촉한 조사응답자가 조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다른 가구원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24) 해당 자료 결과는 통계진흥원에서 국가통계역량강화를 위한 통계컨설팅 보고서의 일부분으로, 2014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과정자료(paradata)를 일부 제공받아 분석한 것이다.

다음은 주택유형에 따른 조사 대체율을 살펴본 것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대체표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45.4%), 단독주택(40.7%) 등의 순이었다(〈그림 2-8〉 참고).[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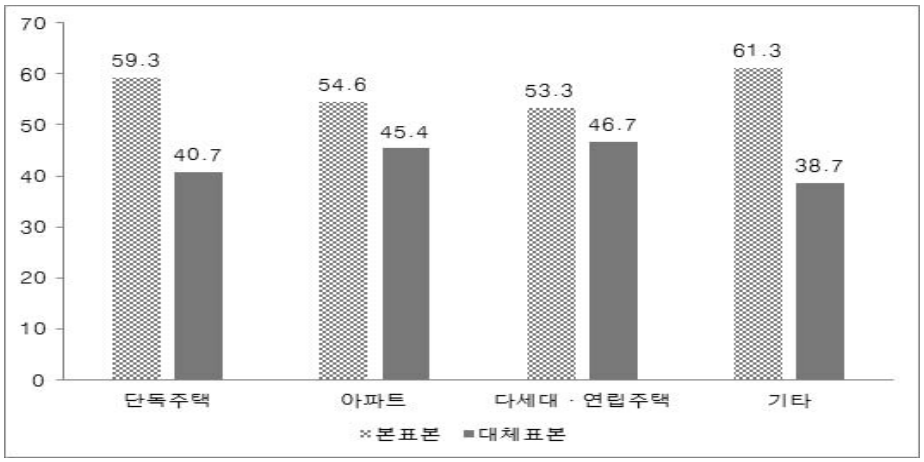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2015년도 국가통계역량강화사업 통계컨설팅 결과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림 2-8] 주택유형별 조사 대체율

한편, 주택유형별 조사 불응률을 살펴보면 다세대·연립주택에서 불응률이 가장 높고(20.2%) 단독 주택에서의 불응률이 가장 낮았다(〈표 2-25〉 참고). 이는 앞서 살펴본 주택유형별 조사 대체율 현황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대체사유의 상당부분이 조사 불응이기 때문에, 대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사과정자료(paradata)에 대한 분석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별 특성이나 주택유형별 특성에 맞춘 조사응답자와의 접촉방식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5〉 주택유형별 불응률

구분		전체	단독 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기타
전체		6,960	3,059	3,155	**559**	187
불응률	가구수	1,164	409	611	**113**	31
	불응률	16.7	13.4	19.4	**20.2**	16.6

25) 기타 유형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한다.

3. 실사지도 및 입력자료 내검 실시

가. 실사지도

실사지도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표준화된 조사 방법을 공유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6월 한 달 동안 7개 지역 실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다.[26] 현장 점검 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일부 완료된 설문지를 검토한 후 조사원들에게 질의를 통해 조사 진행 중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답변을 해줌으로써 조사진행체계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진행 독려뿐 아니라 실사책임자와 면접원을 대상으로 현장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실사진행체계 및 진행현황을 점검하였고, 조사진행방식 및 범죄피해 스크리닝 질문에 대한 면접조사 진행 방식을 점검했으며, 조사원확인사항 점검 등의 조사표를 검토하였고, 조사 불응 가구에 대한 설득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현장에 디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조사 불응 가구가 많아지고 면접원의 불안이 증가하여 일부 지역 조사 중단 결정과 함께 향후 일정 조율 및 조사 진행 방안 제시(수시로 면접원 건강상태 확인, 면접원뿐 아니라 응답자에게 마스크 및 소독제 제공 등)하였다. 구체적인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26) 현장 지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기/인천(6.8), 대구/경북(6.11), 부산/울산/경남(6.12), 제주(6.17), 강원(6.19), 광주(6.23), 대전(6.29).

〈표 2-26〉 실사지도 내용

no.	실사 사무소	조사원 질의 사례	답변 내용
1	공통	•우리 집은 범죄와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안내문을 왜 보낸 것인지	•범죄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조사 및 경험을 물어보는 조사로 범죄피해가 없으시면 없다고 응답해주시면 되며, OO님 가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로 선정이 되어 안내문을 보내드렸으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답함
2	공통	•안내문을 받았는데 우리 집이 왜 선정이 된 것이며, 꼭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 여건상 불가능하므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데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함
3	공통	•조사불응가구에 대한 3회 방문까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된 원표본 유지율이 중요함. 다른 날 다른 시간대에 방문하여 조사불응한 가구원 이외의 다른 가구원과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통해 협조를 부탁드림
4	공통	•메르스로 인해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메르스로 인해 조사가 어려운 조사구는 조사를 중단하고 향후 다시 지침을 기다리도록 전파함 •메르스 감염 우려 확산으로 수퍼바이저는 면접원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며 소독제 배포 등의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함
5	서울 사무소	•기초조사표작성 시 범죄피해 경험은 있었으나 사건조사표 작성을 강력하게 거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건조사표는 해당 범죄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유형과 피해 정도 등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향후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등에 쓰이는 자료이므로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 번 설득하고 응답에 대한 비밀보장 내용을 알려드림
6	서울 사무소	•사건조사표작성 후 응답자가 피해경험을 알리기 싫다고 해서 응답한 사건조사표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사건조사표는 해당 범죄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유형과 피해 정도 등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향후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등에 쓰이는 자료이므로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 번 설득하고 응답에 대한 비밀보장 내용을 알려드림
7	부산 사무소	•집에 이웃이 들어와 부부에게 각각 신체 폭행을 했는데 사건을 하나로 봐야 되는지 두 개로 봐야 되는 것인지	•부부에게 각각 폭행을 가했을 경우 서로의 피해 경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음
8	부산 사무소	•설문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자녀의 자전거나, 장난감 등을 도둑맞은 사건을 부모가 응답해야하는지	•가구 내에서 자전거나 장난감 등을 도난당한 경우 가구범죄피해로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가구가 아닌 밖에서 자녀가 도난당한 경우는 작성 대상이 아님
9	대구 사무소	•가구원 중에 상근예비역이 있는데 조사대상인가 아닌가	•상근예비역의 경우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조사 대상임
10	대구 사무소	•가족은 아닌데 한국인과 같이 사는 외국인은 조사 대상인지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가구원일 경우 조사 대상으로 가구원 조사를 실시해야 함

no.	실사 사무소	조사원 질의 사례	답변 내용
11	대구 사무소	•조사구 번지 내에 주택이 없어지고 원룸으로 바뀌었는데 조사 대상인지	•2010년 자료이기 때문에 건물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가구를 조사하면 됨
12	대구 사무소	•주택 주변에 주차한 차량을 어떤 차인지는 모르지만 옆을 긁고 가서 견적이 20만 원 정도 나와 일단 수리는 하고 경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범죄피해인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로 사건조사표 작성 대상임
13	대구 사무소	•대학생 2명이 거주를 하는데 2명이 자전거 1대를 같이 타고 있는데 2014년에 한 번 잃어버리고 찾고 또 잃어버려 총 두 번 잃어버린 경우는 한 사람한테만 사건조사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두 명한테 모두 받아야 하는지	•가구에서 같이 쓰는 재산을 도둑맞은 경우로 두 명 중 더 기억이 나는 가구원에게 해당 사건의 사건조사표를 받으면 되고 시기가 다르므로 2건을 받아야 함
14	대구 사무소	•친구인 줄 알고 친구에게 돈을 입금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친구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기 1번에 피싱 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 작성해야 함
15	대구 사무소	•주소를 찾아서 가보았더니 가축 농장인데 조사 대상인지	•가축 농장에서 해당 가구원이 먹고 자고 하면 가구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임
16	대구 사무소	•혼자 사는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셨는데 조사 대체를 해야 하는지	•응답자 장기부재인 경우로 파라데이터 수집표에 표시하고 가구를 대체
17	광주 사무소	•응답자 이름 및 생년월일, 연락처 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에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됨
18	광주 사무소	•협박 문자 및 메신저, 메일 등으로 위협한 경우도 범죄피해에 해당되는지	•전화나, 이메일로만 협박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했을 때 협박을 한 경우는 없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여 조사를 실시
19	광주 사무소	•집에 도둑이 들었을 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가구원이 키우던 애완동물을 상해한 경우도 피해에 해당되는지	•집에 도둑이 침입한 피해에 해당되므로 1건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음
20	광주 사무소	•가구주만 대표로 해서 가구상황을 여쭤보면 되는데 왜 다른 가구원까지 설문을 받고 이름 및 연락처를 받아 가는지 여쭤봤을 때 어떻게 응답해야하는지	•가구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가구원별로 응답을 받아야지만 개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응답함
21	광주 사무소	•신분증을 도난당했는데 명의도용으로 핸드폰 개통이 되어 요금이 청구된 경우 범죄피해에 해당되는지	•신분증을 도난당한 피해와 재산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함

no.	실사 사무소	조사원 질의 사례	답변 내용
22	대전 사무소	•조사구 주소가 불분명하고 거주민의 입주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조사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사구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나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조사구 대체가 가능함
23	대전 사무소	•신축 아파트나 원룸같은 경우 출입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관리사무소 등에서 협조를 안 해줄 경우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럴 경우 한 조사구에서 10부를 못할 경우 조사구를 대체해야하는지	•출입카드 등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사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협조가 어려울 경우 실사사무실 및 본사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24	대전 사무소	•가구대표자는 연락처를 기입하는데 가구원들은 모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가구원이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사를 진행하는데 해당 가구원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꼭 안 받아도 되며 응답을 받는 것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지침을 내림
25	강원 사무소	•이웃에 사는 장애인이 집마당에 와서 상의를 탈의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음. 2회 있었으나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사건조사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일단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으며, 욕설을 한 것으로 범죄피해에 해당하니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함
26	강원 사무소	•식당과 주거 공간이 붙어있는 집인데, 식당을 통해 주거공간에 도둑이 들었음.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주거공간이 붙어 있으므로 조사대상 가구가 맞으며, 도둑이 들은 것에 대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음
27	제주 사무소	•응답자가 작년에 출산 후 부모님 집에서 1개월간 살았는데, 부모님 집에 도둑이 들은 경우인데 범죄피해가 맞는지	•본인의 집이 아닌 부모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님. 따라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함

나. 내검 실시

자료 내검 과정은 지역 실사감독자의 1차 내검, 전문 에디터에 의한 2차 내검, 전화 검증을 통한 3차 내검, 데이터클리닝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각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설문지는 보완조사를 실시했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폐기했다.

먼저, 지역 실사감독자의 1차 내검은 조사구 단위로 회수되어 온 설문지를 담당 수퍼바이저(실사감독원 및 보조감독원)가 1차로 확인하는 단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① 조사 대상자 적격 여부
→ 비적격 대상일 경우 설문지 폐기 후 재조사
② 무응답 문항 비율 점검
→ 무응답 비율이 높은 설문지의 경우 재방문 조사를 실시
③ 가구방문 기록표 확인
→ 방문횟수, 접촉 가구수, 최종 방문코드를 확인

두 번째, 전문에디터에 의한 2차 내검은 1차 내검을 거친 설문지를 가지고 지역별 전문 에디팅 팀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에디팅 팀은 지역별로 서울 3명, 부산 1명, 대구 1명, 대전 1명, 광주 1명, 강원 1명, 제주 1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에디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설문지는 응답자에게 재확인하여 수정하였다. 한편, 2차 내검에서는 〈기본 내검 규칙〉과 〈에디팅 가이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① 설문 문항 간 로직 확인
② 사건조사표 해당 조사표 확인
③ 무응답 문항에 보완 조사(전화조사) 실시
④ 검증과 보완이 필요한 설문지 분류

본 조사의 조사표는 지난 3차 범죄피해조사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3차 조사의 내검

규칙과 동일한 항목을 〈기본 내검 규칙〉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내검 실행을 위해 〈에디팅 가이드〉를 추가로 만들어 사용했다. 기본 내검 규칙은 가구명부 6개, 기초조사표 7개, 사건조사표 27개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검 규칙은 아래와 같다.

〈표 2-27〉 내검 규칙

구분	내용
가구명부 관련	• 결혼 오류 : 부부의 혼인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등
	• 나이차 오류 : 부부의 나이 차가 지나치게 큰 경우 등
	• 성별 오류 : 부부의 성별이 동일한 경우 등
	• 만 14세 미만 검토 : 만 14세 미만이 직업을 갖는 경우 등
	• 직업 오류 : 18세 미만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등
	• 학력 오류 : 학력과 연령 간의 관계 점검
기초조사표 관련	• 이사 오류 : 5년 이상 거주하면서 5년 내 이사하는 등
	• 아파트의 단지 규모, 총 층수, 해당 층수, 형태 누락
	• 미혼인데 자녀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응답
	• 가구 모두가 임금근로자, 학생인데 집을 비우지 않음
	• 피해횟수 오류 :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의 응답이 다름
	• 상습피해 오류 : 상습피해인데 피해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사건조사표 관련	• 다중선택에서 '없음'과 '있음'에 모두 응답
	• 차량 도난 불일치 : 앞의 문항과 뒤의 문항을 다르게 응답
	• 재물 손상 불일치 : 앞의 문항과 뒤의 문항을 다르게 응답
	• 도난 또는 도난미수 불일치 : 앞의 문항과 뒤의 문항을 다르게 응답
	•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불일치 : 앞의 문항과 뒤의 문항을 다르게 응답
	• 가해자 인지 불일치 : 앞의 문항과 뒤의 문항을 다르게 응답
	• 가구침입 불일치 : 앞의 문항과 뒤의 문항을 다르게 응답
	• 접촉범죄 불일치 : 앞의 문항과 뒤의 문항을 다르게 응답
	• 피해사실 인지 불일치 : 앞의 문항과 뒤의 문항을 다르게 응답
	• 도난과 손괴의 피해 금액이 동일
	• 가구침입 피해면서 차량·자전거 도난
	• 사기 피해면서 손괴 피해
	• 사기사건이 아닌 범죄의 가해자가 개인이 아님
	• 가해자를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안다고 응답
	• 이사 불일치 : 앞의 문항과 뒤의 문항을 다르게 응답
	• 일수 불일치 : 시간손실 일수 보다 치료일수가 큼

구분	내용
	• 금액 불일치 : 피해금액을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면서 되찾았다고 응답
	• 점핑 오류 : 응답과 미응답이 지시문 조건과 맞지 않음
	• 있다고 응답하고 구체적 수치는 미응답
	• 필수문항 미응답 : 사건발생일시, 가해자명수, 의료비
	• 중고생이 피해를 입은 장소가 본인 직장이라고 답변
	• 보이스피싱의 가해자 인지 오류
	• 사건이 해결되었는데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경우
	• 차량도난 피해 금액이 백만 원 미만인 경우
	• 사건이 해결되었는데 가해자를 알지 못함
	• 신체위협만 있다고 응답하였으면서 신체피해 있음에 응답
	• 신체공격 시도만 있다고 응답하였으면서 신체피해 있음에 응답

한편,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 처리하였다. ① 조사대상의 응답 값 전체가 믿을 수 없는 수준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폐기하였다. ② 다른 보조 정보나 다른 항목의 응답값에 의해 오류가 명확하게 고쳐질 수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였다.

다. 사후 검증[27)]

조사 기간 중 품질관리를 위해 사후 검증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은 1, 2차 내검 과정을 거친 설문지에 대해 실사 사무소별로 약 20% 정도인 1,400 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검증을 시행하기 전에 검증을 위해 선발한 전문 검증원에게 전화 검증 절차와 검증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표준화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7) (주)밀워드미디어리서치는 국내 조사회사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인증인 ISO 20252 기준에 의거하여 품질 관리 실시하였다. ISO 20252는 국제품질인증으로 데이터 수집과 검증 및 데이터 입력과 코딩 분석을 포함한 프로세스 관리 등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민간리서치 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표 2-28〉 사후검증 결과

실사 사무소	가구수			1번	2번	3번	4번	5번
				방문 여부	응답 여부	가구원수	답례품 수령 여부	범죄피해 여부
	완료	검증	비율	이상 있음	이상 있음	이상 있음	이상 있음	이상 있음
서울 사무소	2,220	452	20.4%	-	-	-	-	-
부산 사무소	1,180	240	20.3%	-	-	-	-	-
대구 사무소	830	165	19.9%	-	-	-	-	-
대전 사무소	1,060	210	19.8%	-	-	-	-	-
광주 사무소	1,070	215	20.1%	-	-	-	-	-
강원 사무소	380	75	19.7%	-	-	-	-	-
제주 사무소	220	43	19.5%	-	-	-	-	-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가구 방문 여부, 조사 참여 확인, 가구원 수 및 범죄 피해 여부에 대해 물어 실제 응답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답례품 수령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사후 검증결과 문제가 발견된 설문지의 경우 해당 지역 실사 관리자에게 다시 전달하여 실사 관리자의 재확인 절차를 거쳤다. 재확인 절차에서도 '허위 기재' 등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설문을 폐기하고 다른 가구를 방문하여 재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상이 있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표 2-29〉 전화검증 내용

전화검증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저는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팀〉 ○○○입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확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항	질문 내용	기록 내용
방문 여부	조사원이 귀하의 댁에 방문했었나요?	1. 예 2. 아니오
응답 여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설문에 응답해주셨죠?	1. 예 2. 아니오
가구원수	귀하의 총 가구원 수는 몇 명이십니까?	1. 일치 2. 불일치

문항	질문 내용	기록 내용
답례품 수령 여부	조사 완료 후 답례품은 받으셨나요?	1. 일치 2. 불일치
범죄피해 여부	기초조사표 이외에 사건조사표를 추가로 응답하셨나요?	1. 일치 2. 불일치

※ 설문조사에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6절 표본의 대표성 평가 및 특성

1. 표본의 대표성 평가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는 2012년 기준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총 306,433개 조사구를 사용하였다. 층화방법 역시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16개 시도 및 동부/읍면부를 고려한 25개 층으로 구성하였으며, 표본 배분은 25개 층별로 조사 모집단 분포의 가구수 제곱근비례배분을 기반으로 2012년 최종표본배분 결과를 반영하였다. 다만, 가구수 비례 대비 추출확률이 과대 감소하는 서울과 경기 동부는 추가배분하였다. 표본조사구는 층별로 분류기준에 따라 정렬하고 조사구 내 가구수 기준으로 층별 표본규모에 해당하는 조사구를 확률비례추출방법(PPS)를 사용하여 추출하였고, 추출된 조사구 내 전체 가구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10가구씩 계통추출하였다.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가중치 적용이 필수적이다. 본 조사에서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 적용의 3단계를 거쳐 산출하였으며 분석단위가 가구일 경우는 가구가중치를 적용하고 분석단위가 개인일 경우는 가구원가중치를 적용한다. 여기서 가구가중치는 지역별(16개 광역시도) 모집단 분포를 고려했으며, 가구원가중치는 지역별(16개 광역시도), 성별(남, 여), 연령별(14~29세, 30세~49세, 50세~59세/60세 이상)로 모집단 분포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기준이 되는 모집단 분포는 지역, 성, 연령별로 최신의 통계청 추계인구 결과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는 가구표본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 조사 결과 가구표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12.6%), 경상남도(7.6%), 경상북도(7.2%), 충청남도(6.2%), 부산광역시(6.0%), 전라남도(5.9%) 등의 순이었으나,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2.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20.2%), 부산광역시(7.2%), 경상남도(6.6%), 경상북도(5.8%), 인천광역시(5.3%), 대구광역시(5.0%)의 순으로 가구표본과 모집단의 분포가 달리 나타났다. 이에 가구가중치를 부여하면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0〉 가구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

지역구분	관찰수치		모집단		가중치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특별시	880	12.6	3,504,841	20.2	19.4
부산광역시	420	6.0	1,243,945	7.2	7.0
대구광역시	330	4.7	868,396	5.0	4.9
인천광역시	360	5.2	919,035	5.3	5.4
광주광역시	270	3.9	515,903	3.0	3.0
대전광역시	270	3.9	532,758	3.1	3.1
울산광역시	230	3.3	373,700	2.2	2.2
경기도	980	14.1	3,832,223	22.1	22.9
강원도	380	5.5	557,824	3.2	3.2
충청북도	360	5.2	558,978	3.2	3.3
충청남도	430	6.2	749,462	4.3	4.5
전라북도	390	5.6	660,040	3.8	3.7
전라남도	410	5.9	681,585	3.9	3.8
경상북도	500	7.2	1,005,717	5.8	5.7
경상남도	530	7.6	1,151,762	6.6	6.6
제주도	220	3.2	187,389	1.1	1.1
소계	6,960	100.0	17,343,558	100.0	100.0

한편, 인구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역시 비율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살펴보면 제대로 모집단의 비율 분포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1〉 인구표본과 모집단의 지역 분포 비교

지역구분	관찰수치		모집단 (14세 이상 인구수)		가중치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특별시	2,058	13.7	8,705,067	20.5	19.9
부산광역시	910	6.1	3,049,121	7.2	6.8
대구광역시	773	5.2	2,142,117	5.1	4.9
인천광역시	895	6.0	2,316,112	5.5	5.7
광주광역시	611	4.1	1,269,029	3.0	2.9
대전광역시	533	3.6	1,299,274	3.1	3.0
울산광역시	534	3.6	931,402	2.2	2.2
경 기 도	2,250	15.0	9,762,054	23.0	24.1
강 원 도	707	4.7	1,278,418	3.0	3.0
충청북도	749	5.0	1,317,519	3.1	3.1
충청남도	829	5.5	1,766,326	4.2	4.5
전라북도	798	5.3	1,552,591	3.7	3.6
전라남도	771	5.1	1,527,236	3.6	3.5
경상북도	994	6.6	2,291,833	5.4	5.3
경상남도	1,153	7.7	2,732,980	6.4	6.5
제 주 도	411	2.7	453,153	1.1	1.1
소계	**14,976**	**100.0**	**42,394,232**	**100.0**	**100.0**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모집단의 성별 분포에서 여자가 전체의 50.3%로 남자에 비해 더 높고 실제 본 조사결과에서도 여자의 비율이 52.9%로 더 높기는 했으나 모집단의 비율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모집단 분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32〉 인구표본과 모집단의 성별 분포 비교

성별	관찰수치		모집단		가중치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자	7,058	47.1	24,167,098	49.7	49.8
여자	7,918	52.9	24,413,195	50.3	50.2
소계	**14,976**	**100.0**	**48,580,195**	**100.0**	**100.0**

한편, 모집단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전체의 20.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19.7%), '30대'(19.2%), '20대'(16.3%), '50대'(16.2%), '10대'(8.5%)의 순이며, 실제 본 조사결과에서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2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19.0%), '40대'(18.3%), '30대'(15.0%), '20대'(12.2%), '10대'(6.4%) 순으로 연령별 분포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가중치를 적용하면 '60세 이상'이 전체의 2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19.2%), '50대'(18.4%), '30대'(17.3%), '20대'(15.4%), '10대'(8.5%)로 '60대 이상'과 '50대'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28)]

〈표 2-33〉 인구표본과 모집단의 연령별 분포 비교

연령	관찰수치		모집단		가중치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대	954	6.4	3,438,414	8.5	8.5
20대	1,830	12.2	6,594,369	16.3	15.4
30대	2,242	15.0	7,794,495	19.2	17.3
40대	2,736	18.3	8,204,781	20.2	19.2
50대	2,849	19.0	6,564,826	16.2	18.4
60세 이상	4,365	29.2	7,973,512	19.7	21.2
소계	**14,976**	**100.0**	**40,570,397**	**100.0**	**100.0**

2.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가.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주택유형이나 세대구성, 거주안정성을 알아보았다. 먼저, 조사대상 가구의 도시규모별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전체의 46.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단독주택(35.8%), 연립/다세대주택(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조사에서 역시 아파트의 비율이 전체의 4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 28.8%, 연립/다세대주택 19.1% 등의 순으로

28) 향후 연령별 모집단 분포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레이킹 비 조정(Raking Rate)'방식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2-34〉 조사대상 가구의 도시규모별 주택유형 : 가구가중치 적용

구분		도시규모					관찰 빈도
		서울 (880)	광역시 (1,880)	중소도시 (2,400)	읍면지역 (1,800)	주택유형전체 (%)	
주택 유형	단독주택	33.3	30.7	25.4	59.5	**35.8**	2,673
	아파트	41.0	51.7	55.0	30.6	**46.1**	3,123
	연립/다세대주택	22.6	16.8	16.7	6.9	**15.7**	990
	비거주형 건물내 주택	1.9	0.9	1.7	3.0	**1.8**	141
	오피스텔/기타	1.1	0.0	1.2	0.0	**0.6**	33
소 계 (도시규모 %)		100.0 (19.4)	100.0 (25.6)	100.0 (33.1)	100.0 (21.9)	**100.0 (100.0)**	6,960

다음의 〈표 2-35〉는 조사대상 가구의 특징으로 세대구성 및 거주안정성을 살펴본 것이다.

〈표 2-35〉 조사대상 가구의 세대구성 및 거주안정성 : 가구가중치 적용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전체(%)	관찰 빈도
세대 구성	1인 가구	12.8	18.8	19.9	26.4	**19.7**	1,551
	부부	22.3	23.3	25.9	34.1	**26.3**	1,897
	부부+자녀	55.0	42.8	42.1	26.6	**41.4**	2,603
	한부모+자녀	5.9	9.0	7.1	7.3	**7.4**	526
	3세대 이상 가구	2.2	3.4	2.4	3.5	**2.8**	214
	형제자매로만 구성	0.9	0.9	1.2	0.4	**0.9**	58
	조부모+손자녀	0.1	0.7	0.4	0.9	**0.5**	44
	비혈연/기타	0.8	0.9	0.9	0.8	**0.9**	67
거주 연수	1년 이내	3.8	7.4	6.5	4.6	**5.8**	434
	2년 이내	8.5	6.9	9.2	5.0	**7.6**	498
	5년 이내	23.4	21.7	21.8	11.8	**19.9**	1,303
	10년 이내	36.1	24.1	33.4	20.2	**28.6**	1,808
	20년 이내	21.4	24.0	19.7	15.0	**20.1**	1,380
	30년 이내	5.1	9.9	4.9	7.2	**6.7**	519
	30년 이상	1.7	5.9	4.6	36.2	**11.3**	1,018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전체(%)	관찰 빈도
최근 5년 내 이사 횟수	없음	70.6	68.2	68.4	81.2	**71.6**	5,010
	1회	24.3	27.5	25.6	15.1	**23.5**	1,611
	2회	4.3	3.4	5.0	3.0	**4.0**	271
	3회 이상	0.8	0.9	1.0	0.7	**0.9**	68

먼저, 조사대상가구의 세대구성을 살펴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전체의 4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26.3%), '1인 가구'(19.7%), '한부모+자녀'(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의 34.1%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12년 기준 조사대상 가구에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25.7%로 '부부+자녀'(38.6%)로 구성된 세대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 연수의 경우 '10년 이내'가 전체의 2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년 이내'(20.1%), '5년 이내'(19.9%), '30년 이상'(11.3%) 등의 순으로 최근 5년 이내 이사 횟수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71.6%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 연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아 읍면지역의 경우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에 비해 거주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최근 5년 이내 이사 횟수에 대해 알아본 결과, 5년 내 이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1.6%였다.

나.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월평균 가구소득과 주택소유형태, 거주지 영업 여부를 알아보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20.7%였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17.5%, '100만 원 미만'이 16.7%,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 15.6%,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14.0%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도시규모별로도 차이가 보이고 있었는데 읍면지역의 경우는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0.5%로 가장 많았다.

〈표 2-36〉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 가구가중치 적용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관찰빈도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4.8	17.2	14.1	30.5	**16.7**	1,420
	100~200만 원 미만	10.9	15.5	12.2	17.9	**14.0**	1,079
	200~300만 원 미만	13.3	18.5	19.2	17.6	**17.5**	1,246
	300~400만 원 미만	26.1	19.3	21.2	16.9	**20.7**	1,333
	400~500만 원 미만	19.3	14.8	17.7	9.9	**15.6**	956
	500~600만 원 미만	15.0	9.4	9.1	4.9	**9.4**	574
	600~700만 원 미만	6.2	2.4	3.9	0.9	**3.3**	188
	700~1000만 원 미만	3.3	2.3	2.0	0.9	**2.1**	123
	1000만 원 이상	1.0	0.5	0.6	0.4	**0.6**	40
주택 소유	자가	52.3	68.0	60.5	77.3	**64.5**	4,656
	전세	34.8	18.4	23.9	11.3	**21.8**	1,258
	보증부 월세	9.7	9.0	11.6	7.1	**9.6**	669
	월세(사글세)	3.0	4.0	3.0	2.8	**3.2**	282
	무상	0.3	0.6	1.1	1.4	**0.9**	95
거주지 영업여부	영업(생계겸용 거주)	3.0	3.7	3.0	4.5	**3.5**	267
	비영업(거주목적)	97.0	96.3	97.0	95.5	**96.5**	6,693

조사대상 가구의 주택소유 형태를 보면 전체의 64.5%가 '자가'의 형태였고 '전세'인 경우가 21.8%, '보증부 월세'가 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도시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서울지역의 경우는 '자가'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고 읍면지역의 경우는 '자가'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조사대상가구의 거주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의 3.5%만이 해당 거주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대와 혼인상태, 장애인 복지카드 여부, 외국인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 가구원의 연령대의 경우 '40대'가 전체의 1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대'(18.4%), '30대'(17.3%), '20대'(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여자의 경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2.4%로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두 번째, 혼인상태를 보면 '현재 배우자 있음'이 전체의 62.1%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인 경우가 28.5%였다. 남자의 경우는 여자의 비해 '미혼'의 비율이 더 높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사별/이혼'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분포는 2012년 기준 조사결과와 동일하다.

한편, 조사대상 가구원 가운데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1.5%였고 외국인인 경우는 0.3%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출신국가가 외국인 경우가 더 많았다.

〈표 2-37〉 조사대상 가구원의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 가구원가중치 적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관찰빈도
연령	10대	8.9	8.1	**8.5**	954
	20대	16.4	14.3	**15.4**	1,830
	30대	17.9	16.8	**17.3**	2,242
	40대	19.6	18.8	**19.2**	2,736
	50대	18.5	18.2	**18.4**	2,849
	60대	10.7	11.4	**11.0**	2,152
	70세 이상	8.0	12.4	**10.2**	2,213
혼인상태	미혼	32.4	24.6	**28.5**	3,443
	현재 배우자 있음	63.5	60.7	**62.1**	9,713
	사별/이혼	4.1	14.6	**9.4**	1,820
장애인 복지카드	있음	1.8	1.3	**1.5**	269
	없음	98.2	98.7	**98.5**	14,707
외국인여부	외국인	0.2	0.4	**0.3**	45
	내국인	99.8	99.6	**99.7**	14,931
계		49.8	50.2	**100.0**	14,976

도시규모별로 성별과 연령대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남자의 비율이 더 많았고 읍면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읍면지역의 경우는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하는 비율이 전체의 1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대'(18.0%), '40대'(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8〉 조사대상자의 도시규모별 인구학적 특성 : 가구원가중치 적용

구분		도시규모				전체	관찰 빈도
		서울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성별	남자	48.6	49.8	50.9	49.0	**49.8**	7,058
	여자	51.4	50.2	49.1	51.0	**50.2**	7,918
연령대	10대(14세 이상)	7.2	8.8	9.8	6.9	**8.5**	954
	20대	17.2	15.7	16.1	11.8	**15.4**	1,830
	30대	19.2	17.0	18.3	14.2	**17.3**	2,242
	40대	18.4	19.3	21.4	15.9	**19.2**	2,736
	50대	18.0	19.1	18.2	18.0	**18.4**	2,849
	60대	11.4	11.2	9.0	14.1	**11.0**	2,152
	70대 이상	8.6	8.9	7.1	19.2	**10.2**	2,213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직업유형과 종사상지위, 교육수준을 알아보았다. 먼저, 직업유형의 경우는 '사무종사자'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종사자'가 19.5%, '전업주부'가 17.8%, '학생'이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사무종사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여자는 '전업주부'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종사상지위의 경우는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42.7%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나 학생이어서 '해당사항 없음'인 경우가 그 다음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고졸인 경우가 38.1%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 23.5%, 전문대졸이 17.8% 등의 순이었으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더 높아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9〉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가구원가중치 적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관찰빈도
직업유형	관리자/전문가	4.9	2.0	**3.5**	492
	사무종사자	26.9	16.1	**21.5**	2,749
	서비스판매종사자	19.4	19.6	**19.5**	2,834
	농림업종사자	4.9	4.6	**4.7**	1,192
	기능원	10.7	2.0	**6.3**	963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관찰빈도
	단순노무종사자	3.7	2.2	**3.0**	500
	전업주부	1.9	33.5	**17.8**	2,933
	학생	17.5	13.6	**15.6**	1,792
	직업군인/무직/기타	10.0	6.3	**8.1**	1,521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52.1	33.4	**42.7**	5,894
	자영업자	17.5	8.1	**12.8**	2,167
	무급가족종사자	1.1	5.2	**3.1**	695
	해당없음(전업주부, 학생 등)	29.2	53.3	**41.3**	6,220
교육수준	무학	1.1	4.5	**2.8**	711
	초졸	4.9	9.4	**7.2**	1,659
	중졸	8.7	10.6	**9.7**	1,617
	고졸	36.6	39.6	**38.1**	5,410
	전문대졸	19.2	16.3	**17.8**	2,342
	대졸	28.3	18.7	**23.5**	3,068
	대학원졸	1.2	1.0	**1.1**	169

한편, 도시규모별 조사대상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사무종사자'와 '서비스판매종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농림업종사자'의 비율이 높았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표 2-40〉 조사대상자의 도시규모별 사회경제적 특성 : 가구원가중치 적용

		도시규모				전체	관찰 빈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직업 유형	관리자/전문가	4.2	3.9	3.3	2.3	**3.5**	492
	사무종사자	27.4	20.1	22.9	14.7	**21.5**	2,749
	서비스판매종사자	22.6	18.0	20.1	17.3	**19.5**	2,834
	농림업종사자	0.3	0.7	1.4	20.7	**4.7**	1,192
	기능원	3.6	7.9	7.2	5.3	**6.3**	963
	단순노무종사자	2.4	3.4	2.9	3.0	**3.0**	500
	전업주부	19.1	19.1	17.2	15.8	**17.8**	2,933
	학생	14.0	16.7	17.5	12.1	**15.6**	1,792
	직업군인/무직/기타	6.3	10.1	7.4	8.7	**8.1**	1,521

제7절 범죄피해유형 추출방법

1. 범죄유형의 분류체계 및 판별조건식

2008년 개편된 범죄피해조사의 범죄피해유형은 사건조사표에 기입한 범죄수법, 피해양상 등 사건의 구성요건을 종합하여 판별하는 것이다(김은경 외, 2013:104-106 재인용). 범죄피해유형의 판별조건식이란 범죄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하고자 하는 범죄유형별로 사건조사표의 관련 항목을 조건화한 것으로 이를 데이터에 반영하여 범죄피해유형 변수를 생성한다(김은경 외, 2013:104-106 재인용). 2008년과 2010년 기준 조사에서는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에서처럼 개인범죄와 가구범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29] 하지만 2012년 기준 조사 분석에서는 가구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범죄피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전체 범죄피해 발생률을 추정하는 난점이나 개인 피해에 가구가중치를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인에 초점을 두어 신체피해와 재산피해로 구분하였고 가구침입범죄를 재분석하였다(김은경 외, 2013:105). 또한, 범죄 관련 공식통계에서 역시 가구대상 범죄와 개인대상 범죄를 구분하여 범죄 발생율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공식통계상의 범죄발생율과 범죄피해조사를 통한 범죄 피해율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가구와 개인이 통합된 형태의 범죄피해유형 구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피해유형의 특성이라는 맥락에서 보더라도 개인피해상황의 경우도 가구의 가중치를 적용함에 따라 피해율 추정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분석 역시 개인의 범죄피해율을 기준으로 폭력과 재산피해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가구대상 범죄피해 정도와 내용을 별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아래의 범죄피해유형 분류에서 나타나듯이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과 개인대상 범죄피해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크게 폭력피해와 재산피해로 분류하였고, 각각 피해유형을 세분화하였다. 본 보고서에서의 세부 분석유형은 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 절도, 사기, 손괴, 단순주거침입의 8가지이며, 가구대상범죄피해 유형의 경우는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부품)손괴, 단순손괴, 단순주거침입으로 상대표본오차를 고려하여 유형별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2014년 기준 조사결과와 2012년 기준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2014년 기준 범죄피해유형에 따라 2012년 기준 조사결과를 재구성하여 변화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29) 기존의 범죄피해유형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41〉 2014년 기준 범죄피해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폭력피해	강도	대인강도
		주거침입강도
	폭행	상해
		무상해
	성폭력	강간
		성추행
	괴롭힘	괴롭힘
재산피해	절도	대인절도
		주거침입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사기	사기
	손괴	주거침입손괴
		자동차(부품)손괴
		단순손괴
	단순주거침입	단순주거침입

* 주거침입 및 자동차(부품) 관련 피해유형의 경우 별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폭력피해에 대한 판별조건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인강도는 피해발생장소가 집이 아니고 신체공격이나 위협과 협박이 있었고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공격과 탈취피해 여부가 있었거나 피해를 당할 뻔한 경우와, 피해발생장소가 집이기는 하지만 승인된 출입에서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공격이나 위협과 협박이 있었고 탈취피해가 있었거나 피해를 당할 뻔한 경우, 그리고 응답자가 피해당한 지역은 모르지만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공격에 대한 피해와 탈취피해가 있었거나 당할 뻔한 경우를 의미한다. 강도의 또 다른 형태인 주거침입강도는 집에서 발생한 피해사건으로 이는 승인된 출입이 아닌 경우로 제한하며 문항의 다른 조건식은 대인강도와 동일하다. 폭행은 문항 13번의 신체피해 여부를 통해 상해폭행과 무상해폭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강도와 마찬가지로 신체공격 내용으로 성폭력피해경험은 제외한 신체피해경험이어야 하며 강도와는 달리 탈취피해 여부는 없어야 한다. 성폭력은 강간과 성추행으로 피해내용에 따라 구분되며 그럴 뻔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괴롭힘의 경우는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는 피해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2012년도 기준 조사에 의하면 괴롭

힘 피해는 상습성이 크고 해당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해당 범죄피해 유형을 확정짓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괴롭힘 관련 선별문항을 삭제(김은경 외, 2013:51)하였다. 하지만 범죄피해 스크리닝 문항 가운데 지인 관련 선별문항을 통해 아는 사람에 의한 괴롭힘 피해 경험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고, 사건조사표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응답에도 괴롭힘 관련 문항이 있어 올해 조사 결과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 이에 대한 피해유형 분석을 포함하고자 한다.[30]

〈표 2-42〉 2014년 기준 폭력피해 소분류에 따른 판별조건식

		피해 당한 지역 [문4]	피해발생 장소 집 여부 [문6]	승인된 출입 여부 [문6-1]	폭행 여부 [문9]	사건 내용 [문10]	협박 시도 내용 [문11]	신체 공격 내용 [문12]	신체 피해 여부 [문13]	탈취 피해 여부 [문19]	가해자와의 관계 [23-7-1]
강도	대인 강도		집 아님		신체 공격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있거나 그럴뻔함	
			집 아님		위협 협박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있거나 그럴뻔함	
				예	신체 공격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있거나 그럴뻔함	
				예	위협 협박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있거나 그럴뻔함	
		모름			신체 공격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있거나 그럴뻔함	
		모름			위협 협박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있거나 그럴뻔함	
	주거 침입 강도			아니요	신체 공격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있거나 그럴뻔함	
				아니요	위협 협박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있거나 그럴뻔함	
폭행	상해 폭행				신체 공격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성폭력 제외한 신체피해	없음	
					위협 협박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성폭력 제외한 신체피해	없음	

30)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는 괴롭힘 해당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올해 새로운 판별식으로 구성해 본 결과 절도와 중복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괴롭힘 사례 발생하였다.

		피해 당한 지역 [문4]	피해발생 장소 집 여부 [문6]	승인된 출입 여부 [문6-1]	폭행 여부 [문9]	사건 내용 [문10]	협박 시도 내용 [문11]	신체 공격 내용 [문12]	신체 피해 여부 [문13]	탈취 피해 여부 [문19]	가해자와의 관계 [23-7-1]
	무상해 폭행				신체 공격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신체피해 없음	없음	
					위협 협박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신체피해 없음	없음	
성폭력	강간				신체 공격			강간			
					신체 공격			강간미수			
					위협 협박		강간위협				
	성추행				신체 공격			강간이외 성폭력			
					위협 협박		성폭력 위협				
					위협 협박		무력 성적접촉				
					위협 협박		성적접촉				
					공격이나 위협없음	성적접촉					
괴롭힘					공격이나 위협없음	욕설					
					공격이나 위협없음	음란혐오					
					공격이나 위협없음	스토킹					
					공격이나 위협없음	비방 헛소문					

아래는 재산피해 유형에 대한 판별조건식이다. 절도는 대인절도와 주거침입절도로 구분할 수 있고 승인되지 않은 출입과정에서 발생한 절도의 경우 주거침입절도로 분류하였으며, 절도 역시 다른 피해와 마찬가지로 탈취피해 여부가 실제로 있었거나 그럴 번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사기의 경우는 속임피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손괴는 주거침입손괴, 자동차(부품)손괴. 단순손괴로 구분되며 이는 다른 피해와는 달리 실제로 손상의 피해가 일어난 경우만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주거침입은 탈취피해나 손상 여부의 피해가 모두 없고 단순히 집에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한 경우를 의미한다.

〈표 2-43〉 2014년 기준 재산피해 소분류에 따른 판별조건식

		피해 당한 지역 [문4]	피해 발생장소 집여부 [문6]	승인된 출입 여부 [문6-1]	폭행 여부 [문9]	사건내용 [문10]	속임피해 여부 [문18-1]	탈취피해 여부 [문19]	피해물품 [문19-2]	손상 여부 [문20]
절도	대인 절도	집 아님			공격이나 위협없음	몰래 가져감		있었음	차량 및 부품 제외한 피해물품	
		집 아님			공격이나 위협없음	훔치려했거나 위협		그럴번함		
				예	공격이나 위협없음	몰래 가져감		있었음	차량 및 부품 제외한 피해물품	
				예	공격이나 위협없음	훔치려했거나 위협		그럴번함		
			모름		공격이나 위협없음	몰래 가져감		있었음	차량 및 부품 제외한 피해물품	
			모름		공격이나 위협없음	훔치려했거나 위협		그럴번함		
	주거 침입 절도			아니요		몰래 가져감/집에허락없 이침입하려함		있었음	차량 및 부품 제외한 피해물품	
				아니요		훔치려했거나 위협/집에허락없이 침입하려함		그럴번함		
	자동차 (부품) 절도					몰래 가져감		있었음	차량 및 자동차 부품	
						훔치려했거나훔치 갰다고위협함/자동 차에 허락없이침입했거 나침입하려함		그럴번함	차량 및 자동차 부품	
사기							속임피해 내용			
손괴	주거침입 손괴			아니요		파괴손상		없었음		차량제외 손상물품
	자동차 (부품) 손괴					파괴손상		없었음		차량 (및부품)
						자동차침입/시도		없었음		차량 (및부품)
						파괴손상		없었음		차량 (및부품)
						자동차침입/시도		없었음		차량 (및부품)
	단순 손괴		집 아님		공격이나 위협없음	파괴손상		없었음		차량제외 손상물품
		모름			공격이나 위협없음	파괴손상		없었음		차량제외 손상물품
				예	공격이나 위협없음	파괴손상		없었음		차량제외 손상물품
단순주거침입				아니요		주거칩입/시도		없었음		없었음

2. 공표 범죄유형

범죄 유형이 한 사건에서 일종의 경합 혹은 결합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해당 범죄 피해유형은 범죄 심각성의 위계규칙에 따라 결정된다(김은경 외, 2013:108; 김지선 외, 2011:103; 김은경 외, 2009:111). 본 조사에서 역시 범죄의 기본적인 위계규칙은 강간이나 폭행, 괴롭힘과 같은 폭력범죄가 절도나 손괴와 재산범죄에 비해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았다. 즉, 소분류에서 중복 사례가 나타날 경우 범죄의 심각성 위계규칙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올해 조사에서 확인된 중복범죄피해 사건은 강간과 성추행이 중복된 경우로 강간의 법익침해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강간으로 분류하였고, 괴롭힘과 절도가 중복된 경우 폭력범죄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보고 괴롭힘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상대표준오차가 25% 이상인 경우는 공표범죄를 재검토하고 셀 병합하거나 내부 자료로 활용할 것을 고려하여 신뢰도 높은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3:71 재인용). 호주의 범죄피해조사에서도 25% 기준으로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31] 미국의 범죄피해조사의 경우는 상대표준오차가 50% 이상이거나 표본조사 사례가 10개 이하인 경우는 "!" 표시를 통해 자료 결과의 해석 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32]

이에 본 보고서에서도 범죄피해유형별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상대표준오차가 25% 이상인 경우 별도의 표시 "(-)"를 통해 조사결과 해석 시 주의를 해야 함을 알릴 것이다. 아래는 앞서 언급한 대로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범죄피해유형별(중분류) 상대표준오차 및 95% 신뢰구간을 나타낸 것이다.[33] 즉, 폭행과 성폭력, 절도, 사기, 손괴, 기타(단순주거침입)의 경우는 상대표준오차가 25% 미만이어서 공표하는 데 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강도와 성폭력, 괴롭힘의 경우는 상대표준오차가 기준치보다 높았다. 이에 범죄피해유형별 피해 내용에 대한 상세분석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

31)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mf/4530.0
32) http://www.bjs.gov/index.cfm?ty=dcdetail&iid=245#Methodology
33) 해당 표의 피해자 수는 중분류의 해당 피해경험이 1건 이상 경험한 수로, 절도의 경우 주거침입절도, 대인절도, 자동차부품절도로 구성되면서 대인절도와 자동차부품절도를 중복으로 당한 경우는 중분류의 피해자 수에는 제외된다. 실제 범죄유형소분류에서는 전체 피해자 수가 532명이지만 범죄유형이 중분류로 합쳐지면서 절도의 세부유형 사이에 3건의 중복 건이 발생하였고, 중분류인 손괴의 경우에도 1건이 발생하여 중분류 기준 전체 피해자 수는 528명이다.

〈표 2-44〉 범죄피해유형별(중분류) 신뢰구간

유형			조사구 수	표본 가구원수	피해 가구원수	피해 발생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폭력범죄	강도	강도(-)	696	14,976	6	0.04%	0.01%	0.07%
	폭행	**폭행**	**696**	**14,976**	**25**	**0.17%**	**0.10%**	**0.23%**
	성폭력	**성폭력**	**696**	**14,976**	**17**	**0.11%**	**0.06%**	**0.17%**
	괴롭힘	괴롭힘(-)	696	14,976	4	0.03%	0.00%	0.05%
재산범죄		**절도**	**696**	**14,976**	**226**	**1.51%**	**1.31%**	**1.70%**
		사기	**696**	**14,976**	**127**	**0.85%**	**0.70%**	**0.99%**
		손괴	**696**	**14,976**	**107**	**0.71%**	**0.58%**	**0.85%**
		기타	**696**	**14,976**	**16**	**0.11%**	**0.05%**	**0.16%**

* 피해가구원수는 해당 범죄피해를 1건 이상 경험한 사람 수이다.
** (-)는 상대표준오차가 25% 이상인 경우로 결과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아래는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별 상대표준오차로 주거침입절도와 단순주거칩입, 자동차(부품)손괴는 상대표준오차가 25% 이하의 수준으로 공표하는데 별 무리는 없다. 하지만 주거침입강도와 자동차(부품)절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손괴의 경우는 상대표준오차가 25% 이상으로 각 유형별 공표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을 분석함에 있어서 '주거침입 관련' 가구대상 범죄와 '기타' 가구대상 범죄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주거침입 관련' 가구대상 범죄는 주거침입강도와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으로 구성되었고 '기타' 가구대상 범죄는 자동차(부품)절도와 자동차(부품)손괴, 단순손괴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범죄피해조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높은 상대표준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표 2-45〉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별 신뢰구간

유형		조사구수	표본 가구수	피해 가구수	피해 발생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주거침입 관련	주거침입강도(-)	696	6,960	2	0.03%	0.00%	0.07%
	주거침입절도	**696**	**6,960**	**93**	**1.34%**	**1.07%**	**1.61%**
	주거침입손괴(-)	696	6,960	6	0.09%	0.02%	0.16%
	단순주거침입	**696**	**6,960**	**16**	**0.23%**	**0.12%**	**0.34%**
기타가구 대상범죄	자동차(부품)절도(-)	696	6,960	13	0.19%	0.09%	0.29%
	자동차(부품)손괴	**696**	**6,960**	**88**	**1.26%**	**1.00%**	**1.53%**
	단순손괴	696	6,960	10	0.14%	0.05%	0.23%

* (-)는 상대표준오차가 25% 이상인 경우로 결과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제3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주요 범죄 피해발생률

황 지 태

제3장

주요 범죄 피해발생률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만 14세 이상 국민들이 2014년 한 해 동안 경험한 범죄피해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에서 가늠해 보고, 이를 지역별(지역별·도시규모별 범죄피해율 등)로 파악해 본 뒤, 그 결과를 이전 시기 범죄피해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범죄피해율의 변화 양상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1절 2014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우선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만 14세 이상 국민들이 2014년 한 해 동안 경험한 범죄피해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에서 가늠해 볼 것이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피해범죄 중 이번 조사 연구의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 범죄들의 피해율만을 본 보고서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측정한 범죄피해는 성폭력범죄(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강도범죄(주거침입강도, 기타 강도), 폭행·상해범죄 등을 포함하는 폭력범죄피해(여기서는 재산범죄피해에 대비하여 신체를 공격하는 범죄에 대한 총칭으로써의 의미로 사용)와 소매치기, 일반절도(주거침입절도, 소매치기를 제외한 절도 및 자동차절도), 손괴(일반손괴 및 자동차손괴), 사기(주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피싱 사기 및 일부 기타 사기), 주거침입범죄(주거침입절도와 주거침입손괴) 등을 포함하는 재산범죄피해이다. 본 보고서에서 전체 범죄피해율이란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이상 언급한 종류의 범죄피해의 총합을 말하는 것임에 유념하기 바란다.

1. 2014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피해건수 및 피해율 전체 요약

2014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표본수는 가구로는 6,960가구, 가구원으로는 14,976명이다. 상습범죄피해(어떤 한 피해자가 유사한 유형의 범죄피해를 상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를 하나의 사례로 간주할 경우, 14,976명 중에서 보고된 피해건수는 총 566건(14,976명의 3.8%)이다. 2014년도 만 14세 이상 인구를 44,039,786명으로 추산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556건을 추정 인구수에 맞게 계산해보면, 본 조사에서 측정한 범죄의 총 피해건수는 1,648,170건(44,039,786명의 3.7%)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한 566건은 사건조사표 응답 거부 사례 11건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다. 사건조사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해건수는 555건(14,976명의 3.7%)이다. 범죄피해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사례수가 555건(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면, 1,612,701건으로 추정)인 것이다. 다시 말해, 사건조사표 응답 거부 사례 11건은 범죄피해가 있었긴 하나 그 구체적 피해유형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다.

범죄피해 유형이 구별될 수 있는 555건을 크게 폭력범죄피해(여기서는 재산범죄피해에 대비하여 신체를 공격하는 범죄에 대한 총칭으로서의 의미로 사용)와 재산범죄피해로 나누어 보면, 폭력범죄피해는 57건(14,976명의 0.4%), 재산범죄피해는 498건(14,976명의 3.3%)으로 집계되어 나타난다. 가중치를 부여하면, 폭력범죄는 163,696건(44,039,786명의 0.4%, 인구 10만 명 당 371.7건), 재산범죄피해는 1,449,005건(44,039,786명의 3.3%, 인구 10만 명 당 3,290.2건)으로 추산된다.

〈표 3-1〉 2014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및 피해자수와 피해자 비율

사건 구분	범죄피해 총 발생건수	사건조사표 응답기준 건수	폭력범죄피해 발생건수	재산범죄피해 발생건수	총 인원 (분모값)
범죄피해건수	566 건[1)] (3.8%)	555 건 (3.7%)	57 건 (0.4%)	498 건 (3.3%)	14,976 명 (100.0%)
추정 피해건수 (가구원가중치)	1,648,170 건 (3.7%)	1,612,701 건 (3.7%)	163,696 건 (0.4%)	1,449,005 건 (3.3%)	44,039,786 명[3)] (100.0%)
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 (가구원가중치 기준)	3,742.5 건/10만명	3,661.9 건/10만명	371.7 건/10만명	3,290.2 건/10만명	100,000 명

피해자 구분	총 피해자수	사건조사표 기준 피해자수	폭력범죄 피해자수	재산범죄 피해자수	총 인원 (분모값)
피해자수	522 명[2] (3.5%)	511 명 (3.4%)	50 명 (0.3%)	465 명 (3.1%)	14,976 명 (100.0%)
추정 피해자수 (가구원가중치)	1,524,293 명 (3.5%)	1,488,824 명 (3.4%)	144,374 명 (0.3%)	1,360,697 명 (3.1%)	44,039,786 명[3] (100.0%)
인구 10만 명 당 피해자 (가구원가중치 기준)	3,461.2 명/10만명	3,380.6 명/10만명	327.8 명/10만명	3,089.7 명/10만명	100,000 명

1) 사건조사표에서 응답을 거절한 11건을 포함한 건수. 11건을 제외할 경우 555건.
2) 중복피해든 한 건의 피해든 한 사람씩만 계산한 경우임(사건조사표 무응답 인원 11명 포함).
3) 44,039,786명은 2014년도 만 14세 이상 인구 추정치.

2014년도 총 범죄피해 사건 수 566건은 총 피해자 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떤 피해자는 단 한 건의 범죄피해만을 경험하겠지만, 또 다른 어떤 피해자는 한 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총 피해자수는 522명(14,976명의 3.5%)이었고, 사건조사표에 응답한 피해자수는 511명(14,976명의 3.4%)이었다. 사건조사표에 응답한 피해자들 중 폭력범죄 피해자수는 50명(14,976명의 0.3%)이었고, 재산범죄 피해자수는 465명(14,976명의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피해자들 중 일부는 동시에 재산범죄 피해자이기도 하다.

2. 주요 범죄 유형들의 피해건수 및 피해율

가. 폭력범죄 내 주요 범죄 피해율

총 57건의 폭력범죄피해는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성폭력범죄피해와 강도범죄피해, 그리고 폭행·상해범죄피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성폭력피해가 18건, 강도피해(주거침입강도 및 대인강도 모두 포함)가 7건, 폭행·상해 피해가 28건, 괴롭힘 피해가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에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하면, 성폭력범죄피해는 44,039,786명 중 56,890건(0.1%)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강도범죄는 26,700건(0.06%), 폭행/상해범죄는 68,248건(0.2%), 괴롭힘은 11,857건(0.03%)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가중치 수치를 토대로 폭력범죄피해 내의 각 하위유형의 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을 계산하면, 성폭력범죄는 인구 10만 명 당 129.2건, 강도범죄는 60.6건, 폭력/상해범죄는 154.9건, 괴롭힘은 26.9건 정도로 산출된다.

〈표 3-2〉 폭력범죄피해의 피해건수와 피해율

구분	폭력범죄피해 (A+B+C+D)	A 성폭력	B 강도	C 폭행/상해	D 괴롭힘	총 인원 (분모값)
범죄피해건수	57 건 (0.4%)	18 건 (0.1%)	7 건 (0.05%)	28 건 (0.2%)	4 건 (0.03%)	14,976 명 (100.0%)
추정 피해건수 (가구원가중치)	163,696 건 (0.4%)	56,890 건 (0.1%)	26,700 건 (0.06%)	68,248 건 (0.2%)	11,857 건 (0.03%)	44,039,786 명[1] (100.0%)
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	371.7 건/10만명	129.2 건/10만명	60.6 건/10만명	154.9 건/10만명	26.9 건/10만명	100,000명
공식통계 10만 명 당 범죄율	-	58.2[2] 건/10만명	3.2[3] 건/10만명	418.1[4] 건/10만명	-[5]	100,000명

1) 44,039,786명은 2014년도 만 14세 이상 인구 추정치.
2) 「2015 범죄분석」(대검찰청), p36. 참조.
3) 「2015 범죄분석」(대검찰청), p37. 참조.
4) 「2015 범죄분석」(대검찰청), p40. 참조.
5) 피해조사설문상의 괴롭힘(주로 온라인 스토킹 등)은 공식범죄통계와 딱 떨어지게 비교하기 어렵다.

이를 공식범죄통계와 대략적으로 비교할 경우, 성폭력범죄는 약 45% 정도(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과 발생률 비교 결과, 58.2/129.2×100), 강도범죄는 약 5.2% 정도(3.2/60.6×100)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처리된다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다. 다만, 다양한 오류(특히 표본오차)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비교의 정확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번 조사에서 폭행/상해의 경우, 범죄피해조사 피해율이 공식범죄통계상의 발생률보다 낮게 나왔다. 범죄피해조사는 숨은 범죄(hidden crime)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공식통계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조사상의 폭행/상해와 공식통계상의 폭행/상해의 범위가 다르거나, 이번 조사에서 폭행/상해 사례가가 과소 추출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설명해 볼 수 있다.[34]

나. 재산범죄 내 주요 범죄 피해율

총 498건의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절도피해가 236건, 사기피해가 132건, 손괴피해

34) 그 밖에도 부분적인 이유로, 가중치 계산에서의 문제 가능성, 공식통계상의 폭행/상해는 주로 쌍방 고소가 많아서 실제 피해보다 많이 보고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의 존재, 피해조사에서는 쌍방 폭행의 경우는 피해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정확한 이유인지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다.

가 113건, 기타 피해(단순주거침입)가 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추정 피해건수를 보자면, 절도범죄피해는 44,039,786명 중 706,163건(1.6%)으로 추정할 수 있고, 사기범죄피해는 411,078건(0.9%), 손괴피해는 293,051건(0.7%), 기타 피해가 38,714건(0.1%)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은 절도범죄피해가 10만 명 당 1,603.5건, 사기범죄피해가 933.4건, 손괴피해 665.4, 기타 87.9로 계산된다.

〈표 3-3〉 재산범죄피해의 피해건수와 피해율

구분	재산범죄피해 (A+B+C+D)	A 절도	B 사기	C 손괴	D 기타	총 인원 (분모값)
범죄피해건수	**498 건** (3.3%)	236 건 (1.6%)	132 건 (0.9%)	113 건 (0.8%)	17 건 (0.1%)	14,976 명 (100.0%)
추정 피해건수 (가구원가중치)	1,449,005 건 (3.3%)	706,163 건 (1.6%)	411,078 건 (0.9%)	293,051 건 (0.7%)	38,714 건 (0.1%)	44,039,786 명[1] (100.0%)
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	**3,290.2** 건/10만명	1,603.5 건/10만명	933.4 건/10만명	665.4 건/10만명	87.9 건/10만명	100,000명
공식통계 10만 명 당 범죄율	–	519.8[2] 건/10만명	475.4[3] 건/10만명	113.4[4] 건/10만명	–[5]	100,000명

1) 44,039,786명은 2014년도 만 14세 이상 인구 추정치.
2) 「2015 범죄분석」(대검찰청), p33. 참조.
3) 「2015 범죄분석」(대검찰청), p33. 참조.
4) 「2015 범죄분석」(대검찰청), p420. 참조. (58,194÷51,327,916×100,000)
5) 피해조사설문상의 기타(단순주거침입)은 공식범죄통계와 딱 떨어지게 비교하기 어렵다.

이를 대략적으로 공식범죄통계와 비교할 경우, 절도는 약 32% 정도(519.8/1,603.5×100), 사기범죄는 약 51% 정도(475.4/933.4×100), 손괴범죄는 약 17%정도(113.4/665.4×100)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처리된다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다. 물론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비교의 정확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 범죄유형 상세 분할

다음 〈표 3-4〉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폭력범죄피해 및 재산범죄피해의 범죄 피해 유형을 좀 더 상세하게 분할해 보았다.

〈표 3-4〉 범죄유형 상세 분할

(단위: 건, 명(%))

구분			범죄피해건수	피해자수 〈피해가구수〉	추정 피해건수 (가구원가중치)	인구 10만명 당 피해율[1]
폭력범죄피해	성폭력	강간	2 (0.4)	2	6,733 (0.4)	15.3 건/10만명
		성추행	16 (2.9)	15	50,157 (3.1)	113.6 건/10만명
	강도	대인강도	5 (0.9)	4	21,289 (1.3)	48.2 건/10만명
		주거침입강도	2 (0.4)	2 〈2〉	5,411 (0.3)	12.3 건/10만명
	폭행/상해	상해	13 (2.3)	13	36,736 (2.3)	83.2 건/10만명
		(무상해)폭행	15 (2.7)	12	31,513 (2.0)	71.4 건/10만명
	괴롭힘		4 (0.7)	4	11,857 (0.7)	26.8 건/10만명
재산범죄피해	절도	대인절도	125 (22.5)	121	403,341 (25.0)	913.3 건/10만명
		주거침입절도	98 (17.7)	95 〈93〉	262,797 (16.3)	595.1 건/10만명
		자동차(부품) 절도	13 (2.3)	13 〈13〉	40,026 (2.5)	90.6 건/10만명
	사기		132 (23.8)	127	411,078 (25.5)	930.8 건/10만명
	손괴	주거침입손괴	6 (1.1)	6 〈6〉	13,767 (0.9)	31.2 건/10만명
		자동차(부품) 손괴	97 (17.5)	92 〈88〉	257,994 (16.0)	584.2 건/10만명
		단순손괴	10 (1.8)	10	21,290 (1.3)	48.2 건/10만명
	기타	단순주거침입	17 (3.1)	16 〈16〉	38,714 (2.4)	87.7 건/10만명
총 인원 (분모값)			555 (100.0)	511[2]	1,612,701 (100.0)	100,000명

1) 각 범죄피해 유형의 가중치 부여 피해건수를 2014년도 만 14세 이상 인구 추정치(44,039,786명)로 나눈 뒤 100,000을 곱하여 나온 값이다.

2) 각 유형의 피해자수를 모두 합치면 532라는 수치로 계산이 되지만, 한 사람이 두 유형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511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폭력범죄피해 중 성폭력범죄피해 18건을 강간피해와 성추행피해로 나누었을 때, 18건 중 강간피해는 2건(인구 10만 명 당 15.3명 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6건은

성추행피해(인구 10만 명 당 11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강간피해 2건은 모두 강간 미수였다.[35] 강도피해의 경우, 7건 중 5건은 대인강도(인구 10만 명 당 48.2명)였고, 2건은 주거침입강도(인구 10만 명 당 12.3명)였다. 폭행/상해는 28건 중 13건(인구 10만 명 당 83.2명)이 상해였고, 나머지 15건이 단순폭행(협박 포함)에 해당(인구 10만 명 당 71.4명[36])되었다.

다음으로, 재산범죄피해 중 절도범죄피해 236건을 대인절도피해와 주거침입절도피해, 그리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절도피해로 나누었을 때, 236건 중 대인절도피해는 125건(인구 10만 명 당 913.3명, 인구 천 명 당 9명 꼴)으로 나타났고, 98건은 주거침입절도피해(인구 10만 명 당 595.1명, 인구 천 명 당 6명 꼴), 나머지 13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절도피해(인구 10만 명 당 9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괴피해의 경우, 113건 중 6건은 주거침입손괴(인구 10만 명 당 31.2명)였고, 10건은 단순손괴(인구 10만 명 당 48.2명)였으며, 나머지 대다수인 97건은 자동차손괴(인구 10만 명 당 584.2명, 인구 천 명 당 6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중복피해와 상습피해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중복피해와 상습피해는 어떤 한 사람의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 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본고에서 정의하는 상습피해는 어떤 한 사람의 피해자가 아주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연속적·지속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피해인 데 비해,[37] 중복피해는 같은 기간 내에 서로 다른 종류의 범죄피해를 두 번 이상 경험하는 경우[38]를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의 중복피해와 상습피해는 집계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중복피해의 경우에는 중복피해 수만큼 사건조사표를 배부하여 각각 기록하게 하였고, 상습피해의 경우 종류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상습피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부의 사건조사표만 배부하였다.

---

35) '강간하겠다고 말로써 위협'한 경우였다.

36) 앞서 폭행/상해피해가 이번 조사에서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단순폭행피해가 특별히 과소 추출되었다고 의심된다.

37)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동일한 가해자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지속적인 가해를 받는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반드시 완전히 동일한 인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본 조사에서는 5건 이상의 동일 유형 연속피해를 상습피해로 측정하였다. (김은경 외, 2013:119-120 참조)

38) 가장 전형적인 중복피해는 어떤 한 피해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범죄피해를 각각 한 건 이상씩 경험하게 되는 경우이다. (김은경 외, 2013:120 참조)

이는 즉 기본적으로 중복피해는 각각의 피해를 개별 사건으로 보는 반면, 상습피해는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한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분석에서 사용하는 중복피해와 상습피해 개념을 대할 때는 이러한 구분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 〈표 3-5〉에서는 본 조사연구에서의 중복피해 관련 통계치를 제시해 보았다. 표의 오른쪽 하단부터 보자면, 최소 1건 이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552명으로, 만 14세 이상 인구 4천4백여 만 명 중에 약 1백5십 만 명 정도(3.5%)에 해당한다. 2건 이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33명, 0.2%(약 8만7천 명 정도로 추정), 3건 이상은 8명, 0.06%(약 2만 7천 명), 4건 이상은 2명, 5건 이상은 1명이었다. 이를 표의 왼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현해 보자면, 단 한 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489명(3.3%, 약 1백4십만 명 정도), 2건의 중복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5명(0.2%, 약 6만여 명), 3건의 중복피해자는 6명(0.05%, 약 2만1천여 명), 4건 중복피해자와 5건 중복피해자는 각각 1명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범죄유형별 중복피해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앞의 〈표 3-4〉에서 각 범죄유형별 피해건수와 피해자수를 대비해 볼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그 윤곽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3-5〉 중복피해 정리 : 피해횟수별 피해자수 분포

(단위: 명(%))

구분1	피해횟수별 피해자수		구분2	누적분포	
	표본분포	추정치		표본분포	추정치
5건 중복피해자	1	3,871 (0.009)	5건 이상 피해자	1	3,871 (0.009)
4건 중복피해자	1	1,621 (0.004)	4건 이상 피해자	2	5,492 (0.01)
3건 중복피해자	6	21,574 (0.05)	3건 이상 피해자	8	27,066 (0.06)
2건 중복피해자	25	60,384 (0.2)	2건 이상 피해자	33	87,450 (0.2)
1건 피해자	489	1,436,844 (3.3)	1건 이상 피해자	522	1,524,294 (3.5)
무피해자	14,454	42,515,493 (96.5)	무피해자	14,454	42,515,493 (96.5)
계	14,976	44,039,786[1] (100.0)	계산기준	14,976	44,039,786[1] (100.0)

1) 44,039,786명은 2014년도 만 14세 인구 추정치. (가구원 가중치 적용)

다음 〈표 3-6〉에서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상습피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전체 522명의 피해자 중 상습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총 5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5명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상습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습피해자 5명 중 1명은 폭력범죄피해자였고, 나머지 4명은 재산범죄피해자였다.

폭력범죄피해 중에서는 폭행/상해범죄에서 1명이 1건의 상습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몇 회의 상습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응답의 누락일 수도 있겠지만, 그 횟수가 너무 많은 탓에 횟수를 특정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주거침입절도범죄에서 2명, 사기범죄에서 1명, 주거침입손괴범죄에서 1명이 상습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상습피해의 구체적인 횟수에 대해서는 사기범죄피해자 1인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주거침입손괴피해자의 경우 20회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고, 주거침입절도피해자 2인 중 1인은 5회의 피해를, 나머지 1인은 8회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3-6〉 상습피해 관련 통계치

구분	조사된 피해건수	피해자수	상습피해자수 (사례수)	각 상습피해의 회수
조사상 전체 피해건수	566건(555건[1])	522명(511명[2])	5명(5건)	33회(무응답 제외)
성폭력	18건	17명	-	-
강도	7건	6명	-	-
폭행/상해	28건	25명	1명(1건)	무응답
괴롭힘	4건	4명	-	-
폭력범죄피해 건수 계	57건	50명	1명(1건)	무응답
절도	236건	226명	2명[3](2건)	13회(5회+8회)
사기	132건	127명	1명(1건)	무응답
손괴	113건	107명	1명[4](1건)	20회
기타	17건	16명	-	-
재산범죄피해 건수 계	498건	465명	4명(4건)	33회(무응답 제외)

1) 사건조사표에 응답한 사례는 555건이다.
2) 사건조사표에 응답한 피해자수는 511명이다.
3) 2명 모두 주거침입절도피해(영업점은 제외된 것임)에 해당된다.
4) 주거침입손괴피해(영업점은 제외된 것임)에 해당된다.

앞서 〈표 3-5〉에서 중복피해자수는 33명이었고, 〈표 3-6〉에서 상습피해자수는 5명이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2회 혹은 2건 이상의 다중피해를 입은 피해자수는 전체 522명의 피해자 중에서 38명이다. 이는 전체 피해자수 중 7.3%의 비중을 차지한다.

제2절 2014년 지역별 및 도시규모별 피해율

피해사례가 충분히 많거나 표본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할 경우엔 지역을 상세히 구분하여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2008년도 기준 조사 이래 조사 표본수가 급격히 확대되지 않는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율이 감소해 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서 시도지역별 피해율 비교의 정확성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별 피해율 비교는 참고로 보기만 바랄 뿐이며, 큰 의미를 두지 말기 바란다. 대신, 지역을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1. 지역별 피해율

2014년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율을 시·도별(응답자 현 거주지 기준[39])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7〉 지역별 범죄피해율(응답자 현 거주지 기준)

구분	피해사례 (건)	지역표본 (명)	피해추정사례 (건)	만 14세 이상 지역인구추정(명)	피해율[1] (가구원가중치)
서울특별시	82	2,058	354,733	8,747,300	4.06%
부산광역시	37	910	116,887	3,009,838	3.88%

39) 범죄피해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보아야 더 정확하긴 하나, 현 거주지와 발생지역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거주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14건이었는데, 그 중 8건은 같은 광역행정지구(가령, 같은 서울 내의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서 발생하였고, 6건만이 서로 다른 광역행정지구에서 발생하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서울과 경기, 인천과 경기, 대전과 충남 정도의 차이일 뿐이었다. 이를 보면, 사실상 범죄피해는 자신의 거주지와 대체로 멀지 않은 곳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할 만한 것이다. 참고로, 위 〈표 3-7〉에서 범죄피해 발생지역으로 자료를 수정할 경우, 서울지역이 82건에서 84건으로 변동하고, 인천이 43건에서 42건으로, 대전이 31건에서 32건으로, 경기도가 75건에서 74건으로, 충청남도가 36건에서 35건으로 변동한다.

구분	피해사례 (건)	지역표본 (명)	피해추정사례 (건)	만 14세 이상 지역인구추정(명)	피해율[1] (가구원가중치)
대구광역시	18	773	51,901	2,149,175	2.41%
인천광역시	43	895	124,965	2,496,863	5.00%
광주광역시	21	611	45,290	1,296,611	3.49%
대전광역시	31	533	70,096	1,318,079	5.32%
울산광역시	25	534	52,805	976,217	5.41%
경기도	75	2,250	334,981	10,630,380	3.15%
강원도	30	707	57,419	1,313,141	4.37%
충청북도	24	749	42,148	1,357,202	3.11%
충청남도	36	829	84,058	1,973,632	4.26%
전라북도	25	798	51,384	1,570,502	3.27%
전라남도	30	771	63,228	1,534,566	4.12%
경상북도	30	994	74,351	2,322,738	3.20%
경상남도	39	1,153	100,152	2,844,448	3.52%
제주특별자치도	20	411	23,773	499,096	4.76%
계	566	14,976	1,648,171	44,039,788	3.74%

1) 피해율 계산식은 {(피해추정사례)÷(만 14세 이상 [지역별] 인구추정)}이다. 표본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상기한 지역별 피해율 비교는 매우 불안정하므로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위 표의 지역별 피해율은 지역별 만 14세 이상 추정인구 대비 지역별 추정 피해건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서울의 경우, 약 874만여 명의 만 14세 이상 인구 중 약 35만4천여 명이 본 조사에서 측정한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피해율은 4.06%로 계산된다. 부산은 3.88%, 대구는 2.41%, 인천은 5.00%, 광주는 3.49%, 대전은 5.32%, 울산은 5.41%, 경기도 3.15%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피해건수가 워낙 작아서 각 지역별 추정 피해율을 상호 비교하는 데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다.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 가장 범죄피해율이 낮게 나타난 바 있었던 울산(당시 피해율 1.9%)이 이번 경우엔 5.41%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율이 크게 변동한 결과라기보다는 오차의 영향일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은 피해율을 기록한 지역은 대구로 2.41%의 피해율을 나타냈다. 2012년, 2014년 두 조사 모두에서 모두 높은 피해율이 나타난 지역을 꼽자면, 대전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 역시도 신뢰성이 높은 결과는 아니다. 특히 이번 2014년도 기준 조사에서는 2012년도 기준 조사에 비해

지역별 차이가 더 감소하였고, 오차범위 등을 고려해 본다면 지역들 사이의 차이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표 3-8〉는 지역별 범죄피해율을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로 분할하여 나타내 본 것인데, 지역 간 비교의 정확성은 앞의 표보다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하기 바란다.

〈표 3-8〉 지역별 폭력범죄피해율과 재산범죄피해율(응답자 현 거주지 기준)

구분	폭력범죄피해 사례(건)	폭력범죄피해 추정사례(건)	폭력범죄 피해율[1] (가구원가중치)	재산범죄피해 사례(건)	재산범죄피해 추정사례(건)	재산범죄 피해율[1] (가구원가중치)
서울특별시	4	17,804	0.20%	75	325,862	3.73%
부산광역시	5	17,630	0.59%	32	99,257	3.30%
대구광역시	1	3,037	0.14%	17	48,864	2.27%
인천광역시	4	13,297	0.53%	38	107,551	4.31%
광주광역시	1	1,725	0.13%	20	43,565	3.36%
대전광역시	3	11,329	0.86%	28	58,767	4.46%
울산광역시	1	2,209	0.23%	24	50,596	5.18%
경기도	7	32,132	0.30%	64	286,979	2.70%
강원도	4	6,171	0.47%	25	49,628	3.78%
충청북도	3	3,850	0.28%	21	38,297	2.82%
충청남도	3	5,743	0.29%	33	78,315	3.97%
전라북도	5	10,411	0.66%	20	40,972	2.61%
전라남도	6	14,151	0.92%	24	49,078	3.20%
경상북도	4	12,962	0.56%	26	61,390	2.64%
경상남도	3	7,785	0.27%	36	92,366	3.25%
제주특별자치도	3	3,458	0.69%	15	17,520	3.51%
계	57	163,694	0.37%	498	1,449,007	3.29%

1) 피해율 계산식은 {(피해추정사례)÷(만 14세 이상 [지역별] 인구추정)}이다. 표본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상기한 지역별 피해율 비교는 매우 불안정하므로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2. 도시규모별 피해율

도시규모별 피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거주 지역을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지역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광역시 내에는 소수의 읍면지역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본고의 분석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굳이 읍면지역으로 다시 분류하지 않고 그냥 광역시로 분류하였다.

이번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의 도시규모별 전체 피해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3-9〉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범죄피해율은 4.06%(가구원가중치 적용, 이하 모두 동일 기준), 6개 광역시에서의 범죄피해율은 4.11%, 중소도시는 3.49%, 읍면지역은 3.40%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의 피해율이 가장 높고, 읍면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2012년도 기준 조사(김은경 외, 2013:127)에서 서울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던 경우를 제외하면, 광역시의 피해율은 이번 조사에서뿐만 아니라 2008년도 기준 조사(김은경 외, 2009:161)와 2010년도 기준 조사(김지선 외, 2011:117)에서도 전반적인 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던 바 있다. 읍면지역 피해율의 경우, 매 조사에서 늘 가장 낮은 피해율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여러 차례의 범죄피해조사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율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경향성에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다.

〈표 3-9〉 조사된 전체 범죄 사건들의 도시규모별 피해율

구분	피해사례[1] (건)	지역표본[2] (명)	피해추정사례 (건)	만 14세 이상 지역인구추정(명)	피해율[3] (가구원가중치)
서울시	82 (14.5)	2,058 (13.7)	354,733 (21.5)	8,747,300 (19.9)	4.06%
광역시	175 (30.9)	4,256 (28.4)	461,943 (28.0)	11,246,783 (25.5)	4.11%
중소도시	184 (32.5)	5,156 (34.4)	541,472 (32.9)	15,521,262 (35.2)	3.49%
읍면지역	125 (22.1)	3,506 (23.4)	290,022 (17.6)	8,524,442 (19.4)	3.40%
계	566(100.0)	14,976(100.0)	1,648,170(100.0)	44,039,786(100.0)	3.7%

1) 응답자의 현 거주지 기준 피해사례수(건).
2) 응답자의 현 거주지 조사 표본수(명).
3) 피해율 계산식은 {(피해추정사례)÷(만 14세 이상 [지역별] 인구추정)}이다.

다음 〈표 3-10〉에서 폭력범죄피해만을 따로 살펴보자면, 이 경우엔 의외로 읍면지역의 피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폭력범죄피해율은 0.20%, 광역시는 0.44%, 중소도시는 0.37%, 읍면지역은 0.45%로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폭력범죄피해의 절대 사례수가 워낙 적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율도 너무 낮아서 이러한 차이가 얼마나 유의한지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40]

〈표 3-10〉 폭력범죄피해의 도시규모별 피해율

구분	피해사례[1] (건)	지역표본[2] (명)	피해추정사례 (건)	만 14세 이상 지역인구추정(명)	피해율[3] (가구원가중치)
서울시	4 (7.0)	2,058 (13.7)	17,804 (10.9)	8,747,300 (19.9)	0.20%
광역시	15 (26.3)	4,256 (28.4)	49,228 (30.1)	11,246,783 (25.5)	0.44%
중소도시	21 (36.8)	5,156 (34.4)	57,963 (35.4)	15,521,262 (35.2)	0.37%
읍면지역	17 (29.8)	3,506 (23.4)	38,701 (23.6)	8,524,442 (19.4)	0.45%
계	57(100.0)	14,976(100.0)	163,696(100.0)	44,039,786(100.00	0.37%

1) 응답자의 현 거주지 기준 피해사례수(건).
2) 응답자의 현 거주지 조사 표본수(명).
3) 피해율 계산식은 {(피해추정사례)÷(만 14세 이상 [지역별] 인구추정)}이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서울시가 3.73%(가구원가중치 적용, 이하 모두 동일 기준 적용), 6개 광역시 평균이 3.63%, 중소도시 3.03%, 읍면지역 2.87%의 피해율을 나타내 보였다. 이 경우엔 서울시가 가장 높게, 읍면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대체로 도시규모가 클수록 재산범죄피해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도시규모가 작아질수록 혹은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재산범죄피해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2년도 기준 조사결과(김은경 외, 2013:128)에서도 대략 비슷

40) 게다가 이번 조사에서 폭력범죄피해 중 폭행/상해피해(그 중에서도 특히 상해가 없는 폭행피해)가 과소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력범죄피해의 도시규모별 비교의 의미는 더욱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다.

하게 나타난 바 있다.[41]

〈표 3-11〉 재산범죄피해의 도시규모별 피해율

구분	피해사례[1] (건)	지역표본[2] (명)	피해추정사례 (건)	만 14세 이상 지역인구추정(명)	피해율[3] (가구원가중치)
서울시	75 (15.1)	2,058 (13.7)	325,862 (22.5)	8,747,300 (19.9)	3.73%
광역시	159 (31.9)	4,256 (28.4)	408,598 (28.2)	11,246,783 (25.5)	3.63%
중소도시	159 (31.9)	5,156 (34.4)	470,074 (32.4)	15,521,262 (35.2)	3.03%
읍면지역	105 (21.1)	3,506 (23.4)	244,471 (16.9)	8,524,442 (19.4)	2.87%
계	498(100.0)	14,976(100.0)	1,449,005(100.0)	44,039,786(100.0)	3.29%

1) 응답자의 현 거주지 기준 피해사례수(건).
2) 응답자의 현 거주지 조사 표본수(명).
3) 피해율 계산식은 {(피해추정사례)÷(만 14세 이상 [지역별] 인구추정)}이다.

한편, 재산범죄피해에는 가구범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범죄에 대해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율을 계산하면 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가구범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3절 주요 범죄피해 발생 변화 분석

우리나라에서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시작된 기준 연도가 1993년이긴 하나, 1993년도 조사에 이용된 기본 설문문항구조는 2005년도까지만 다섯 차례(최인섭 외, 1995; 최인섭 외, 1998; 박순진 외; 1999, 최인섭 외, 2003; 김지선 외, 2006) 이용되었고, 2009년도(2008년도 기준 조사, 김은경 외, 2009)에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기 때문에 2008년 이후의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는 그 이전의 조사 결과와 온전히 비교

41) 2010년도 기준 조사 이전의 조사에서는 폭력범죄피해-재산범죄피해라는 분류가 아니라 가구범죄피해-개인범죄피해라는 분류법을 사용해기 때문에, 2010년도 기준 조사 이전의 조사 결과들과는 바로 비교하기 어렵다.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2009년도 이후에도 몇 차례 연속으로 설문문항의 구조가 조금씩 바뀜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범죄피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2012년도 기준 조사까지(김은경 외, 2009; 김지선 외, 2011; 김은경 외, 2013)는 여전히 온전한 상호 비교가 쉽지 않았다. 본 조사(2014년도 기준 조사)에 이르러서야 2012년도 기준 조사와 거의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한 탓에 두 차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비로소 제대로 된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전 시기의 조사 결과들과의 비교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수준의 설문지를 이용한 2012년도 기준 조사와 본 조사의 비교가 상대적으로 가장 공정한 비교에 속할 것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우선 2012년도 기준 조사 결과와 본 조사 결과를 비교한 다음, 추가적으로,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그 이전 시기의 조사 결과들과의 비교도 감행해 보고자 한다.

1. 2012년도 기준 조사와의 범죄피해율 비교

다음 〈표 3-12〉는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의 피해율과 본 조사(2014년도 기준 조사)에 나타난 피해율을 서로 비교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피해율 계산의 기준 피해건수는 총피해건수가 아닌 사건조사표에 기록된 건수로 삼았다. 이는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나,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위 유형의 범죄 비교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결정이다. 사건조사표에 응답하지 않은 피해자는 그 구체적인 범죄피해 유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위 범죄유형들의 피해건수를 모두 합치면 총피해건수가 아닌 사건조사표에 기록된 건수가 된다는 말이다. 피해율 계산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면 합계가 일치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참고로,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는 총피해건수와 사건보고수가 같았으나, 2014년도 기준 조사에서는 사건보고수가 총피해건수보다 11건 적었다.

피해율을 조사된 총표본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2012년에는 4.51%에서 2014년에는 3.71%로 감소하고, 가구원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2012년에는 4.60%에서 2014년에 3.66%로 감소한다.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대략 비슷하다.

〈표 3-12〉 2012-2014 범죄피해율 비교

(단위: 건, %)

구분	표본 사례 기준		가구원가중치 적용 기준	
	2012년	2014년	2012년	2014년
사건보고수[1)]	601	555	1,975,155	1,612,701
전체 사례수	13,317	14,976	42,936,210	44,039,786
피해율(%)	4.51	3.71	4.60	3.66

1) 총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건보고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참고로,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는 총 피해건수와 사건보고수가 같았으나, 2014년도 기준 조사에서는 사건보고수가 총피해건수보다 11건 적었다.

다음 〈그림 3-1〉은 위 표에서 요약한 시기별 피해율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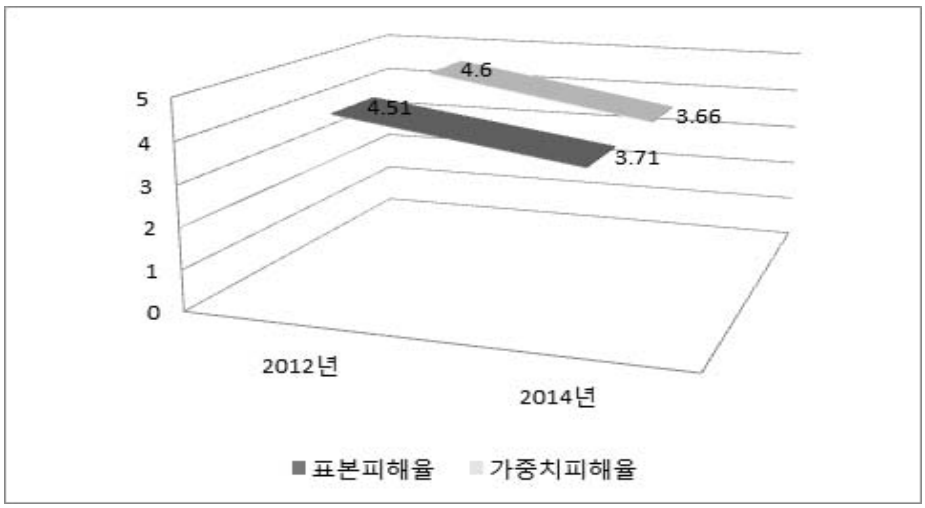

[그림 3-1] 2012년도-2014년도 범죄피해율 비교

다음 〈표 3-13〉은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의 폭력범죄피해율 및 재산범죄피해율과 본 조사(2014년도 기준 조사)에 나타난 폭력범죄피해율 및 재산범죄피해율을 서로 비교하여 나타낸 표이다. 피해율을 조사된 총표본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폭력범죄피해율은 2012년에는 0.69%에서 2014년에는 0.38%로 감소하고, 재산범죄피해율은 2012년에는 3.82%에서 2014년에는 3.33%로 감소한다.

〈표 3-13〉 2012-2014 폭력범죄피해율 및 재산범죄피해율 비교

(단위: %)

구분	표본 사례 기준	
	2012년	2014년
폭력범죄피해율	0.69	0.38
재산범죄피해율	3.82	3.33

다음 〈그림 3-2〉는 위 표에서 요약한 시기별 폭력범죄피해율 변화와 재산범죄피해율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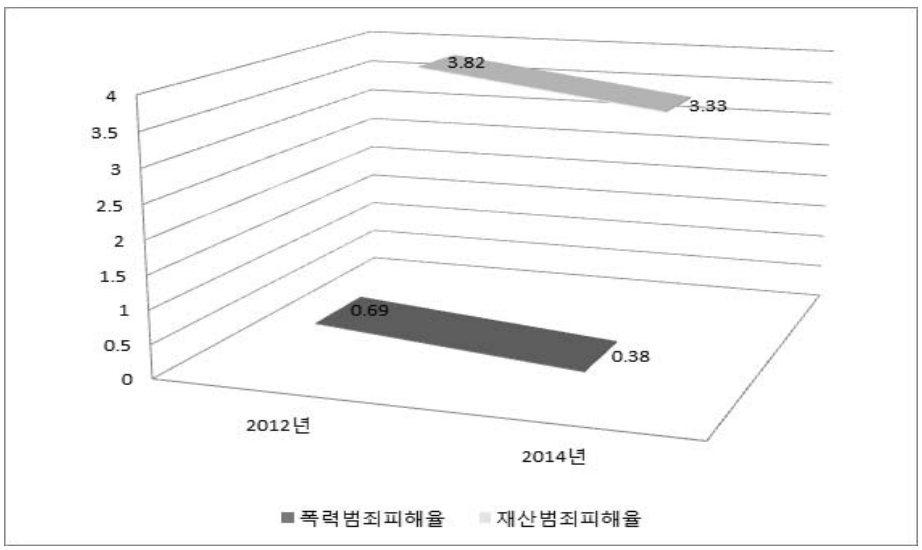

[그림 3-2] 2012년도-2014년도 폭력범죄피해율 및 재산범죄피해율 비교

다음 〈그림 3-3〉은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2012년도 기준 조사와 2014년도 기준 조사에서 각각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 전체 범죄피해 중 폭력범죄피해는 15%, 재산범죄피해는 85%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14년도 기준 조사에서는 폭력범죄피해가 10%, 재산범죄피해가 90%로 다소의 변동이 있었다. 액면으로 보자면, 재산범죄피해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나고 폭력범죄피해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2014년도 기준 조사에서는 폭력범죄피해의 일부 유형이 실제보다 과소 추출되

었을 개연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재산범죄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력범죄피해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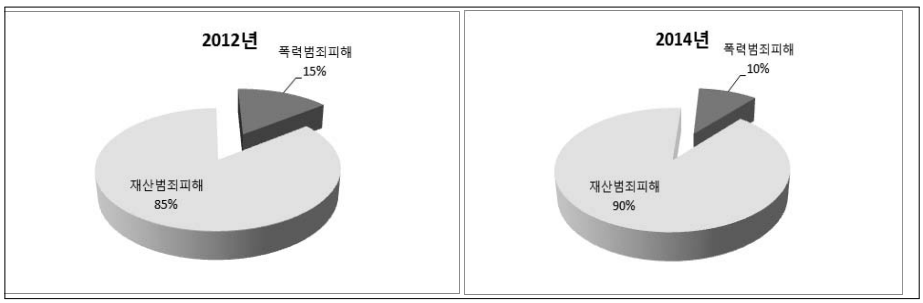

[그림 3-3]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의 비중 변화

다음 〈그림 3-4〉은 중복 및 상습피해자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2012년도 기준 조사와 2014년도 기준 조사에서 각각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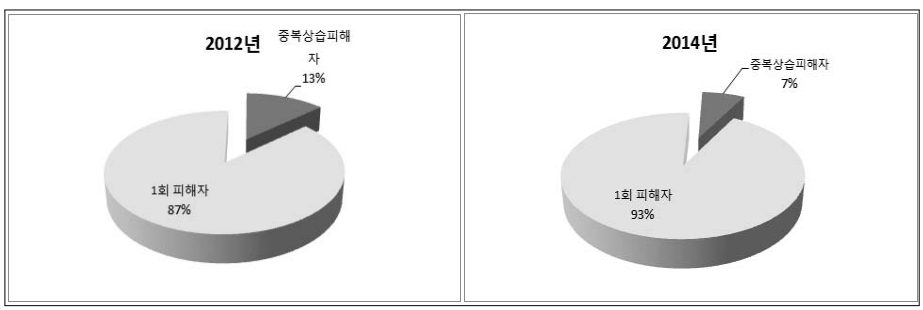

[그림 3-4] 중복·상습피해자의 비중

그림을 보면,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 중복피해자(58명) 및 상습 피해자(9명)의 비중은 피해자 전체(519명)에서 13%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14년도 기준 조사에서는 중복피해자(33명) 및 상습 피해자(5명)의 비중이 피해자 전체(522명)에서 7%를 차지하여 중복피해자와 상습피해자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1993년 기준 조사 이래 모든 범죄피해조사 결과들과의 범죄피해율 비교

설문지의 구성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가장 정당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연도는 2012년과 2014년인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수행되었던 조사 결과들과의 비교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긴 하다. 심지어 2005년도 이전의 구(舊)범죄피해조사의 경우조차도 설문지의 구조가 전혀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에 있어서는 현 조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정확한 비교는 아닐지라도 대략적인 경향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비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래도 비교의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우는 아무래도 2008년도 기준 조사 이래 개편된 범죄피해조사들끼리의 비교일 것이다. 비록 2008년도 기준 조사와 2010년도 기준 조사는 2012년 및 2014년 기준 조사와 서로 다른 설문 구성을 가지고 있어 엄밀한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개편된 이후의 조사 결과들 사이의 비교는 그 이전 시기 범죄피해조사 결과들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비교일 수밖에 없다.

2008년도에는 10,671명의 표본 사례 중에서, 사건보고수 기준으로, 가구대상 범죄 228건, 개인대상 범죄 744건, 도합 972건으로, 피해율은 9.11%였다(김은경 외, 2009:155). 2010년에는 16,557명 중 1,056건(사고보고 수 기준으로, 가구대상 범죄 444건, 개인대상 범죄 612건)의 피해가 보고됨으로써 그 피해율은 6.38%였다(김지선 외, 2011:109). 이 결과들을 앞 소절에서 살펴보았던 2012년도-2014년도 결과와 연결하여 그 피해율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표 3-14〉 및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14〉 2008-2014 범죄피해율 비교

(단위: 건, %)

연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사건보고수1)	972	1,056	601	555
전체 사례수	10,671	16,557	13,317	14,976
피해율(%)	9.11	6.38	4.51	3.71

1) 총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건보고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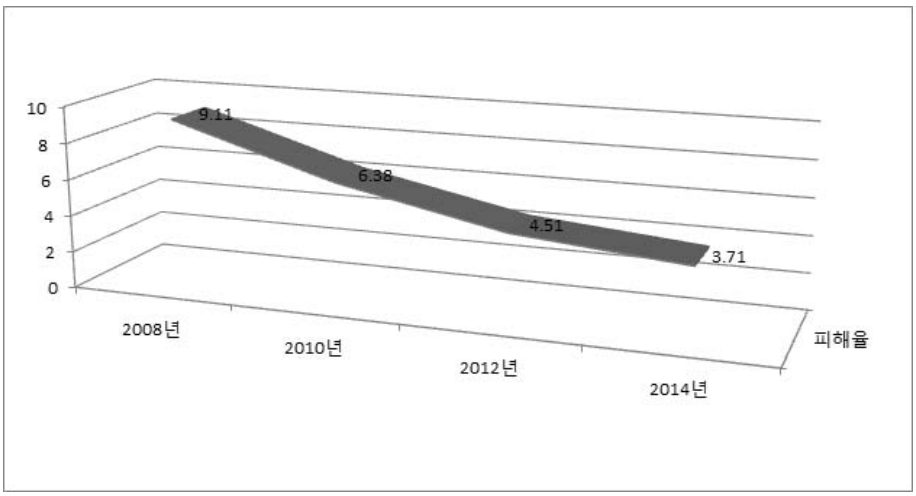

[그림 3-5] 2008년도-2014년도 범죄피해율 비교

〈그림 3-5〉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듯이,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범죄피해율은 단 한 번의 반전도 없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설문지의 변화 등 몇 가지 비교하기 어려운 난점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범죄피해 추세는 대체로 감소 추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좀 더 과감한 용기를 내어 1993년 이래 2005년까지의 과거 범죄피해조사 결과들까지 연결하여 피해율 변화를 살펴보자면, 다음 〈표 3-15〉와 〈그림 3-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표 3-15〉 1993-2014 범죄피해율 비교

(단위: %)

연도	1993년	1996년	1998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피해율(%)	50.12	41.37	36.38	17.46	9.31	9.11	6.38	4.51	3.71

참고로, 1993-2005년 기간은 동일한 설문지와 방법을 사용한 조사였고, 그 후(2008년-2014년)에는 다른 설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주의해야 한다. 그래도 굳이 대략적인 비교를 하자면, 여기서도 단 한 번의 추세 반전도 없이 줄기차게 피해율이 감소해오기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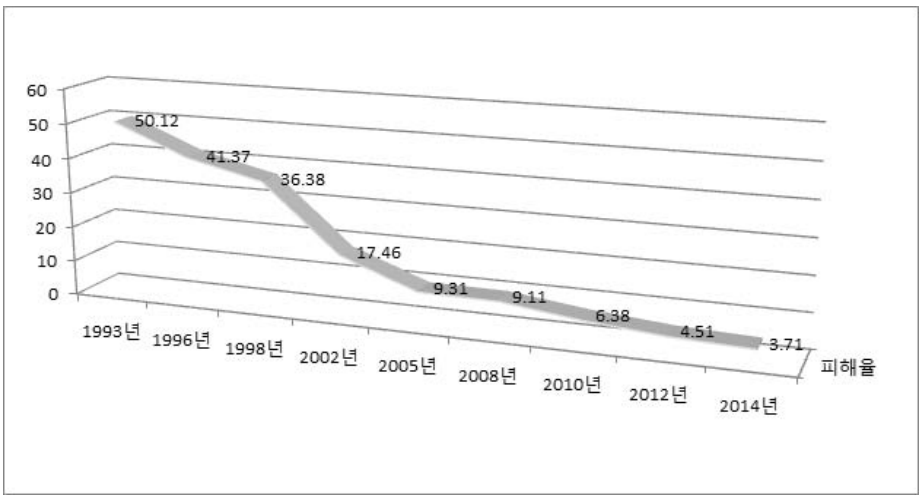

[그림 3-6] 1993년도-2014년도 범죄피해율 비교

비교의 부정확성을 감수해야 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소 경향은 어느 정도까지는 실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제4절 범죄피해율에 관한 요약·소결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에서 전체 피해율은 3.7%(사건보고 기준으로 14,976명 중에서 555건, 혹은 44,039,786명 중 1,612,701건으로 추정) 정도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의 피해율은 0.4%였고, 재산범죄의 피해율은 3.3%였다. 이 같은 결과를 설문지가 동일한 2012년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피해율과 비교하면, 전체 피해율(4.6%에서 3.7%로 감소)뿐만 아니라 폭력범죄의 피해율(0.7%에서 0.4%로 감소)과 재산범죄의 피해율(3.8%에서 3.3%로 감소) 모두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 단, 이번 조사에서 폭력범죄피해, 그 중에서도 특히 폭행피해는 실제보다 적게 포착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폭력범죄피해를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으로 나누어서 볼 경우, 성폭력 피해율은 0.1%, 강도는 0.06%, 폭행/상해는 0.2%, 괴롭힘은 0.03%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중 폭행/상해피해가 0.2%로 나타난 것은 공식통계상의 폭행/상해 범죄율보다 낮은 결과이다. 그 때문에, 폭행/상해피해가 실제보다 적게 추출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한편, 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손괴, 기타로 살펴보았는데, 절도범죄 피해율은 1.6%, 사기피해는 0.9%, 손괴는 0.7%, 기타(단순주거침입범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522명의 피해자 중 2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33명으로 전체 만 14세 이상 인구에서는 0.2%를 차지했고, 피해자들 중에서는 6.3%를 차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2년도 기준 조사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결과이다. 2012년도의 중복피해자 비율은 전체 만 14세 이상 인구에서는 0.5%, 피해자들 중에서는 11.2%였었다. 상습피해자의 경우에도 9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들 중에서 중복 및 상습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 13%였던 것이 2014년 기준 조사에서는 7%로 감소하였다.

범죄피해율을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전체 범죄율에서 울산광역시(5.41%)와 대전광역시(5.3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범죄피해는 전라남도(0.92%), 대전광역시(0.86%), 제주특별자치도(0.69%)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율은 울산광역시(5.18%), 대전광역시(4.46%), 인천광역시(4.3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큰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도시규모별(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로 피해율을 비교해 볼 경우, 광역시의 피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읍면지역의 피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범죄피해율은 설문지의 구조가 거의 동일한 2012년 기준 조사 결과와 비교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조사의 큰 개편이 이루어졌던 2008년 기준 조사 이래의 모든 조사 결과들과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05년 기준 조사 이전의 결과들과 대략적으로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일관되고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와 같은 시기의 공식범죄통계는

이와는 확실히 다른 추세를 보여 왔다. 이는 그 기간 동안 범죄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식범죄통계에 포착되는 범죄건수는 증가하면서도 동시에 암수범죄까지 포함한 실제 범죄 전체 수준에서는 감소추세가 발생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42]

42)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황지태의 박사학위논문 "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공식통계상 범죄율 증가와 범죄피해조사상 피해율 감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2009)"에서의 설명 논리를 참조하기 바란다.

제4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폭력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 결과

황 지 태

제4장

폭력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 결과

범죄피해의 실태 분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범죄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보고이다. 범죄피해 실태는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로 나누어서 보되, 이 장에서는 먼저 폭력범죄피해 발생 실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해 온 바와 같이, 본고에서 폭력범죄피해는 성폭력피해, 강도피해, 폭행/상해피해, 괴롭힘피해로 구분하였다. 2014년 폭력범죄피해는 14,976명의 응답자 중에서 57건(0.4%)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13,317명의 응답자 중에서 92건(0.7%)이 보고된 2012년도의 폭력범죄피해(김은경 외, 2013:114)보다 감소한 결과이다. 폭력범죄피해의 발생 실태와 관련해서는 사건발생 일시와 구체적 장소, 범죄피해의 상황, 피해결과 및 피해로 인한 손실,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징 등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2014년도 폭력범죄피해의 발생 실태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도로 살펴본 후, 2012년도 조사 결과와 여러 차원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제1절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 사건발생 일시

본 조사의 설문지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월에 대한 문항이 존재하는데, 이 문항에 대한 응답 내용을 재구성하면 대략적인 계절별 범죄발생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3월에서 5월까지를 봄으로, 6월에서 8월까지를 여름으로, 9월에서 11월까

지를 가을로,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를 겨울로 묶어보았다. 다음 〈표 4-1〉은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기를 계절별로 묶어본 결과이다.

표를 보면, 이번 조사 결과에서 전체 폭력범죄피해는 총 57건 중에서 봄에 16건(30.2%로 추정), 여름에 14건(30.6%로 추정), 가을에 14건(24.7%로 추정), 겨울에 9건(14.5%로 추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본에서의 응답 사례수로는 봄(16건)에 발생한 폭력범죄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여름의 비중(30.6%)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봄과 여름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다. 사실상 겨울만 제외하면, 봄, 여름, 가을 사이의 차이가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름과 가을을 하나로 묶고 봄과 겨울을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여름과 가을(55.3%로 추정)에 봄과 겨울(44.7%로 추정)보다 폭력범죄피해가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체로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범죄피해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은 2012년도 기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김은경 외, 2013:135).

〈표 4-1〉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계절

(단위: 건(%, 유효퍼센트))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2]	
	표본 사례	가구원 가중치	표본 사례	가구원 가중치	표본 사례	가구원 가중치	표본 사례	가구원 가중치	표본 사례	가구원 가중치
봄(3-5월)	2 (11.1)	7,741 (13.6)	1 (14.3)	4,240 (15.9)	10 (41.7)	25,862 (41.7)	3 (75.0)	9,744 (82.2)	16 (30.2)	47,587 (30.2)
여름(6-8월)	7 (38.9)	21,491 (37.8)	3 (42.9)	12,950 (48.5)	3 (12.5)	11,690 (18.8)	1 (25.0)	2,113 (17.8)	14 (26.4)	48,244 (30.6)
가을(9-11월)	5 (27.8)	17,206 (30.2)	1 (14.3)	3,513 (13.2)	8 (33.3)	18,168 (29.3)	0 (0.0)	0 (0.0)	14 (26.4)	38,887 (24.7)
겨울(12-2월)	4 (22.2)	10,452 (18.4)	2 (28.6)	5,997 (22.5)	3 (12.5)	6,358 (10.2)	0 (0.0)	0 (0.0)	9 (17.0)	22,807 (14.5)
무응답	-	-	-	-	4	-	-	-	4	-
유효계[1]	18 (100.0)	56,890 (100.0)	7 (100.0)	26,700 (100.0)	24 (100.0)	62,078 (100.0)	4 (100.0)	11,857 (100.0)	53 (100.0)	157,525 (100.0)

1) 합계와 백분율은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사례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2) 무응답 4건과 나머지 53건을 모두 합치면 전체 폭력범죄피해 합계인 57건이 된다.

폭력범죄피해를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의 네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우선 성폭력범죄피해는 하절기(여름과 가을)에 18건 중 12건(66.7%), 강도피해는 7건 중 4건(57.1%)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성폭력과 강도 범죄피해는 하절기에 좀 더 많이 발생하였지만, 폭행/상해피해는 24건 중 11건(45.8%), 괴롭힘은 4건 중 1건만이 하절기에 발생하였다. 2012년 기준 조사 결과에서도 폭행/상해피해는 겨울에도 낮지 않은 비율로 발생한 바 있었다. 괴롭힘의 경우는 주로 온라인상의 괴롭힘인 경우가 많은지라 계절과는 어느 정도 무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각을 보면, 〈표 4-2〉에 보이는 바와 같다. 이 표는 설문지에 3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던 것을 6시간 간격으로 재조정하여 좀 더 간단하게 만든 표이다. 먼저 폭력범죄피해 전체를 보자면, 저녁에서 밤 사이, 즉 18시에서 24시에 57건 중 31건(54.4%, 54.9%로 추정)이 발생하여 다른 범주들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루를 12시간씩 낮(06시-18시)과 밤(18시-06시)으로 나누면, 전체 폭력범죄피해 57건 중 37건(65%, 가구원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68.1%)이 밤(18시-06시)에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표 4-2〉 폭력피해범죄가 발생한 시각

(단위: 건(%))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 피해 합계	가구원 가중치 적용
아침-오전(06-12시)	0 (0.0)	0 (0.0)	1 (3.6)	0 (0.0)	1 (1.8)	1,141 (0.7)
한낮-오후(12-18시)	4 (22.2)	3 (42.9)	9 (32.1)	3 (75.0)	19 (33.4)	51,176 (31.3)
저녁-밤(18-24시)	11 (61.1)	2 (28.6)	17 (60.7)	1 (25.0)	31 (54.4)	89,844 (54.9)
심야-새벽(00-06시)	3 (16.7)	2 (28.6)	0 (0.0)	0 (0.0)	5 (8.8)	17,664 (10.8)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0 (0.0)	0 (0.0)	1 (3.6)	0 (0.0)	1 (1.8)	3,871 (2.4)
계	18 (100.0)	7 (100.0)	28 (100.0)	4 (100.0)	57 (100.0)	163,696 (100.0)

폭력범죄피해를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성폭력피해의 경우 18건 중 14건

(77.8%)이, 강도범죄피해의 경우엔 7건 중 4건(57.1%)이, 폭행/상해는 28건 중 18건(64.3%)이 밤 시간대(18시-06시)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례수가 적은 괴롭힘의 경우(4건 중 1건만 밤에 발생)만 예외적인 모양새를 나타내 보였다. 편의상 괴롭힘의 경우를 제외하고, 폭력범죄 전반에서 밤 시간대(18시-06시)에 발생하는 피해의 비중이 낮 시간대(06시-18시)에 발생하는 피해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은 2012년도 기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김은경 외, 2013:135).

2.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다음 〈표 4-3〉에서와 같이 8가지 종류의 장소로 구분해 보았다. 8가지 장소 중 '집(자기 집 혹은 가해자의 집 등)'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21건(37.5%, 가중치로 33.5% 추정)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주택가나 그 인접도로'가 14건(25.0%, 가중치로 24.8% 추정), '인구 밀집 상업지'가 8건(14.3%, 가중치로 16.5% 추정),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이 4건(7.1%, 가중치로 6.4% 추정) 등의 순이다. 참고로,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는 '주택가나 그 인접도로',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집', '인구 밀집 상업지'의 순서로 나타난 바 있어, 본 조사에서 나타난 순위와는 다소 달랐다. 2012년 조사에 비해 본 조사에서 주요 범죄피해 장소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적은 피해 사례 때문에 우연히 순위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그래도 주요 범죄피해 발생장소의 상위 집단을 차지하는 장소들의 대략적 일관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표 4-3〉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

(단위: 건(%, 유효퍼센트))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집(자기집, 가해자집 등)	6 (33.3)	2 (28.6)	12 (44.4)	1 (25.0)	21 (37.5)	53,875 (33.5)
주택가나 그 인접도로	7 (38.9)	2 (28.6)	5 (18.5)	-	14 (25.0)	39,937 (24.8)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학교	-	-	2 (7.4)	1 (25.0)	3 (5.4)	9,590 (6.0)
주차장	-	-	2 (7.4)	-	2 (3.6)	5,084 (3.2)
인구 밀집 상업지	2 (11.1)	1 (14.3)	3 (11.1)	2 (50.0)	8 (14.3)	26,567 (16.5)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1 (5.6)	-	-	-	1 (1.8)	4,221 (2.6)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2 (11.1)	-	2 (7.4)	-	4 (7.1)	10,322 (6.4)
그 외의 장소	-	2 (28.6)	1 (3.7)	-	3 (5.4)	11,365 (7.1)
무응답	-	-	1	-	1	-
유효계	18 (100.0)	7 (100.0)	27 (100.0)	4 (100.0)	56 (100.0)	160,961 (100.0)

한편, 각 하위 범죄유형별로 범죄피해 발생 장소를 살펴볼 경우, 피해 사례수가 분할되어 더욱 작아져 분석상의 난점이 커지고 분석과 추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결과를 요약해 보겠다.

성폭력피해는 18건 중 7건이 '주택가나 그 인접도로(아파트 단지, 연립주택가 등 등)'에서, 6건은 '집'(5건은 피해자 집에서의 성추행이고, 1건은 가해자 집에서의 강간 피해였음)에서, 2건은 '인구 밀집 상업지'에서, 또 다른 2건은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나머지 1건은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등의 장소'에서 발생하였다.

강도범죄피해의 경우엔 7건 중 2건이 자기 집(주거침입강도에 해당)에서 발생했고, 다른 2건은 '주택가나 그 인접도로'에서, 또 다른 2건은 '그 외의 장소', 나머지 1건은 '인구 밀집 상업지'에서 발생했다.

폭행/상해 피해는 27건 중 12건(44.4%)이 '집'에서 발생했고, 5건(18.5%)은 '주택가나 그 인접도로', 3건(11.1%)은 '인구 밀집 상업지'에서 발생했고, '학교', '주차장',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각각 2건씩 발생하였으며, '그 외의 장소'에서도 1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괴롭힘은 '인구 밀집 상업지'에서 2건, 그리고 '집'과 '학교'에서 각각 1건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표 4-4〉는 폭력피해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자기 직장(혹은 자기 영업장)이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표이다.

〈표 4-4〉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의 자기 직장 (혹은 자기 영업장) 여부

(단위: 건(%, 유효퍼센트))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자기 직장/ 자기 영업점	그렇다	2 (11.1)	1 (14.3)	2 (7.4)	2 (50.0)	7 (12.5)	23,827 (14.8)
	아니다	16 (88.9)	6 (85.7)	25 (92.6)	2 (50.0)	49 (87.5)	137,135 (85.2)
유효계		18 (100.0)	7 (100.0)	27 (100.0)	4 (100.0)	56 (100.0)	160,962 (100.0)

표를 보면, 전체 56건(57건 중 1건은 무응답 사례)의 폭력범죄피해 중 7건(12.5%, 가중치 14.8%로 추정)이 자기 직장 혹은 자기 영업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폭력은 18건 중 2건, 강도는 7건 중 1건, 폭행/상해는 27건 중 2건, 괴롭힘은 4건 중 2건이 자기 직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피해 내용 및 피해결과

1.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공격 여부와 흉기 소지 여부

먼저 폭력범죄피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실제로 공격했는지 여부에 대해 〈표 4-5〉에서 살펴보았다. 전체 57건의 폭력피해 범죄 중에서는 18건(31.6%, 가중치 32.7% 추정)에서 실제로 신체공격이 가해졌고, 23건(40.4%, 가중치 37.6%로 추정)에서는 폭행의 위협만 가해졌으며, 나머지 16건(28.1%, 가중치 29.7%로 추정)에서는 신체공격도 폭행 위협도 없었다.

〈표 4-5〉 폭력범죄피해에서의 신체공격 유무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신체공격을 했다	-	2 (28.6)	16 (57.1)	-	18 (31.6)	53,604 (32.7)
신체공격은 없었으나, 폭행의 위협을 하였다	6 (33.3)	5 (71.4)	12 (42.9)	-	23 (40.4)	61,505 (37.6)
신체공격이나 위협은 없었다	12 (66.7)	-	-	4 (100.0)	16 (28.1)	48,586 (29.7)
계	18 (100.0)	7 (100.0)	28 (100.0)	4 (100.0)	57 (100.0)	163,695 (100.0)

성폭력범죄의 경우, 실제 신체공격이 이루어진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고, 18건 중 6건(33.3%)에서 폭행 위협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건(66.7%)은 신체공격이나 위협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들이었다. 신체공격도 없고 위협도 없이 이루어지는 성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성추행피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강도범죄의 경우, 7건 중 2건에서 신체공격 피해가 있었고, 나머지 5건에서는 신체공격이 없는 위협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의 경우, 28건 중 16건(57.1%)에서 신체공격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12건(42.9%)은 신체공격이 없는 위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괴롭힘의 경우, 애초에 신체공격도 없고 위협도 없는 폭력성 범죄들(4건)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형에서는 신체공격도 위협도 없는 사례들만 나타났다.

폭력범죄피해에서 범행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그리고 이를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는, 다음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57건 중 5건(8.8%, 가구원가중치 적용 시 6.7%로 추정)이었다. 나머지 52건은 범행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그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된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성폭력피해와 괴롭힘피해에서는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했던 사건이 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고, 강도범죄피해에서는 7건 중 1건에서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한 사례가 있었고, 폭행/상해범죄피해에서는 28건 중 4건(14.3%)에서 가해자 흉기를 소지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표 4-6〉 사건 발생 시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흉기 소지	-	1 (14.3)	4 (14.3)	-	5 (8.8)	11,024 (6.7)
미소지 혹은 모름	18 (100.0)	6 (85.7)	24 (85.7)	4 (100.0)	52 (91.2)	152,672 (93.3)
계	18 (100.0)	7 (100.0)	28 (100.0)	4 (100.0)	57 (100.0)	163,696 (100.0)

피해 당시 가해자가 어떤 흉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다음 〈표 4-7〉에 제시하였다.

〈표 4-7〉 가해자가 소지한 흉기의 종류

(단위: 건(중복포함))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	1	1	-	2
유리병, 돌, 몽둥이 등	-	-	3	-	3
계	-	1	4	-	5

표를 보면, 전체 5건 중에서 '유리병, 돌, 몽둥이 등'이 3건이었고,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이 2건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다른 유형의 흉기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표 4-8〉은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와 실제 신체공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했던 범죄유형은 강도와 폭행/상해에 국한 되었으므로, 이 표에서는 강도범죄피해와 폭행/상해범죄피해에서의 흉기 소지에 따른 신체공격 유무 사이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표를 보면, 흉기를 소지하고 신체공격에까지 이르렀던 사례는 35건 중에 3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례가 적어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하기는 어려우나, 참고로 살펴보기 바란다.

〈표 4-8〉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와 실제 신체공격 여부 사이의 교차표

(단위: 건)

구분		강도		폭행/상해		합계		
		소지	미소지	소지	미소지	소지	미소지	계
공격 여부	공격	-	2	3	13	3	15	18
	위협	1	4	1	11	2	15	17
계		1	6	4	24	5	30	
		7		28		35		

한편, 피해자가 알기에 가해자가 흉기를 사전에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자면 다음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보면, 전체 5건 중에서 가해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경우는 1건이었고, 3건은 현장의 것을 사용한 경우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1건 있었다.

〈표 4-9〉 가해자 흉기의 사전 준비 여부

(단위: 건)

구분	강도 (주거침입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폭행	상해	
미리 준비	-	1	-	1
현장의 것 사용	-	-	3	3
모르겠다	1	-	-	1
계	1	1	3	5

2. 피해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대응

다음 〈표 4-10〉은 폭력범죄피해자들이 피해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이 질문이 겨냥하는 것 중의 하나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을 경우 피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가정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표만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 그에 대한 응답은 이와 연결되는 다른 종류의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가령, 만 14세 이상 인구 중 술을 자주 마시는 인구의 비율, 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음주 피해자 선택 경향성 여부 등)하여 좀 더 종합적인 고려 하에 내려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 표는 그러한 판단을 위한 단순한 지표 중의 하나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체 57건의 폭력범죄피해 중 16건의 경우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없었고, 그에 따라 유효 응답은 41건이 된다. 41건 중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음주를 했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7건(17.1%, 가중치 적용 시 18.3%)이었고, 나머지 34건은 술은 마시지 않았거나(32건) 음주 여부를 기억 못하는 경우(2건, 2건 모두 성추행)였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강도, 괴롭힘 피해자들의 경우엔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고, 강간, 폭행, 상해의 경우엔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던 범죄유형은 상해범죄피해였으며, 13건 중 5건(38.5%)이 이에 해당되었다.[43] 폭행과 상해에서 피해자 음주 상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2012년도 기준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바 있다(김은경 외, 2013:157).

〈표 4-10〉 폭력범죄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음주 여부

(단위: 건(%))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음주	1 (50.0)	-	-	-	5 (38.5)	1 (6.7)	-	7 (17.1)	21,043 (18.3)
비음주	1 (50.0)	4 (100.0)	5 (100.0)	2 (100.0)	8 (61.5)	14 (93.3)	-	34 (82.9)	94,067 (81.7)
계	2 (100.0)	4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	41 (100.0)	115,109 (100.0)

다음 〈표 4-11〉은 피해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자기 홀로 가해자와 대면한 사람이 폭력성 피해를 당할 확률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가해자를 대면한 사람이 피해를 당할 확률보다 아무래도 좀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볼 수도 있긴 하다. 그런데 표를 보면, 폭력범죄

43) 강간의 경우(2건 중 1건)는 너무 적은 사례수 때문에 많다 적다는 판단이 어렵다.

피해자 전체 수준에서 볼 때, 동반자가 있었던 경우는 41건 중 20건(48.8%, 가중치 적용 시 47.5%)으로 홀로 피해를 당한 경우(21건, 가중치 적용 시 52.6%)보다 약간 적게 나타났을 뿐이다. 참고로, 이러한 결과는 2012년도 기준 조사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44]

세부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강간, 성추행, 괴롭힘 피해자들의 경우엔 동반자가 있었던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고, 대인강도, 주거침입강도, 상해와 폭행의 경우엔 동반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자가 있었던 경우 중에서도, 특히 상해와 폭행은 피해 당시 만 14세 이상 동반자가 있었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상해의 경우, 13명 중 8명(61.5%), 폭행의 경우 15명 중 9명(60.0%)이 그에 해당되었다.

〈표 4-11〉 폭력범죄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만 14세 미만은 제외)의 존재 여부

(단위: 건(%))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강간	성추행	대인 강도	주거 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있었다	-	-	2 (40.0)	1 (50.0)	8 (61.5)	9 (60.0)	-	20 (48.8)	54,620 (47.5)
없었다/ 모르겠다	2 (100.0)	4 (100.0)	3 (60.0)	1 (50.0)	5 (38.5)	6 (40.0)	-	21 (51.2)	60,490 (52.6)
계	2 (100.0)	4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	41 (100.0)	115,109 (100.0)

다음 〈표 4-12〉은 피해 당시 동반자의 동반피해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표를 보면, 폭력범죄피해자 전체 수준에서 볼 때, 동반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20건(피해 당시 동반자가 있었던 경우) 중에서 9건(45.0%, 가중치 적용시 54.9%)이나 되었다. 이를 2012년도 기준 조사 결과(약 22%, 김은경 외, 2013:145)와 비교해 볼 경우, 이는 매우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대인강도, 주거침입강도, 상해와 폭행의 경우에 동반피

44) 참고로,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는 동반자가 없었던 경우가 70% 이상이었다(김은경 외, 2013: 143).

해 사례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상해피해의 경우에 동반피해가 많았다.[45]

〈표 4-12〉 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만 14세 미만은 제외)의 동반피해 여부

(단위: 건(%))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있었다	-	-	1 (50.0)	-	6 (75.0)	2 (22.2)	-	9 (45.0)	30,012 (54.9)
없었다	-	-	1 (50.0)	1 (100.0)	2 (25.0)	7 (77.8)	-	11 (55.0)	24,608 (45.1)
계	-	-	2 (100.0)	1 (100.0)	8 (100.0)	9 (100.0)	-	20 (100.0)	54,620 (100.0)

다음 〈표 4-13〉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기보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자기보호 노력이 있었다는 응답은 41명 중 21명으로 절반이 약간 넘었다(51.2%). 하지만,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하면 45.8%로 절반에 다소 못 미친다. 세부유형별로 보면,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자기보호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고, 강도의 경우 대인강도의 경우엔 낮고 주거침입강도의 경우엔 높은 모습을 보였다.

〈표 4-13〉 폭력범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기보호 노력

(단위: 건(%))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있었다	1 (50.0)	1 (25.0)	-	2 (100.0)	10 (76.9)	7 (46.7)	-	21 (51.2)	52,725 (45.8)
없었다	1 (50.0)	3 (75.0)	5 (100.0)	-	3 (23.1)	8 (53.3)	-	20 (48.8)	62,384 (54.2)
계	2 (100.0)	4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	41 (100.0)	115,109 (100.0)

자기보호 노력의 구체적 행태는 다음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설문지에는 모두 9개의 행위유형이 제시되어 있지만, 응답은 6개 유형에서만 나타났다.

45) 폭행과 상해에서 동반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집단끼리의 폭력행위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표 4-14〉 폭력범죄피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피해자의 대응

(단위: 건(%), 중복포함)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계
	강간	성추행	대인 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	-	-	-	-	2 (18.2)	-	2 (8.3)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	1 (100.0)	1 (100.0)	-	-	3 (27.3)	2 (22.2)	7 (29.2)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	-	-	-	2 (100.0)	5 (45.5)	-	7 (29.2)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	-	-	-	-	1 (9.1)	1 (11.1)	2 (8.3)
숨거나(숨기거나) 회피	-	-	-	-	-	4 (44.4)	4 (16.7)
그 외의 행동	-	-	-	-	-	2 (22.2)	2 (8.3)
계	1 (100.0)	1 (100.0)	-	2 (100.0)	11 (100.0)	9 (100.0)	24 (100.0)

24건의 자기보호 행동 사례 중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던 행위는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7사례, 29.2%)하는 행위와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7사례, 29.2%)하는 행위였다. 그 다음은 '숨거나 회피'하는 행동(4건, 16.7%)이었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하는 행동(2건, 8.3%),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2건, 8.3%) 등이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자기보호 행동의 결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음이 다음 〈표 4-15〉에 나타나 있다. 23건의 사례 중 13건(56.5%)에서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가해자가 더 공격적, 폭력적'이 되도록 했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5건(21.7%)으로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표 4-15〉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대응의 결과

(단위: 건(%), 중복포함)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계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강도	상해	폭행(무상해)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었음	1 (100.0)	-	-	2 (100.0)	5 (41.7)	5 (71.4)	13 (56.5)
가해자를 붙잡는데 도움이 되었음	-	-	-	-	1 (8.3)	1 (14.3)	2 (8.7)
탈출하거나 도피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1 (100.0)	-	-	-	-	1 (4.3)
가해자가 더 공격적, 폭력적이 되었음	-	-	-	-	2 (16.7)	-	2 (8.7)
모르겠음	-	-	-	-	4 (33.3)	1 (14.3)	5 (21.7)
계	1 (100.0)	1 (100.0)	-	2 (100.0)	12 (100.0)	7 (100.0)	23 (100.0)

3.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상해의 결과

다음 〈표 4-16〉은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신체 피해 여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전체 57건의 폭력범죄피해 중 16건의 경우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없었고, 그에 따라 유효 응답은 41건이 된다. 41건 중 신체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18건(43.9%, 가중치 적용 시 49.0%)이었고, 나머지 23건은 신체 피해가 없었던 경우들(23건, 56.1%, 가중치 적용 시 51.0%)이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분류의 정의상 신체 피해를 전제로 하는 상해피해는 당연히 100% 신체 피해가 있었고, 그 외엔 대인강도와 강간에서 신체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나머지 성추행, 무상해폭행, 괴롭힘 등에서는 신체 피해가 없었다.

〈표 4-16〉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신체 피해 여부

(단위: 건(%), 중복제외)

신체 피해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있었다	2 (100.0)	-	3 (60.0)	-	13 (100.0)	-	-	18 (43.9)	56,418 (49.0)
없었다	-	4 (100.0)	2 (40.0)	2 (100.0)	-	15 (100.0)	-	23 (56.1)	58,691 (51.0)
계	2 (100.0)	4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	41 (100.0)	115,109 (100.0)

다음의 〈표 4-17〉에서는 피해자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신체 피해들이다. 중복 사례를 포함한 20사례의 신체 피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퀌, 긁힘' 등의 상해(15건, 75%)였다. 그 외에는 소수 사례들로, '칼 등에 의한 부상', '신체 골절', '강간 이외의 다른 성추행' 등이 있었다.

〈표 4-17〉 구체적인 신체 피해

(단위: 건(%), 중복포함)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계
	강간	성추행	대인 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강간(미수) 이외의 다른 성추행	1 (50.0)	-	-	-	-	-	1 (5.0)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	-	-	-	2 (13.3)	-	2 (10.0)
뼈나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짐(신체 골절)	-	-	-	-	1 (6.7)	-	1 (5.0)
몸,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퀌, 긁힘	1 (50.0)	-	2 (66.7)	-	12 (80.0)	-	15 (75.0)
그 외의 피해	-	-	1 (33.3)	-	-	-	1 (5.0)
계	2 (100.0)	-	3 (100.0)	-	15 (100.0)	-	20 (100.0)

다음 〈표 4-18〉은 신체 피해 경험자들이 상해에 대한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이다. 18건 중 8건(44.4%)에서는 '의료 처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

으로 주어진 응답지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집에서'가 6건(33.3%),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가 2건(11.1%)이었다. 이렇듯 의료 처지가 아예 없었거나 집에서 간단한 치료를 한 사례들에 비해, 종합병원(1건)이나 개인병원 · 보건소(1건) 등의 의료기관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사례(도합 2건, 11.1%)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상세 유형을 보면, 상해범죄피해를 제외하고는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가 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18〉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신체 피해 치료 여부 및 치료 장소

(단위: 건(%), 중복포함)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계
	강간	성추행	대인 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	-	-	-	1 (7.7)	-	1 (5.6)
종합병원, 병원 응급센터	-	-	-	-	1 (7.7)	-	1 (5.6)
의료적 처치를 받은 적 없음	1 (50.0)	-	3 (100.0)	-	4 (30.8)	-	8 (44.4)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	-	-	-	2 (15.4)	-	2 (11.1)
집에서	1 (50.0)	-	-	-	5 (38.5)	-	6 (33.3)
계	2 (100.0)	-	3 (100.0)	-	13 (100.0)	-	18 (100.0)

그런데, 〈표 4-19〉를 보면, 위 〈표 4-18〉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없지 않다. 〈표 4-19〉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이 답변에서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이 위 〈표 4-18〉과는 달리 3건이 나왔다. 아마도 이는 앞의 표에서 집에서 주로 치료했다고 응답한 한 사람 중에 가끔 혹은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아무튼 병원 치료 경험이 있는 세 사람은 모두 상해 피해자였다.

〈표 4-19〉 폭력범죄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여부

(단위: 건(%))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계
	강간	성추행	대인 강도	주거 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병원 치료 받음[1)]	-	-	-	-	3 (23.1)	-	3 (16.7)
병원 치료 받지 않음	2 (100.0)	-	3 (100.0)	-	10 (76.9)	-	15 (83.3)
계	2 (100.0)	-	3 (100.0)	-	13 (100.0)	-	18 (100.0)

1) 병원 치료를 받은 3사례 중 1사례는 입원을 한 경우였고, 입원 기간은 7일이었다. 나머지 2건은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였다. 한 사례의 입원 경험자는 이번 조사에서 '생계나 학업 등의 생활에 시간 손실이 있었다'고 응답(약 4개월, 120일 손실)한 유일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입원 피해자의 의료비는 총 2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지는 못했다고 한다(요구하지 않았음).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표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병원 치료를 받은 상해 피해자 세 사람 중에는 입원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이 피해자의 입원 기간은 7일이었고, 입원 기간 이외에도 병가 등의 사유로 학업활동 혹은 경제활동 시간의 손실을 약 4개월 간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상해를 입은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표 4-20〉을 통해 요약하였다. 18건 중에서 11건(61.1%)은 의료비가 전혀 들지 않은 경우였고, 7건(38.9%)은 의료비가 지출되었다고 응답한 경우였다. 7건 중 4건은 1만 원 미만의 소액이었고, 1만 원 이상의 세 건은 5만 원이 1건, 10만 원이 1건, 200만 원이 1건이었다. 200만 원이 소요된 사건은 앞서 언급한 입원 경험 피해자의 경우일 것이다.

〈표 4-20〉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의료비 총액

(단위: 건(%))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계
	강간	성추행	대인 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0원	1 (50.0)	-	3 (100.0_	-	7 (53.8)	-	11 (61.1)
3천 원	-	-	-	-	-	-	1 (5.6)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계
	강간	성추행	대인 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5천 원	1 (50.0)	-	-	-	2 (15.4)	-	3 (16.7)
5만 원	-	-	-	-	1 (7.7)	-	1 (5.6)
10만 원	-	-	-	-	1 (7.7)	-	1 (5.6)
200만 원	-	-	-	-	1 (7.7)	-	1 (5.6)
계	2 (100.0)	-	3 (100.0)	-	13 (100.0)	-	18 (100.0)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신체피해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받았는지 여부는 다음 〈표 4-21〉에 나타나 있다.

표를 보면, 치료비의 일부라도 가해자로부터 받아낸 경우는 18건 중 1건(5.6%)에 지나지 않았다.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17건 중 15건은 요구조차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 경우였다.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1건은 일부를 받아낸 경우였으며, 전체의 70%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표 4-21〉 가해자로부터의 신체상해 피해 배상 여부

단위: 건(%)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계
	강간	성추행	대인 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전부 받았다	-	-	-	-	-	-	-
일부 받았다	-	-	-	-	1 (7.7)	-	1 (5.6)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	-	1 (33.3)	-	-	-	1 (5.6)
요구했으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	-	-	1 (7.7)		1 (5.6)
요구하지 않았다	2 (100.0)	-	2 (66.7)	-	11 (84.6)	-	15 (83.3)
계	2 (100.0)	-	3 (100.0)	-	13 (100.0)	-	18 (100.0)

4. 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다음 〈표 4-22〉는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의 후유증을 나타낸 것이다.

〈표 4-22〉 폭력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단위: 건(%))

구분	성폭력 (N=18)		강도 (N=7)		폭행/상해 (N=28)		괴롭힘 (N=4)	전체 폭력피해 범죄 (N=57)
	강간 (N=2)	성추행 (N=16)	대인 강도 (N=5)	주거침입 강도 (N=2)	상해 폭행 (N=13)	무상해 폭행 (N=15)		
우울함 (무력감, 자신감 상실)	2 (100.0)	9 (56.3)	4 (80.0)	2 (100.0)	11 (84.6)	8 (53.3)	3 (75.0)	39 (68.4)
고립감 (외로움, 갇힌 느낌)	1 (50.0)	3 (18.8)	3 (60.0)	1 (50.0)	6 (46.2)	3 (20.0)	2 (50.0)	19 (33.3)
두려움 (공황상태, 쇼크)	1 (50.0)	14 (87.5)	3 (60.0)	2 (100.0)	9 (69.2)	10 (66.7)	1 (25.0)	40 (70.2)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1 (50.0)	7 (43.8)	–	2 (100.0)	5 (38.5)	4 (26.7)	1 (25.0)	20 (35.1)
사회생활 · 인간관계 곤란	1 (50.0)	1 (6.3)	–	2 (100.0)	3 (23.1)	1 (6.7)	2 (50.0)	10 (17.5)
이사 또는 전학	1 (50.0)	2 (12.5)	–	–	1 (7.7)	–	1 (25.0)	5 (8.8)
자살충동	–	1 (6.3)	–	–	–	–	1 (25.0)	2 (3.5)
자살시도	–	–	–	–	–	–	–	0 (0.0)
기타(억울하고 분함)	–	–	–	–	–	1 (6.7)	–	1 (1.8)

먼저 전체 57건에서 보면, 폭력범죄피해 이후 공황상태나 쇼크를 동반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40건, 70.2%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은 무력감과 자신감 상실을 동반한 우울함을 경험한 경우가 57건 중 39건(68.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등에 시달렸던 경우가 57건 중 20건(35.1%)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립감을 경험한 경우는 33.3%(57건 중 19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는 17.5%(10건), 범죄피해로 인해 이사 또는 전학을 가야했던 경우는 8.8%(5건) 등이었다. 자살충동 사례는 2건(3.5%)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 경험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표 4-23〉은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를 나타낸 표이다. 폭력피해 전체적으로 볼 때, 57건 중 6건(10.5%, 가중치 계산 시 10.7%)에서 폭력피해의 정신적으로 후유증으로 인한 시간 손실이 있었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23〉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단위: 건(%), 중복제외)

시간손실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있었다	-	3 (18.8)	-	1 (50.0)	1 (7.7)	1 (6.7)	-	6 (10.5)	17,448 (10.7)
없었다	2 (100.0)	13 (81.2)	5 (100.0)	1 (50.0)	12 (92.3)	14 (93.3)	4 (100.0)	51 (89.5)	146,248 (89.3)
계	2 (100.0)	16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7 (100.0)	163,696 (100.0)

다음 〈표 4-24〉은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서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거나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57명 중 1명(1.8%, 가중치 부여 시 1.2%)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한 사례는 성폭력 사건에서 보고된 것이었다.

〈표 4-24〉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심리상담 혹은 신경정신과 진료 경험

(단위: 건(%), 중복제외)

상담 /진료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있었다	-	1 (6.2)	-	-	-	-	-	1 (1.8)	2,038 (1.2)
없었다	2 (100.0)	15 (93.8)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6 (98.2)	161,658 (98.8)
계	2 (100.0)	16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7 (100.0)	163,696 (100.0)

제3절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1. 피해자의 특성

다음 〈표 4-25〉에서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남성이었던 사례는 57건 중 24건(42.1%, 가중치 부여 시 42.2%), 여성이었던 사례는 33건(57.9%, 가중치 부여 시 57.8%)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를 제외할 경우엔 남성의 피해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표 4-25〉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성별

(단위: 건(%), 중복제외)

성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남자	1 (50.0)	1 (6.2)	5 (100.0)	1 (50.0)	9 (69.2)	6 (40.0)	1 (25.0)	24 (42.1)	69,127 (42.2)
여자	1 (50.0)	15 (93.8)	-	1 (50.0)	4 (30.8)	9 (60.0)	3 (75.0)	33 (57.9)	94,568 (57.8)
계	2 (100.0)	16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7 (100.0)	163,696 (100.0)

다음 〈표 4-26〉은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구원가중치를 적용했을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10대(14세-19세)는 21.8%, 20대는 38.5%, 30대는 10.5%, 40대는 11.8%, 50대는 5.9%, 60대는 7.9%, 70대 이상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본의 연령분포와 비교해 보면, 어느 연령대가 자기 연령대의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4세에서 19세까지의 연령대는 원래대로라면 8.5% 정도이어야 하나, 폭력범죄피해율은 21.8%로 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인구 중에 20대는 약 15.4% 정도를 차지해야 하나, 폭력범죄피해율은 20대가 38.5%나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30대부터 70대 이상까지의 연령대에서는 그 인구에 피해 상대적으로 적은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다.

상세 범죄유형별로 볼 경우, 성폭력범죄피해와 대인강도범죄피해에서 10대 및 20대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정도가 다소 약하기는 하지만, 상해범죄피해에서의 10대와 20대의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행범죄피해는 10대와 20대에 치중되는 정도가 낮고 비교적 여러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6〉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연령대

(단위: 건(%))

연령대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 피해합계	가구원 가중치 적용	〈비교〉 기본 연령분포 (가중치)
	강간	성추행	대인 강도	주거 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10대 (14-19)	-	1 (6.2)	3 (60.0)	-	4 (30.8)	1 (6.7)	1 (25.0)	10 (17.5)	35,622 (21.8)	8.5%
20대 (20-29)	1 (50.0)	11 (68.8)	2 (40.0)	-	2 (15.4)	3 (20.0)	-	19 (33.3)	63,069 (38.5)	15.4%
30대 (30-39)	1 (50.0)	1 (6.2)	-	-	2 (15.4)	-	1 (25.0)	5 (8.8)	17,235 (10.5)	17.3%
40대 (40-49)	-	2 (12.5)	-	-	2 (15.4)	2 (13.3)	1 (25.0)	7 (12.3)	19,379 (11.8)	19.2%
50대 (50-59)	-	-	-	1 (50.0)	-	2 (13.3)	1 (25.0)	4 (7.0)	9,595 (5.9)	18.4%
60대 (60-69)	-	1 (6.2)	-	-	3 (23.1)	3 (20.0)	-	7 (12.3)	12,892 (7.9)	11.0%
70대 이상	-	-	-	1 (50.0)	-	4 (26.7)	-	5 (8.8)	5,904 (3.6)	10.2%
계	2 (100.0)	16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7 (100.0)	163,696 (100.0)	100.0%

다음 〈표 4-27〉은 폭력범죄피해자들의 혼인관계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이를 보면, 미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기혼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 분포에서 미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이나, 폭력범죄피해자들 중에서 미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1.3%에 달했다. 반대로 기혼자는 기본 분포에서 62.1%를 차지하나, 폭력범죄피해자들 중에서 는 29.9%에 지나지 않았다. 덧붙이자면, 앞서 살펴본 피해자 연령대 분포표에서 10대와 20대의 피해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이 표에서

미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27〉 폭력범죄피해자들의 혼인상태

(단위: 건(%))

성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 피해합계	가구원 가중치 적용	〈비교〉 기본 혼인분포 (가중치)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미혼	2 (100.0)	10 (62.5)	5 (100.0)	-	8 (61.5)	4 (26.7)	1 (25.0)	30 (52.6)	100,283 (61.3)	28.5%
기혼	-	5 (31.2)	-	1 (50.0)	4 (30.8)	7 (46.7)	2 (50.0)	19 (33.3)	48,937 (29.9)	62.1%
사별 /이혼	-	1 (6.2)	-	1 (50.0)	1 (7.7)	4 (26.7)	1 (25.0)	8 (14.0)	14,476 (8.8)	9.4%
계	2 (100.0)	16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7 (100.0)	163,696 (100.0)	100.0%

다음 〈표 4-28〉은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직업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이를 보면, 전체 폭력범죄피해 수준에서, 학생의 비중(가중치 36.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 종사자(26.6%), 서비스/판매 종사자(19.3%), 전업주부(6.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폭력범죄피해자 전체 분포에서 사무직이나 서비스판매종사자의 비중은 그 직업군이 차지하는 기본 분포와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직업군에서 특별히 더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편, 학생의 경우엔, 기본 분포(15.6%)보다 훨씬 높은 비율(36.2%)로 피해를 당한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전업주부의 경우엔 기본 분포(17.8%)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6.4%)로 피해를 당하였다.

학생의 비중은 특히 대인강도와 상해범죄피해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엔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학생의 비중이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8〉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직업

(단위: 건(%))

직업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 가중치 적용	〈비교〉 기본 직업분포 (가중치)
	강간	성추행	대인 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	-	-	1 (6.7)	-	1 (1.8)	1,636 (1.0)	3.4%
사무종사자	-	8 (50.0)	-	1 (50.0)	-	2 (13.3)	1 (25.0)	12 (21.1)	43,474 (26.6)	21.5%
서비스, 판매 종사자	2 (100.0)	3 (18.8)	-	-	4 (30.8)	-	2 (50.0)	11 (19.3)	31,609 (19.3)	19.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1 (6.2)	-	-	-	5 (33.3)	-	6 (10.5)	8,573 (5.2)	4.7%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	-	2 (15.4)	-	-	2 (3.5)	5,258 (3.2)	6.3%
단순노무종사자	-	-	-	-	-	-	-	-	-	3.0%
직업군인	-	-	-	-	-	-	-	-	-	0.2%
전업주부	-	1 (6.2)	-	1 (50.0)	1 (7.7)	2 (13.3)	-	5 (8.8)	10,445 (6.4)	17.8%
학생	-	3 (18.8)	5 (100.0)	-	6 (46.2)	2 (13.3)	1 (25.0)	17 (29.8)	59,268 (36.2)	15.6%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	-	-	-	-	3 (20.0)	-	3 (5.3)	3,434 (2.1)	8.0%
계	2 (100.0)	16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7 (100.0)	163,696 (100.0)	100.0%

다음 〈표 4-29〉는 위 〈표 4-28〉과 연관되는 표로, 응답자들이 각 직업 내에서 차지하는 종사상 지위를 나타난 것이다. 종사상 지위에서 전업주부나 학생, 무직 등의 해당없음 범주가 44.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임금근로자(42.8%), 자영업자(7.9%), 무급가족종사자(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본 분포와 비교해보면, 가중치 적용 기준으로 볼 때, 임금근로자는 기본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해당없음 범주는 기본 분포보다 약간 많게(주로 학생의 영향), 자영업자는 기본 분포보다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4-29〉 폭력범죄피해자들의 종사상 지위

(단위: 건(%))

종사상 지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 피해합계	가구원 가중치 적용	〈비교〉 기본 지위분포 (가중치)
	강간	성추행	대인 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임금 근로자	2 (100.0)	11 (68.8)	-	1 (50.0)	3 (23.1)	2 (13.3)	2 (50.0)	21 (36.8)	70,071 (42.8)	42.7%
자영업자	-	1 (6.2)	-	-	2 (15.4)	3 (20.0)	1 (25.0)	7 (12.3)	12,869 (7.9)	12.8%
무급가족 종사자	-	-	-	-	1 (7.7)	3 (20.0)	-	4 (7.0)	7,609 (4.6)	3.1%
해당없음 (전업주부, 학생,무직 등)	-	4 (25.0)	5 (100.0)	1 (50.0)	7 (53.8)	7 (46.7)	1 (25.0)	25 (43.9)	73,146 (44.7)	41.3%
계	2 (100.0)	16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7 (100.0)	163,696 (100.0)	100.0%

다음 〈표 4-30〉은 폭력범죄피해자들이 속한 가족의 형태(세대 구성)를 살펴본 표이다. 여기서도 단순히 폭력범죄피해자들만의 분포만을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기본 분포(합계 부분) 혹은 폭력범죄피해자 이외의 응답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폭력범죄피해와 관련하여, 비교적 두드러지는 세대의 구성은 한부모와 자녀로 되어 있는 가족과 조부모와 손자녀로 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부모와 자녀로 되어 있는 가족은 기본 분포에서 9.8%를 차지하나 폭력범죄피해자들 중에서는 20.7%나 차지하였고, 조부모와 손자녀로 되어 있는 가족은 기본 분포에서 0.6%를 차지하나 폭력범죄피해자들 중에서는 3.4%를 차지하였다. 이를 상쇄하는 가족 형태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세대 구성인 부부와 자녀, 그리고 부부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부와 자녀의 경우 기본 분포에서 51.4%를 차지하나 폭력범죄피해자들 중에서는 42.8%만 차지하였고, 부부 가족의 경우엔 기본 분포에서 16.2%를 차지하나 폭력범죄피해자들 중에서는 13.8%만 차지하였다.

〈표 4-30〉 폭력범죄피해자들과 나머지 응답자들 사이의 세대구성 차이

(단위: 건(%))

세대구성	폭력범죄피해자		나머지 응답자		합계	
	표본	가구원가중치	표본	가구원가중치	표본	가구원가중치
1인 가구	12 (21.1)	26,607 (16.3)	84 (16.9)	214,601 (14.8)	96 (17.3)	241,208 (15.0)
부부	10 (17.5)	22,625 (13.8)	90 (18.1)	239,291 (16.5)	100 (18.0)	261,916 (16.2)
부부와 자녀	21 (36.8)	70,119 (42.8)	240 (48.2)	759,216 (52.4)	261 (47.0)	829,335 (51.4)
한부모와 자녀	10 (17.5)	33,860 (20.7)	44 (8.8)	124,464 (8.6)	54 (9.7)	158,324 (9.8)
3세대 이상 가구	1 (1.8)	682 (0.4)	26 (5.2)	75,588 (5.2)	27 (4.9)	76,270 (4.7)
형제자매 가구	-	-	3 (0.6)	11,101 (0.8)	3 (0.5)	11,101 (0.7)
조부모와 손자녀	2 (3.5)	5,582 (3.4)	2 (0.4)	3,814 (0.3)	4 (0.7)	9,396 (0.6)
비혈연/기타	1 (1.8)	4,221 (2.6)	9 (1.8)	20,930 (1.4)	10 (1.8)	25,151 (1.6)
계	57 (100.0)	163,696 (100.0)	498 (100.0)	1,449,005 (100.0)	555 (100.0)	1,612,701 (100.0)

2. 피해자가 인지한 가해자의 특성

설문조사의 한계로 가해자의 특성에 정보는 부득이하게 피해자가 인지한 수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에 보게 될 폭력범죄의 가해자 특성은 피해자가 인지한 가해자의 특성이라는 점에 먼저 유의하고 해석하기 바란다.

먼저 〈표 4-31〉에서는 폭력범죄피해자들의 가해자 인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의 가해자 인지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막연하게라도 가해자에 대한 무언가를 알았는지, 즉 가해자의 수라든가 가해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서라든가 혹은 가해자가 젊었는지 늙었는지 등에 대해 알았는지 여부를 뜻한다. 따라서 〈표 4-31〉에 나타난 응답 결과는 피해자가 그 어떤 식으로든 가해자에 대한 무언가를 아는지에 대한 것이다.

표를 보면, 전체 폭력범죄피해 57건 중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에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었던 경우는 56건(98.2%, 가구원가중치 적용 시 97.6%)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는 1건(1.8%, 2.4%로 추정)이었다. 이처럼 표에 나타난 가해자 인지 비율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폭력성 범죄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나, 인지 비율이 매우 높게 나오긴 하였다.

〈표 4-31〉 폭력범죄피해자들의 가해자 인지 여부

(단위: 건(%))

가해자 인지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예	2 (100.0)	15 (93.8)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6 (98.2)	159,825 (97.6)
아니오	-	1 (6.2)	-	-	-	-	-	1 (1.8)	3,871 (2.4)
계	2 (100.0)	16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7 (100.0)	163,696 (100.0)

다음 〈표 4-32〉에는 폭죄범죄피해자들이 어떻게 가해자를 인지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인지한 사건 전체 56건 중 55건(98.2%, 가구원가중치 99.6%)은 '내가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였다. 나머지 1건만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 알게 된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였다.

〈표 4-32〉 폭력범죄피해자들의 가해자 인지 경위

(단위: 건(%))

가해자 인지경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 가중치 적용
	강간	성추행	대인 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내가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	2 (100.0)	14 (93.3)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5 (98.2)	159,144 (99.6)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	-	1 (6.7)	-	-	-	-	-	1 (1.8)	682 (0.4)
계	2 (100.0)	15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6 (100.0)	159,825 (100.0)

다음으로 〈표 4-33〉에 제시된 내용들은 폭력범죄피해자들이 인지한 가해자의 수에 관한 것이다. 가해자가 누군지 알았던 사례 56건 중에서 40건(71.4%, 가구원가중치 추정 67.3%)은 가해자 수가 1명이었고, 7건(12.5%, 가구원가중치 13.8% 추정)은 그 수가 2명인 경우였으며, 나머지 9건(16.1%, 가중치 18.9%)에서는 가해자가 3명 이상이었다.

성폭력범죄나 주거침입강도범죄, 괴롭힘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가해자 수가 1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가해자 수가 적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상해범죄 및 대인강도범죄에서는 앞의 두 유형에 비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가해자 수가 많은 편이었다고 할 만하다.

〈표 4-33〉 폭력범죄 가해자의 수

(단위: 건(%))

가해자수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1명	2 (100.0)	13 (86.7)	2 (40.0)	2 (100.0)	7 (53.8)	11 (73.3)	3 (75.0)	40 (71.4)	107,582 (67.3)
2명	-	1 (6.7)	1 (20.0)	-	2 (15.4)	3 (20.0)	-	7 (12.5)	21,980 (13.8)
3명	-	1 (6.7)	1 (20.0)	-	4 (30.8)	-	1 (25.0)	7 (12.5)	22,213 (13.9)
5명	-	-	1 (20.0)	-	-	-	-	1 (1.8)	3,513 (2.2)
10명	-	-	-	-	-	1 (6.7)	-	1 (1.8)	4,537 (2.8)
계	2 (100.0)	15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6 (100.0)	159,825 (100.0)

폭력범죄피해자들이 인지한 가해자들의 성별은 다음 〈표 4-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가해자 인지 사례 56건 중 50건(89.3%, 가구원가중치 87.6%로 추정)에서의 가해자가 남성이었고, 4건(7.1%, 가구원가중치 8.5%로 추정)에서는 여성, 2건(3.6%, 가중치 3.8%)에서는 남녀가 섞인 가해자들인 경우였다. 전반적으로 남성 가해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폭력의 경우, 17건 중 16건에서 가해자가 남성이었지만 여성 가해자도 1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의 경우엔, 사례수가

적긴 하지만, 7건 모두 가해자가 남성이었다. 폭행/상해범죄의 경우엔, 앞의 두 유형에 비해 여성 가해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나, 그래도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남성 가해자 비율은 2012년 기준 조사 결과(김은경 외, 2013:159)보다도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표 4-34〉 폭력범죄 가해자 성별

(단위: 건(%))

가해자 성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남자	2 (100.0)	14 (93.3)	5 (100.0)	2 (100.0)	12 (92.3)	13 (86.7)	2 (50.0)	50 (89.3)	140,077 (87.6)
여자	-	1 (6.7)	-	-	1 (7.7)	-	2 (50.0)	4 (7.1)	13,615 (8.5)
남녀모두	-	-	-	-	-	2 (13.3)	-	2 (3.6)	6,133 (3.8)
계	2 (100.0)	15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6 (100.0)	159,825 (100.0)

다음 〈표 4-35〉에서는 폭력범죄피해자들이 인지한 가해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50대 가해자의 비중(21.4%)이 가장 높았다. 50대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성폭력범죄에서도 가장 높았다.

앞서 제시한 바 있던 〈표 4-29〉에 나타난 연령의 기본 분포와 비교해 봐도, 50대 가해자의 비율은 50대의 기본 비중(18.4%)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식의 비교를 할 경우, 기본 연령대 비중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연령대는 10대이다. 10대는 기본 분포에서 8.5%를 차지하지만, 가해자 연령 분포에서는 거의 20%대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반면, 20대의 경우엔 기본 연령 분포에서의 비중(15.4%)보다 낮은 비율(10.7%)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앞의 〈표 4-26〉과 결합해 보자면, 적어도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10대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도 많고 가해자도 많은 연령대이고, 20대는 폭력범죄피해자는 많지만 가해자는 적은 연령대이며, 50대는 가해자는 많지만 피해자는 적은 연령대라고 말해 볼 수 있겠다.

〈표 4-35〉 폭력범죄 가해자 연령

(단위: 건(%))

가해자 연령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10대중반	-	1 (6.7)	-	-	2 (15.4)	-	-	3 (5.4)
10대후반	-	-	4 (80.0)	-	3 (23.1)	-	1 (25.0)	8 (14.3)
20대	-	3 (20.0)	1 (20.0)	-	-	2 (13.3)	-	6 (10.7)
30대	-	2 (13.3)	-	-	2 (15.4)	1 (6.7)	2 (50.0)	7 (12.5)
40대	-	2 (13.3)	-	-	2 (15.4)	6 (40.0)	-	10 (17.9)
50대	1 (50.0)	5 (33.3)	-	1 (50.0)	1 (7.7)	3 (20.0)	1 (25.0)	12 (21.4)
60대이상	-	-	-	-	3 (23.1)	2 (13.3)	-	5 (8.9)
모르겠다	1 (50.0)	2 (13.3)	-	1 (50.0)	-	1 (6.7)	-	5 (8.9)
계	2 (100.0)	15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	56 (100.0)

폭력성범죄 가해자 특성 중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 가해자의 음주 여부를 살펴보자면, 다음 〈표 4-3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범행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경우는 56건 중 19건(33.9%, 가구원가중치 35.0%로 추정)이었다. 성폭력범죄(강간+성추행)의 경우엔 17건 중 4건(23.5%), 폭행은 15건 중 4건(26.7%), 상해범죄는 13건 중 9건(69.2%)에서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상해범죄에서의 가해자 음주 경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다.

〈표 4-36〉 폭력범죄 가해자 음주상태

(단위: 건(%))

가해자 음주상태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폭력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그렇다	1 (50.0)	3 (20.0)	-	-	9 (69.2)	4 (26.7)	2 (50.0)	19 (33.9)	56,014 (35.0)
아니다	-	4 (26.7)	5 (100.0)	2 (100.0)	3 (23.1)	10 (66.7)	2 (50.0)	26 (46.4)	71,760 (44.9)
모르겠다	1 (50.0)	8 (53.3)	-	-	1 (7.7)	1 (6.7)	-	11 (19.6)	32,052 (20.1)
계	2 (100.0)	15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6 (100.0)	159,825 (100.0)

앞서 살펴보았던 피해자들의 음주 여부에서는 18.3%(가구원가중치 기준, 〈표 4-10〉 참조)의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 술을 마셨던 것을 상기해 보자면, 범행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다음 〈표 4-37〉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폭력범죄피해 전체 56건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경우는 30건으로 그 비중은 53.6%이다.

〈표 4-37〉 폭력범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단위: 건(%))

피해-가해 관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합계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친인척 (가족포함)	1 (50.0)	-	-	-	2 (15.4)	-	-	3 (5.4)
아는사람 (친인척제외)	1 (50.0)	1 (6.7)	3 (60.0)	-	7 (53.8)	7 (46.7)	4 (100.0)	23 (41.1)
모르는사람	-	14 (93.3)	2 (40.0)	2 (100.0)	4 (30.8)	8 (53.3)	-	30 (53.6)
계	2 (100.0)	15 (100.0)	5 (100.0)	2 (100.0)	13 (100.0)	15 (100.0)	4 (100.0)	56 (100.0)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인 경우는 46% 가량이 된다.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는 다시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를 크게 '가족 혹은 친인척'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지인)의 두 집단으로 나눌 경우,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가족 혹은 친인척이었던 경우는 56건 중 3건(5.4%)이었고, 그 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던 경우는 56건 중 23건(53.6%)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었던 경우를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자면, 다음 〈표 4-3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범주에 속하는 3건의 사례 중 1건은 부모 혹은 조부모였고 이 때의 범죄유형은 강간이었다. 또 다른 한 건은 부부 사이의 상해범죄였으며, 나머지 한 건은 전남편 혹은 전처의 상해범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폭력범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중 가족-친인척 세분

(단위: 건(%))

피해-가해 관계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괴롭힘	합계
부부	-	-	-	-	1 (50.0)	-	-	1 (33.3)
(조)부모	1 (100.0)	-	-	-	-	-	-	1 (33.3)
전남편/전처	-	-	-	-	1 (50.0)	-	-	1 (33.3)
계	1 (100.0)	-	-	-	2 (100.0)	-	-	3 (100.0)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인 경우를 다시 세분화해서 분석하면 다음의 〈표 4-3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39〉 폭력범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중 가족-친인척 외 아는 사람 세분

(단위: 건(%))

피해-가해 관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괴롭힘	합계
	강간	성추행	대인강도	주거침입 강도	상해	폭행 (무상해)		
친구	-	-	-	-	1 (14.3)	-	1 (25.0)	2 (8.7)
학교선후배	-	-	2 (66.7)	-	4 (57.1)	-	-	6 (26.1)
직장동료	-	-	-	-	-	-	1 (25.0)	1 (4.3)
직장상사	-	1 (100.0)	-	-	-	-	-	1 (4.3)
잘 아는 이웃	-	-	-	-	2 (28.6)	5 (71.4)	1 (25.0)	8 (34.8)
얼굴만 아는 사람	1 (100.0)	-	1 (33.3)	-	-	2 (28.6)	1 (25.0)	5 (21.7)
계	1 (100.0)	1 (100.0)	3 (100.0)	-	7 (100.0)	7 (100.00	4 (100.0)	23 (100.0)

표를 보면, 23건 중 8건(34.8%)은 잘 아는 이웃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학교선후배가 6건(26.1%), 얼굴만 아는 사람 5건(21.7%)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범죄에서는 잘 아는 이웃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상해범죄에서는 학교선후배가 가해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5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재산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결과

황 지 태

제5장

재산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결과

이 장에서는 2014년 한 해 동안의 재산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해온 바와 같이, 본고에서 재산범죄피해는 절도피해, 사기피해, 손괴피해와 기타피해(단순 주거침입 범죄피해)로 구분하였다. 2014년 재산범죄피해는 14,976명의 응답자 중에서 498건(3.3%)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13,317명의 응답자 중에서 509건(3.8%)이 보고된 2012년도의 재산범죄피해(김은경 외, 2013:116)보다 다소 감소한 결과이다. 2014년도 재산범죄피해의 발생 실태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도로 살펴본 후, 2012년도 조사 결과와 여러 차원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제1절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 사건발생 일시

다음 〈표 5-1〉은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에서 포착된 재산범죄피해를 발생 계절별로 살펴본 것이다. 표를 보면, 조사된 재산범죄피해 유형들의 합계로 따지면 가을(9월~11월)에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기범죄와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합계 365건 중 129건으로 표본 상으로는 35.3%, 가구원가중치 적용 추정치로는 35.0%에 해당한다. 그 다음이 여름(표본 32.1%, 가중치 32.3%)이었다. 그런데, 제3장에서 살펴본 폭력범죄피해와 2012년도의 재산범죄피해는 모두 여름(6월~8월)에 가장 많았다. 2014년도의 재산범죄피해 중에

서도 절도의 경우는 가구원가중치 비중이 34.2%로 여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4년도에 전체 재산범죄피해에의 발생 계절에서 가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데에는 손괴범죄피해의 증가[46]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하지만, 계산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위적으로 나눈 여름과 가을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가을의 발생 비중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여름과 가을의 재산범죄피해 발생 비중(가중치 비율 67.3%)이 봄과 겨울의 재산범죄피해 발생 비중(32.8%)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은 2012년도 기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김은경 외, 2013: 174).

〈표 5-1〉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계절

(단위: 건(%, 유효퍼센트))

구분	절도		사기2)		손괴		기타 (단순주거침입)		재산범죄피해 합계[3]	
	표본 사례	가구원 가중치	표본 사례	가구원 가중치	표본 사례	가구원 가중치	표본 사례	가구원 가중치	표본 사례	가구원 가중치
봄(3~5월)	59 (25.1)	175,972 (25.1)	-	-	19 (16.8)	41,340 (14.1)	0 (0.0)	0 (0.0)	78 (21.4)	217,312 (21.1)
여름(6~8월)	80 (34.0)	239,484 (34.2)	-	-	31 (27.4)	80,419 (27.4)	6 (35.3)	13,006 (33.6)	117 (32.1)	332,909 (32.3)
가을(9~11월)	75 (31.9)	221,117 (31.6)	-	-	44 (38.9)	116,190 (39.6)	10 (58.8)	23,740 (61.3)	129 (35.3)	361,047 (35.0)
겨울(12~2월)	21 (8.9)	63,504 (9.1)	-	-	19 (16.8)	55,102 (18.8)	1 (5.9)	1,968 (5.1)	41 (11.2)	120,574 (11.7)
무응답	1	-	132	-	-	-	-	-	133	-
유효계[1]	235 (100.0)	700,077 (100.0)	-	-	113 (100.0)	293,051 (100.0)	17 (100.0)	38,714 (100.0)	365 (100.0)	1,031,842 (100.0)

1) 합계와 백분율은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사례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2) 사기범죄피해는 발생시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문의 구조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3) 사기범죄피해 132건과 절도범죄피해에서의 무응답 1건, 그리고 나머지 365건을 모두 합치면 498건이 된다.

46) 2012년에 87건(표본 피해율 0.65%)이었던 손괴피해는 2014년에 113건(0.75%)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여름 발생 비율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는 절도의 경우는 278건(2.09%)에서 235건(1.57%)으로 감소하였다.

다음 〈표 5-2〉에서는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하루 중의 시각을 정리해 보았다. 원래 설문지에서는 3시간 단위로 나뉜 것을 이 표에서는 6시간 단위로 묶어서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사기범죄를 제외한 전체 재산범죄 수준에서 보면,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하지 않고 표본 수치를 액면 그대로 볼 경우, 정오(12시)부터 오후 6시(18시)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비중이 365건 중 87건(23.8%)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저녁(18시)부터 밤(24시) 사이로 79건(21.6%)이 그 시각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하면 두 시간대의 순서가 뒤바뀐다. 즉 저녁-밤(18시~24시)이 25.4%로 가장 높아지고, 그 다음이 한낮-오후(12시~18시, 22.5%)가 된다.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사례는 74건, 20.2%(가중치 부여 시 18.2%로 추정)나 되었고,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사례는 41건, 11.2%(가중치 부여 시 11.1%로 추정)였으며,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40건, 10.9%(가중치 부여 시 9.4%)에 이른다.

정확한 시각은 모르지만 적어도 밤낮을 구별하는 경우까지 고려했을 때, 재산범죄 전반에서 밤 시간대(18시~06시)에 발생한 피해의 비중은 366건 중 178건, 48.6%(가중치 부여 시 50.5%로 추정)이고, 낮 시간대(06시~18시)에 발생한 피해의 비중은 107건, 29.3%(가중치 부여 시 28.8%로 추정)이며, 그 나머지가 40건, 10.9%,(가중치 부여 시 9.4%)이었다. 밤낮을 구별 못하는 경우를 제외할 경우, 밤 시간대(18시~06시)의 비중이 낮 시간대(06시~18시)의 비중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은 2012년도 기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김은경 외, 2013:175).

〈표 5-2〉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각

(단위: 건(%))

구분	절도	사기[1]	손괴	기타	재산범죄 피해 합계[2]	가구원 가중치 적용
아침-오전(06~12시)	9 (3.8)	-	10 (8.8)	1 (5.9)	20 (5.5)	65,722 (6.3)
한낮-오후(12~18시)	67 (28.4)	-	17 (15.1)	3 (17.7)	87 (23.8)	233,372 (22.5)
저녁-밤(18~24시)	55 (23.3)	-	20 (17.7)	4 (23.6)	79 (21.6)	263,659 (25.4)
심야-새벽(00~06시)	14 (5.9)	-	8 (7.1)	3 (17.7)	25 (6.9)	72,325 (6.9)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34 (14.4)	-	4 (3.5)	3 (17.6)	41 (11.2)	115,670 (11.1)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33 (14.0)	-	38 (33.6)	3 (17.6)	74 (20.2)	189,189 (18.2)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24 (10.2)	-	16 (14.2)	0 (0.0)	40 (10.9)	97,989 (9.4)
유효계	236 (100.0)	132	113 (100.0)	17 (100.0)	366 (100.0)	1,037,926 (100.0)

1) 사기범죄피해는 발생시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문의 구조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2) 사기범죄피해 132건과 유효계의 366건을 합치면 전체 재산범죄피해 건수인 498건이 된다.

재산범죄피해의 하위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손괴피해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손괴에서는 특히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비중(113건 중 38건, 33.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2년도 기준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며(김은경 외, 2013:175), 주로 자동차손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절도범죄피해의 경우엔 한낮-오후(12시~18시)의 비중이 236건 중 67건, 28.4%로 다른 시간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에 나타내 보이지는 않았으나, 절도범죄 중 대인절도피해와 자동차부품절도피해는 밤에 발생한 경우가 많고, 주거침입절도피해는 낮에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7]

다음 〈표 5-3〉에서는 밤(18시~06시)과 낮(06시~18시), 그리고 '밤낮조차 구별

47) 대인절도는 125건의 피해 중에서 66건(52.8%)이 밤(18시~06시)에, 47건(37.6%)은 낮(06시~18시)에, 12건(9.6%)은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비해 주거침입절도는 98건의 피해 중에서 26건(26.5%)만이 밤에 발생했고, 61건(62.2%)은 낮에 발생하였으며, 11건(11.2%)은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이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은 2012년도 기준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김은경 외, 2013:175).

못함'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다시 묶어본 다음, 더 나아가 이를 폭력범죄피해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표에 나타난 바로는, 재산범죄(사기범죄는 제외)피해이든 폭력범죄피해이든 모두 밤 시각(18시~06시)에 발생한 사건이 낮 시각(06시~18시)에 발생한 사건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5-3〉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피해 발생 밤낮 시각 비교

(단위: 건(%))

구분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사기피해 제외)	
	피해 표본수	가구원가중치	피해 표본수	가구원가중치
낮(06시~18시)	20 (35.2)	52,317 (32.0)	148 (40.5)	414,764 (39.9)
밤(18시~06시)	37 (65.0)	111,379 (68.1)	178 (48.7)	525,173 (50.5)
밤낮 구별 못함	0 (0.0)	0 (0.0)	40 (10.9)	97,989 (9.4)
계	57 (100.0)	163,696 (100.0)	366 (100.0)	1,037,926 (100.0)

하지만, 다소의 정도 차이는 있는데, 폭력범죄피해가 재산범죄피해보다 밤 시각에 발생하는 사건의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폭력범죄피해는 밤 시각에 68.1%(가구원가중치)가 발생했지만, 재산범죄피해는 밤 시각에 50.5%가 발생했던 것이다.

2.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다음 〈표 5-4〉는 재산범죄피해(사기피해는 제외)가 발생한 구체적 장소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한 결과이다. 우선, 재산범죄 전체로 보자면, 자기 집이든 타인의 집이든 피해 장소가 '집'인 경우가 360건 중 130건(36.1%, 가구원가중치 32.0%로 추정)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주택가'가 26.1%(가중치 26.7%), '주차장'이 15.3%(가중치 15.6%)의 순이었다. 참고로, 여기까지의 순위는 2012년도 기준 조사와 동일하다. 2012년도와 비교해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학교'가 좀 더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인데, 2012년도에 주차장 다음 순위였던 학교(3.1%, 가중치 4.3%)는 이번 조사에서는 '인구 밀집 상업지'(9.2%, 가중치 9.6%), '야외나

공원 및 대중교통시설 등'(7.2%, 가중치 9.7%)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 밖에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등'은 1.4%(가중치 0.9%), '그 외의 장소'가 1.7%(가중치 1.1%)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절도범죄피해의 경우, '집'이 42.0%(231건 중 97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주택가나 그 인접도로'(20.3%), '인구밀집 상업지'(12.1%), '야외나 공원 및 대중교통시설 등'(9.1%), '주차장'(8.2%) 등의 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손괴의 경우엔 '주택가'(112건 중 47건, 42.0%)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자기 집 주변에 세워둔 차량 손괴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은 '주차장'(36건, 32.1%)이었다. 그 외의 장소들에서도 손괴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앞의 두 장소가 거의 대부분의 손괴피해 장소라 할 만하다.

〈표 5-4〉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

(단위: 건(%, 유효퍼센트))

구분	절도	손괴	기타	재산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집(자기집, 가해자집 등)	97 (42.0)	16 (14.3)	17 (100.0)	130 (36.1)	324,158 (32.0)
주택가나 그 인접도로	47 (20.3)	47 (42.0)	-	94 (26.1)	270,209 (26.7)
학교	10 (4.3)	1 (0.9)	-	11 (3.1)	43,588 (4.3)
주차장	19 (8.2)	36 (32.1)	-	55 (15.3)	158,336 (15.6)
인구 밀집 상업지	28 (12.1)	5 (4.5)	-	33 (9.2)	97,495 (9.6)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3 (1.3)	2 (1.8)	-	5 (1.4)	9,558 (0.9)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21 (9.1)	5 (4.5)	-	26 (7.2)	98,146 (9.7)
그 외의 장소	6 (2.6)	-	-	6 (1.7)	11,501 (1.1)
무응답	4	1	-	5	-
유효계	231 (100.0)	112 (100.0)	17 (100.0)	360 (100.0)	1,012,991 (100.0)

다음 〈표 5-5〉에서는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가 피해자 자신의 직장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재산범죄피해(사기범죄는 제외) 전체로 보면, 피해 장소가 자기 직장이었던 경우는 360건 중 30건(8.3%)으로 가구원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할 경우 약 6.6%에 해당한다.

〈표 5-5〉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의 자기 직장 여부

구분		절도	손괴	기타	재산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자기 직장 자기 영업점	그렇다	21 (9.1)	7 (6.2)	2 (11.8)	30 (8.3)	66,578 (6.6)
	아니다	210 (90.9)	105 (93.8)	15 (88.2)	330 (91.7)	946,411 (93.4)
계		231 (100.0)	112 (100.0)	17 (100.0)	360 (100.0)	1,012,989 (100.0)

하위유형별로 살펴보자면, 절도범죄피해의 경우엔 자기 직장인 경우가 9.1%(231건 중 21건), 손괴범죄피해의 경우엔 112건 중 7건(6.2%)에서 그와 같은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제2절 피해 내용 및 피해결과

앞의 제1절에서는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범죄유형을 엄밀하게 나누지 않아도 되었으나, 범죄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절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유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1. 절도범죄피해의 내용 및 결과

먼저 〈표 5-6〉에서는 각 상세 유형별 절도범죄가 그것들을 모두 합산한 전체 절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표를 보면, 대인절도는 전체 절도범죄 236건 중 125건(53.0%, 가구원가중치 부여 시 57.1%로 추정), 주거침입절도는 98건(41.5%,

가중치 부여 시 37.2%로 추정), 자동차절도 및 자동차부품절도는 13건(5.5%, 가구원 가중치 부여 시 5.7%로 추정) 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5-6〉 절도범죄피해 유형 상세 분류

(단위: 건(%))

구분	절도범죄			
	대인절도	주거침입절도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절도범죄피해 합계
피해 표본건수	125 (53.0)	98 (41.5)	13 (5.5)	236 (100.0)
가구원가중치 적용	403,341 (57.1)	262,797 (37.2)	40,026 (5.7)	706,163 (100.0)

다음으로 〈표 5-7〉에서는 각 절도범죄들의 기수와 미수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5-7〉 절도범죄 기수와 미수

(단위: 건(%))

구분	절도범죄				
	대인절도	주거침입절도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절도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기수 (피해당함)	119 (95.2)	90 (91.8)	12 (92.3)	221 (93.6)	668,127 (94.6)
미수 (피해당할 뻔함)	6 (4.8)	8 (8.2)	1 (7.7)	15 (6.4)	38,036 (5.4)
계	125 (100.0)	98 (100.0)	13 (100.0)	236 (100.0)	706,163 (100.0)

절도범죄피해 합계부터 보자면, 236건의 절도범죄 중 15건(6.4%, 가중치 부여 시 5.4%)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고, 221건(93.6%, 가중치 부여 시 94.6%)은 실제 절도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였다. 상세 유형별로 볼 경우, 대인절도는 125건 중 119건(95.2%), 주거침입절도는 98건 중 90건(9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절도는 13건 중 12건(92.3%)이 기수범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가구 대상 절도보다는 대인절도에서의 기수범죄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 〈표 5-8〉은 절도범죄 기수사건 중에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관한 표이다. 우선 전체 절도범죄의 차원에서 보면, 피해사건의 56.1%(221건 중 124

건, 가중치 부여 시 58.9%)는 피해발생 당시에 피해 사실을 알았고, 34.8%(221건 중 77건, 가중치 34.0%)는 피해발생 후 1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를 합치면 221건 중 201건으로 전체 중 90.9%(가중치 92.9%)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한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2~3일 이내였던 경우는 221건 중 8건(3.6%, 가중치 2.5%), 3일 초과 1주 이내였던 경우는 6건(2.7%, 가중치 3.1%), 2주 이내였던 경우는 1건(0.5%, 가중치 0.1%), 1개월이 초과한 이후에 알게 된 경우는 5건(2.3%, 가중치 1.4%)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3~4주 이내였던 경우는 표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표에서는 제외함).

〈표 5-8〉 절도범죄 기수사건 상세유형별 피해사실 인지 시점

(단위: 건(%))

구분	절도범죄				
	대인절도	주거침입절도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절도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피해발생 당시	68 (57.1)	50 (55.6)	6 (50.0)	124 (56.1)	393,782 (58.9)
1일 이내	42 (35.3)	29 (32.2)	6 (50.0)	77 (34.8)	227,165 (34.0)
피해당시와 1일 이내 소계 백분율	110 (92.4)	79 (87.8)	12 (100.0)	201 (90.9)	620,947 (92.9)
2~3일 이내	4 (3.4)	4 (4.4)	-	8 (3.6)	17,010 (2.5)
1주 이내	3 (2.5)	3 (3.3)	-	6 (2.7)	20,517 (3.1)
2주 이내	1 (0.8)	0	-	1 (0.5)	568 (0.1)
1개월 이후	1 (0.8)	4 (4.4)	-	5 (2.3)	9,086 (1.4)
계	119 (100.0)	90 (100.00	12 (100.0)	221 (100.0)	668,127 (100.0)

하위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절도 및 자동차부품절도피해의 경우엔 12건 모두 피해 당시 및 1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절도는 92.4%(119건 중 110건), 주거침입절도는 87.8%(90건 중 79건)가 피해 당시 및 1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인절도보다 주거침입절도의 경우에

피해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가 좀 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표 5-9〉는 절도범죄피해사건들(기수사례만 포함)에서 절도피해의 물품을 분류해 본 것이다. 전체 절도부터 보자면, 현금성 물품, 즉 현금이나 수표 혹은 상품권 등에 대한 절도피해를 당한 경우가 272건(중복응답 허용) 중 73건, 2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절도피해 품목으로는 자전거가 많았는데, 이는 272건 중 44건으로 16.2%의 비중이다. 그 나머지 순서는, 일단 기타를 제외할 경우, 지갑이나 핸드백, 가방(37건, 13.6%: 이 경우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과의 중복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 귀금속이나 도자기 등(28건, 10.3%), 휴대폰이나 노트북(27건, 9.9%),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14건, 5.1%), 자동차부품(6건, 2.2%), 오토바이를 포함하는 차량(6건, 2.2%), TV나 DVD 혹은 오디오 등의 대형 가전용품(3건, 1.1%)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 물품의 경우는 272건 중 34건으로 12.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절도범죄 기수사건 피해물품 (중복응답)

(단위: 건(%), 중복포함)

구분	절도범죄			
	대인절도	주거침입절도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절도범죄피해 합계
자전거(+부속품)	30 (20.0)	14 (12.8)	-	44 (16.2)
차량(+오토바이)	-	-	6 (46.2)	6 (2.2)
현금(+수표, 상품권)	35 (23.3)	38 (34.9)	-	73 (26.8)
신용카드(+현금카드)	11 (7.3)	3 (2.8)	-	14 (5.1)
지갑(+핸드백,가방)	29 (19.3)	7 (6.4)	1 (7.7)	37 (13.6)
휴대폰, 노트북 등	22 (14.7)	5 (4.6)	-	27 (9.9)
자동차부품	-	-	6 (46.2)	6 (2.2)
TV, DVD, 오디오 등	1 (0.7)	2 (1.8)	-	3 (1.1)

구분	절도범죄			
	대인절도	주거침입절도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절도범죄피해 합계
귀금속, 도자기 등	4 (2.7)	24 (22.0)	-	28 (10.3)
기타	18 (12.0)	16 (14.7)		34 (12.5)
계	150 (100.0)	109 (100.0)	13 (100.0)	272 (100.0)

하위 범죄유형별로 피해물품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인절도범죄피해의 경우 현금이나 수표 혹은 상품권 등에 대한 절도피해를 당한 경우가 150건 중 35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전거(30건, 20.0%), 지갑이나 핸드백, 가방(29건, 19.3%), 휴대폰이나 노트북(22건, 14.7%), 신용카드나 현금카드(11건, 7.3%), 귀금속 등(4건, 2.7%)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기타의 경우가 12.0%(18건)를 차지하였다.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현금이나 수표 및 상품권이 109건 중 38건(34.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나머지 다른 절도유형에서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그 다음은 귀금속 등(24건, 22.0%), 자전거나 그 부속품(14건, 12.8%), 지갑이나 핸드백, 가방(7건, 6.4%), 휴대폰이나 노트북(5건, 4.6%), 신용카드나 현금카드(3건, 2.8%), TV나 DVD 혹은 오디오 등의 대형 가전용품(2건, 1.8%)의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는 14.7%(16건)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5-10〉에서는 절도범죄피해자들이 입은 재산 피해액의 평균치를 살펴보았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례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절도범죄 전체 평균으로 보면 그 평균 피해액은 1건당 약 93만5천 원이다. 최소피해액은 4천 원이고, 최대피해액은 1억 원이었다.

절도범죄 하위유형 중 평균 피해액이 가장 높았던 경우는 단연 주거침입절도로 그 평균이 약 185만9천 원에 이르렀다. 그 경우, 편차 역시 컸는데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억만 원까지 그 피해액수는 다양했으며, 그에 따라 표준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피해액이 컸던 유형은 자동차절도(자동차부품절도 포함)였는데, 그 평균 피해액은 55만3천 원이었다. 최대값이 200만 원인 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자동차부품절도이거나 중고 오토바이나 스쿠터 절도일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한

편, 대인절도피해의 경우는 평균이 35만7천 원 정도였다.

〈표 5-10〉 절도범죄 피해자들의 평균 재산 피해액 (모르겠다는 응답은 제외)

구분	유효응답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대인절도	112	4천 원	350만 원	35만7천 원	58만2천 원
주거침입절도	75	3만 원	1억 원	185만9천 원	1150만8천 원
자동차(부품)절도	12	3만 원	200만 원	55만3천 원	61만5천 원
절도범죄피해 전체	199건	4천 원	1억 원	93만5천 원	708만7천 원

끝으로, 〈표 5-11〉은 절도범죄 피해자들이 절도피해 이후 피해물품을 어느 정도 회수했는지를 살펴본 표이다. 절도범죄 전체로 보자면, 피해물품을 전부 회수한 경우는 221건 중 6건(2.7%, 가중치 부여 시 2.0%)에 지나지 않았고, 부분적이나마 회수한 경우도 3건(1.4%, 가중치 1.6%)에 지나지 않았다. 즉 일부라도 회수한 경우를 모두 합쳐도 221건 중 9건(4.1%, 가중치 3.6%)에 불과했던 것이다. 차량절도는 12건 중 3건이 피해물품 전부를 회수한 경우였다.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90건 중 6건(6.6%)이 전부 혹은 일부라도 회수한 경우였고, 대인절도의 경우엔 일부조차도 회수가 경우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 5-11〉 절도피해물품 회수 여부

(단위: 건(%))

구분	절도범죄				
	대인절도	주거침입절도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절도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전부 회수	-	3 (3.3)	3 (25.0)	6 (2.7)	13,141 (2.0)
일부 회수	-	3 (3.3)	-	3 (1.4)	10,515 (1.6)
미회수	119 (100.0)	84 (93.3)	9 (75.0)	212 (95.9)	644,471 (96.5)
계	119 (100.0)	90 (100.0)	12 (100.0)	221 (100.0)	668,127 (100.0)

2. 손괴범죄피해의 내용 및 결과

손괴범죄의 피해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먼저 손괴범죄피해를 세분화할 경우, 다음 〈표 5-12〉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손괴범죄의 총 보고건수는 113건인데, 그 중 가해자가 주거침입에 성공한 후에 손괴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6건(5.3%, 가중치 부여 시 4.7%로 추정), 단순손괴범죄피해 사례가 10건(8.8%, 가구원 가중치 부여 시 7.3%로 추정)이고, 나머지 97건(85.8%, 가중치 부여 시 88.0%)은 자동차 손괴 사례였다.

〈표 5-12〉 손괴범죄피해 유형 상세 분류

(단위: 건(%))

구분	손괴범죄			
	주거침입손괴	자동차손괴	단순손괴	손괴범죄피해 합계
피해 표본건수	6 (5.3)	97 (85.8)	10 (8.8)	113 (100.0)
가구원가중치 적용	13,767 (4.7)	257,994 (88.0)	21,290 (7.3)	293,051 (100.0)

다음으로 〈표 5-13〉을 보면 손괴범죄피해로 인한 피해물품에 관한 정보가 요약되어 있다. 손괴범죄 중 자동차손괴가 손괴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손괴범죄피해로 인한 피해물품이 차량 및 그 부품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114건(중복응답 포함)의 손괴범죄피해 중에서 97건(85.1%)은 차량 및 부품이 피해물품인 경우였다. 그 다음으로는 창문이나 자물쇠 혹은 출입문 등의 손괴피해였는데 이는 114건 중 7건(6.1%)이었으며, 그 밖에 정원의 나무 등이 2건, 가전용품 손괴피해가 1건, 기타 손괴피해가 7건 등이었다. 이 중 창문이나 자물쇠 혹은 출입문 등의 손괴는 모두 주거침입과 관련한 손괴범죄라고 할 수 있겠다.

〈표 5-13〉 손괴범죄 피해물품 (중복응답)

(단위: 건(%), 중복포함)

구분	손괴범죄			
	주거침입손괴	자동차손괴 자동차부품손괴	단순손괴	손괴범죄피해 합계
차량(및 부품)	-	97 (100.0)	-	97 (85.1)
창문, 자물쇠, 출입문	6 (85.7)	-	1 (10.0)	7 (6.1)
정원의 나무, 관목 등	1 (14.3)	-	1 (10.0)	2 (1.8)
가전용품	-	-	1 (10.0)	1 (0.9)
기타	-	-	7 (70.0)	7 (6.1)
계	7 (100.0)	97 (100.0)	10 (100.0)	114 (100.0)

다음 〈표 5-14〉에서 손괴범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평균적인 금액을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평균 35만6천 원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손괴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손괴의 평균 피해금액은 33만3천 원이었고 적게는 5천 원에서부터 많게는 2백3십만 원에 다다르기도 하였다.

〈표 5-14〉 손괴범죄 피해자들의 평균 재산 피해액 (모르겠다는 응답은 제외)

구분	유효응답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거침입손괴	2	15만 원	30만 원	22만5천 원	10만6천 원
자동차(부품)손괴	76	5천 원	230만 원	33만3천 원	31만9천 원
단순손괴	7	7천 원	300만 원	64만 원	106만1천 원
절도범죄피해 전체	85건	5천 원	300만 원	35만6천 원	42만3천 원

끝으로, 다음 〈표 5-15〉에서는 손괴범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표를 보면, 전체 손괴피해에서 가해자로부터 전부 배상을 받았던 경우는 113건 중 10건(8.8%, 가중치 부여 시 10.2%)에 지나지 않았고, 일부만 배상받았던 경우도 1건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3건

중 나머지 102건(90.3%, 가중치 부여 시 89.1%%)에서는 가해자로부터의 배상이 이루진 바 없었다. 그 중 100건은 배상을 요구하지조차 못한 상황이었다. 한편, 주거침입 관련 손괴나 일반손괴에서는 일부라도 배상을 받았던 경우가 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부 및 일부의 배상이 그나마 존재했던 경우는 자동차손괴범죄에 국한되었다.

〈표 5-15〉 손괴피해물품 배상 여부

(단위: 건(%))

구분	손괴범죄				
	주거침입손괴	자동차손괴	단순손괴	손괴범죄피해 합계	가구원가중치 적용
전부 배상	-	10 (10.3)	-	10 (8.8)	29,955 (10.2)
일부 배상	-	1 (1.0)	-	1 (0.9)	1,968 (0.7)
미배상	6 (100.0)	86 (87.6)	10 (100.0)	102 (90.3)	261,128 (89.1)
계	6 (100.0)	97 (100.0)	10 (100.0)	113 (100.0)	293,051 (100.0)

3. 사기범죄피해의 내용 및 결과

재산범죄피해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의 마지막 부분은 사기범죄에 관한 것이다. 다음 〈표 5-16〉에는 사기범죄의 피해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기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는 사기범죄의 미수를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사기범죄가 아닌 다른 형태의 피해가 섞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가령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라고 본다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표를 보면, 사기범죄의 피해 내용(중복응답 포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피해의 유형은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간 경우"였으며, 이는 132건 중 53건(40.2%)을 차지하였다. 이 같은 사례와 더불어 기타 유형의 사기피해(132건 중 13건, 9.8%)는 온라인상의 사기

피해나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피해가 아닌 이른바 오프라인상의 전통적인 사기범죄 피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사기범죄 피해 중 오프라인상의 전통적인 사기범죄피해는 앞의 두 유형을 합산한 것과 대략 일치한다고 볼 만하며, 그 피해의 사례는 전체 사기범죄에서 대략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50%가 온라인상의 사기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범죄피해라고 여겨진다.

응답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이 나온 응답범주는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실제로 돈을 보내준 경우"로 보통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범죄인데 132건 중 21건(15.9%)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다.

그 외의 나머지는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하는 상점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이 132건 중 15건(11.4%),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하는 상점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케 함"이 132건 중 12건(9.1%),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그리고 그 결과로 계좌의 돈이 빠져나간 경우임)"이 7건(5.3%),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하는 상점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이 7건(5.3%),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하는 상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이 4건(3.0%)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은 파밍(Pharming)이라고 하는 범죄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일부 오프라인 상점의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 전화쇼핑 및 인터넷쇼핑몰 사기라고 보아도 될 듯하다.

〈표 5-16〉 사기범죄(기수만 해당) 피해 내용 (중복포함)

(단위: 건(%), 중복포함)

내용 구분	사기내용별 사기범죄 피해 표본(중복포함)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	21 (15.9)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입력 유도	7 (5.3)

내용 구분	사기내용별 사기범죄 피해 표본(중복포함)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감	53 (40.2)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15 (11.4)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7 (5.3)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케 함	12 (9.1)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4 (3.0)
그 외 기타 유형의 사기피해	13 (9.8)
계	132 (100.0)

다음으로 〈표 5-17〉에서는 사기범죄의 수법을 살펴보았다(중복응답을 포함한 분석). 앞서 살펴보았던 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수법 구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다음의 표는 앞의 표에서의 구분법과는 종류가 다르다. 표를 보면, "그럴 듯한 말솜씨"가 139건 중 71건(51.1%)으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던 전통적인 오프라인 사기수법(전체 사기 중 약 50%)과 많은 부분 일치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 다음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로 139건 중 24건(17.3%)이 이에 해당되었으며, 그 다음이 보이스피싱으로 139건 중 21건(15.1%)이 이에 해당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화(허위)광고"가 6건(4.3%),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이 6건(4.3%),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가 3건(2.2%)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사기범죄(기수만 해당) 수법 (중복포함)

(단위: 건(%), 중복포함)

수법 구분	사기수법별 사기범죄 피해 표본(중복포함)
방송, 신문을 통한 (허위)광고	1 (0.7)
전단지나 거리에서의 (허위)광고	1 (0.7)

수법 구분	사기수법별 사기범죄 피해 표본(중복포함)
전화(허위)광고	6 (4.3)
보이스 피싱	21 (15.1)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6 (4.3)
인터넷 쇼핑사이트	24 (17.3)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3 (2.2)
그럴듯한 말솜씨	71 (51.1)
제3자나 전문가 등의 보증	-
범인과 공모한 가짜 고객들을 동원	1 (0.7)
그 외의 수단	5 (3.6)
계	139 (100.0)

다음 〈표 5-18〉에서는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평균적인 재산 피해액을 살펴보았다. 표를 보면, 사기범죄 피해액은 최소 5천 원에서부터 최대 4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그 평균값은 355만7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매우 크다.

〈표 5-18〉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평균 재산 피해액 (모르겠다는 응답 3건 제외)

구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기범죄 피해자	112건	5천 원	4000만 원	355만7천 원	701만 원

끝으로, 〈표 5-19〉에서는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회수 받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전부 회수한 경우는 132건 중 2건(1.5%, 가중치 부여 시 2.8%)에 지나지 않았고, 일부라도 회수한 경우 역시 8건(6.1%, 가중치 부여 시 5.8%)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112건(92.4%, 가중치 부여 시 91.4%)에서는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사기범죄 기수사건 피해액 회수 여부

(단위: 표본건, (표본%))

구분	사기범죄 피해액 회수 여부			
	전부 회수	일부 회수	미회수	계
사기범죄피해자	2 (1.5)	8 (6.1)	122 (92.4)	132 (100.0)
가구원가중치 적용	11,416 (2.8)	23,789 (5.8)	375,873 (91.4)	411,078 (100.0)

제6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가구대상 범죄피해실태

최 수 형

제6장

가구대상 범죄피해실태

제1절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유형과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이다. 즉,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유형에는 주거침입강도와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에는 자동차(부품)절도와 자동차(부품)손괴, 단순손괴가 포함되어 있다. 2014년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유형의 경우에는 전체 6,960가구 가운데 117가구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중치 적용 기준 비율을 보면 전체 1.6%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의 경우에는 1.4%의 피해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6-1〉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수

(단위: 가구 수, %)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범죄피해 여부	피해없다	6,843(98.3)	98.4	6,850(98.4)	98.6
	피해있다	117(1.7)	1.6	110(1.6)	1.4
합계		6,960(100.0)	100.0	6,960(100.0)	100.0

*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가구 수는 주거침입강도 피해를 경험한 2가구, 주거침입절도 피해를 경험한 93가구, 주거침입손괴를 경험한 6가구, 단순주거침입 피해를 경험한 16가구가 포함된 것이며, 1가구에 두 가지의 주거침입 관련 세부피해유형이 중복된 경우는 없었다.
*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 수는 자동차(부품)절도 13가구, 자동차(부품)손괴 88가구, 단순손괴 10가구가 포함된 것이며, 이 중 자동차(부품)손괴와 단순손괴 2가지 유형을 모두 경험한 중복피해가구는 1가구였다.

아래의 〈표 6-2〉는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 가운데 경험한 피해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다. 즉,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유형에서는 총 피해가구수 117가구에서 1건의 피해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112가구, 2건인 경우는 4가구, 3건인 경우는 1가구로 나타났고,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1건의 피해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전체의 96.2%를 차지하였다. 자동차 관련 피해나 단순손괴와 같은 기타 유형의 경우에는 총 피해가구수 110가구 가운데 100가구가 1건의 피해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10가구의 경우에는 2건의 피해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1건의 피해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전체의 91.2%를 차지했다. 이처럼 주거침입 관련 범죄에 비해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대상 범죄피해의 총 피해건수를 살펴보면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가구수는 117가구였고 117가구가 경험한 총 피해건수는 123건이었으며,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에서는 110가구가 피해를 경험하였고 해당 가구가 경험한 총 피해건수는 120건으로 나타났다.

〈표 6-2〉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당 피해횟수

(단위: 가구 수, %)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피해 수	**1건**	**112(95.7)**	**96.2**	**100(90.9)**	**91.2**
	2건	4(3.4)	3.3	10(9.1)	8.8
	3건	1(0.9)	0.5	-	-
피해가구 수		117(100.0)	100.0	110(100.0)	100.0
총 피해건수		**123건**		**120건**	

* 총 피해건수의 경우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는 주거침입강도가 2건, 주기침입절도가 98건, 주거침입손괴가 6건, 단순주거침입이 17건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는 자동차(부품)절도가 13건, 자동차(부품)손괴가 97건, 단순손괴가 10건이 포함되었다.

제2절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1.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의 사건발생 계절과 시간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즉, 사건발생 계절의 경우는 여름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3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을(33.0%), 봄(20.3%)의 순이었다. 이는 여름의 경우 더위, 장기간 휴가 등으로 인한 문단속 소홀 및 장기간 부재가 주거침입 관련 범죄발생의 용이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건발생 시간의 경우는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0.2%로 가장 많았으며 '한낮 12시에서 15시 사이'가 17.9%, '오후 15시에서 18시 사이'가 16.0%,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이 11.6%,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이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가운데 주거침입절도가 98건, 주거침입강도가 2건, 주거침입손괴가 6건, 단순주거침입이 17건으로 주거침입절도가 전체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사건발생 시간 관련 성격에서 절도피해 특성이 보다 크게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6-3〉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단위: 건, %)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사건발생 계절	봄	28	23.0	20.3
	여름	**44**	**36.1**	**38.4**
	가을	40	32.8	33.0
	겨울	10	8.2	8.3
	소계	122	100.0	100.0
사건발생 시간	새벽(03~06시)	5	4.1	3.6
	아침(06~09시)	2	1.6	3.6
	오전(09~12시)	3	2.4	2.8
	한낮(12~15시)	25	20.3	17.9
	오후(15~18시)	17	13.8	16.0
	저녁(18~21시)	9	7.3	6.8
	밤(21~00시)	6	4.9	5.3
	심야(00~03시)	4	3.3	2.5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24**	**19.5**	**20.2**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15	12.2	11.6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13	10.6	9.7
	소계	123	100.0	100.0

2. 피해상황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의 침입방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4〉와 같다. 즉,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응답이 전체의 40.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32.0%로 두 번째로 많았다.

〈표 6-4〉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침입방법

(단위: 건, %)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침입 방법	안으로 들어오도록 직접 열어줘서	1	1.0	-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 (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44**	**45.4**	**40.6**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8	8.2	8.1
	문이나 문에 달린 자물쇠를 부수고	8	8.2	9.8
	유리창을 깨거나 방범창을 부수고	6	6.2	7.0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음	26	26.8	32.0
	그 외의 경우	4	4.1	2.6
	소계	97	100.0	100.0

한편,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의 사건발생 당시 현장상황을 보면, 사건발생 당시 누군가 집에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5.9%, '있었다'는 응답이 24.1%로 나타났다. 사건발생 당시 누군가 집에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원에게 해당 가구원이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응답한 본인과 다른 가구원이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고 응답한 본인 혼자 있었던 경우도 29.0%를 차지하였다. 한편, 사건발생 당시 가해자가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했는지 알아본 결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응답을 한 1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지한 물건이 칼이나 가위, 송곳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었고 이는 가해자가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6-5〉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사건발생 당시 현장상황

(단위: 건, %)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사건 발생 당시 집에 누군가가 있었는지 여부[48]	있었다	33	26.8	24.1
	없었다	**90**	**73.2**	**75.9**
	소계	123	100.0	100.0
누구입니까	나	14	42.4	29.0
	나와 가구원들	**15**	**45.5**	**53.8**
	나 이외의 가구원들	4	12.1	17.2
	소계	33	100.0	100.0
무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그렇다	1	3.4	3.6
	아니다	13	44.8	38.1
	모르겠다	**15**	**51.7**	**58.3**
	소계	29	100.0	100.0
가해자가 소지하거나 사용한 무기나 위험한 물건	총(가스총, 모의총기 포함)	-	-	-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	**1**	**100.0**	**100.0**
	유리병, 돌, 몽둥이 등	-	-	-
	펜치, 드라이버, 줄(밧줄) 등	-	-	-
	마취제, 독극물	-	-	-
	전기충격기	-	-	-
	스프레이	-	-	-
	그 외의 물건으로	-	-	-
	소계	1	100.0	100.0
무기나 위험한 물건 사전 준비 여부	**사전에 준비**	**1**	**100.0**	**100.0**
	현장의 것을 사용	-	-	-
	잘 모르겠다	-	-	-
	소계	1	100.0	100.0

3. 피해가구의 특성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표에 나타나듯이 주택유형과 세대구성, 가구전체 소득 등을 알아보았다. 먼저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의 경우가 전체의 5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3.6%,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피해가

48) 만 14세 미만 아동은 제외한다.

구의 세대구성을 보면 '부부+자녀'인 경우가 전체의 3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28.3%), '1인 가구'(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피해가구의 소득을 보면 '월평균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2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8.8%, '월평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인 15.7%, '월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이하 기준 4,734,600원이며 소득 50%가 2,367,300원임을 감안한다면 저소득 가구의 피해발생 정도가 고소득 가구의 피해발생 정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소득 가구일수록 경비원이나 카드키 사용 등으로 외부인 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6〉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피해가구의 특성

(단위: 가구 수, %)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주택유형	**단독주택**	**68**	**58.1**	**55.4**
	아파트	25	21.4	23.6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9	16.2	17.9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4	3.4	2.4
	기타(오피스텔 등)	1	0.9	0.8
	소계	117	100.0	100.0
세대구성	1인 가구	29	24.8	21.6
	부부	33	28.2	28.3
	부부+자녀	**41**	**35.0**	**39.9**
	한부모+자녀	6	5.1	3.9
	3세대 이상 가구	5	4.3	4.8
	형제자매로만 구성	-	-	-
	조부모+손자녀	2	1.7	1.1
	비혈연/기타	1	0.9	0.3
	소계	117	100.0	100.0
가구전체 소득	월평균 100만 원 미만	27	23.1	18.8
	월평균 100~200만 원 미만	19	16.2	15.7
	월평균 200~300만 원 미만	18	15.4	15.4
	월평균 300~400만 원 미만	**27**	**23.1**	**25.6**
	월평균 400~500만 원 미만	10	8.5	9.2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월평균 500~600만 원 미만	13	11.1	12.5
	월평균 600~700만 원 미만	1	0.9	1.0
	월평균 700~1,000만 원 미만	2	1.7	1.8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	-	-
	소계	117	100.0	100.0

4.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여기서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가해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즉, 전체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사건인 123건 가운데 범죄자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건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전체의 15.6%를 차지하였다. 그 가운데 범죄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라는 대답이 전체의 3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찰이 알려줘서'라는 응답이 20.0%,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가 19.7%,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가 18.1% 등의 순이었다.

〈표 6-7〉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범죄자 정보 인지수준 및 경로

(단위: 건, %)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범죄자에 대해 무언가를 안다	예	25	20.3	15.6
	아니오	**98**	**79.7**	**84.4**
	소계	123	100.0	100.0
범죄자 정보를 알게 된 경로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	**13**	**52.0**	**38.1**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	3	12.0	18.1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	4	16.0	19.7
	경찰이 알려줘서	4	16.0	20.0
	그 외의 경우	1	4.0	4.2
	소계	25	100.0	100.0

아래의 표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를 경험했고 해당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범죄자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본 것이다. 먼저, 가해자의 수는 1명인 경우가 전체의 82.5%, 2명인 경우가 13.3%, 3명인 경우가 4.2%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성별에서는 '남자'가 91.3%로 대부분이었으며 '남녀 함께였다'는 응답은 8.7%, '여자'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세 번째, 연령대는 20대인 경우가 2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대(15.8%), 40대(13.3%), 60대 이상(11.6%), 10대 중반(10.7%), 10대 후반(10.3%) 등의 순이었다. 네 번째, 피해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셨는지 알아본 결과 술을 마셨다는 응답은 16.0%였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체의 80.9%였으며 '친인척'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거래하던 사람'이나 '잘 아는 이웃'과 같이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저지른 경우가 19.1%였다.

〈표 6-8〉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범죄자의 특성

(단위: 건, %)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수	**1명**	**21**	**84.0**	**82.5**
	2명	3	12.0	13.3
	3명	1	4.0	4.2
	4명	-	-	-
	소계	25	100.0	100.0
성별	**남자**	**23**	**92.0**	**91.3**
	여자	-	-	-
	남녀 모두	2	8.0	8.7
	모르겠다	-	-	-
	소계	25	100.0	100.0
연령대	12세 미만(아동)	-	-	-
	10대 중반	2	8.0	10.7
	10대 후반	2	8.0	10.3
	20대	**3**	**12.0**	**20.2**
	30대	2	8.0	8.9
	40대	5	20.0	13.3
	50대	4	16.0	15.8
	60대 이상	2	8.0	11.6
	모르겠다	5	20.0	9.2
	소계	25	100.0	100.0
가해자 음주 여부	그렇다	4	16.0	16.0
	아니다	10	40.0	37.0
	모르겠다	**11**	**44.0**	**47.0**
	소계	25	100.0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피해자와의 관계	친인척	남편·아내	-	-	-
		(조)부모	-	-	-
		(손)자녀	-	-	-
		형제·자매	-	-	-
		전남편·전처	-	-	-
		기타친인척	-	-	-
		소계	-	-	-
	친인척 이외의 아는사람	친구	-	-	-
		애인(전애인포함)	-	-	-
		학교선후배	-	-	-
		직장동료	-	-	-
		직장상사	-	-	-
		거래하던사람	1	4.0	4.6
		잘아는이웃	3	12.0	14.5
		얼굴만아는사람	-	-	-
		소계	4	16.0	19.1
	전혀 모르는 사람		**21**	**84.0**	**80.9**
	계		25	100.0	100.0

5. 범죄피해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다음은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경험 이후의 정신적인 피해와 감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범죄피해 경험 이후 공황상태나 쇼크 등의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함이나 고립감, 불면증,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등 다른 유형의 정신적 피해의 경우는 경험한 사람에 비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한편, 정신적 피해로 인해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 또는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의 시간 손실이 '있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5%로 나타났다.

〈표 6-9〉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후 정신적 피해

(단위: 건, %)

구분		있었다		없었다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정신적 피해 내용 및 경험 여부 (N=123)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42(34.1)	30.0	81(65.9)	70.0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20(16.3)	19.8	103(83.7)	80.2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68(55.3)	55.7	55(44.7)	44.3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40(32.5)	29.9	83(67.5)	70.1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20(16.3)	17.4	103(83.7)	82.6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5(4.1)	4.9	118(95.9)	95.1
	자살 충동	2(1.6)	1.6	121(98.4)	98.4
	자살 시도	2(1.6)	2.7	121(98.4)	97.3
	그 외의 고통	4(3.3)	2	119(96.7)	98.0
구분		빈도(%)		가중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 (N=123)	있었다	5(4.1)		4.5	
	없었다	**118(95.9)**		**95.5**	

아래의 〈표 6-10〉은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경험 이후 감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즉,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나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 '경찰 등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의 경우는 사건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 없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라는 감정변화에서는 사건 이전에 비해 사건 이후에 '낮아진 편이다'라는 응답이 47.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이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자의 경우 다른 형태의 감정변화보다 사람들 간의 신뢰 관계에 대한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표 6-10〉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후 감정 변화 (N=123)

(단위: 건, %)

구분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 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건수(%)	가중치	건수(%)	가중치	건수(%)	가중치	건수(%)	가중치	건수(%)	가중치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7(5.7)	6.4	34(27.6)	28.0	73(59.3)	60.0	8(6.5)	4.5	1(0.8)	1.2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 (자존감)	4(3.3)	6.1	20(16.3)	20.2	91(74.0)	67.2	8(6.5)	6.5	-	-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21(17.1)	22.6	64(52.0)	47.9	34(27.6)	25.4	4(3.3)	4.1	-	-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7(5.7)	7.3	25(20.3)	20.9	84(68.3)	65.8	7(5.7)	6.0	-	-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5(4.1)	3.3	26(21.1)	25.7	89(72.4)	68.5	3(2.4)	2.4	-	-

제3절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1.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자동차 관련 범죄피해 및 단순손괴의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의 경우, 가을에 발생한 비율이 전체의 4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름(25.1%), 봄(21.8%), 겨울(8.2%)의 순이었다(〈표 6-11〉 참고). 한편, 사건발생 시간의 경우는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이 13.7%, '저녁 18시부터 21시 사이'는 12.7%, '밤 21시에서 00시 사이'가 9.6% 등의 순이었다.

〈표 6-11〉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단위: 건, %)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사건발생 계절	봄	25	20.8	21.8
	여름	33	27.5	25.1
	가을	**47**	**39.2**	**45.0**
	겨울	15	12.5	8.2
	소계	120	100.0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사건발생 시간	새벽(03~06시)	2	1.7	4.5
	아침(06~09시)	5	4.2	3.8
	오전(09~12시)	6	5.0	3.4
	한낮(12~15시)	8	6.7	6.2
	오후(15~18시)	8	6.7	7.0
	저녁(18~21시)	16	13.3	12.7
	밤(21~00시)	9	7.5	9.6
	심야(00~03시)	7	5.8	6.6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4	3.3	2.3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40**	**33.3**	**30.3**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15	12.5	13.7
	소계	120	100.0	100.0

2. 피해가구의 특성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피해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택유형과 세대구성, 가구전체 소득을 알아보았다. 먼저, 주택유형의 경우는 '아파트'가 전체의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23.7%,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12〉 참고). 이는 앞서 살펴본 〈표 6-6〉에 나타나듯이 주택유형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에서의 발생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자동차(부품)절도나 자동차(부품)손괴, 단순손괴의 경우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의 경우 자동차 관련 절도와 손괴가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손괴 역시 아파트단지 내 보관 중인 화분이나 자전거 등에 대한 손괴 발생률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세대구성의 경우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전체의 5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가 14.6%, '1인 가구'가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전체 소득의 경우는 '월평균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월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26.4%, '월평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 18.1%, '월평균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미만'이 9.8% 등의 순이었다. 앞서 살펴본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유형과 마찬가지로 2014년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보다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의 경우도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즉,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의 경우 주택유형에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하더라도 모든 아파트가 동일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외부인의 방문 자체가 어려워 주차장으로의 진입 역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범죄가 발생하기에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12〉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피해가구의 특성

(단위: 가구 수, %)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주택유형	단독주택	27	24.5	23.7
	아파트	**59**	**53.6**	**52.4**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3	20.9	23.0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1	0.9	0.8
	기타(오피스텔 등)	-	-	-
	소계	110	100.0	100.0
세대구성	1인 가구	14	12.7	11.5
	부부	15	13.6	14.6
	부부+자녀	**59**	**53.6**	**56.5**
	한부모+자녀	9	8.2	7.8
	3세대 이상 가구	6	5.5	4.5
	형제자매로만구성	1	0.9	1.6
	조부모+손자녀	-	-	-
	기타	6	5.5	3.6
	소계	110	100.0	100.0
가구전체 소득	월평균 100만 원 미만	5	4.5	4.9
	월평균 100~200만 원 미만	7	6.4	5.9
	월평균 200~300만 원 미만	30	27.3	26.4
	월평균 300~400만 원 미만	**34**	**30.9**	**27.9**
	월평균 400~500만 원 미만	17	15.5	18.1
	월평균 500~600만 원 미만	10	9.1	9.8
	월평균 600~700만 원 미만	2	1.8	2.2
	월평균 700~1,000만 원 미만	4	3.6	3.9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1	0.9	0.8
	소계	110	100.0	100.0

3.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자동차 관련 범죄피해나 단순손괴의 경우는 가해자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12.0%에 불과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의 경우 가해자를 알고 있다는 응답율(1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표 6-7>참고), 이러한 차이는 범죄발생 장소의 차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동차 관련 범죄피해의 경우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난 직후보다는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범죄피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해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가운데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던 항목은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가 62.1%였고 그 다음으로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가 27.5%, '경찰이 알려줘서'가 10.4%로 나타났다.

<표 6-13>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범죄자 정보 인지수준 및 경로

(단위: 건, %)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범죄자에 대해 무언가를 안다	예	11	9.2	12.0
	아니오	**109**	**90.8**	**88.0**
	소계	120	100.0	100.0
범죄자 정보를 알게 된 경로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	**7**	**63.6**	**62.1**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	-	-	-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	3	27.3	27.5
	경찰이 알려줘서	1	9.1	10.4
	그 외의 경우	-	-	-
	소계	11	100.0	100.0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안다고 응답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더니 가해자의 수는 '1명'이었고 성별은 '남자'였으며, 연령대는 '30대'(40.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18.3%), '10대 후반'(13.7%), '10대 중반'(10.4%) 등의 순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에서 살펴본 범죄자의 특성과 상이한 것으로(<표 6-8>참고)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에서는 가해자의 연령대 분포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기타 가구대상 범죄자의 연령대가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유형의 가해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서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모든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례만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해당 범위 내에서는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자동차 관련 범죄나 단순손괴와 같은 기타 가구대상 범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침입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계획이나 전략이 필요한 주거침입 범죄와는 달리 지나가는 길에 충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을 훔치거나 손상을 입히거나 밖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못 쓰게 망가뜨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59.6%)는 응답이 '그렇다'(30.9%)는 응답보다 많았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82.0%로 대부분이었고 '학교선후배'와 '잘 아는 이웃'으로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라는 응답은 18.0%였다.

〈표 6-14〉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범죄자의 특성

(단위: 건, %)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수	**1명**	**10**	**90.9**	**100.0**
	2명	-	-	-
	3명	-	-	-
	4명	1	9.1	-
	소계	11	100.0	100.0
성별	**남자**	**11**	**100.0**	**100.0**
	여자	-	-	-
	남녀 모두	-	-	-
	모르겠다	-	-	-
	소계	11	100.0	100.0
연령대	12세 미만(아동)	-	-	-
	10대 중반	1	9.1	10.4
	10대 후반	2	18.2	13.7
	20대	-	-	-
	30대	**4**	**36.4**	**40.5**
	40대	1	9.1	18.3
	50대	1	9.1	7.6

구분			빈도	백분율(%)	가중치
	60대 이상		1	9.1	9.5
	모르겠다		1	9.1	-
	소계		11	100.0	100.0
가해자 음주 여부	그렇다		3	27.3	30.9
	아니다		**7**	**63.6**	**59.6**
	모르겠다		1	9.1	9.5
	소계		11	100.0	100.0
피해자와의 관계	친인척	남편·아내	-	-	-
		(조)부모	-	-	-
		(손)자녀	-	-	-
		형제·자매	-	-	-
		전남편·전처	-	-	-
		기타친인척	-	-	-
		소계	-	-	-
	친인척 이외의 아는사람	친구	-	-	-
		애인(전애인포함)	-	-	-
		학교선후배	1	9.1	-
		직장동료	-	-	-
		직장상사	-	-	-
		거래하던사람	-	-	-
		잘아는이웃	2	18.2	18.0
		얼굴만아는사람	-	-	-
		소계	3	27.3	18.0
	전혀 모르는 사람		**8**	**72.7**	**82.0**
	계		11	100.0	100.0

4. 범죄피해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피해는 없었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6-15〉와 같다. 즉, 자동차(부품)절도나 손괴, 단순손괴와 같은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 사건 이후 우울함, 고립감, 두려움, 불면증,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사람을 피해서 이사,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등의 정신적 피해를 경험했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가구의 대부분이 해당 피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과 같은 우울함을 느낀 경우(17.1%)가 다른 정신적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역시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유형

과는 상이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표 6-9〉에서 나타나듯이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 공황상태나 쇼크 등의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피해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정신적 피해가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이후 일상생활을 못하는 등의 시간 손실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표 6-15〉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후 정신적 피해

(단위: 건, %)

구분		있었다		없었다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정신적 피해 내용 및 경험 여부 (N=120)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25(20.8)	17.1	95(79.2)	82.9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10(8.3)	7.9	110(91.7)	92.1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14(11.7)	9.8	106(88.3)	90.2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13(10.8)	8.5	107(89.2)	91.5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6(5.0)	2.3	114(95.0)	97.7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	-	120(100.0)	100.0
	자살 충동	-	-	120(100.0)	100.0
	자살 시도	-	-	120(100.0)	100.0
	그 외의 고통	10(8.3)	5.4	110(91.7)	94.6
구분		빈도(%)		가중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 (N=120)	있었다	-		-	
	없었다	**120**		**100.0**	

아래의 〈표 6-16〉은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경험 이후의 감정 변화에 대한 것이다. 즉,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낮아진 편이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신감 및 자존감,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및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감 등에 대한 감정변화는 사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변화는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표 6-10〉에서 나타나듯이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경험 이후의 감정변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16〉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후 감정 변화 (N=120)

(단위: 건, %)

구분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 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건수(%)	가중치	건수(%)	가중치	건수(%)	가중치	건수(%)	가중치	건수(%)	가중치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	-	7(5.8)	3.6	106(88.3)	89.6	7(5.8)	6.7	-	-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 (자존감)	-	-	6(5.0)	3.1	110(91.7)	94.3	4(3.3)	2.5	-	-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7(5.8)	3.4	61(50.8)	51.3	49(40.8)	42.1	3(2.5)	3.1	-	-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1(0.8)	-	20(16.7)	15.9	92(76.7)	78.7	5(4.2)	3.0	2(1.7)	2.4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1(0.8)	-	14(11.7)	7.7	101(84.2)	89.0	4(3.3)	3.3	-	-

제4절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내용 변화 분석

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한 이후에도 연도별 범죄피해유형을 결정하는 조사표의 수정은 물론 범죄피해 분류체계의 차이가 있어서 개편 이후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내용 변화 분석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범죄피해조사 결과 가운데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내용의 변화를 살펴봄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비교 가능한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한편, 올해 조사는 2012년 조사표와 조사방법, 조사자료 형태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범죄피해 분류체계 역시 2014년 기준으로 다시 재구성한 것으로 조사시기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49]

1. 연도별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아래의 〈표 6-17〉은 2012년 조사결과와 2014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즉,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의 경우 2012년 기준 조사결과는[50] 전체

49) 즉, 2012년과 2014년도의 경우는 원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나, 그 이전의 조사자료는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와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50) 해당 수치는 「범죄피해조사 2012」(김은경 외) 보고서에서 집계하여 나온 수치와 상이할 수 있다. 2014년 범죄피해유형 추출식 구성 및 집계원칙을 중심으로 재집계한 것이기 때문이다.

6,300가구 가운데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2%였으며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의 경우는 가중치 적용한 결과 1.6%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4년 기준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구대상 범죄피해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의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의 경우 해당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는 아마도 오늘날 주거 장소를 중심으로 CCTV와 같은 감시 장치나 외부인 출입이 어렵도록 하는 등의 범죄예방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표 6-17〉 연도별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수

(단위: 가구 수, %)

		2012년 가구대상 범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범죄피해 여부	피해없다	6,159(97.8)	97.8	6,211(98.6)	98.4
	피해있다	141(2.2)	2.2	89(1.4)	1.6
합계		6,300(100.0)	100.0	6,300(100.0)	100.0

*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가구 수는 주거침입강도 피해를 경험한 2가구, 주거침입절도 피해를 경험한 102가구, 주거침입손괴를 경험한 11가구, 단순주거침입 피해를 경험한 28가구가 포함된 것이며, 이 중 1가구에 두 가지의 주거침입 관련 세부피해유형이 중복된 중복피해가구는 2가구이다.
*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 수는 자동차(부품)절도 21가구, 자동차(부품)손괴 69가구, 단순손괴 1가구가 포함된 것이며, 이 중 중복피해가구는 2가구이다.

		2014년 가구대상 범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범죄피해 여부	피해없다	6,843(98.3)	98.4	6,850(98.4)	98.6
	피해있다	117(1.7)	1.6	110(1.6)	1.4
합계		6,960(100.0)	100.0	6,960(100.0)	100.0

*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가구 수는 주거침입강도 피해를 경험한 2가구, 주거침입절도 피해를 경험한 93가구, 주거침입손괴를 경험한 6가구, 단순주거침입 피해를 경험한 16가구가 포함된 것이며, 1가구에 두 가지의 주거침입 관련 세부피해유형이 중복된 경우는 없었다.
*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 수는 자동차(부품)절도 13가구, 자동차(부품)손괴 88가구, 단순손괴 10가구가 포함된 것이며, 이 중 중복피해가구는 1가구이다.

다음은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당한 가구의 피해횟수를 정리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2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0년의 경우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에서 1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수의 비율이

84.7%, 2012년에는 90.8%, 2014년에는 96.2%로 나타났고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에서는 1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 수의 비율의 2010년에는 75.1%, 2012년에는 93.1%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91.2%로 2회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한 가구 수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51]

〈표 6-18〉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당 피해횟수

(단위: 건, %)

		2010년 가구대상 범죄피해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피해 수	**1건**	**236 (83.7)**	**84.7**	**97 (79.5)**	**75.1**
	2건	25 (8.9)	7.9	19 (15.6)	18.8
	3건	8 (2.8)	2.6	5 (4.1)	5.3
	4건	8 (2.8)	2.7	1 (0.8)	0.8
	5건 이상	5 (1.8)	2.1	-	-
합계		282 (100.0)	100.0	122 (100.0)	100.0

		2012년 가구대상 범죄피해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피해 수	**1건**	**128 (90.8)**	**90.8**	**83 (93.3)**	**93.1**
	2건	12 (8.5)	8.8	5 (5.6)	5.0
	3건	1 (0.7)	0.4	1 (1.1)	2.0
합계		141 (100.0)	100.0	89 (100.0)	100.0

51) 2010년의 경우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에는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기타, 단순주거침입, 주거침입손괴로 구성되었고 기타 가구대상 범죄는 단순손괴, 자동차절도, 자동차손괴로 구성되어 2012년과 2014년의 가구대상 범죄피해의 세부 유형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주거침입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피해분류를 하였으므로 가구대상 범죄피해 추세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서로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2014년 가구대상 범죄피해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피해 수	1건	**112 (95.7)**	**96.2**	**100 (90.9)**	**91.2**
	2건	4 (3.4)	3.3	10 (9.1)	8.8
	3건	1 (0.9)	0.5	-	-
합계		117 (100.0)	100.0	110 (100.0)	100.0

2.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내용

가. 연도별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다음은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가 발생한 계절과 시간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6-19〉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사건발생 계절	봄	26.6	30.0	20.3
	여름	**31.9**	**43.2**	**38.4**
	가을	21.5	20.1	33.0
	겨울	20.0	6.7	8.3
	소계	100.0	100.0	100.0
사건발생 시간	새벽(03~06시)	7.8	14.4	3.6
	아침(06~09시)	2.5	2.4	3.6
	오전(09~12시)	5.8	6.8	2.8
	한낮(12~15시)	14.1	**18.7**	17.9
	오후(15~18시)	**16.2**	8.0	16.0
	저녁(18~21시)	14.0	4.4	6.8
	밤(21~00시)	9.6	6.7	5.3
	심야(00~03시)	5.1	8.2	2.5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5.0	13.8	**20.2**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7.1	6.2	11.6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12.7	10.4	9.7
	소계	100.0	100.0	100.0

먼저, 사건발생 계절의 경우 2010년에는 여름(31.9%), 봄(26.6%), 가을(21.5%), 겨울(20.2%)의 순이었고 2012년 역시 여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봄(30.0%), 가을(20.1%), 겨울(6.7%)이었다. 한편, 2014년의 경우에는 사건발생 계절이 여름인 경우가 38.4%로 가장 많기는 했지만 그 다음으로 가을(33.0%), 봄(20.3%), 겨울(8.3%)의 순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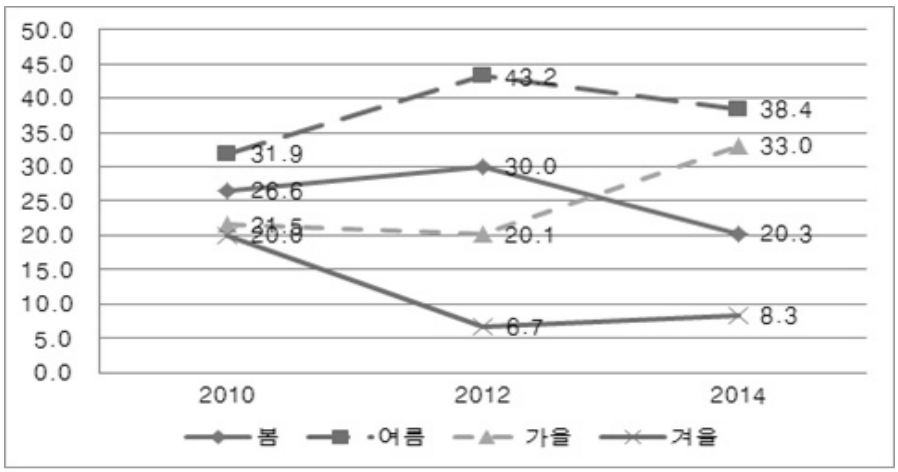

[그림 6-1]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사건발생 계절

한편, 사건발생 시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는 '오후'(15시에서 18시 사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6.2%로 가장 많았고 '한낮(12시에서 15시 사이)'이 14.1%, '저녁(18시에서 21시 사이)'이 14.0%,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12.7% 등의 순이었고 2012년에는 '한낮(12시에서 15시 사이)'이 전체의 1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새벽(03시에서 06시 사이)'이 14.4%,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13.8%,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10.4%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14년도의 경우는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20.2%를 나타내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낮(12시에서 15시 사이)'이 17.9%, '오후(15시에서 18시 사이)'가 16.0%,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건이 낮에 발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이 '한낮'에 발생한 경우와 '오후'에 발생한 경우, 그리고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모두 합하여 보면 2010년의 경우는 35.3%, 2012년의 경우는 40.5%, 2014년의 경우는 54.1%로 나타났다.

나. 연도별 피해상황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의 경우 침입방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서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 (문단속을 하지 않아서)'란 응답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표 6-20〉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침입방법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침입 방법	안으로 들어오도록 직접 열어줘서	3.2	-	-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 (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46.3**	**48.9**	**40.6**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2.3	9.6	8.1
	문이나 문에 달린 자물쇠를 부수고	9.9	12.3	9.8
	유리창을 깨거나 방범창을 부수고	5.8	6.6	7.0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음	19.6	18.3	32.0
	그 외의 경우	12.9	4.4	2.6
	소계	100.0	100.0	100.0

다음은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의 사건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사건발생 당시 누군가가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 201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의 70.8%가 '아무도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2012년의 경우에는 52.9%, 2014년의 경우에는 75.9%로 나타났다. 사건발생 당시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 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0년에는 4.6%, 2012년에는 5.2%, 2014년에는 3.6%로 나타났다.

〈표 6-21〉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사건발생 당시 현장상황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사건 발생 당시 집에 누군가가 있었는지 여부[52]	있었다	29.2	47.1	24.1
	없었다	**70.8**	**52.9**	**75.9**
	소계	100.0	100.0	100.0
누구입니까	나	34.7	27.8	29.0
	나와 가구원들	**55.5**	**58.9**	**53.8**
	나 이외의 가구원들	9.8	13.3	17.2
	소계	100.0	100.0	100.0
무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그렇다	4.6	5.2	3.6
	아니다	39.1	31.3	38.1
	모르겠다	**56.4**	**63.6**	**58.3**
	소계	100.0	100.0	100.0
가해자가 소지하거나 사용한 무기나 위험한 물건	총(가스총, 모의총기 포함)	-	-	-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	31.4	-	**100.0**
	유리병, 돌, 몽둥이 등	13.1	-	-
	펜치, 드라이버, 줄(밧줄) 등	**48.8**	**100.0**	-
	마취제, 독극물	-	-	-
	전기충격기	-	-	-
	스프레이	-	-	-
	그 외의 물건으로	6.7	-	-
	소계	100.0	100.0	100.0
무기나 위험한 물건 사전준비여부	사전에 준비	25.3	**100.0**	**100.0**
	현장의 것을 사용	-	-	-
	잘 모르겠다	**74.7**	-	-
	소계	100.0	100.0	100.0

다. 연도별 피해가구의 특성

다음은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과 같은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의 특성을 주택유형, 세대구성, 가구전체 소득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52) 만 14세 미만 아동은 제외한다.

〈표 6-22〉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피해가구의 특성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가구 수, %)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주택유형	**단독주택**	**70.5**	**54.2**	**55.4**
	아파트	13.3	17.8	23.6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3.7	22.4	17.9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등) 내 주택	1.6	3.2	2.4
	기타(오피스텔 등)	0.9	2.4	0.8
	소계	100.0	100.0	100.0
세대구성	1인 가구	27.8	22.9	21.6
	부부	16.7	17.8	28.3
	부부+자녀	**27.9**	**38.8**	**39.9**
	한부모+자녀	15.0	12.5	3.9
	3세대 이상 가구	3.1	4.0	4.8
	형제자매로만 구성	-	0.5	-
	조부모+손자녀	-	1.5	1.1
	비혈연/기타	9.5	2.0	0.3
	소계	100.0	100.0	100.0
가구전체 소득	**월평균 100만 원 미만**	**28.0**	**26.7**	18.8
	월평균 100~200만 원 미만	19.6	18.4	15.7
	월평균 200~300만 원 미만	12.6	19.9	15.4
	월평균 300~400만 원 미만	20.6	20.7	**25.6**
	월평균 400~500만 원 미만	10.9	6.0	9.2
	월평균 500~600만 원 미만	4.9	1.5	12.5
	월평균 600~700만 원 미만	2.4	4.0	1.0
	월평균 700~1,000만 원 미만	1.1	1.6	1.8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	1.1	-
	소계	100.0	100.0	100.0

먼저,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2010년도 조사결과 단독주택이 전체의 70.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13.7%, 아파트가 13.3% 등의 순이었고 2012년도의 경우에도 단독주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해당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아파트의 범죄피해율이 매 조사마다 증가하여 2014년도의 경우에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가구의 주택유형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이 단독주택 다음으로 높은 비율(23.6%)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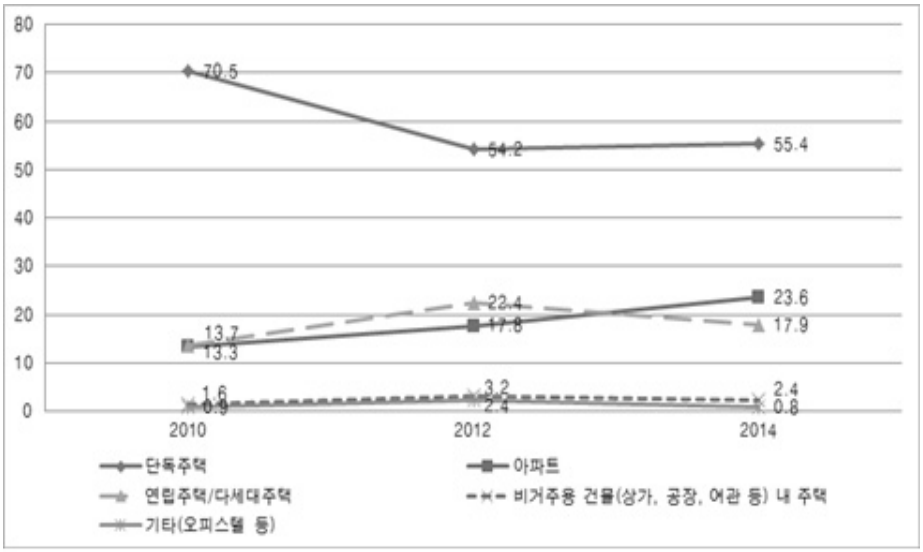

[그림 6-2]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피해가구의 주택유형

라. 연도별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범죄자에 대해 무언가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2012년도 기준 조사에서는 30.7%였고 2014년도에는 15.6%로 감소하였다(〈표 6-23〉참고). 이는 앞서 살펴본 〈표 6-19〉에서 나타나듯이 사건발생 시간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전체의 약 40%) 나타난 결과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6-23〉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범죄자 정보 인지수준 및 경로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범죄자에 대해 무언가를 안다	예	30.7	15.6
	아니오	**69.3**	**84.4**
	소계	100.0	100.0
범죄자 정보를 알게 된 경로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	**61.5**	**38.1**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	8.8	18.1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	18.2	19.7
	경찰이 알려줘서	9.6	20.0

구분		2012년	2014년
	그 외의 경우	1.9	4.2
	소계	100.0	100.0

아래의 〈표 6-24〉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경험자가 인지한 범죄자의 특성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2년도 기준 조사결과에 비해 2014년의 경우 단독으로 남성이 저지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범죄자의 연령은 20대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보다 아는 사람(잘 아는 이웃, 거래하던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범죄자의 특성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수	**1명**	**81.9**	**82.5**
	2명	10.2	13.3
	3명	6.1	4.2
	4명	1.7	-
	소계	100.0	100.0
성별	**남자**	**86.4**	**91.3**
	여자	11.4	-
	남녀 모두	-	8.7
	모르겠다	2.2	-
	소계	100.0	100.0
연령대	12세 미만(아동)	-	-
	10대 중반	1.8	10.7
	10대 후반	11.9	10.3
	20대	15.3	**20.2**
	30대	**25.8**	8.9
	40대	21.3	13.3
	50대	9.5	15.8
	60대 이상	-	11.6
	모르겠다	14.4	9.2
	소계	100.0	100.0

구분			2012년	2014년
가해자 음주 여부	그렇다		19.5	16.0
	아니다		32.4	37.0
	모르겠다		**48.2**	**47.0**
	소계		100.0	100.0
피해자와의 관계	친인척	남편·아내	-	-
		(조)부모	-	-
		(손)자녀	-	-
		형제·자매	-	-
		전남편·전처	-	-
		기타친인척	-	-
		소계	-	-
	친인척 이외의 아는사람	친구	1.4	-
		애인(전애인포함)	-	-
		학교선후배	1.9	-
		직장동료	-	-
		직장상사	-	-
		거래하던사람	-	4.6
		잘아는이웃	-	14.5
		얼굴만아는사람	-	-
		소계	3.3	19.1
	전혀 모르는 사람		**96.7**	**80.9**
	계		100.0	100.0

마. 연도별 범죄피해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범죄피해 이후의 정신적 피해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2012년과 2014년 모두 두려움을 제외한 피해경험에서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피해의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는 응답이 2012년에는 9.4%였고 2014년에는 4.5%로 감소하였다.

〈표 6-25〉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후 정신적 피해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정신적 피해 내용 및 경험 여부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25.7	**74.3**	30.0	**70.0**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19.2	**80.8**	19.8	**80.2**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58.0**	42.0	**55.7**	44.3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28.6	**71.4**	29.9	**70.1**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17.3	**82.7**	17.4	**82.6**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1.1	**98.9**	4.9	**95.1**
	자살 충동	0.7	**99.3**	1.6	**98.4**
	자살 시도	-	**100.0**	2.7	**97.3**
	그 외의 고통	8.9	**91.1**	2	**98.0**
구분		2012년		2014년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	있었다	9.4		4.5	
	없었다	**90.6**		**95.5**	

다음은 주거침입절도와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과 같은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경험 이후의 감정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의 경우 2012년도와 2014년도 모두 '낮아진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6-26〉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후 감정 변화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 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 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9.1	19.0	57.2	11.7	2.9	6.4	28.0	60.0	4.5	1.2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 (자존감)	5.7	16.6	71.7	4.3	1.7	6.1	20.2	67.2	6.5	-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26.9	39.6	31.4	1.5	0.6	22.6	47.9	25.4	4.1	-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14.9	32.1	51.3	1.7	-	7.3	20.9	65.8	6.0	-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15.4	30.5	53.6	0.5	-	3.3	25.7	68.5	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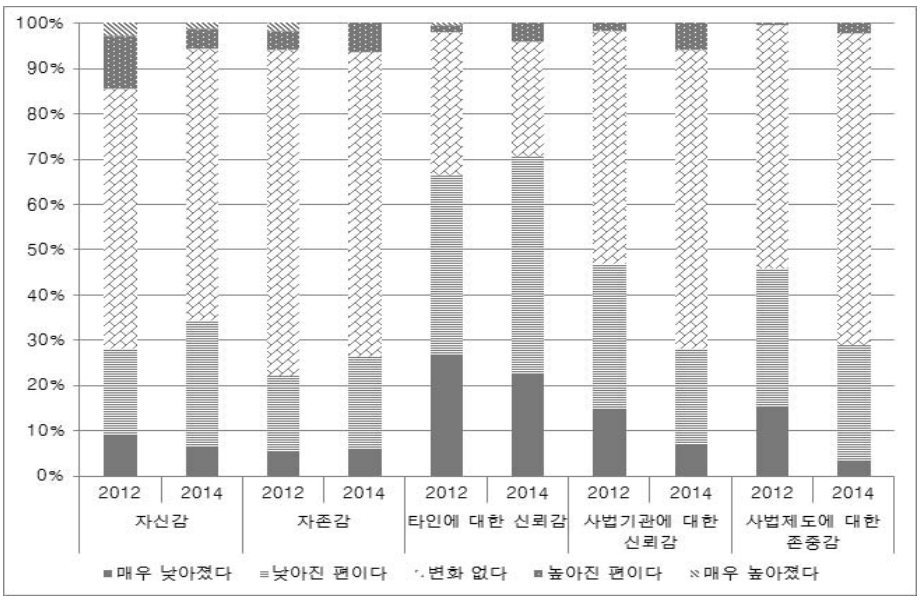

[그림 6-3]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후 감정 변화

범죄피해 경험 이후의 감정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자신을 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과 같은 감정의 변화에서는 2012년에 비해 2014년도 조사결과에서 '낮아졌다'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였고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과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과 같은 감정의 변화는 '변화 없다'와 '높아졌다'는 응답율이 높은 편이다.

3.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내용

가. 연도별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단순손괴 및 자동차(부품)손괴, 자동차(부품)절도와 같은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계절은 2012년의 경우 봄이 가장 많았고(33.1%), 그 다음으로 여름(31.4%), 가을(24.4%), 겨울(11.1%)의 순이었으며 2014년의 경우에는 가을이 전체의 4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여름(25.1%). 봄(21.8%), 겨울(8.2%)의 순이었다. 즉, 2012년

도 조사결과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2014년의 경우에는 가을에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도 조사결과에서 사건발생 시간을 살펴보면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17.8%였고 그 다음으로 '새벽(03시에서 06시 사이)'이 8.5%, '오후(15시에서 18시 사이)'가 7.8% 등의 순이었다. 2014년도의 경우 역시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13.7%, '저녁(18시부터 21시 사이)'이 12.7%, '밤(21시에서 00시 사이)'이 9.6% 등의 순이었다. 이는 자동차(부품)절도나 손괴, 단순손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27〉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사건발생 계절	**봄**	**33.1**	21.8
	여름	31.4	25.1
	가을	24.4	**45.0**
	겨울	11.1	8.2
	소계	100.0	100.0
사건발생 시간	새벽(03~06시)	8.5	4.5
	아침(06~09시)	2.6	3.8
	오전(09~12시)	1.7	3.4
	한낮(12~15시)	2.8	6.2
	오후(15~18시)	7.8	7.0
	저녁(18~21시)	6.3	12.7
	밤(21~00시)	6.4	9.6
	심야(00~03시)	6.0	6.6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3.2	2.3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37.0**	**30.3**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17.8	13.7
	소계	100.0	100.0

나. 연도별 피해가구의 특성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유형의 경우 2014년 조사결과 마찬가지로 2012년 조사결과에서 역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비율이 다른 주택유형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2년의 경우 아파트에서 단순손괴나 자동차(부품)손괴와 자동차(부품)절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가 전체의 49.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고 2014년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6-28〉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피해가구의 특성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가구 수, %)

구분		2012년	2014년
주택유형	단독주택	23.1	23.7
	아파트	**49.1**	**52.4**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3.3	23.0
	비거주용 건물(상가,공장,여관등) 내 주택	3.8	0.8
	기타(오피스텔 등)	0.7	-
	소계	100.0	100.0
세대구성	1인가구	13.4	11.5
	부부	10.3	14.6
	부부+자녀	**63.0**	**56.5**
	한부모+자녀	8.7	7.8
	3세대 이상 가구	3.2	4.5
	형제자매로만구성	-	1.6
	조부모+손자녀	1.5	-
	비혈연/기타	-	3.6
	소계	100.0	100.0
가구전체 소득	월평균 100만 원 미만	6.5	4.9
	월평균 100~200만 원 미만	15.1	5.9
	월평균 200~300만 원 미만	**27.9**	26.4
	월평균 300~400만 원 미만	23.8	**27.9**
	월평균 400~500만 원 미만	12.4	18.1
	월평균 500~600만 원 미만	10.5	9.8
	월평균 600~700만 원 미만	2.3	2.2
	월평균 700~1,000만 원 미만	1.7	3.9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	0.8
	소계	100.0	100.0

한편, 세대구성을 살펴보면 2012년과 2014년도 모두 '부부+자녀'로 구성된 경우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월평균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소득 가구보다는 저소득 가구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연도별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2012년과 2014년 모두 '모른다'의 응답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범죄자에 대해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2012년, 2014년 모두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즉, 2012년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란 응답이 전체의 32.6%였고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가 26.7%, '경찰이 알려줘서'가 16.3% 등의 순이었으며, 2014년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의 응답이 62.1%로 가장 많았고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란 응답이 27.5%, '경찰이 알려줘서'가 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9〉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범죄자 정보 인지수준 및 경로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범죄자에 대해 무언가를 안다	예	11.2	12.0
	아니오	**88.8**	**88.0**
	소계	100.0	100.0
범죄자 정보를 알게 된 경로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	**32.6**	**62.1**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	6.6	-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	26.7	27.5
	경찰이 알려줘서	16.3	10.4
	그 외의 경우	17.8	-
	소계	100.0	100.0

한편, 자동차(부품)손괴와 자동차(부품)절도, 단순손괴와 같은 기타 가구대상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가운데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범위 내에서 범죄자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2012년과 2014년 모두 가해자의 수는 1명, 가해자의 성별은 남자, 연령대는 30대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범행 당시 가해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나 '잘 아는 이웃'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6-30〉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범죄자의 특성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수	**1명**		**65.5**	**100.0**
	2명		19.4	-
	3명		4.1	-
	4명		10.9	-
	소계		100.0	100.0
성별	**남자**		**71.5**	**100.0**
	여자		22.8	-
	남녀 모두		-	-
	모르겠다		5.6	-
	소계		100.0	100.0
연령대	12세 미만(아동)		-	-
	10대 중반		14.0	10.4
	10대 후반		20.5	13.7
	20대		5.6	-
	30대		**21.6**	**40.5**
	40대		20.6	18.3
	50대		6.6	7.6
	60대 이상		5.5	9.5
	모르겠다		5.6	-
	소계		100.0	100.0
가해자 음주 여부	그렇다		13.9	30.9
	아니다		**45.4**	**59.6**
	모르겠다		40.6	9.5
	소계		100.0	100.0
피해자와의 관계	친인척	남편·아내	-	-
		(조)부모	-	-
		(손)자녀	-	-

구분			2012년	2014년
		형제·자매	-	-
		전남편·전처	-	-
		기타친인척	-	-
		소계	-	-
	친인척 이외의 아는사람	친구	-	-
		애인(전애인포함)	-	-
		학교선후배	-	-
		직장동료	-	-
		직장상사	-	-
		거래하던사람	-	-
		잘아는이웃	7.2	18.0
		얼굴만아는사람	6.6	-
		소계	13.8	18.0
	전혀 모르는 사람		**86.2**	**82.0**
	계		100.0	100.0

라. 연도별 범죄피해 경험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먼저,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정신적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2012년에 비해 2014년 조사결과에서는 '우울함', '고립감', '불면증',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에 대한 응답의 경우에는 2012년도 조사결과에는 '있었다'는 응답이 2.5%였으나 2014년 조사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31〉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후 정신적 피해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정신적 피해 내용 및 경험 여부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13.7	**86.3**	17.1	**82.9**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	**100.0**	7.9	**92.1**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11.2	**88.8**	9.8	**90.2**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7.0	**93.0**	8.5	**91.5**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1.9	**98.1**	2.3	**97.7**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	**100.0**	-	**100.0**
	자살 충동	-	**100.0**	-	**100.0**

구분		2012년		2014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자살 시도	-	100.0	-	100.0
	그 외의 고통	18.7	81.3	5.4	94.6
구분		2012년		2014년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	있었다	2.5		-	
	없었다	97.5		100.0	

자동차(부품)손괴와 자동차(부품)절도, 그리고 단순손괴와 같은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경험 후 감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도의 경우에는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과 같은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의 경우 '변화 없다'는 응답이 43.7%, '낮아진 편이다'란 응답이 41.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4년의 경우 역시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이라는 감정 변화에 있어서는 '변화 없다'의 응답이 많았으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의 경우 '낮아진 편이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4년도 조사결과와 2012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이후 자신의 방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존감,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및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감과 같은 감정의 변화는 없었지만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은 다소 낮아졌다는 응답이 2014년 조사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6-32〉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후 감정 변화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 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 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	5.3	84.4	10.3	-	-	3.6	89.6	6.7	-

구분	2012년					2014년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 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 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 (자존감)	-	3.5	**89.0**	6.7	0.8	-	3.1	**94.3**	2.5	-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12.5	41.4	**43.7**	1.8	0.6	3.4	**51.3**	42.1	3.1	-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5.4	21.0	**71.4**	1.5	0.6	-	15.9	**78.7**	3.0	2.4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4.3	17.0	**76.6**	2.2	-	-	7.7	**89.0**	3.3	-

제5절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내용 요약 및 소결

본 장에서는 2014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과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조사 기준 연도별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은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유형과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유형에는 주거침입강도와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그리고 단순주거침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에는 자동차(부품)절도와 자동차(부품)손괴, 단순손괴가 포함되어 있다.

2014년 조사결과,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전체의 1.6%였고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1.4%로 나타났으며, 총 피해건수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가 123건,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가 120건이었다. 한편 가구 대상 범죄피해가구의 구체적인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의 경우는 1건의 피해를 겪은 가구 수가 전체의 96.2%였으며 2건은 3.3%, 3건은 0.5%로 나타났고,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의 경우는 1건의 피해를 겪은 가구 수가 전체의 91.2%, 2건을 경험한 가구 수는 8.8%로 주거침입 관련 범죄에 비해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에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발생 계절의 경우는 '여름', 사건발생 시간의 경우는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다', 침입방법으로는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건발생 당시 집에 누군가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아무도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5.9%였고 무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에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84% 이상으로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이나 사건발생 당시의 피해 상황을 정리해 보았을 때,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상황은 많지 않음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가구의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소득 가구보다는 저소득 가구에서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 절도를 비롯한 주거침입 강도, 주거침입 손괴 그리고 단순주거침입과 같은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는지 살펴본 결과, 다른 정신적 피해보다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범죄피해를 경험하기 이전에 비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발생 계절의 경우는 ‘가을’, 사건발생 시간은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88.0%로 자동차(부품)손괴나 자동차(부품)절도, 단순손괴와 같은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유형의 특성상 주거침입 관련 범죄에 비해 범죄피해 당시 범죄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피해가구의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가 전체의 52.%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범죄피해 경험 이후 겪은 정신적 피해로는 ‘우울함’이 다른 정신적 피해에 비해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게 나타났다. 한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의 경우는 범죄피해 이후 ‘더 낮아진 편이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9년 개편 이후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내용 변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침입 관련 범죄는 2012년에는 2.2%였으나 2014년에는 1.6%로,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는 2012년에는 1.6%였으나 2014년에는 1.4%로 2012년에 비해 2014년도의 가구대상 범죄피해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두 번째, 2010년

부터 2014년까지의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건발생 계절의 경우 '가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계절의 발생률은 감소 추세이고 침입방법으로 여전히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는 철저한 문단속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가구의 주택유형으로는 2010년에 비해 2014년에는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범죄피해 경험 이후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2012년에 이어 2014년도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네 번째, 자동차(부품)절도와 자동차(부품)손괴, 단순손괴와 같은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의 경우 사건발생 계절이 2012년에는 '봄'이 가장 많았으나 2014년 조사결과 '가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피해가구의 주택유형으로는 여전히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다섯 번째,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경험 이후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살펴본 결과 2012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경우보다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의 경우 2012년도 결과와는 달리 범죄피해를 경험한 이후 '더 낮아진 편이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이처럼, 2014년도 기준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피해내용과 연도별 변화 양상을 정리함으로써 가구대상범죄 피해의 특성과 시기별 피해발생 및 피해 내용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제7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최 수 형

제7장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제1절 경찰신고율

1.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2014년도 기준 범죄피해조사 결과 555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123건을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여 전체 신고율은 22.8%(가중치 적용값)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유형을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폭력범죄의 신고율은 16.3%, 재산범죄의 신고율은 23.6%로 나타나 폭력범죄에 비해 재산범죄의 신고율이 다소 높았다. 이는 재산범죄가 폭력범죄에 비해 피해 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할 수는 있지만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상승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다음에 살펴볼 신고 이유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표 7-1〉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단위: 건, %)

구분	2014년 피해사례	2014년 신고건수	백분율(%)	가중치
폭력범죄	57	10	17.5	16.3
재산범죄	**498**	**113**	**22.7**	**23.6**
합계	555	123	22.2	22.8

2. 범죄피해를 신고한 이유

아래의 표는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유에 대한 응답한 것이다. 먼저, 폭력피해의

경우 신고이유의 1순위로 '가해자를 검거, 처벌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2순위로는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가 44.8%였다. 한편, 재산피해의 경우는 1순위와 2순위 모두 '손실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즉, 재산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유의 1순위로는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가 34.7%, '가해자를 검거, 처벌하기 위하여'가 31.8%,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가 17.0%,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가 14.4% 등의 순이었고 2순위로는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가 27.9%, '가해자를 검거 및 처벌하기 위하여'가 26.2%,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가 25.8%,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가 16.6% 등의 순이었다. 즉, 앞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신고율에 있어서 재산범죄의 신고율이 다소 높은 것은 신고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재산범죄를 신고한 이유 가운데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 피해 사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범죄피해 사실의 심각성이라는 요인보다는 범죄피해를 경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7-2〉 범죄피해 신고 이유

(단위: 건, %)

구분	폭력피해				재산피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9(90.0)	91.7	-	-	36(31.9)	31.8	32(28.6)	26.2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	-	3(30.0)	46.6	42(37.2)	34.7	32(28.6)	27.9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	5(50.0)	44.8	18(15.9)	17.0	27(24.1)	25.8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	-	-	-	1(0.9)	0.8	3(2.7)	2.9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10.0)	8.3	2(20.0)	8.6	14(12.4)	14.4	17(15.2)	16.6
그 외의 이유	-	-	-	-	2(1.8)	1.3	1(0.9)	0.7
합계	10(100.0)	100.0	10(100.0)	100.0	113(100.0)	100.0	112(100.0)	100.0

3.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그렇다면 범죄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결과, 폭력피해와 재산피해 모두 신고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1순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2순위로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즉,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이유의 상당 부분이 피해의 심각성 여부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가 차지하였다. 다만, 폭력피해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이유의 1순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다음으로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2.4%, '보복이 두려워서'가 17.8%로 폭력피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의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표 7-3〉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단위: 건, %)

구분	폭력피해				재산피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15(31.9)	35.5	5(10.9)	8.4	167(43.4)	43.2	70(19.6)	19.5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2(4.3)	4.1	8(17.4)	10.4	35(9.1)	10.0	49(13.7)	13.5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1(2.1)	2.6	6(13.0)	15.1	96(24.9)	23.3	75(20.9)	21.7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3(6.4)	6.1	5(10.9)	13.4	28(7.3)	8.5	55(15.4)	16.4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0(0.0)	0.0	6(13.0)	14.3	28(7.3)	7.4	72(20.1)	19.4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8(17.0)	11.5	5(10.9)	11.1	20(5.2)	5.1	19(5.3)	5.1
보복이 두려워서	8(17.0)	17.8	5(10.9)	12.8	2(0.5)	0.2	3(0.8)	0.7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10 (21.3)	22.4	5(10.9)	11.4	5(1.3)	1.3	9(2.5)	2.2
그 외의 이유	0(0.0)	0.0	1(2.2)	2.9	4(1.0)	0.9	6(1.7)	1.6
합계	47(100.0)	100.0	46(100.0)	100.0	385(100.0)	100.0	358(100.0)	100.0

제2절 처리현황 및 만족도

1. 경찰조치 여부 및 내용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의 조치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해당 조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즉, 폭력피해사건의 경우 신고 후 경찰의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였고 재산피해의 경우 84.9%로 재산피해 신고 후 경찰의 조치율이 폭력피해 신고 후 경찰의 조치율에 비해 다소 낮았다.

한편, 경찰의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력피해의 경우는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가 42.9%였고 그 다음으로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가 27.2%,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가 16.5%,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가 13.5%의 순이었다. 재산피해의 경우는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50.2%,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가 30.0%,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가 12.5%,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가 7.3%였다.

〈표 7-4〉 경찰조치 여부 및 내용

(단위: 건, %)

구분		폭력피해		재산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신고 후, 경찰은 조치를 했습니까?	**예**	**9(90.0)**	**90.6**	**98(86.7)**	**84.9**
	아니오	1(10.0)	9.4	15(13.3)	15.1
	합계	10(100.0)	100.0	113(100.0)	100.0
경찰 조치 내용 (중복응답)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2(13.3)	13.5	33(26.4)	30.0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8(53.3)**	**42.9**	**64(51.2)**	**50.2**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3(20.0)	27.2	18(14.4)	12.5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2(13.3)	16.5	10(8.0)	7.3
	소계	15(100.0)	100.0	125(100.0)	100.0

* 중복응답의 경우, 백분율 및 합계는 응답 기준이다.

2.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이해 정도

폭력피해사건의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살펴본 결과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해당 정보제공 시 이해 정도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가 49.4%,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가 28.4%,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가 22.3%였다. 반면, 재산피해사건의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60.6%에 불과하였고 해당 제공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의 경우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가 41.8%,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가 19.9%,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가 18.3%,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가 15.8%,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가 4.1%였다. 즉, 재산피해사건 신고 후 피해자는 경찰에 의해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정도가 폭력피해사건 피해자에 비해 적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역시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7-5〉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 및 이해 정도

(단위: 건, %)

구분		폭력피해		재산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정보제공 여부	**정보제공**	**9(90.0)**	**90.6**	**69(61.1)**	**60.6**
	정보제공하지 않음	1(10.0)	9.4	44(38.9)	39.4
	합계	10(100.0)	100.0	113(100.0)	100.0
이해 정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1(11.1)	22.3	15(21.7)	19.9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6(66.7)**	**49.4**	**31(44.9)**	**41.8**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2(22.2)	28.4	9(13.0)	15.8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	-	12(17.4)	18.3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	-	2(2.9)	4.1
	소계	9(100.0)	100.0	69(100.0)	100.0

3.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폭력피해의 경우 '약간 불만족했다'가 27.8%로 가장 많았고 '약간 만족했다'가 25.8%, '매우 만족스럽다'가 20.2%, '매우 불만족했다'가 15.4% 등의 순이었고 재산피

해의 경우 '보통이다'가 35.4%였고 '약간 만족했다'가 21.9%, '약간 불만족했다'가 20.1%, '매우 불만족했다'가 18.4%, '매우 만족스럽다'가 4.2%였다. 즉, 폭력피해의 경우 '불만족했다'는 응답이 42.2%로 '보통이다'와 '만족했다'의 응답율(56.9%)에 비해 낮았고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도 '불만족했다'가 38.5%로 '보통이다'와 '만족했다'는 응답(61.5%)이 더 많아 전반적으로 범죄피해사건에서 경찰조치에 만족하였음을 보인다. 다만, 폭력범죄피해사건의 경우 재산범죄피해사건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이는 앞서 살펴본 경찰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과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 및 이해 정도에서 폭력피해사건의 경우 경찰의 조치율이 재산피해사건에 비해 높았고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율도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폭력범죄피해자의 특성이 경찰 조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6〉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단위: 건, %)

구분	폭력피해		재산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매우 만족스럽다	1(10.0)	20.2	7(6.2)	4.2
약간 만족했다	2(20.0)	25.8	25(22.1)	21.9
보통이다	2(20.0)	10.9	**37(32.7)**	**35.4**
약간 불만족했다	**3(30.0)**	**27.8**	21(18.6)	20.1
매우 불만족했다	2(20.0)	15.4	23(20.4)	18.4
합계	10(100.0)	100.0	113(100.0)	100.0

4. 범인검거 여부

범죄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 후 범인이 검거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폭력피해사건의 경우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가 57.0%, '모두 검거했다'가 40.4% 등이었고 재산피해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가 69.8%, '모르겠다'가 17.1%, '모두 검거했다'가 11.5% 등이었다(〈표 7-7〉 참고). 즉, 재산범죄피해사건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사건에 비해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적었고 범인검거 여부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었다. 물론 범죄의 성격이 상이하여 검거율의 차이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재산범죄피해사건에 대한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낮은 정보 제공율(〈표 7-5〉 참고)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표 7-7〉 범인검거 여부

(단위: 건, %)

구분	폭력피해		재산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모두 검거했다	4(40.0)	40.4	16(14.2)	11.5
일부를 검거했다	-	-	2(1.8)	1.6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5(50.0)**	**57.0**	**75(66.4)**	**69.8**
모르겠다	1(10.0)	2.6	20(17.7)	17.1
합계	10(100.0)	100.0	113(100.0)	100.0

5.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및 손실 일수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경찰 신고로 인한 시간 손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7-8〉과 같다. 먼저, 조사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인한 시간손실의 경우 폭력피해사건의 경우는 '있었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 재산피해사건의 경우는 '없었다'란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두 번째,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손실의 경우는 '없었다'라는 응답이 폭력피해사건에서는 72.2%, 재산피해사건에서는 89.2%로 '있었다'라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세 번째,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인한 시간손실의 경우 역시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폭력피해사건의 경우는 88.1%, 재산피해사건의 경우는 92.7%로 나타났다. 즉, 폭력피해사건의 경우 경찰 관련 활동으로 인한 시간 손실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지만 검찰이나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피해사건의 경우는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은 '없었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러한 시간손실 여부에 대한 응답의 경우 검찰이나 법원 관련 활동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사건에 따른 시간 손실 일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7-8〉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단위: 건, %)

구분		폭력피해		재산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있었다	**7(70.0)**	**59.9**	42(37.2)	32.4
	없었다	3(30.0)	40.1	**71(62.8)**	**67.6**
	소계	10(100.0)	100.0	113(100.0)	100.0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있었다	4(40.0)	27.8	14(12.4)	10.8
	없었다	**6(60.0)**	**72.2**	**99(87.6)**	**89.2**
	소계	10(100.0)	100.0	113(100.0)	100.0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있었다	2(20.0)	11.9	10(8.8)	7.3
	없었다	**8(80.0)**	**88.1**	**103(91.2)**	**92.7**
	소계	10(100.0)	100.0	113(100.0)	100.0

아래의 표는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일수를 나타낸 것으로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일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력피해사건의 경우 '1일'인 경우가 전체의 87.2%였고 '3일'이었던 경우가 12.8%였으나 재산피해사건의 경우는 '1일'인 경우가 71.9%, '2일'인 경우가 7.8%, '3일'인 경우가 5.6%, '5일 이상'인 경우가 1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 관련 활동으로 인한 시간 손실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폭력피해사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시간 손실 일수를 살펴보면 폭력피해사건에 비해 재산피해사건의 경우 시간 손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검찰이나 법원 관련 활동으로 인한 시산손실 일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는 아마도 검찰이나 법원 관련 활동에 있어서 폭력범죄피해자에 비해 재산범죄피해자의 진술 등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7-9〉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일수

(단위: 일, %)

구분		폭력피해		재산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일수	1	6(85.7)	87.2	27(64.3)	71.9
	2	-	-	4(9.5)	7.8
	3	1(14.3)	12.8	3(7.1)	5.6
	5	-	-	1(2.4)	1.5
	7	-	-	1(2.4)	1.5
	10	-	-	3(7.1)	8.0
	15	-	-	1(2.4)	1.5
	20	-	-	1(2.4)	1.5
	30	-	-	1(2.4)	0.8
	소계	7(100.0)	100.0	42(100.0)	100.0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일수	1	3(75.0)	72.5	6(42.9)	55.6
	2	1(25.0)	27.5	1(7.1)	4.8
	3	-	-	1(7.1)	9.7
	4	-	-	2(14.3)	11.4
	5	-	-	1(7.1)	8.5
	10	-	-	1(7.1)	3.1
	15	-	-	1(7.1)	2.5
	100	-	-	1(7.1)	4.4
	소계	4(100.0)	100.0	14(100.0)	100.0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일수	1	1(50.0)	63.8	5(50.0)	61.6
	2	-	-	2(20.0)	21.5
	3	1(50.0)	36.2	1(10.0)	6.7
	30	-	-	1(10.0)	3.7
	100	-	-	1(10.0)	6.5
	소계	2(100.0)	100.0	10(100.0)	100.0

제3절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변화에 대한 추세 분석

1. 연도별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아래의 〈표 7-10〉은 2008년부터의 신고율을 살펴본 것이다. 2008년 개편된 범죄피해조사 이후 매 조사마다 조사표 변경 및 피해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에서

보여주는 신고율의 경우는 전체 피해사례 가운데 신고 건수를 살펴본 것이다.

〈표 7-10〉 연도별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단위: 건, %)

구분	피해사례	신고건수(%)	가중치 신고율
2008년	972	142(14.6)	14.5
2010년	1,056	238(22.5)	22.3
2012년	**601**	**157(26.1)**	**24.7**
2014년	555	123(22.2)	22.8

즉,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신고율이 14.5%에서 24.7%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22.8%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범죄피해신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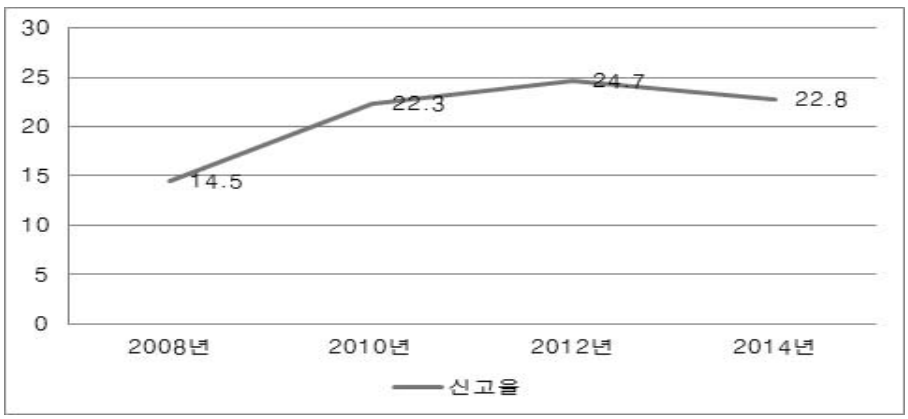

[그림 7-1] 범죄피해 신고율 연도별 추이

다만, 2014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신고율이 다소 낮은 것은 〈표 7-11〉에서 나타나듯이 범죄유형별 신고율의 변화에서 해당 이유를 예상할 수 있는데 2012년에 비해 2014년의 폭력피해사건에서 신고율이 31.8%에서 16.3%로 낮아졌고 재산피해사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에서 살펴볼 폭력피해사건을 신고한 이유와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 7-11〉 연도별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신고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2년 신고 여부			
		폭력피해		재산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귀하는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신고했다	34(35.8)	31.8	123(24.3)	23.3
	신고하지 않았다	**61(64.2)**	**68.2**	**383(75.7)**	**76.7**
	소계	95(100.0)	100.0	506(100.0)	100.0

구분		2014년 신고 여부			
		폭력피해		재산피해	
		빈도(%)	가중치	빈도(%)	가중치
귀하는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신고했다	10(17.5)	16.3	113(22.7)	23.6
	신고하지 않았다	**47(82.5)**	**83.7**	**385(77.3)**	**76.4**
	소계	57(100.0)	100.0	498(100.0)	100.0

2. 연도별 범죄피해 신고 이유

아래의 표는 2012년과 2014년의 범죄피해 신고 이유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표이다. 즉, 2012년에서는 폭력피해사건의 경우 신고 이유 1순위로 '가해자를 검거 및 처벌하기 위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가 27.5% 등이었으나 2014년에서는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가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8.3%에 그쳤다. 한편, 재산피해사건의 경우는 신고 이유의 1순위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012년에는 39.9%, 2014년에는 34.7%로 가장 많았으며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 이유로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에는 7.0%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4.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인식은 2012년에 비해 2014년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폭력피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신고 인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에 살펴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 7-12〉 연도별 범죄피해 신고 이유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폭력피해		재산피해		폭력피해		재산피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50.8**	34.1	35.8	26.0	**91.7**	-	31.8	26.2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7.6	17.1	**39.9**	25.9	-	**46.6**	**34.7**	**27.9**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4.1	**45.9**	16.0	**27.1**	-	44.8	17.0	25.8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	-	1.3	2.3	-	-	0.8	2.9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27.5	2.9	7.0	18.7	8.3	8.6	14.4	16.6
그 외의 이유	-	-	-	-	-	-	1.3	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연도별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아래의 〈표 7-13〉은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2012년과 2014년을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다. 2012년의 경우는 폭력피해사건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란 응답이 12.9% 등이었으나 2014년의 경우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35.5%로 가장 많기는 했지만 그 다음으로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가 22.4%, '보복이 두려워서'가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오늘날 피해자 신상 노출로 인한 문제점과 보복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폭력범죄피해사건에 대한 신고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7-13〉 연도별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폭력피해		재산피해		폭력피해		재산피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51.8**	9.6	**50.8**	14.6	**35.5**	8.4	**43.2**	19.5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5.8	**30.0**	7.1	13.5	4.1	10.4	10.0	13.5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12.9	9.2	21.6	**26.9**	2.6	**15.1**	23.3	**21.7**

구분	2012년				2014년			
	폭력피해		재산피해		폭력피해		재산피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8.5	12.0	8.1	17.0	6.1	13.4	8.5	16.4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6.9	11.2	4.1	17.1	0.0	14.3	7.4	19.4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5.8	5.4	4.1	4.4	11.5	11.1	5.1	5.1
보복이 두려워서	3.9	8.4	1.0	0.9	17.8	12.8	0.2	0.7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3.1	8.8	1.1	2.3	22.4	11.4	1.3	2.2
그 외의 이유	1.4	5.3	2.0	3.3	0.0	2.9	0.9	1.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연도별 경찰조치 여부 및 내용

다음은 경찰에 신고 후 적정한 조치를 했는지 살펴본 결과 2012년에 비해 2014년의 경찰 조치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폭력피해사건의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응답이 2012년 52.6%에서 2014년 42.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는 응답이 14.3%에서 27.2%로 증가하였고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는 응답이 13.6%에서 16.5%로 증가하였다. 한편,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했다'는 19.5%에서 13.5%로 감소하여 오늘날 신고 후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예상할 수 있다. 재산피해사건의 경우에도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가 44.4%에서 50.2%로 해당 비율이 증가하였고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의 응답 역시 6.3%에서 7.3%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했다'는 응답은 27.5%에서 30.0%로 증가하였고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는 응답은 21.8%에서 12.5%로 감소하였다.

〈표 7-14〉 연도별 경찰조치 여부 및 내용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폭력피해	재산피해	폭력피해	재산피해
신고 후, 경찰은 조치를 했습니까?	**예**	**89.4**	**83.6**	**90.6**	**84.9**
	아니오	10.6	16.4	9.4	1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경찰 조치 내용 (중복응답)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19.5	27.5	13.5	30.0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52.6**	**44.4**	**42.9**	**50.2**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14.3	21.8	27.2	12.5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13.6	6.3	16.5	7.3
	소계	100.0	100.0	100.0	100.0

* 중복응답의 경우, 백분율 및 합계는 응답 기준이다.

5. 연도별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 및 이해 정도

다음의 〈표 7-15〉는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와 이해 정도를 2012년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2012년에 비해 2014년에는 해당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모든 피해사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2년 폭력피해사건의 경우 정보제공을 받았다는 응답이 67.2%였으나 2014년에는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재산피해사건의 경우에는 59.8%에서 60.6%로 다소 증가하였다. 한편, 정보제공 내용에 대한 이해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본 결과, 폭력피해사건에서 2012년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한 건도 없었다. 재산피해사건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의 비율이 2012년 15.9%였으나 2014년에는 22.4%로, 2012년에 비해 2014년의 이해 정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정도는 사건정보제공자의 전달 능력이나 제공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건정보 내용 그 자체의 어려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의 설명이 우선되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표 7-15〉 연도별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 및 이해 정도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폭력피해	재산피해	폭력피해	재산피해
정보제공 여부	**정보제공**	**67.2**	**59.8**	**90.6**	**60.6**
	정보제공하지 않음	32.8	40.2	9.4	39.4
	합계	100.0	100.0	100.0	100.0
이해 정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34.6	36.0	22.3	19.9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38.2**	**37.0**	**49.4**	**41.8**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16.2	11.2	28.4	15.8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8.7	12.4	-	18.3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2.3	3.5	-	4.1
	소계	100.0	100.0	100.0	100.0

6. 연도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다음은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연도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보통이다'와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7-16〉 연도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매우 만족스럽다	2.2	4.2	8.4	5.4
약간 만족했다	17.1	24.8	17.1	22.2
보통이다	**41.3**	**27.4**	**30.9**	**33.6**
약간 불만족했다	12.2	17.1	17.9	20.7
매우 불만족했다	27.2	26.4	25.6	18.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연도별 신고 이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보통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매우 불만족했다', '약간 만족했다', '약간 불만족했다', '매우 만족스럽다'의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까지는 이어졌으며, 2012년에는 '보통이다'(30.9%), '매우 불만족했다'(25.6%), '약간 불만족했다'(17.9%), '약간 만족했다'(17.1%), '매우 만족스럽

다'(8.4%)의 순으로 이전 조사결과와 상당 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2014년에는 '보통이다'(33.6%), '약간 만족했다'(22.2%), '약간 불만족했다'(20.7%), '매우 불만족했다'(18.1%), '매우 만족스럽다'(5.4%)의 순으로 2008년에 비해 '만족한다'의 비율이 19.3%에서 27.6%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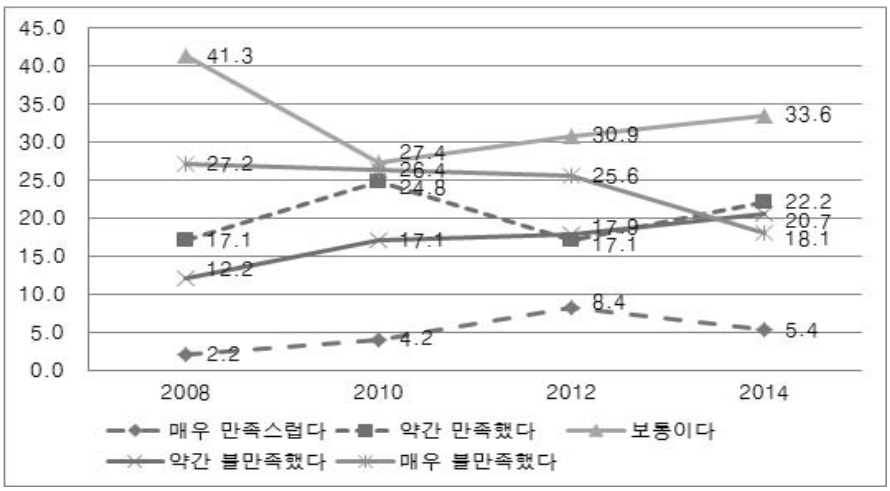

[그림 7-2] 연도별 신고 이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7. 연도별 범인검거 여부

다음의 표는 범인검거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 차지하였고 2014년에는 68.9%나 차지하여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는 범인검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7-17〉 연도별 범인검거 여부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모두 검거했다	12.2	17.3	23.0	13.6
일부를 검거했다	0.6	2.1	3.7	1.4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57.4**	**58.7**	**55.6**	**68.9**
모르겠다	29.9	21.9	17.8	16.1
합계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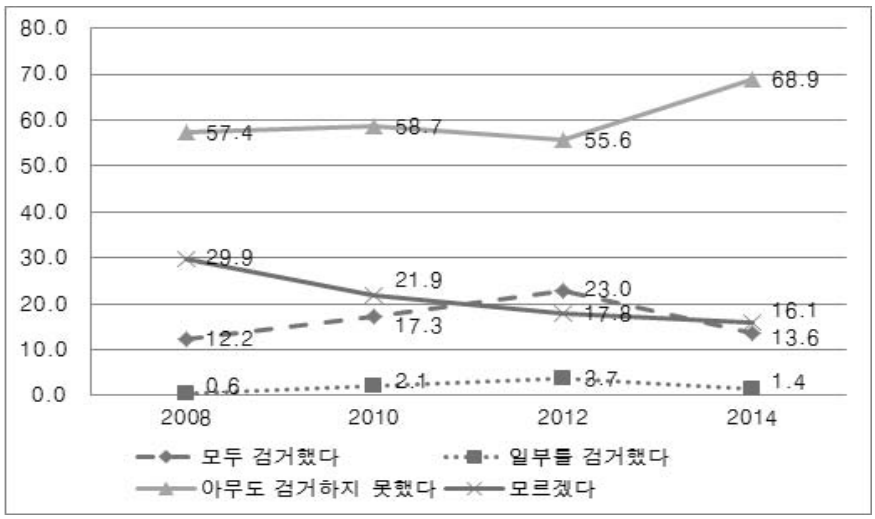

[그림 7-3] 연도별 신고 이후 범인검거 여부

8. 연도별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및 손실 일수

아래의 〈표 7-18〉은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를 살펴 본 것으로 전반적으로 2012년에 비해 2014년의 조사결과,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피해사건의 경우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이 '있었다'는 응답이 2012년에 40.9%에서 2014년에 59.9%로, 검찰 관련 활동으로 인한 시간 손실의 경우에도 '있었다'는 응답이 11.8%에서 27.8%로, 법원 관련 활동으로 인한 시간 손실의 경우 역시 2.5%에서 11.9%로 증가한 것이다. 재산피해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이 '있었다'는 응답이 2012년에 31.7%에서 2014년에 32.4%로, 검찰 관련 활동으로 인한 시간 손실의 경우에도 '있었다'는 응답이 5.3%에서 10.8%로, 법원 관련 활동으로 인한 시간 손실의 경우 역시 3.1%에서 7.3%로 증가한 것이다.

〈표 7-18〉 연도별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4년	
		폭력피해	재산피해	폭력피해	재산피해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있었다	40.9	31.7	**59.9**	32.4
	없었다	**59.1**	**68.3**	40.1	**67.6**
	소계	100.0	100.0	100.0	100.0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있었다	11.8	5.3	27.8	10.8
	없었다	**88.2**	**94.7**	**72.2**	**89.2**
	소계	100.0	100.0	100.0	100.0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있었다	2.5	3.1	11.9	7.3
	없었다	**97.5**	**96.9**	**88.1**	**92.7**
	소계	100.0	100.0	100.0	100.0

〈표 7-19〉는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일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4년의 경우에도 폭력피해사건에 비해 재산피해사건에서 2일 이상의 시간 손실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표 7-19〉 연도별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일수 : 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일, %)

구분		2012년		2014년	
		폭력피해	재산피해	폭력피해	재산피해
조사 협조 등 경찰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일수	1	**81.6**	**54.9**	**87.2**	**71.9**
	2	-	16.1	-	7.8
	3	-	13.9	12.8	5.6
	4	-	4.6	-	-
	5	-	4.7	-	-
	7	-	-	-	1.5
	10	13.4	3.7	-	8.0
	15	5.0	-	-	1.5
	20	-	-	-	1.5
	24	-	2.1	-	-
	30	-	-	-	0.8
	소계	100.0	100.0	100.0	100.0

구분		2012년		2014년	
		폭력피해	재산피해	폭력피해	재산피해
검찰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일수	1	**76.8**	**64.4**	**3(75.0)**	**55.6**
	2	-	7.4	1(25.0)	4.8
	3	-	8.4	-	9.7
	4	-	-	-	11.4
	5	-	19.8	-	8.5
	10	23.2	-	-	3.1
	15	-	-	-	2.5
	100	-	-	-	4.4
	소계	100.0	100.0	100.0	100.0
법정 진술 등 법원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일수	1	19.8	25.8	**63.8**	**61.6**
	2	-	8.4	-	21.5
	3	-	-	36.2	6.7
	5	-	**47.3**	-	-
	10	**80.2**	18.5	-	-
	30	-	-	-	3.7
	100	-	-	-	6.5
	소계	100.0	100.0	100.0	100.0

제4절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요약 및 소결

이 장에서는 2014년도 기준 조사 결과 피해신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해당 피해신고에 대한 처리 현황을 정리하여 연도별 변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2014년도 조사결과 전체 555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123건을 신고하여 22.8%의 신고율을 나타냈으며, 폭력범죄피해 신고율(17.5%)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신고율(22.7%)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신고이유로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폭력피해보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더 많이 나타나 재산범죄피해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와 '보복이 두려워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오늘날 피해자의 신원 노출이나 보복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면서 폭력범죄피해 신고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율에 있어서는 폭력피해사건이 재산피해사건보다 더 높았고 이는 사건처리에 대한 정보 제공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폭력피해사건의 경우 사건처리 정보 제공율이 전체의 90.6%였으나 재산피해사건의 경우는 60.6%에 그쳤다.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에서 폭력피해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의 경우 재산피해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세 번째, 사건 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를 살펴본 결과 경찰 관련 활동으로 인한 시간 손실이 '있었다'는 응답은 폭력피해사건이 59.9%, 재산피해사건이 32.4%였으나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의 경우는 폭력피해사건이 27.8%, 재산피해사건이 10.8%였으며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은 폭력피해사건이 11.9%, 재산피해사건이 7.3%였다. 이처럼 재산범죄피해사건의 경우 경찰 관련 활동으로 인한 시간 손실을 제외하고는 폭력피해 사건에 비해 시간 손실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낮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시간 손실 일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경찰신고 및 처리 현황 변화를 정리해보면 2008년 이후 신고율이 14.5%에서 2014년 22.8%로 증가하여 오늘날 범죄피해신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2014년도의 범죄피해 신고율이 2012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은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폭력범죄피해 사건의 피해자 신원 노출이나 보복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해당 범죄피해신고를 꺼리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 신고 경찰의 조치율이나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율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4년 기준 조사 결과 증가하였고 2008년 이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피해 신고 이후 경찰조치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앞으로 범죄피해유형의 특성과 범죄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범죄피해사건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이후 사건 해결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8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김 지 영

제8장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이 장에서는 범죄피해 취약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된 범죄피해 취약성과 관련된 요인들은 지역특성, 가구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활양식의 네 가지이다. 이 네 가지 범죄피해취약성요인에 따라 범죄피해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특성에 포함된 변인은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이고, 가구특성에 포함된 변인은 주택유형, 거주형태, 가구소득수준, 방범수준[53], 집을 비운 시간이며,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포함된 변인은 성별, 나이,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양식에 포함된 변인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 늦은 귀가 빈도, 만취 귀가 빈도, 외출 시 옷차림이다.

재산범죄피해는 개인대상범죄와 가구대상범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대상범죄에는 일반절도와 소매치기, 손괴, 사기범죄가 포함되었으며 가구대상범죄에는 주거침입범죄가 포함되었다. 폭력범죄에는 강도, 폭행, 성폭력의 세 가지 범죄가 포함되었다.

〈표 8-1〉 범죄피해취약성 요인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항목
지역특성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무질서, 사회적무질서, 경찰활동
가구특성	주택유형, 거주형태, 가구소득수준, 방범수준, 집비운시간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나이,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유형
생활양식	대중교통이용빈도, 늦은귀가빈도, 만취귀가빈도, 외출시옷차림

53) 총 12개의 문항으로 현관/창문의 이중자물쇠 설치 여부, 특수잠금장치의 설치 여부, 창문/비상구 등의 방범창(쇠창살) 설치 여부, 출입카드 사용 여부, 도난경보시스템 설치 여부, 경비원 여부, 집 주위 반경 20미터 안에 CCTV 설치 여부 등이 있다.

〈표 8-2〉 범죄피해의 종류

범죄피해	피해의 종류	
재산범죄피해	개인대상	일반절도, 소매치기, 손괴, 사기
	가구대상	주거침입범죄
폭력범죄피해	강도, 폭행, 성폭력	

이웃관계는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주민들의 결속과 유대감을 측정하는 변인이다[54]. 4개 문항의 평균은 2.79점, 표준편차 0.96, 신뢰도(Cronbach's α)는 .909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웃참여는 '동네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웃들의 참여가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측정하는 변인이다[55]. 3개 문항의 평균은 3.32점, 표준편차 0.78, 신뢰도(Cronbach's α)는 .726이었다. 물리적 무질서는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56]. 3개 문항의 평균은 2.24점, 표준편차 0.78, 신뢰도(Cronbach's α)는 .783이었다. 사회적 무질서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무질서 행위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57]. 3문항의 평균은 2.22점, 표준편차 0.75, 신뢰도(Cronbach's α)는 .787이었다.

54)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소값 4점, 최대값 20점이었고, 교차분석을 위해서 강함(16-20점), 보통(9-15점), 약함(8점 이하)으로 범주화하였다.
55)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소값 3점, 최대값 15점이었고, 교차분석을 위해 강함(12-15점), 보통(7-11점), 약함(6점 이하)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56) 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최소값 3점, 최대값 15점이었고, 교차분석을 위해 무질서(12-15점), 보통(7-11점), 질서(6점 이하)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57) 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최소값 3점, 최대값 15점이었고, 교차분석을 위해 무질서(12-15점), 보통(7-11점), 질서(6점 이하)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경찰활동은 '순찰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지역경찰의 범죄통제수준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58]. 3문항의 평균은 3.40점, 표준편차 0.71, 신뢰도(Cronbach's α)는 .804이다.

〈표 8-3〉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요인부하량/신뢰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832	1.00	5.00	3.02	1.04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882	1.00	5.00	2.80	1.09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862	1.00	5.00	2.80	1.07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843	1.00	5.00	2.52	1.11
이웃관계	Cronbach's α = .909	1.00	5.00	2.79	0.96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791	1.00	5.00	3.37	0.9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862	1.00	5.00	3.65	0.93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530	1.00	5.00	2.94	1.04
이웃참여	Cronbach's α = .726	1.00	5.00	3.32	0.78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766	1.00	5.00	2.34	0.93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766	1.00	5.00	2.33	0.98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704	1.00	5.00	2.06	0.90
물리적 무질서	Cronbach's α = .783	1.00	5.00	2.24	0.78
기초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729	1.00	5.00	2.42	0.97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763	1.00	5.00	2.14	0.87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782	1.00	5.00	2.11	0.84

58)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소값 3점, 최대값 15점이었으며, 교차분석을 위해 효과적(12-15점), 보통(7-11점), 비효과적(6점 이하)의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요인부하량/신뢰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무질서	Cronbach's α = .787	1.00	5.00	2.22	0.75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796	1.00	5.00	3.32	0.85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844	1.00	5.00	3.57	0.81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829	1.00	5.00	3.32	0.83
경찰활동	Cronbach's α = .804	1.00	5.00	3.40	0.71

* 요인분석시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법은 베리맥스를 사용하였다.

제1절 지역특성과 범죄피해

1. 지역특성과 재산범죄피해

지역특성에 따라 재산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웃관계의 유대정도에 따라 재산범죄피해 여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참여의 강도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의 정도는 재산범죄피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으로 무질서한 지역에 산다고 응답한 사람의 5.1%가 재산범죄피해경험을 보고한 반면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7%만 재산범죄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지역에 산다고 응답한 사람은 4.7%가 재산범죄피해경험을 보고했으며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4%만이 재산범죄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경찰활동의 효율성도 재산범죄피해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지역 내 경찰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집단의 재산범죄피해비율은 2.6%였지만, 보통이라고 평가한 집단은 3.2%,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의 재산범죄피해비율은 4.5%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단위: 빈도, %)

구분		있음	없음	계	x^2
이웃관계	강함	63 (2.8)	2,218 (97.2)	2,281 (100.0)	1.324
	보통	263 (3.1)	8,194 (96.9)	8,457 (100.0)	
	약함	139 (3.3)	4,099 (96.7)	4,238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이웃참여	강함	131 (3.1)	4,038 (96.9)	4,169 (100.0)	0.093
	보통	295 (3.1)	9,201 (96.9)	9,496 (100.0)	
	약함	39 (3.0)	1,272 (97.0)	1,311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물리적 무질서	무질서	25 (5.1)	463 (94.9)	488 (100.0)	14.095**
	보통	232 (3.5)	6,483 (96.5)	6,715 (100.0)	
	질서	208 (2.7)	7,565 (97.3)	7,773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사회적 무질서	무질서	18 (4.7)	369 (95.3)	387 (100.0)	25.744***
	보통	261 (3.8)	6,635 (96.2)	6,896 (100.0)	
	질서	186 (2.4)	7,507 (97.6)	7,693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경찰활동	효과적	122 (2.6)	4,490 (97.4)	4,612 (100.0)	9.257*
	보통	303 (3.2)	9,172 (96.8)	9,475 (100.0)	
	비효과적	40 (4.5)	849 (95.5)	889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 p<.05, ** p<.01, *** p<.001

재산범죄 중에서도 타인의 재산이나 문서 등을 해하는 손괴는 이웃 간의 관계나 물리적 무질서, 경찰활동 등의 지역사회특성과 관계가 깊은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손괴피해경험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에 따른 손괴피해 여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무질서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사회적 무질서가 낮거나(0.5%) 높은 경우(0.5%)에 비해서 보통인 경우(1.0%)가 피해경험 비율이 더 높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경찰활동의 효율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손괴피해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1.2%)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0.8%)에, 그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0.4%)에 피해경험이 더 낮았다.

〈표 8-5〉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손괴범죄피해

(단위: 빈도, %)

구분		있음	없음	계	x^2
이웃관계	강함	3 (0.1)	2,278 (99.9)	2,281 (100.0)	1.751
	보통	5 (0.1)	8,452 (99.9)	8,457 (100.0)	
	약함	2 (0.0)	4,236 (100.0)	4,238 (100.0)	
	합계	10 (0.1)	14,966 (99.9)	14,976 (100.0)	
이웃참여	강함	34 (0.8)	4,135 (99.2)	4,169 (100.0)	2.651
	보통	68 (0.7)	9,428 (99.3)	9,496 (100.0)	
	약함	5 (0.4)	1,306 (99.6)	1,311 (100.0)	
	합계	107 (0.7)	14,869 (99.3)	14,976 (100.0)	
물리적 무질서	무질서	3 (0.6)	485 (99.4)	488 (100.0)	0.127
	보통	47 (0.7)	6,668 (99.3)	6,715 (100.0)	
	질서	57 (0.7)	7,716 (99.3)	7,773 (100.0)	
	합계	107 (0.7)	14,869 (99.3)	14,976 (100.0)	
사회적 무질서	무질서	2 (0.5)	385 (99.5)	387 (100.0)	10.605**
	보통	66 (1.0)	6,830 (99.0)	6,896 (100.0)	
	질서	39 (0.5)	7,654 (99.5)	7,693 (100.0)	
	합계	107 (0.7)	14,869 (99.3)	14,976 (100.0)	
경찰활동	효과적	19 (0.4)	4,593 (99.6)	4,612 (100.0)	10.664**
	보통	77 (0.8)	9,398 (99.2)	9,475 (100.0)	
	비효과적	11 (1.2)	878 (98.8)	889 (100.0)	
	합계	107 (0.7)	14,869 (99.3)	14,976 (100.0)	

** p<.01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주거침입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의 세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무질서가 낮거나(0.5%) 보통인 경우(0.9%)에 비해서 무질서한 집단(2.9%)에서 피해경험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낮은 집단, 보통인 집단은 각각 0.6%와 0.9%의 피해경험을 보고하였지만, 사회적 무질서가 높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1.8%가 주거침입범죄 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활동의 효율성도 주거침입범죄피해 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경찰활동 수준이 효과적이거나(0.8%), 보통이라고(0.7%) 응답한 집단에 비해서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1.6%)의 주거침입범죄 피해율이 더 높았다. 근소한 차이지만 경찰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자들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주거침입범죄를 당한 비율이 약간 높았다(0.1%).

〈표 8-6〉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주거침입범죄피해

(단위: 빈도, %)

구분		있음	없음	계	x^2
이웃관계	강함	1 (0.0)	2,280 (100.0)	2,281 (100.0)	1.338
	보통	11 (0.1)	8,446 (99.9)	8,457 (100.0)	
	약함	4 (0.1)	4,234 (99.9)	4,238 (100.0)	
	합계	16 (0.1)	14,860 (99.9)	14,976 (100.0)	
이웃참여	강함	31 (0.7)	4,138 (99.3)	4,169 (100.0)	1.425
	보통	79 (0.8)	9,417 (99.2)	9,496 (100.0)	
	약함	7 (0.5)	1,304 (99.5)	1,311 (100.0)	
	합계	117 (0.8)	14,859 (99.2)	14,976 (100.0)	
물리적 무질서	무질서	14 (2.9)	474 (97.1)	488 (100.0)	36.700***
	보통	63 (0.9)	6,652 (99.1)	6,715 (100.0)	
	질서	40 (0.5)	7,733 (99.5)	7,773 (100.0)	
	합계	117 (0.8)	14,859 (99.2)	14,976 (100.0)	
사회적 무질서	무질서	7 (1.8)	380 (98.2)	387 (100.0)	11.411**
	보통	65 (0.9)	6,831 (99.1)	6,896 (100.0)	
	질서	45 (0.6)	7,648 (99.4)	7,693 (100.0)	
	합계	117 (0.8)	14,859 (99.2)	14,976 (100.0)	
경찰활동	효과적	35 (0.8)	4,577 (99.2)	4,612 (100.0)	7.746*
	보통	68 (0.7)	9,407 (99.3)	9,475 (100.0)	
	비효과적	14 (1.6)	875 (98.4)	889 (100.0)	
	합계	117 (0.8)	14,859 (99.2)	14,976 (100.0)	

* $p<.05$, ** $p<.01$, *** $p<.001$

2. 지역특성과 폭력범죄피해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폭력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웃관계의 강도와 폭력범죄피해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웃

참여의 강도도 폭력범죄피해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폭력범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물리적 무질서가 낮거나(0.2%), 보통인 경우(0.5%)에 비해서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경우(0.8%), 폭력범죄피해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무질서의 경우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무질서가 낮거나(0.2%) 높은 경우(0.3%)에 비해서 보통인 집단(0.5%)의 피해경험 비율이 더 높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경찰활동의 효율성과 폭력범죄피해경험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단위: 빈도, %)

구분		있음	없음	계	x^2
이웃관계	강함	5 (0.2)	2,276 (99.8)	2,281 (100.0)	1.175
	보통	31 (0.4)	8,426 (99.6)	8,457 (100.0)	
	약함	14 (0.3)	4,224 (99.7)	4,238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이웃참여	강함	15 (0.4)	4,154 (99.6)	4,169 (100.0)	2.096
	보통	28 (0.3)	9,468 (99.7)	9,496 (100.0)	
	약함	7 (0.5)	1,304 (99.5)	1,311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물리적 무질서	무질서	4 (0.8)	484 (99.2)	488 (100.0)	14.975**
	보통	33 (0.5)	6,682 (99.5)	6,715 (100.0)	
	질서	13 (0.2)	7,760 (99.8)	7,773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사회적 무질서	무질서	1 (0.3)	386 (99.7)	387 (100.0)	13.690**
	보통	36 (0.5)	6,860 (99.5)	6,896 (100.0)	
	질서	13 (0.2)	7,680 (99.8)	7,693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경찰활동	효과적	15 (0.3)	4,597 (99.7)	4,612 (100.0)	0.383
	보통	31 (0.3)	9,444 (99.7)	9,475 (100.0)	
	비효과적	4 (0.4)	885 (99.6)	889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 $p<.01$

제2절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재산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라 재산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2.6%)에 비해서 여자(3.6%)가 재산범죄피해경험이 더 많았다. 연령에 따라서도 재산범죄피해에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10대(0.9%), 60대(2.5%), 70대 이상(2.2%)에 비해서 오히려 20대(3.0), 30대(3.7%), 40대(3.9%), 50대(3.8%)가 재산범죄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에서 50대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재산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었는데, 미혼(2.5%)에 비해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3.2%), 사별이나 이혼을 한 집단(4.0%)이 재산범죄피해율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1.8~2.1%)에 비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3.6~4.1%)에게서 재산범죄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범죄피해율이 높은 집단은 대학원 이상의 집단(4.1%)이고, 가장 범죄피해율이 낮은 집단은 중학교 졸업 학력자이다(1.8%). 마지막으로 직업에 따라서도 재산범죄피해경험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1.6%)의 피해율이 가장 낮은 반면,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나 판매업에 종사하는 집단(4.0%)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직업군인이 3.8%,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3.7%, 전업주부 3.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단위: 빈도, %)

구분		있음	없음	계	x^2
성별	남자	180 (2.6)	6,878 (97.4)	7,058 (100.0)	13.651***
	여자	285 (3.6)	7,633 (96.4)	7,918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연령대	10대(만 14세 이상 19세 이하)	9 (0.9)	945 (99.1)	954 (100.0)	38.246***
	20대(만 20세~29세)	55 (3.0)	1,775 (97.0)	1,830 (100.0)	
	30대(만 30세~39세)	84 (3.7)	2,158 (96.3)	2,242 (100.0)	
	40대(만 40세~49세)	108 (3.9)	2,628 (96.1)	2,736 (100.0)	

구분		있음	없음	계	x^2
	50대(만 50세~59세)	108 (3.8)	2,741 (96.2)	2,849 (100.0)	
	60대(만 60세~69세)	53 (2.5)	2,099 (97.5)	2,152 (100.0)	
	70대 이상(만 70세 이상)	48 (2.2)	2,165 (97.8)	2,213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혼인 상태	미혼	86 (2.5)	3,357 (97.5)	3,443 (100.0)	9.251*
	현재 배우자 있음	306 (3.2)	9,407 (96.8)	9,713 (100.0)	
	사별이나 이혼	73 (4.0)	1,747 (96.0)	1,820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교육 수준	안 받았음	14 (2.0)	697 (98.0)	711 (100.0)	24.430***
	초등학교	35 (2.1)	1,624 (97.9)	1,659 (100.0)	
	중학교	29 (1.8)	1,588 (98.2)	1,617 (100.0)	
	고등학교	193 (3.6)	5,217 (96.4)	5,410 (100.0)	
	대학교	187 (3.5)	5,223 (96.5)	5,410 (100.0)	
	대학원 이상	7 (4.1)	162 (95.9)	169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 (3.7)	474 (96.3)	492 (100.0)	25.336**
	사무종사자	85 (3.1)	2,664 (96.9)	2,749 (100.0)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2 (4.0)	2,722 (96.0)	2,83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6 (3.0)	1,156 (97.0)	1,192 (100.0)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36 (3.7)	927 (96.3)	963 (100.0)	
	단순노무종사자	13 (2.6)	487 (97.4)	500 (100.0)	
	직업군인	1 (3.8)	25 (96.2)	26 (100.0)	
	전업주부	99 (3.4)	2,834 (96.6)	2,933 (100.0)	
	학생	29 (1.6)	1,763 (98.4)	1,792 (100.0)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36 (2.4)	1,459 (97.6)	1,495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 p<.05, ** p<.01, *** p<.001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폭력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라 폭력범죄피해경험에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라서는 폭력범죄피해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10대(0.8%)와 20대(0.9%)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폭력범죄피해경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가 가장 낮았고(0.1%), 다음으로 70대 이상과 30대가 0.2%로 낮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폭력범죄

피해경험에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배우자 있는 집단(0.2%)이나 사별이나 이혼을 한 집단(0.4%)에 비해서 미혼(0.8%)인 집단의 폭력범죄피해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피해경험에 있어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직업에 따라서도 폭력범죄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단순노무 종사자(0.0%)나 직업군인(0.0%)은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0.8%), 사무종사자(0.4%), 서비스/판매종사가(0.4%)의 폭력범죄피해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폭력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집단은 10대와 20대의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단위: 빈도, %)

구분		있음	없음	계	x^2
성별	남자	20 (0.3)	7,038 (99.7)	7,058 (100.0)	1.023
	여자	30 (0.4)	7,888 (99.6)	7,918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연령대	10대(만 14세 이상 19세 이하)	8 (0.8)	946 (99.2)	954 (100.0)	34.336***
	20대(만 20세~29세)	17 (0.9)	1,813 (99.1)	1,830 (100.0)	
	30대(만 30세~39세)	5 (0.2)	2,237 (99.8)	2,242 (100.0)	
	40대(만 40세~49세)	7 (0.3)	2,729 (99.7)	2,736 (100.0)	
	50대(만 50세~59세)	3 (0.1)	2,846 (99.9)	2,849 (100.0)	
	60대(만 60세~69세)	6 (0.3)	2,146 (99.7)	2,152 (100.0)	
	70대 이상(만 70세 이상)	4 (0.2)	2,209 (99.8)	2,213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혼인 상태	미혼	26 (0.8)	3,417 (99.2)	3,443 (100.0)	25.870***
	현재 배우자 있음	17 (0.2)	9,696 (99.8)	9,713 (100.0)	
	사별이나 이혼	7 (0.4)	1,813 (99.6)	1,820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교육 수준	안 받았음	1 (0.1)	710 (99.9)	711 (100.0)	1.304
	초등학교	5 (0.3)	1,654 (99.7)	1,659 (100.0)	
	중학교	6 (0.4)	1,611 (99.6)	1,617 (100.0)	
	고등학교	18 (0.3)	5,392 (99.7)	5,410 (100.0)	
	대학교	19 (0.4)	5,391 (99.6)	5,410 (100.0)	
	대학원 이상	1 (0.6)	168 (99.4)	169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구분		있음	없음	계	x^2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 (0.2)	491 (99.8)	492 (100.0)	20.587**
	사무종사자	10 (0.4)	2,739 (99.6)	2,749 (100.0)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 (0.4)	2,823 (99.6)	2,83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 (0.3)	1,188 (99.7)	1,192 (100.0)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 (0.2)	961 (99.8)	963 (100.0)	
	단순 노무 종사자	0 (0.0)	500 (100.0)	500 (100.0)	
	직업군인	0 (0.0)	26 (100.0)	26 (100.0)	
	전업주부	5 (0.2)	2,928 (99.8)	2,933 (100.0)	
	학생	15 (0.8)	1,777 (99.2)	1,792 (100.0)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2 (0.1)	1,493 (99.9)	1,495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 p<.01, *** p<.001

제3절 생활양식요인과 범죄피해

1. 생활양식요인과 재산범죄피해

생활양식에 따라 재산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에 따라서 재산범죄피해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중교통을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3.5%), '일주일에 2~3일 이용하는 경우'(3.2%)는 '일주일에 3~4일'(2.1%), 또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2.9%)에 비해서 재산범죄피해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의 해석은 앞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재산범죄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연령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50대, 40대, 30대 순이었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이 연령대의 응답자들이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들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가 적었다.[59]

귀가시간에 따라서도 재산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늦게 귀가하는 경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집단'(2.6%)에 비해서 '거의 매일

59) 대중교통을 '거의 또한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10대 3.8%, 20대 6.0%, 30대 18.6%, 40대 23%, 50대 21.4%, 60대 12.4%, 70대 이상 14.7%로 나타났다.

늦게 귀가하는 집단'(5.0%)의 재산범죄피해경험율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취해서 귀가하는 빈도에 따른 재산범죄피해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외출 시 화려한 옷을 입거나 유명브랜드의 옷을 입는 외출 시 옷차림에 따른 재산범죄피해경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0〉 생활양식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단위: 빈도, %)

구분		있음	없음	계	x^2
대중교통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97 (3.5)	5,489 (96.5)	5,686 (100.0)	8.599*
	일주일에 2~3일	123 (3.2)	3,718 (96.8)	3,841 (100.0)	
	일주일에 3~4일	33 (2.1)	1,550 (97.9)	1,583 (100.0)	
	일주일에 5일 이상	112 (2.9)	3,754 (97.1)	3,866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늦은 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65 (2.6)	6,214 (97.4)	6,379 (100.0)	11.588**
	한 달에 하루	65 (3.5)	1,791 (96.5)	1,856 (100.0)	
	보름에 하루	45 (3.2)	1,342 (96.8)	1,387 (100.0)	
	일주일에 하루	72 (3.0)	2,304 (97.0)	2,376 (100.0)	
	일주일에 2~3일	79 (3.6)	2,112 (96.4)	2,191 (100.0)	
	거의 매일	39 (5.0)	748 (95.0)	787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만취 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	346 (3.2)	10,547 (96.8)	10,893 (100.0)	6.720
	한 달에 하루	55 (2.8)	1,917 (97.2)	1,972 (100.0)	
	보름에 하루	26 (2.8)	897 (97.2)	923 (100.0)	
	일주일에 하루	24 (2.7)	855 (97.3)	879 (100.0)	
	일주일에 2~3일	12 (4.1)	280 (95.9)	292 (100.0)	
	거의 매일	2 (11.8)	15 (88.2)	17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외출 시 옷차림	유인 작음	261 (2.9)	8,746 (97.1)	9,007 (100.0)	4.752
	보통	178 (3.5)	4,854 (96.5)	5,032 (100.0)	
	유인 큼	26 (2.8)	911 (97.2)	937 (100.0)	
	합계	465 (3.1)	14,511 (96.9)	14,976 (100.0)	

* $p<.05$, ** $p<.01$

2. 생활양식요인과 폭력범죄피해

생활양식에 따라 폭력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에 따라서 폭력범죄피해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중교통을 상대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 폭력범죄피해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0.3%), '일주일에 2~3일 이용하는 경우'(0.1%)에 비해서 '일주일에 3~4일'(0.6%), 또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0.5%)에 폭력범죄피해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연관 지어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가장 잦은 10대와 20대, 학생집단에서[60] 폭력범죄피해율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늦게 귀가하는 빈도에 따라서도 폭력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집단은 0.2%만이 범죄피해를 보고했지만 '일주일에 2~3일 늦게 귀가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피해율이 0.6%로 가장 높았다. '거의 매일 늦게 귀가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피해율은 0.5%로 두번째로 높았다. 외출시 옷차림에 따른 폭력범죄피해경험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1〉 생활양식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단위: 빈도, %)

구분		있음	없음	계	x^2
대중교통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7 (0.3)	5,669 (99.7)	5,686 (100.0)	13.406***
	일주일에 2~3일	4 (0.1)	3,837 (99.9)	3,841 (100.0)	
	일주일에 3~4일	10 (0.6)	1,573 (99.4)	1,583 (100.0)	
	일주일에 5일 이상	19 (0.5)	3,847 (99.5)	3,866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늦은 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1 (0.2)	6,368 (99.8)	6,379 (100.0)	15.960**
	한 달에 하루	4 (0.2)	1,852 (99.8)	1,856 (100.0)	
	보름에 하루	4 (0.3)	1,383 (99.7)	1,387 (100.0)	
	일주일에 하루	13 (0.5)	2,363 (99.5)	2,376 (100.0)	
	일주일에 2~3일	14 (0.6)	2,177 (99.4)	2,191 (100.0)	

60) 일주일에 5일 이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를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17%, 20대 26.3%, 30대 16.8%, 40대 15.2%, 50대 14.1%, 60대 7.3%, 70대 이상 3.3%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로 보면 학생의 54.9%가 일주일에 5일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구분		있음	없음	계	x^2
	거의 매일	4 (0.5)	783 (99.5)	787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만취 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	34 (0.3)	10,859 (99.7)	10,893 (100.0)	3.832
	한 달에 하루	7 (0.4)	1,965 (99.6)	1,972 (100.0)	
	보름에 하루	2 (0.2)	921 (99.8)	923 (100.0)	
	일주일에 하루	6 (0.7)	873 (99.3)	879 (100.0)	
	일주일에 2~3일	1 (0.3)	291 (99.7)	292 (100.0)	
	거의 매일	0 (0.0)	17 (100.0)	17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외출 시 옷차림	유인 작음	31 (0.3)	8,976 (99.7)	9,007 (100.0)	1.621
	보통	14 (0.3)	5,018 (99.7)	5,032 (100.0)	
	유인 큼	5 (0.5)	932 (99.5)	937 (100.0)	
	합계	50 (0.3)	14,926 (99.7)	14,976 (100.0)	

** p<.01, *** p<.001

제4절 가구특성과 범죄피해

1.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

가구특성에는 주택유형, 거주형태, 가구소득수준, 방범수준, 하루에 집을 비운 시간의 다섯 가지 변인이 포함되는데, 방범수준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집의 방범수준[61]과 집주변의 방범수준[62]을 질문하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산범죄에는 일반절도, 소매치기, 손괴, 사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거주형태, 가구소득과 재산범죄피해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월세, 전세, 무상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재산범죄피해율이 조금 높았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재산범죄피해율이 가장 높았고(5.8%), 다음으로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피해

61) 현관이나 창문의 이중자물쇠 등 특수잠금장치 설치 여부, 창문이나 비상구 등의 방범창쇠창살 설치 여부,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을 들여다보는 구멍의 존재 유무, 출입카드의 사용 여부, 도난경보시스템 설치 유무, 경비원 존재 유무 6개 문항

62) 집 주위 반경 20미터 안에 CCTV 등 감시카메라 여부, 집 주위 반경 20미터 안에 외부조명 여부, 집 주위 반경 100미터 안에 유흥업소 밀집지역 존재 여부, 집 주위 반경 100미터 안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공사장 존재 여부, 집 주위 반경 100미터 안에 공단지역 존재 여부, 집 주위 반경 100미터 안에 대규모 재래시장 존재 여부 6개 문항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재산범죄 피해율이 가장 낮았다.

〈표 8-12〉 가구특성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단위: 빈도, %)

구분		있음	없음	계	x^2
주택 유형	단독주택	121 (4.5)	2,552 (95.5)	2,673 (100.0)	5.976
	아파트	137 (4.4)	2,986 (95.6)	3,123 (100.0)	
	연립/다세대주택	61 (6.2)	929 (93.8)	990 (100.0)	
	비거주용 건물 (상가, 공장, 여관 등)	8 (5.7)	133 (94.3)	141 (100.0)	
	기타 (오피스텔 등)	2 (6.1)	31 (93.9)	33 (100.0)	
	합계	329 (4.7)	6,631 (95.3)	6,960 (100.0)	
거주 형태	자가	196 (4.2)	4,460 (95.8)	4,656 (100.0)	9.039*
	전세	69 (5.5)	1,189 (94.5)	1,258 (100.0)	
	월세	59 (6.2)	892 (93.8)	951 (100.0)	
	무상	5 (5.3)	90 (94.7)	95 (100.0)	
	합계	329 (4.7)	6,631 (95.3)	6,960 (100.0)	
가구 소득 수준	월평균 100만 원 미만	48 (3.4)	1,372 (96.6)	1,420 (100.0)	11.456*
	월평균 100~200만 원 미만	45 (4.2)	1,034 (95.8)	1,079 (100.0)	
	월평균 200~300만 원 미만	61 (4.9)	1,185 (95.1)	1,246 (100.0)	
	월평균 300~400만 원 미만	77 (5.8)	1,256 (94.2)	1,333 (100.0)	
	월평균 400~500만 원 미만	46 (4.8)	910 (95.2)	956 (100.0)	
	월평균 500만 원 이상	52 (5.6)	873 (94.4)	925 (100.0)	
	합계	329 (4.7)	6,630 (95.3)	6,959 (100.0)	
방범 수준	없음	0 (0.0)	4 (100.0)	4 (100.0)	2.682
	1~2개	1 (5.0)	19 (95.0)	20 (100.0)	
	3~4개	35 (3.8)	884 (96.2)	919 (100.0)	
	5~6개	80 (4.6)	1,670 (95.4)	1,750 (100.0)	
	7개 이상	213 (5.0)	4,054 (95.0)	4,267 (100.0)	
	합계	329 (4.7)	6,631 (95.3)	6,960 (100.0)	
집 비운 정도	12시간 이상	21 (7.0)	278 (93.0)	299 (100.0)	9.169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88 (5.7)	1,453 (94.3)	1,541 (100.0)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93 (4.2)	2,130 (95.8)	2,223 (100.0)	
	4시간 미만	80 (4.5)	1,697 (95.5)	1,777 (100.0)	
	거의 비우지 않았음	47 (4.2)	1,073 (95.8)	1,120 (100.0)	
	합계	329 (4.7)	6,631 (95.3)	6,960 (100.0)	

* $p<.05$

2.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폭력범죄에는 강도, 폭행, 성폭력이 포함된다. 가구소득 수준만이 폭력범죄피해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폭력범죄피해율이 가장 낮았다. 폭력범죄피해율은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8-13〉 가구특성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단위: 빈도, %)

구분		있음	없음	계	x^2
주택 유형	단독주택	11 (0.4)	2,662 (99.6)	2,673 (100.0)	4.083
	아파트	7 (0.2)	3,116 (99.8)	3,123 (100.0)	
	연립/다세대주택	6 (0.6)	984 (99.4)	990 (100.0)	
	비거주용 건물 (상가, 공장, 여관 등)	1 (0.7)	140 (99.3)	141 (100.0)	
	기타 (오피스텔 등)	0 (0.0)	33 (100.0)	33 (100.0)	
	합계	25 (0.4)	6,935 (99.6)	6,960 (100.0)	
거주 형태	자가	13 (0.3)	4,643 (99.7)	4,656 (100.0)	3.624
	전세	6 (0.5)	1,252 (99.5)	1,258 (100.0)	
	월세	6 (0.6)	945 (99.4)	951 (100.0)	
	무상	0 (0.0)	95 (100.0)	95 (100.0)	
	합계	25 (0.4)	6,935 (99.6)	6,960 (100.0)	
가구 소득 수준	월평균 100만 원 미만	4 (0.3)	1,416 (99.7)	1,420 (100.0)	12.325*
	월평균 100~200만 원 미만	9 (0.8)	1,070 (99.2)	1,079 (100.0)	
	월평균 200~300만 원 미만	7 (0.6)	1,239 (99.4)	1,246 (100.0)	
	월평균 300~400만 원 미만	2 (0.2)	1,331 (99.8)	1,333 (100.0)	
	월평균 400~500만 원 미만	2 (0.2)	954 (99.8)	956 (100.0)	
	월평균 500만 원 이상	1 (0.1)	924 (99.9)	925 (100.0)	
	합계	25 (0.4)	6,934 (99.6)	6,959 (100.0)	
방범 수준	없음	0 (0.0)	4 (100.0)	4 (100.0)	2.682
	1~2개	1 (5.0)	19 (95.0)	20 (100.0)	
	3~4개	35 (3.8)	884 (96.2)	919 (100.0)	
	5~6개	80 (4.6)	1,670 (95.4)	1,750 (100.0)	
	7개 이상	213 (5.0)	4,054 (95.0)	4,267 (100.0)	
	합계	329 (4.7)	6,631 (95.3)	6,960 (100.0)	
집 비운 정도	12시간 이상	0 (0.0)	299 (100.0)	299 (100.0)	3.300

구분		있음	없음	계	x^2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7 (0.5)	1,534 (99.5)	1,541 (100.0)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6 (0.3)	2,217 (99.7)	2,223 (100.0)	
	4시간 미만	9 (0.5)	1,768 (99.5)	1,777 (100.0)	
	거의 비우지 않았음	3 (0.3)	1,117 (99.7)	1,120 (100.0)	
	합계	25 (0.4)	6,935 (99.6)	6,960 (100.0)	

* p<.05

3.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가구특성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는 주거침입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특성에 따라 주거침입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주택유형에 따라 주거침입범죄피해 여부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냈다. 즉, 단독주택(2.5%), 연립/다세대주택(1.9%), 기타(3.0%)에 비해서 아파트 거주자들(0.8%)은 주거침입범죄피해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형태, 가구소득, 집을 비운 정도에 따른 범죄피해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범수준에 따른 주거침입범죄피해 여부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도 범죄피해가 없었지만(0.0%), 방범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7개 이상)에서도 두 번째로 범죄피해율이 낮았다(1.3%). 범죄피해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1개에서 2개의 방범수준을 가진 집단이었다(5.0%).

〈표 8-14〉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침입범죄피해

(단위: 빈도, %)

구분		있음	없음	계	x^2
주택 유형	단독주택	68 (2.5)	2,605 (97.5)	2,673 (100.0)	28.536***
	아파트	25 (0.8)	3,098 (99.2)	3,123 (100.0)	
	연립/다세대주택	19 (1.9)	971 (98.1)	990 (100.0)	
	비거주용 건물 (상가, 공장, 여관 등)	4 (2.8)	137 (97.2)	141 (100.0)	
	기타 (오피스텔 등)	1 (3.0)	32 (97.0)	33 (100.0)	
	합계	117 (1.7)	6,843 (98.3)	6,960 (100.0)	
거주 형태	자가	75 (1.6)	4,581 (98.4)	4,656 (100.0)	1.651
	전세	21 (1.7)	1,237 (98.3)	1,258 (100.0)	
	월세	18 (1.9)	933 (98.1)	951 (100.0)	

구분		있음	없음	계	x^2
	무상	3 (3.2)	92 (96.8)	95 (100.0)	
	합계	117 (1.7)	6,843 (98.3)	6,960 (100.0)	
가구 소득 수준	월평균 100만 원 미만	27 (1.9)	1,393 (98.1)	1,420 (100.0)	4.182
	월평균 100~200만 원 미만	19 (1.8)	1,060 (98.2)	1,079 (100.0)	
	월평균 200~300만 원 미만	18 (1.4)	1,228 (98.6)	1,246 (100.0)	
	월평균 300~400만 원 미만	27 (2.0)	1,306 (98.0)	1,333 (100.0)	
	월평균 400~500만 원 미만	10 (1.0)	946 (99.0)	956 (100.0)	
	월평균 500만 원 이상	16 (1.7)	909 (98.3)	925 (100.0)	
	합계	117 (1.7)	6,842 (98.3)	6,959 (100.0)	
방범 수준	없음	0 (0.0)	4 (100.0)	4 (100.0)	13.639**
	1~2개	1 (5.0)	19 (95.0)	20 (100.0)	
	3~4개	18 (2.0)	901 (98.0)	919 (100.0)	
	5~6개	44 (2.5)	1,706 (97.5)	1,750 (100.0)	
	7개 이상	54 (1.3)	4,213 (98.7)	4,267 (100.0)	
	합계	117 (1.7)	6,843 (98.3)	6,960 (100.0)	
집 비운 정도	12시간 이상	7 (2.3)	292 (97.7)	299 (100.0)	1.538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24 (1.6)	1,517 (98.4)	1,541 (100.0)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34 (1.5)	2,189 (98.5)	2,223 (100.0)	
	4시간 미만	31 (1.7)	1,746 (98.3)	1,777 (100.0)	
	거의 비우지 않았음	21 (1.9)	1,099 (98.1)	1,120 (100.0)	
	합계	117 (1.7)	6,843 (98.3)	6,960 (100.0)	

** p<.01, *** p<.001

제5절 범죄취약성 요인의 연도 간 비교

2014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항목 간 비교와 추세분석을 위해 2012년 기준 조사문항을 수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범죄피해의 추세분석은 범죄피해조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으로 앞장에서 이미 기술되었다. 때문에 이 절에서는 범죄피해취약성요인으로 설정된 지역사회특성, 가구특성(방범수준, 집을 비운 시간), 생활양식의 세 가지 영역에서 조사연도를 기준으로 2013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지역사회특성에는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의

다섯 가지 변인이 포함된다. 연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이웃참여는 .10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웃관계의 경우, 2013년 평균(평균 = 2.63, 표준편차 = 0.99)보다 2015년 평균이 높아(평균 = 2.79, 표준편차 = 0.96) 이전 조사 때보다 이웃 간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인식이 강했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의 수준도 2013년보다 2015년에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무질서는 2013년 평균치가 2.48(표준편차 = 0.83)이었으나 2015년 평균치는 2.24(표준편차 = 0.78)로 나타났다. 사회적 무질서도 2013년 평균치가 2.47(표준편차 = 0.83)에서 2015년 평균 2.22(표준편차 = 0.75)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2년 전에 비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보다 깨끗해지고 사회적 질서가 잘 잡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경찰활동도 2013년(평균 = 9.54, 표준편차 = 2.35)보다 2015년(평균 = 10.21, 표준편차 = 2.12)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표 8-15〉 조사연도별 지역사회특성 비교

구분	조사연도	N	평균	표준편차	t
이웃관계	2013년	13,317	2.63	0.99	-13.803***
	2015년	14,976	2.79	0.96	
이웃참여	2013년	13,317	3.33	0.79	1.649†
	2015년	14,976	3.32	0.78	
물리적 무질서	2013년	13,317	2.48	0.83	24.778***
	2015년	14,976	2.24	0.78	
사회적 무질서	2013년	13,317	2.47	0.83	26.093***
	2015년	14,976	2.22	0.75	
경찰활동	2013년	13,317	3.18	0.78	-24.860***
	2015년	14,976	3.40	0.71	

†p<.10, *** p<.001

다음으로 가구특성에서 방범수준과 '하루에 집을 비운 시간', 두 가지 변인의 2013년과 2015년 측정치를 비교하여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3년(평균 = 4.01)에 비해서 2015년(평균 = 3.87) 방범수준이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도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집을 비운 시간의 연도간 평균 차이는 2013년(평균 = 2.76, 표준편차 = 1.21)에

비해서 2015년(평균 = 2.73, 표준편차 = 1.10)에 소폭 감소하였다.

〈표 8-16〉 조사연도별 가구특성 비교

구분	조사연도	N	평균	표준편차	t
방범수준	2013년	6,300	4.01	2.21	3.514***
	2015년	6,960	3.87	2.42	
집을 비운 시간	2013년	6,300	2.76	1.21	1.499
	2015년	6,960	2.73	1.10	

*** p<.001

범죄피해취약성과 관련된 생활양식변인을 2013년 조사와 2015년 조사결과에서 비교하였는데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2013년(평균 = 2.94, 표준편차 = 1.18)에 비해서 2015년(평균 = 2.76, 표준편차 = 1.21)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빈도는 2013년(평균 = 4.04, 표준편차 = 1.92)에 비해서 2015년(평균 = 4.37, 표준편차 = 1.71)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취해서 귀가하는 빈도도 2013년(평균 = 5.44, 표준편차 = 1.14)에 비해서 2015년(평균 = 5.49, 표준편차 = 0.99)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평소 외출 시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유명브랜드의 옷을 입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3년(평균 = 2.02, 표준편차 = 0.85)에 비해서 2015년(평균 = 2.14, 표준편차 = 0.92)에 다소 증가하였다.

〈표 8-17〉 조사연도별 생활양식 비교

구분	조사연도	N	평균	표준편차	t
대중교통	2013년	13,317	2.94	1.18	13.025***
	2015년	14,976	2.76	1.21	
늦은 귀가	2013년	13,317	4.04	1.92	-15.333***
	2015년	14,976	4.37	1.71	
만취 귀가	2013년	13,317	5.44	1.14	-3.542***
	2015년	14,976	5.49	0.99	
외출 시 옷차림	2013년	13,317	2.02	0.85	-11.062***
	2015년	14,976	2.14	0.92	

*** p<.001

제6절 범죄피해취약성 요인의 주요결과

먼저, 지역특성에 따른 범죄피해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산범죄의 경우,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의 정도는 재산범죄피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으로 무질서한 지역에 산다고 응답한 사람의 5.1%가 재산범죄피해경험을 보고한 반면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7%만 재산범죄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지역에 산다고 응답한 사람은 4.7%가 재산범죄피해경험을 보고했으며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4%만이 재산범죄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경찰활동의 효율성도 재산범죄피해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지역 내 경찰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비율은 2.6%였지만, 보통이라고 평가한 집단은 3.2%,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비율은 4.5%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의 경우,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폭력범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물리적 무질서가 낮거나(0.2%), 보통인 경우(0.5%)에 비해서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경우(0.8%), 폭력범죄피해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무질서의 경우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무질서가 낮거나(0.2%) 높은 경우(0.3%)에 비해서 보통인 집단(0.5%)의 피해경험 비율이 더 높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주거침입범죄의 경우,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주거침입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의 세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무질서가 낮거나(0.5%) 보통인 경우(0.9%)에 비해서 무질서한 집단(2.9%)에서 피해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낮은 집단, 보통인 집단은 각각 0.6%와 0.9%의 피해경험을 보고하였지만, 사회적 무질서가 높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1.8%가 주거침입범죄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경찰활동 수준이 효과적이거나(0.8%), 보통이라고(0.7%) 응답한 집단에 비해서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1.6%)의 주거

침입범죄피해율이 더 높았다.

두 번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남자(2.6%)에 비해서 여자(3.6%)가 재산범죄피해경험이 더 많았다. 연령에 따라서도 재산범죄피해에 차이가 있었다. 10대(0.9%), 60대(2.5%), 70대 이상(2.2%)에 비해서 20대(3.0%), 30대(3.7%), 40대(3.9%), 50대(3.8%)가 재산범죄피해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에서 50대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재산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었는데, 미혼(2.5%)에 비해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3.2%), 사별이나 이혼을 한 집단(4.0%)이 재산범죄피해율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1.8~2.1%)에 비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3.5~4.1%)에게서 재산범죄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범죄피해율이 높은 집단은 대학원 이상의 집단(4.1%)이고, 가장 범죄피해율이 낮은 집단은 중학교 졸업 학력자이다(1.8%). 직업에 따라서도 재산범죄피해경험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1.6%)의 피해율이 가장 낮은 반면,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나 판매업에 종사하는 집단(4.0%)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서는 폭력범죄피해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10대(0.8%)와 20대(0.9%)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폭력범죄피해경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가 가장 낮았고(0.1%), 다음으로 70대 이상과 30대가 0.2%로 낮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폭력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배우자 있는 집단(0.2%)이나 사별이나 이혼을 한 집단(0.4%)에 비해서 미혼(0.8%)인 집단의 폭력범죄피해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도 폭력범죄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단순노무종사자(0.0%)나 직업군인(0.0%)은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0.8%), 사무종사자(0.4%), 서비스/판매종사자(0.4%)의 폭력범죄피해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 번째로 생활양식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빈도에 따라서 재산범죄피해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중교통을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3.5%), '일주일에 2~3일 이용하는 경우'(3.2%)는 '일주일에 3~4일'(2.1%), 또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2.9%)에 비해서 재산범죄피해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가시간에 따라서도 재산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늦게 귀가하는 경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집단'(2.6%)에 비해서 '거의 매일 늦게 귀가하는 집단'(5.0%)의 재산범죄피해경험율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빈도에 따라서 폭력범죄피해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중교통을 상대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 폭력범죄피해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0.3%), '일주일에 2~3일 이용하는 경우'(0.1%)에 비해서 '일주일에 3~4일'(0.6%), 또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0.5%)에 폭력범죄피해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늦게 귀가하는 빈도에 따라서도 폭력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집단은 0.2%만이 범죄피해를 보고했지만 '일주일에 2~3일 늦게 귀가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0.6%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였고 '거의 매일 늦게 귀가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피해율은 0.5%로 나타났다.

네 번째, 가구특성과 범죄피해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거주형태, 가구소득과 재산범죄 피해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월세, 전세, 무상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재산범죄피해율이 조금 높았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인 집단의 재산범죄피해율이 가장 높았고(5.8%),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두 번째로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5.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재산범죄피해율이 가장 낮았다.

폭력범죄의 경우, 가구소득 수준만이 폭력범죄피해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폭력범죄피해율이 가장 낮았다. 폭력범죄피해율은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주거침입범죄의 경우, 가구특성에 따라 주거침입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주택유형에 따라 주거침입범죄피해 여부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냈다. 즉, 단독주택(2.5%), 연립/다세대주택(1.9%), 기타(3.0%)에 비해서 아파트 거주자들은 주거침입범죄의 피해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0.8%).

방범수준에 따른 주거침입범죄피해 여부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도 범죄피해가 없었지만(0%), 방범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7개 이상)에서도 두 번째로 범죄피해율이 낮았다(1.3%). 범죄피해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1개에서 2개의 방범수준을 가진 집단이었다(5.0%).

다섯 번째, 조사연도별로 범죄취약성 요인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특성에는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의 다섯 가지 변인이 포함된다. 연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이웃참여는 .10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웃관계의 경우, 2013년 평균보다 2015년 평균이 높아 이전 조사 때보다 이웃 간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인식이 강했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의 수준도 2013년보다 2015년에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2년전에 비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보다 깨끗해지고 사회적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찰활동은 2013년보다 2015년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가구특성에서 방범수준과 '하루에 집을 비운 시간', 두 가지 변인의 2013년과 2015년 측정치를 비교하여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3년에 비해서 2015년 방범수준이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도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집을 비운 시간'은 연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취약성과 관련된 생활양식변인을 2013년 조사와 2015년 조사결과에서 비교하였는데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2013년에 비해서 2015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빈도는 2013년에 비해서 2015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취해서 귀가하는 빈도도 2013년에 비해서 2015년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평소 외출 시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유명브랜드의 옷을 입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3년에 비해서 2015년에 다소 증가하였다.

제9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김 지 영

제9장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객관적인 범죄발생률과 별개로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범죄발생추세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형사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 때문에 이 장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지역특성변인 등이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전체 범죄발생추세를 질문하는 1개 문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발생추세를 질문하는 1개 문항의 총 두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언론에서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주변 사람들과 범죄 관련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등을 측정한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요인도 우리나라, 우리동네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변인은 5점 척도 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2개 문항의 평균은 2.98점, 표준편차 0.89, 신뢰도(Cronbach's α)는 .831이었다(아래 〈표9-1〉 참조).

〈표 9-1〉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노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구분	요인부하량/신뢰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926	1.00	5.00	3.13	0.99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921	1.00	5.00	2.84	0.93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노출	Cronbach's α = .831	1.00	5.00	2.98	0.89

* 요인분석 시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법은 베리맥스를 사용하였다.

제1절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1.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전체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전체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평균 3.45점, 표준편차 0.76)이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평균 3.06점, 표준편차 0.6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 70.017, df = 14975, p<.001).

〈표 9-2〉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문항 간 평균 차이 검증

구분	범위	평균	표준편차	t
범죄발생추세	우리나라 전체	3.45	0.76	70.017***
	우리동네	3.06	0.65	

*** p<.001

2.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교차분석을 위하여 '매우 증가할 것이다'와 '약간 증가할 것이다'를 '증가'로, '약간 감소할 것이다'와 '매우 감소할 것이다'를 '감소'로 구분하여 '변화 없을 것'까지 세 범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라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연령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60대(52.7%)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51.4%), 30대(51.0%), 40대(50.5%)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집단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44.2%). 즉 고령자일수록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48.3%), 사별이나 이혼(48.4%)을 한 집단에 비해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51.3%)이 높게 나타났다.

〈표 9-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

구분		우리나라 범죄추세			계	x^2
		증가	불변	감소		
성별	남자	3,575 (50.7)	2,766 (39.2)	717 (10.2)	7,058 (100.0)	.875
	여자	3,950 (49.9)	3,151 (39.8)	817 (10.3)	7,918 (100.0)	
	합계	7,525 (50.2)	5,917 (39.5)	1,534 (10.2)	14,976 (100.0)	
연령대	10대	422 (44.2)	428 (44.9)	104 (10.9)	954 (100.0)	40.068***
	20대	863 (47.2)	777 (42.5)	190 (10.4)	1,830 (100.0)	
	30대	1,144 (51.0)	872 (38.9)	226 (10.1)	2,242 (100.0)	
	40대	1,383 (50.5)	1,042 (38.1)	311 (11.4)	2,736 (100.0)	
	50대	1,464 (51.4)	1,082 (38.0)	303 (10.6)	2,849 (100.0)	
	60대	1,134 (52.7)	815 (37.9)	203 (9.4)	2,152 (100.0)	
	70대 이상	1,115 (50.4)	901 (40.7)	197 (8.9)	2,213 (100.0)	
	합계	7,525 (50.2)	5,917 (39.5)	1,534 (10.2)	14,976 (100.0)	
혼인상태	미혼	1,664 (48.3)	1,437 (41.7)	342 (9.9)	3,443 (100.0)	22.961***
	현재 배우자 있음	4,981 (51.3)	3,705 (38.1)	1,027 (10.6)	9,713 (100.0)	
	사별이나 이혼	880 (48.4)	775 (42.6)	165 (9.1)	1,820 (100.0)	
	합계	7,525 (50.2)	5,917 (39.5)	1,534 (10.2)	14,976 (100.0)	

*** p<.001

사회경제적 특성 중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우리나라전체 범죄발생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준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집단을 가리지 않고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불변'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았으며 집단 간 통계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에서 타집단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55.0%) 반면 교육을 안 받은 집단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45.6%).

직업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직업군인(38.5%), 학생(44.9%)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타집단보다 낮았던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5.8%),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3.5%), 기능원, 기계조작자 및 조립 종사자(52.9%) 등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을 한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추세 인식에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집단에서 가장 낮았던 반면(47.6%),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200만 원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54.9%). 월평균 소득 400만 원~500만 원 미만인 집단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두번째로 낮았다(50.2%)

〈표 9-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

구분		우리동네 범죄 추세			계	x^2
		증가	불변	감소		
교육수준	안 받았음	324 (45.6)	318 (44.7)	69 (9.7)	711 (100.0)	23.742**
	초등학교	840 (50.6)	679 (40.9)	140 (8.4)	1,659 (100.0)	
	중학교	841 (52.0)	618 (38.2)	158 (9.8)	1,617 (100.0)	
	고등학교	2,694 (49.8)	2,124 (39.3)	592 (10.9)	5,410 (100.0)	
	대학교	2,733 (50.5)	2,112 (39.0)	565 (10.4)	5,410 (100.0)	
	대학원 이상	93 (55.0)	66 (39.1)	10 (5.9)	169 (100.0)	
	합계	7,525 (50.2)	5,917 (39.5)	1,534 (10.2)	14,976 (100.0)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63 (53.5)	171 (34.8)	58 (11.8)	492 (100.0)	61.431***
	사무종사자	1,377 (50.1)	1,062 (38.6)	310 (11.3)	2,749 (100.0)	
	서비스, 판매 종사자	1,416 (50.0)	1,136 (40.1)	282 (10.0)	2,83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65 (55.8)	435 (36.5)	92 (7.7)	1,192 (100.0)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09 (52.9)	367 (38.1)	87 (9.0)	963 (100.0)	
	단순 노무 종사자	261 (52.2)	191 (38.2)	48 (9.6)	500 (100.0)	
	직업군인	10 (38.5)	14 (53.8)	2 (7.7)	26 (100.0)	
	전업주부	1,476 (50.3)	1,129 (38.5)	328 (11.2)	2,933 (100.0)	
	학생	804 (44.9)	793 (44.3)	195 (10.9)	1,792 (100.0)	
	무직/기타 (공익근무요원 포함)	744 (49.8)	619 (41.4)	132 (8.8)	1,495 (100.0)	
	합계	7,525 (50.2)	5,917 (39.5)	1,534 (10.2)	14,976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676 (47.6)	604 (42.5)	140 (9.9)	1,420 (100.0)	18.411***
	100~200만 원 미만	592 (54.9)	381 (35.3)	106 (9.8)	1,079 (100.0)	
	200~300만 원 미만	657 (52.7)	473 (38.0)	116 (9.3)	1,246 (100.0)	

구분		우리동네 범죄 추세			계	x^2
		증가	불변	감소		
	300~400만 원 미만	693 (52.0)	508 (38.1)	132 (9.9)	1,333 (100.0)	
	400~500만 원 미만	480 (50.2)	372 (38.9)	104 (10.9)	956 (100.0)	
	500만 원 이상	479 (51.8)	347 (37.5)	99 (10.7)	925 (100.0)	
	합계	3,577 (51.4)	2,685 (38.6)	697 (10.0)	6,960 (100.0)	

** p<.01, *** p<.001

나. 범죄피해경험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피해경험은 본인이 직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와 가족, 친척 및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 피해를 경험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범죄가 향후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률(56.4%)과 간접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률(56.0%)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9-5〉 범죄피해경험여부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

구분		우리나라 범죄추세			계	x^2
		증가	불변	감소		
직접 피해 경험	있음	274 (56.4)	170 (35.0)	42 (8.6)	486 (100.0)	7.625*
	없음	7,251 (50.0)	5,747 (39.7)	1,492 (10.3)	14,490 (100.0)	
	합계	7,525 (50.2)	5,917 (39.5)	1,534 (10.2)	14,976 (100.0)	
간접 피해 경험	있음	463 (56.0)	284 (34.3)	80 (9.7)	827 (100.0)	11.933**
	없음	7,062 (49.9)	5,633 (39.8)	1,454 (10.3)	14,149 (100.0)	
	합계	7,525 (50.2)	5,917 (39.5)	1,534 (10.2)	14,976 (100.0)	

* p<.05, ** p<.01

3.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우리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성들(20.9%)에 비해서 남성들(22.4%)이 '우리동네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남성들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여성보다 높았다(남성 15.8%, 여성 15.2%) 유일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에서만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남성 61.8%, 여성 63.9%).

연령대에 따라서도 우리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 특히 높았다(27.1%). 반면 30대를 기점으로 40대(22.7%), 50대(21.0%), 60대(19.7%)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70대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14.3%).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우리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25.6%)인 경우에 가장 높았고, 현재 배우자 있는 집단(21.0%), 사별이나 이혼을 한 집단(17.6%)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9-6〉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

구분		우리동네 범죄추세			계	x^2
		증가	불변	감소		
성별	남자	1,584 (22.4)	4,361 (61.8)	1,113 (15.8)	7,058 (100.0)	7.556*
	여자	1,655 (20.9)	5,060 (63.9)	1,203 (15.2)	7,918 (100.0)	
	합계	3,239 (21.6)	9,421 (62.9)	2,316 (15.5)	14,976 (100.0)	
연령대	10대	223 (23.4)	576 (60.4)	155 (16.2)	954 (100.0)	135.997***
	20대	448 (24.5)	1,100 (60.1)	282 (15.4)	1,830 (100.0)	
	30대	608 (27.1)	1,321 (58.9)	313 (14.0)	2,242 (100.0)	
	40대	622 (22.7)	1,669 (61.0)	445 (16.3)	2,736 (100.0)	
	50대	599 (21.0)	1,802 (63.3)	448 (15.7)	2,849 (100.0)	
	60대	423 (19.7)	1,403 (65.2)	326 (15.1)	2,152 (100.0)	
	70대 이상	316 (14.3)	1,550 (70.0)	347 (15.7)	2,213 (100.0)	
	합계	3,239 (21.6)	9,421 (62.9)	2,316 (15.5)	14,976 (100.0)	
혼인상태	미혼	881 (25.6)	2,042 (59.3)	520 (15.1)	3,443 (100.0)	53.750***
	현재 배우자 있음	2,038 (21.0)	6,157 (63.4)	1,518 (15.6)	9,713 (100.0)	
	사별이나 이혼	320 (17.6)	1,222 (67.1)	278 (15.3)	1,820 (100.0)	
	합계	3,239 (21.6)	9,421 (62.9)	2,316 (15.5)	14,976 (100.0)	

* $p<.05$, *** $p<.001$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은 사회경제적 특성 중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먼저 '우리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교육수준에 따라서 점차로 증가하여 고등학교(23.6%)와 대학교(23.9%)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교육을 전혀 안 받은 집단의 경우 10.3%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직업에 따라서도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3.1%) 집단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을 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사무종사자(25.5%),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23.6%),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3.4%), 서비스·판매 종사자, 학생(각 23.0%)의 순으로 '우리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는데,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해서는 반대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우리동네 범죄추세 인식에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집단에서 가장 낮았던(14.1%)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300만 원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23.0%). 월평균소득 2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200만 원 미만인 집단보다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보다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를 과대추정한 결과는 2010 전국범죄피해조사와 2012년 전국범죄피해조사결과와 동일하다.

〈표 9-7〉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

구분		우리동네 범죄 추세			계	x^2
		증가	불변	감소		
교육수준	안 받았음	73 (10.3)	506 (71.2)	132 (18.6)	711 (100.0)	151.502***
	초등학교	246 (14.8)	1,188 (71.6)	225 (13.6)	1,659 (100.0)	
	중학교	311 (19.2)	1,043 (64.5)	263 (16.3)	1,617 (100.0)	
	고등학교	1,279 (23.6)	3,316 (61.3)	815 (15.1)	5,410 (100.0)	
	대학교	1,292 (23.9)	3,266 (60.4)	852 (15.7)	5,410 (100.0)	
	대학원 이상	38 (22.5)	102 (60.4)	29 (17.2)	169 (100.0)	
	합계	3,239 (21.6)	9,421 (62.9)	2,316 (15.5)	14,976 (100.0)	

구분		우리동네 범죄 추세			계	x^2
		증가	불변	감소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5 (23.4)	301 (61.2)	76 (15.4)	492 (100.0)	119.502***
	사무종사자	700 (25.5)	1,601 (58.2)	448 (16.3)	2,749 (100.0)	
	서비스, 판매 종사자	651 (23.0)	1,779 (62.8)	404 (14.3)	2,83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6 (13.1)	829 (69.5)	207 (17.4)	1,192 (100.0)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7 (23.6)	596 (61.9)	140 (14.5)	963 (100.0)	
	단순 노무 종사자	104 (20.8)	326 (65.2)	70 (14.0)	500 (100.0)	
	직업군인	5 (19.2)	12 (46.2)	9 (34.6)	26 (100.0)	
	전업주부	578 (19.7)	1,876 (64.0)	479 (16.3)	2,933 (100.0)	
	학생	413 (23.0)	1,096 (61.2)	283 (15.8)	1,792 (100.0)	
	무직/기타 (공익근무요원 포함)	290 (19.4)	1,005 (67.2)	200 (13.4)	1495 (100.0)	
	합계	3,239 (21.6)	9,421 (62.9)	2,316 (15.5)	14,976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200 (14.1)	978 (68.9)	242 (17.0)	1,420 (100.0)	51.956***
	100~200만 원 미만	204 (18.9)	714 (66.2)	161 (14.9)	1,079 (100.0)	
	200~300만 원 미만	287 (23.0)	769 (61.7)	190 (15.2)	1,246 (100.0)	
	300~400만 원 미만	296 (22.2)	819 (61.4)	218 (16.4)	1,333 (100.0)	
	400~500만 원 미만	210 (22.0)	609 (63.7)	137 (14.3)	956 (100.0)	
	500만 원 이상	210 (22.7)	572 (61.8)	143 (15.5)	925 (100.0)	
	합계	1,407 (20.2)	4,461 (64.1)	1,091 (15.7)	6,960 (100.0)	

*** p<.001

나. 범죄피해경험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라서 우리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범죄추세와 달리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직접피해경험자들보다 간접피해경험자들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먼저 직접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5%였다. 직접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4%,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로 피해를 당한 집단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적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많았다. 간접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인식하는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를 보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28.4%,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9%로 나타나 직접범죄피해자들보다 우리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9-8〉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우리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

구분		우리동네 범죄 추세			계	x^2
		증가	불변	감소		
직접 피해 경험	있음	131 (27.0)	299 (61.5)	56 (11.5)	486 (100.0)	7.625*
	없음	3,108 (21.4)	9,122 (63.0)	2,260 (15.6)	14,490 (100.0)	
	합계	3,239 (21.6)	9,421 (62.9)	2,316 (15.5)	14,976 (100.0)	
간접 피해 경험	있음	235 (28.4)	462 (55.9)	130 (15.7)	827 (100.0)	11.933**
	없음	3,004 (21.2)	8,959 (63.3)	2,186 (15.4)	14,149 (100.0)	
	합계	3,239 (21.6)	9,421 (62.9)	2,316 (15.5)	14,976 (100.0)	

* p<.05, ** p<.01

다. 지역사회특성 및 미디어 노출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특성 및 미디어노출과 우리나라·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고 범죄 관련 미디어나 소문에 자주 노출될수록 우리나라와 우리동네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 간 참여수준이 높고, 경찰활동이 효율적일수록 우리나라 범죄추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식적인 추론과 어긋난 결과를 보여주었고 우리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과도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표 9-9〉 지역사회 특성 및 미디어 노출과 우리나라 및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구분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	미디어 노출
우리나라 범죄추세	.003	.102***	.085***	.072***	.068***	.090***
우리동네 범죄추세	-.097***	-.023**	.102***	.154***	-.052***	.028**

** p<.01, *** p<.001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형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범죄피해의 대상, 범죄유형에 따라 나누어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대상별 범죄피해 두려움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적 범죄피해두려움(general fear)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및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의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반면에 범죄의 유형에 따라 절도, 강도, 폭행, 사기, 성범죄, 손괴, 주거침입, 괴롭힘의 여덟 가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였다. 구체적 두려움(specific fear)은 8가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합산한 것이다. 범죄피해의 대상별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범죄피해두려움, 배우자의 범죄피해두려움, 자녀의 범죄피해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중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그리고 범죄유형별로 세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각 두려움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았다. 전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5점 척도에서 2점 초반의 점수를 보였다. 즉, 일반적 두려움은 평균 2.34(표준편차 1.01), 구체적 두려움은 평균 2.14(표준편차 0.78), 재산범죄 두려움은 평균 2.18(표준편차 0.80), 폭력범죄 두려움은 평균 2.11(표준편차 0.81), 성폭력범죄 두려움은 평균 2.01(표준편차 0.96)의 수준을 보였다. 일반적 두려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았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은 것은 남성응답자의 평균치가 낮기 때문이다. 근소한 차이지만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2.18)이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2.11)보다 약간 높은 평균을 보였다.

〈표 9-10〉 범죄에 대한 두려움 유형별 기술통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반적 두려움	14,976	1.00	5.00	2.34	1.01
구체적 두려움	14,976	1.00	5.00	2.14	0.78
재산범죄 두려움[63]	14,976	1.00	5.00	2.18	0.80
폭력범죄 두려움[64]	14,976	1.00	5.00	2.11	0.81
성폭력범죄 두려움[65]	14,976	1.00	5.00	2.01	0.96

63) 재산피해에 대한 두려움에는 절도, 사기, 손괴,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되었다.

일반적 두려움의 두 가지 문항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평균 2.23점, 표준편차 1.01)에 비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느끼는 두려움’(평균 2.44점, 표준편차 1.12)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37.021$, $df = 14975$, $p < .001$).

〈표 9-11〉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문항 간 평균 차이 검증

구분	범위	평균	표준편차	t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2.23	1.01	-37.021***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2.44	1.12	

*** p<.001

대상별로 두려움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여, 본인에 대한 범죄피해두려움(N=14976), 배우자(애인)에 대한 범죄피해두려움(N=10718), 자녀에 대한 범죄피해두려움(N=10789)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나 자신에 대한 범죄피해두려움(평균 2.31, 표준편차 1.08)에 비해서 배우자(애인)의 범죄피해두려움(평균 2.60, 표준편차 1.15)이 더 컸고, 자녀에 대한 범죄피해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04, 표준편차 1.20).

〈표 9-12〉 범죄 대상별 두려움에 대한 기술통계

문항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평균 (표준편차)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N=14,976)	4,164 (27.8)	4,876 (32.6)	3,317 (22.1)	2,429 (16.2)	190 (1.3)	2.31 (1.08)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N=10,718)	2,266 (21.1)	2,955 (27.6)	2,634 (24.6)	2,519 (23.5)	344 (3.2)	2.60 (1.15)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N=10,789)	1,486 (13.8)	2,120 (19.6)	2,609 (24.2)	3,611 (33.5)	963 (8.9)	3.04 (1.20)

*** p<.001

범죄 유형별 구체적 두려움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구체적 두려움 척도는 “누군가

64)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에는 강도, 폭행,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되었다.
65)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최근 법률의 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남녀 모두에게 질문하였다.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절도)",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강도)",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폭행)",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사기)",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성폭행)",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손괴)",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주거침입)",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괴롭힘)"는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상대적으로 주거침입(평균 2.27, 표준편차 0.98)과 절도(평균 2.21, 표준편차 0.89)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반면, 남성의 평균치가 낮은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평균 2.01, 표준편차 0.97)과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평균 2.06, 표준편차 0.87)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려운 편이다'와 '매우 두렵다'는 문항을 합산했을 때도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9%). 다음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두려움(10.2%)이 뒤를 이었으며, 절도와 폭행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9.7%).

〈표 9-13〉 범죄 유형별 두려움에 대한 기술통계

문항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평균 (표준편차)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3,099 (20.7)	7,240 (48.3)	3,178 (21.2)	1,362 (9.1)	97 (0.6)	2.21 (0.89)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3,940 (26.3)	6,468 (43.2)	3,201 (21.4)	1,260 (8.4)	107 (0.7)	2.14 (0.9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4,124 (27.5)	6,182 (41.3)	3,219 (21.5)	1,347 (9.0)	104 (0.7)	2.14 (0.95)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4,029 (26.9)	6,056 (40.4)	3,366 (22.5)	1,394 (9.3)	131 (0.9)	2.17 (0.96)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5,233 (34.9)	5,780 (38.6)	2,632 (17.6)	1,180 (7.9)	151 (1.0)	2.01 (0.97)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4,072 (27.2)	6,724 (44.9)	2,953 (19.7)	1,135 (7.6)	92 (0.6)	2.10 (0.91)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3,498 (23.4)	6,051 (40.4)	3,486 (23.3)	1,771 (11.8)	170 (1.1)	2.27 (0.98)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4,114 (27.5)	6,843 (45.7)	3,096 (20.7)	834 (5.6)	89 (0.6)	2.06 (0.87)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범죄 두려움 등에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 전반에 걸쳐 두려움의 수준이 모두 높았다. 특히 일반적 두려움과 성폭력범죄 두려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범죄피해 두려움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30대 이상의 연령 집단들이 10대, 20대의 연령집단보다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폭력범죄·성폭력범죄 두려움, 네가지 영역의 범죄두려움에서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범죄피해 두려움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미혼인 경우가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한 집단에 비해서 전반적인 범죄두려움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일반적 두려움을 제외하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두려움 수준이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성별	남자(N=7,058)	2.00 (0.86)	1.99 (0.72)	2.06 (0.76)	1.98 (0.76)	1.76 (0.83)
	여자(N=7,918)	2.64 (1.03)	2.27 (0.80)	2.30 (0.83)	2.23 (0.84)	2.24 (1.02)
	F값	1664.26***	476.23***	341.64***	360.99***	946.80***
연령대	10대(N=954)	2.57 (1.04)	2.21 (0.83)	2.21 (0.84)	2.23 (0.89)	2.18 (1.08)
	20대(N=1,830)	2.53 (1.04)	2.24 (0.80)	2.24 (0.80)	2.22 (0.84)	2.28 (1.08)
	30대(N=2,242)	2.45 (1.01)	2.21 (0.78)	2.26 (0.80)	2.17 (0.80)	2.15 (1.00)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40대(N=2,736)	2.35 (0.99)	2.17 (0.78)	2.21 (0.81)	2.14 (0.81)	2.08 (0.99)
	50대(N=2,849)	2.32 (0.98)	2.13 (0.76)	2.19 (0.80)	2.11 (0.80)	1.99 (0.92)
	60대(N=2,152)	2.22 (0.96)	2.07 (0.75)	2.15 (0.80)	2.04 (0.79)	1.84 (0.85)
	70대 이상(N=2,213)	2.10 (1.00)	1.98 (0.73)	2.06 (0.79)	1.97 (0.78)	1.70 (0.77)
	F값	51.82***	28.72***	15.46***	24.39***	92.28***
혼인 상태	미혼(N=3,443)	2.44 (1.03)	2.18 (0.79)	2.19 (0.80)	2.17 (0.84)	2.17 (1.06)
	현재 배우자 있음 (N=9,713)	2.30 (0.98)	2.13 (0.77)	2.18 (0.80)	2.10 (0.80)	1.99 (0.94)
	사별이나 이혼 (N=1,820)	2.34 (1.07)	2.10 (0.80)	2.17 (0.85)	2.08 (0.83)	1.87 (0.88)
	F값	26.65***	8.42***	.319	12.00***	68.66***

*** p<.001

사회경제적 변인 중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통계적 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이 범죄두려움이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대학교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범죄피해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두려움의 정도가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두려움의 정도가 높은 결과는 일반적 두려움에서 구체적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까지 일관된 결과였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직업군인,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범죄피해 두려움이 낮은 편이었다. 반면, 전업주부, 학생,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는 상대적으로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범죄피해 두려움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5〉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교육수준	안 받았음 (N=711)	2.02 (1.00)	1.96 (0.74)	2.03 (0.79)	1.95 (0.78)	1.69 (0.78)
	초등학교 (N=1,659)	2.19 (1.01)	2.05 (0.74)	2.14 (0.80)	2.03 (0.78)	1.76 (0.79)
	중학교 (N=1,617)	2.27 (1.00)	2.06 (0.77)	2.11 (0.81)	2.04 (0.82)	1.87 (0.91)
	고등학교 (N=5,410)	2.41 (1.02)	2.17 (0.80)	2.22 (0.82)	2.15 (0.83)	2.09 (0.99)
	대학교 (N=5,410)	2.37 (0.99)	2.17 (0.77)	2.21 (0.79)	2.15 (0.80)	2.10 (1.00)
	대학원 이상 (N=169)	2.21 (0.95)	2.14 (0.76)	2.22 (0.77)	2.06 (0.78)	2.06 (0.90)
	F값	30.87***	20.61***	12.02***	15.78***	64.98***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N=492)	2.24 (0.97)	2.12 (0.79)	2.17 (0.83)	2.08 (0.80)	2.00 (0.96)
	사무종사자 (N=2,749)	2.40 (0.97)	2.19 (0.77)	2.22 (0.79)	2.16 (0.80)	2.11 (1.00)
	서비스, 판매 종사자 (N=2,834)	2.40 (1.01)	2.19 (0.77)	2.24 (0.79)	2.17 (0.82)	2.10 (0.9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N=1,192)	1.99 (0.94)	1.96 (0.70)	2.05 (0.77)	1.93 (0.72)	1.67 (0.77)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N=963)	1.98 (0.87)	2.00 (0.74)	2.08 (0.79)	1.97 (0.78)	1.78 (0.84)
	단순 노무 종사자 (N=500)	2.15 (0.99)	2.05 (0.78)	2.12 (0.83)	2.02 (0.82)	1.86 (0.87)
	직업군인(N=26)	1.83 (1.05)	1.93 (0.73)	1.99 (0.76)	1.88 (0.78)	1.81 (0.85)
	전업주부(N=2,933)	2.54 (1.03)	2.21 (0.79)	2.26 (0.81)	2.18 (0.82)	2.11 (0.97)
	학생(N=1,792)	2.50 (1.02)	2.19 (0.80)	2.19 (0.82)	2.20 (0.85)	2.17 (1.06)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N=1,495)	2.11 (1.00)	2.01 (0.76)	2.08 (0.81)	1.99 (0.79)	1.77 (0.85)
	F값	64.28***	22.84***	13.62***	21.85***	50.5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N=1,420)	2.17 (1.04)	2.04 (0.79)	2.11 (0.84)	2.02 (0.81)	1.81 (0.87)
	100~200만 원 미만 (N=1,079)	2.29 (1.05)	2.13 (0.80)	2.20 (0.84)	2.10 (0.84)	1.93 (0.93)
	200~300만 원 미만	2.35	2.16	2.23	2.12	2.02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N=1,246)	(1.03)	(0.79)	(0.83)	(0.82)	(0.95)
	300~400만 원 미만 (N=1,333)	2.43 (1.01)	2.20 (0.77)	2.25 (0.80)	2.16 (0.80)	2.10 (0.96)
	400~500만 원 미만 (N=956)	2.49 (0.98)	2.23 (0.75)	2.27 (0.77)	2.21 (0.79)	2.17 (0.99)
	500만 원 이상 (N=925)	2.41 (0.95)	2.23 (0.79)	2.27 (0.82)	2.20 (0.82)	2.13 (1.00)
	F값	15.49***	11.09***	7.06***	9.67***	25.24***

*** p<.001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경험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범죄피해경험은 직접적인 피해경험과 간접적인 피해경험으로 구분하였다. 두 가지 피해경험 모두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접피해 경험의 경우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 모든 범죄피해 두려움에 있어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입은 간접피해경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폭력범죄·성폭력 두려움 등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범죄피해 못지않게 주변 사람들의 범죄피해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피해경험자와 간접피해경험자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상식적이나 직접피해경험자의 두려움이 다섯 가지 영역 전반에서 모두 높았다.

〈표 9-16〉 범죄피해경험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일반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직접 피해 경험	있음(N=486)	2.60 (1.03)	2.41 (0.81)	2.49 (0.85)	2.36 (0.87)	2.23 (1.02)
	없음(N=14,490)	2.33 (1.01)	2.13 (0.77)	2.17 (0.80)	2.11 (0.81)	2.01 (0.96)
	F값	33.95***	61.62***	73.10***	44.52***	26.26***

구분		일반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간접 피해 경험	있음(N=827)	2.51 (1.05)	2.37 (0.79)	2.46 (0.82)	2.34 (0.86)	2.10 (1.05)
	없음(N=14,149)	2.33 (1.00)	2.12 (0.77)	2.17 (0.80)	2.10 (0.81)	2.01 (0.96)
	F값	26.47***	80.21***	106.45***	65.63***	7.59***

*** p<.001

다.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도시규모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주택특성은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범죄두려움이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전반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두려움 수준이 가장 낮았다.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범죄두려움도 읍면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두려움과 성폭력 범죄 두려움을 제외하면 광역시 거주자의 범죄두려움 수준은 중소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하는 주택유형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범죄 두려움을 제외하고 모든 두려움에 있어 단독주택 거주자의 두려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흔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거주자의 두려움 수준이 낮은 원인으로 거주 지역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대도시보다는 읍면지역이나 중소도시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두려움의 수준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66] 다음으로 범죄두려움 수준이 낮은 것은 아파트 거주자들이었다.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주택유형 거주자보다 일반적 범죄두려움과 성폭력 두려움수준이 가장 높았고 원룸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주택유형 거주자보다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6) 단독주택거주자의 61.9%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는 26.9%, 연립/다세대주택은 15.3%, 비거주용 건물주택은 2.5%, 오피스텔 등 기타 유형은 0.4%만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7〉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수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도시규모	서울특별시	2,058	2.60 (0.85)	2.36 (0.68)	2.39 (0.69)	2.34 (0.75)	2.28 (0.95)
	광역시	4,256	2.33 (1.03)	2.15 (0.78)	2.20 (0.82)	2.13 (0.81)	2.02 (0.97)
	중소도시	5,156	2.37 (1.00)	2.12 (0.79)	2.17 (0.81)	2.10 (0.83)	2.02 (0.99)
	읍면지역	3,506	2.15 (1.03)	2.01 (0.77)	2.06 (0.81)	1.98 (0.79)	1.84 (0.90)
	F값		87.185***	94.118***	75.384***	89.565***	91.816***
거주주택유형	단독주택	2,673	2.29 (1.03)	2.14 (0.77)	2.21 (0.82)	2.11 (0.80)	1.91 (0.92)
	아파트	3,123	2.34 (1.00)	2.14 (0.78)	2.19 (0.81)	2.11 (0.81)	2.05 (0.97)
	연립/다세대 주택	990	2.50 (1.05)	2.24 (0.80)	2.29 (0.84)	2.21 (0.84)	2.14 (0.99)
	비거주용 건물 (상가, 공장, 여관 등)	141	2.48 (1.15)	2.20 (0.90)	2.26 (0.95)	2.18 (0.93)	2.03 (0.99)
	기타 (오피스텔, 원룸등)	33	2.24 (0.73)	2.50 (0.54)	2.61 (0.56)	2.49 (0.60)	2.09 (0.98)
	F값		8.280***	5.349***	4.718**	5.458***	12.021***

** p<.01, *** p<.001

라. 지역사회특성 및 미디어 노출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특성에 대한 인식 및 미디어 노출 등의 변인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사회특성 및 미디어 노출은 대부분 범죄두려움의 유형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웃관계는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그리고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과는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웃관계가 좋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활동 수준 역시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과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 왕래가 활발할수록,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이 효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물리적 무질서나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에 자주 노출될수록, 사람들과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할수록 모든 영역의 범죄 두려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8〉 지역사회 특성 및 미디어 노출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

구분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	미디어 노출
일반적 두려움	-.075***	-.101	.283***	.325***	-.077***	.067***
구체적 두려움	-.017*	-.031***	.297***	.374***	-.064***	.098***
재산피해 두려움	-.004	-.016*	.289***	.360***	-.057***	.106***
폭력피해 두려움	-.007	-.033***	.288***	.363***	-.060***	.090***
성폭력피해 두려움	-.075***	-.065***	.221***	.287***	-.074***	.048***

* p<.05, *** p<.001

제3절 범죄예방활동

1.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을 측정하는 8개 문항으로 범죄예방활동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소극적인 예방활동과 3개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가구 범죄예방활동과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이라는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 기준 조사에서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으로 분류되었다. 때문에 2012년 기준 조사와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소극적 예방활동과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소극적 예방활동은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와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피해 다닌다”,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적극적 예방활동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를 가지고 다닌다”와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는 이웃집에 봐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는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소극적 예방활동은 평균 2.52점, 표준편차 0.79,

적극적 범죄예방은 평균 1.74점, 표준편차 0.67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소극적 예방활동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06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하였으나 적극적 예방활동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72로 나타나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9-19〉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구분	요인부하량 / 신뢰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529	1.00	5.00	3.60	1.08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758	1.00	5.00	2.13	0.99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832	1.00	5.00	2.48	1.14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800	1.00	5.00	2.15	0.98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725	1.00	5.00	2.25	1.07
소극적 범죄예방	Cronbach's α = .806	1.00	5.00	2.52	0.79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 (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722	1.00	5.00	1.62	0.82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837	1.00	5.00	1.64	0.78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690	1.00	5.00	1.97	0.98
적극적 범죄예방	Cronbach's α = .672	1.00	5.00	1.74	0.67

* 요인분석 시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법은 베리맥스를 사용하였다.

2.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예방활동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대별, 혼인상태에 따라서 범죄예방(소극적·적극적 예방)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소극적인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모두에서 예방활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범죄예방활동에 차이가 있었는데, 소극적 범죄예방은 10대

에서부터 조금씩 증가하다가 30대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적극적 범죄예방은 20대~50대가 동일한 수준이었고, 나머지 10대, 60대, 70대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범죄예방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은 미혼인 경우, 현재 배우자 있는 경우, 사별이나 이혼을 한 경우로 갈수록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 혼인상태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수준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9-20〉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구분		소극적 범죄예방	적극적 범죄예방
성별	남자(N=7,058)	2.21 (0.66)	1.69 (0.66)
	여자(N=7,918)	2.80 (0.79)	1.79 (0.68)
	F값	2367.81***	72.05***
연령대	10대(N=954)	2.54 (0.87)	1.67 (0.67)
	20대(N=1,830)	2.56 (0.82)	1.78 (0.71)
	30대(N=2,242)	2.60 (0.80)	1.78 (0.69)
	40대(N=2,736)	2.53 (0.78)	1.78 (0.69)
	50대(N=2,849)	2.54 (0.77)	1.78 (0.68)
	60대(N=2,152)	2.49 (0.76)	1.73 (0.65)
	70대 이상(N=2,213)	2.39 (0.77)	1.63 (0.60)
	F값	16.00***	17.91***
혼인상태	미혼(N=3,443)	2.49 (0.82)	1.72 (0.68)
	현재 배우자 있음(N=9,713)	2.52 (0.77)	1.77 (0.67)
	사별이나 이혼(N=1,820)	2.57 (0.81)	1.65 (0.63)
	F값	6.62***	29.551***

*** p<.001

사회경제적 변인 중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에 따라서 범죄예방(소극적·적극적 예방)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범죄예방활동수준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 간 차이가 가장 컸고,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과 대학학력을 가진 집단의 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직업에 따른 범죄예방활동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소극적 범죄예방에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예방활동 수준이 낮았고, 서비스·판매 종사자, 사무종사자, 학생 등의 예방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적극적 범죄예방에서는 무직/기타,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등의 예방활동 수준이 낮은 반면, 직업군인,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예방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범죄예방활동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9-2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구분		소극적 범죄예방	적극적 범죄예방
교육 수준	안 받았음 (N=711)	2.27 (0.82)	1.54 (0.55)
	초등학교 (N=1,659)	2.47 (0.78)	1.65 (0.59)
	중학교 (N=1,617)	2.48 (0.80)	1.69 (0.65)
	고등학교 (N=5,410)	2.56 (0.79)	1.77 (0.69)
	대학교 (N=5,410)	2.54 (0.78)	1.79 (0.70)
	대학원 이상 (N=169)	2.57 (0.80)	1.71 (0.59)
	F값	20.581***	29.112***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N=492)	2.46 (0.76)	1.85 (0.66)
	사무종사자 (N=2,749)	2.54 (0.76)	1.83 (0.71)
	서비스, 판매 종사자 (N=2,834)	2.57 (0.76)	1.80 (0.6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N=1,192)	2.16 (0.75)	1.67 (0.58)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N=963)	2.27 (0.69)	1.63 (0.64)
	단순 노무 종사자 (N=500)	2.42 (0.77)	1.63 (0.63)
	직업군인 (N=26)	2.46 (0.69)	1.94 (0.61)
	전업주부 (N=2,933)	2.78 (0.79)	1.76 (0.68)
	학생 (N=1,792)	2.50 (0.83)	1.71 (0.69)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N=1,495)	2.42 (0.78)	1.61 (0.61)
	F값	83.658***	22.0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N=1,420)	2.48 (0.79)	1.62 (0.59)
	10~200만 원 미만 (N=1,079)	2.54 (0.81)	1.68 (0.63)
	200~300만 원 미만 (N=1,246)	2.56 (0.76)	1.72 (0.67)
	300~400만 원 미만 (N=1,333)	2.64 (0.77)	1.78 (0.68)
	400~500만 원 미만 (N=956)	2.69 (0.75)	1.88 (0.69)
	500만 원 이상 (N=925)	2.70 (0.77)	1.92 (0.74)
	F값	15.80***	33.735***

*** p<.001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

피해경험에 따라서 범죄예방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접피해경험에서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양쪽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간접피해경험에서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지난 1년간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양쪽 모두 더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가족, 친지, 지인들을 통한 간접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더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도 평균차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9-22〉 피해경험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구분		소극적 범죄예방	적극적 범죄예방
직접피해경험	있음(N=486)	2.75 (0.79)	2.51 (0.79)
	없음(N=14,490)	1.81 (0.72)	1.74 (0.67)
	F값	40.63***	4.60*
간접피해경험	있음(N=827)	2.62 (0.82)	2.52 (0.79)
	없음(N=14,149)	1.72 (0.69)	1.74 (0.67)
	F값	14.89***	.83

* p<.05, *** p<.001

다. 지역규모 및 주택유형과 범죄예방활동

지역규모 및 주택유형별로 범죄예방활동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도시규모에 따른 범죄예방활동의 차이를 보면 소극적 범죄예방과 적극적 범죄예방 모두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활동적이었다. 앞서 범죄두려움에서도 서울거주자의 두려움이 가장 컸는데, 범죄두려움이 큰 만큼 범죄예방활동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결과되어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서는 서울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광역시

순서로 결과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질문하는 3문항 중에 2문항이 이웃 간 유대와 관련 있는 문항이므로 범죄두려움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이웃관계가 친밀한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도시규모에 따른 범죄예방활동의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거주주택의 유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보면 비거주용 건물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원룸 등의 기타 유형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범죄예방활동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독주택 거주자나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두려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 모두 가장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범죄예방에서도 비거주용 건물과 연립/다세대주택에 사는 응답자들의 활동수준이 가장 높았다. 한편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은 범죄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는데,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도 비거주용 건물에 사는 집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활동수준을 보였다.

〈표 9-23〉 지역규모 및 주택유형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구분		사례수	소극적 예방활동	적극적 예방활동
도시 규모	서울특별시	2,058	2.63 (0.73)	1.95 (0.71)
	광역시	4,256	2.60 (0.78)	1.68 (0.67)
	중소도시	5,156	2.53 (0.79)	1.73 (0.66)
	읍면지역	3,506	2.34 (0.81)	1.72 (0.65)
	F값		90.147***	80.052***
거주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73	2.50 (0.78)	1.74 (0.66)
	아파트	3,123	2.65 (0.77)	1.76 (0.68)
	연립/다세대 주택	990	2.66 (0.78)	1.78 (0.68)
	비거주용 건물 (상가, 공장, 여관 등)	141	2.71 (0.80)	1.78 (0.71)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	33	2.31 (0.61)	1.56 (0.44)
	F값		18.181***	1.715

*** p<.001

제4절 범죄인식 및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추세분석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은 조사시행연도 기준으로 2009년 조사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009년에서 2015년까지 4개년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약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과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조사에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치가 현저하게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증가에 대한 응답치는 2009년에 75.5%로 가장 높았고, 2011년에 61.4%로 감소하였지만 2013년에 다시 63.7%로 약간 증가했다가 2015년에 50.2%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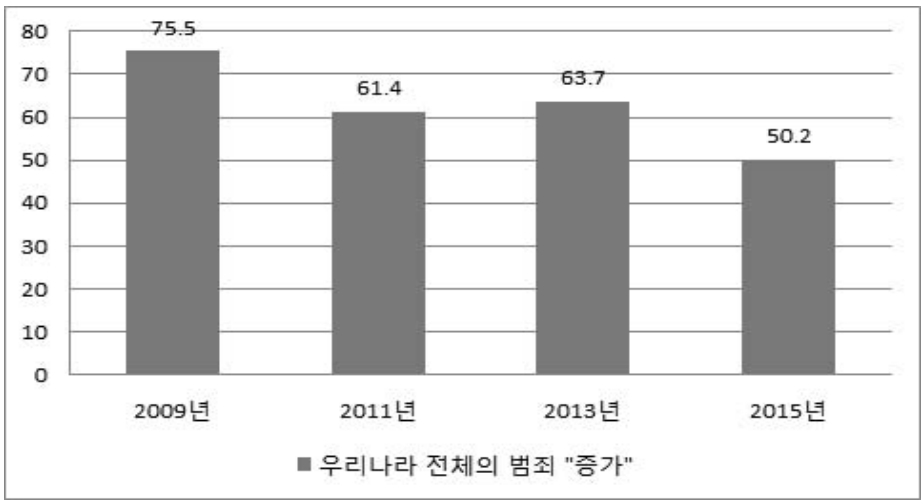

[그림 9-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연도별 추세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을 조사연도를 기준으로 2009년에서 2015년까지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인식과 동일하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약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과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주지역의 범죄증가에 대한 인식도 우리나라 전체 범죄발생증가에 대한

인식과 같은 추이가 나타났다. 즉 2015년 조사에서 응답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증가에 대한 응답치와 마찬가지로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발생증가에 대한 응답치도 2009년에 36.9%로 가장 높았고 2011년에 26.8%로 감소하였지만 2013년에 다시 28.9%로 약간 증가했다가 2015년에 21.6%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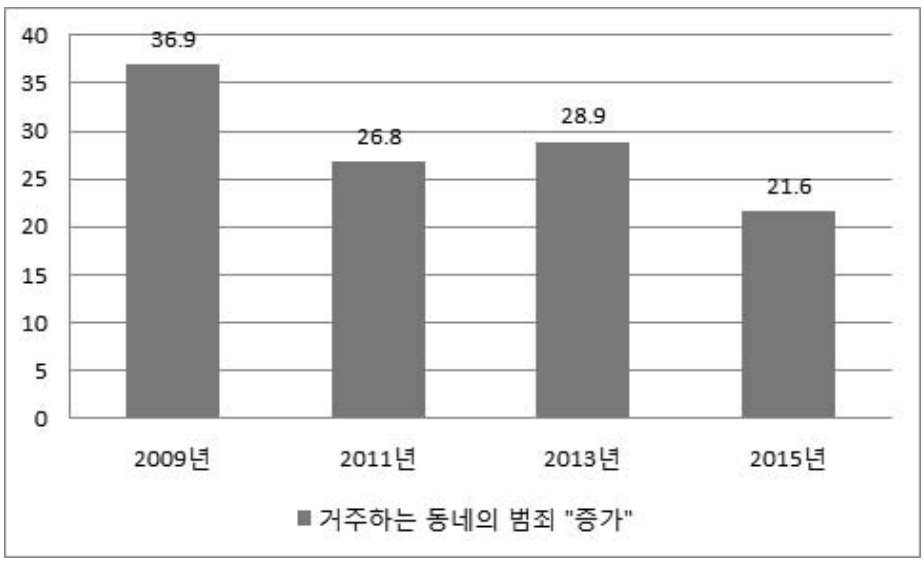

[그림 9-2] 우리동네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연도별 추세

범죄두려움에 관한 추세를 분석하였다. 1990년 범죄피해조사부터 범죄두려움을 측정하였지만 몇 차례 개편을 통해 척도가 변화되어 추세분석이 가능하게 일관된 문항은 일반적 두려움에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한 문항이다. 5점 척도에서 '약간 두렵다'와 '매우 두렵다'를 합산하여 '두렵다'는 하나의 응답으로 묶어 1996년 이후부터 2015년 범죄피해조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조사결과에서 범죄두려움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응답치가 42.4%로 가장 높았다가 98년 35.1%, 2003년 39.7%, 2006년 25.2%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 21.5% 낮아졌다. 아래 그림을 보면 96년 이후 전체적으로 증감을 반복했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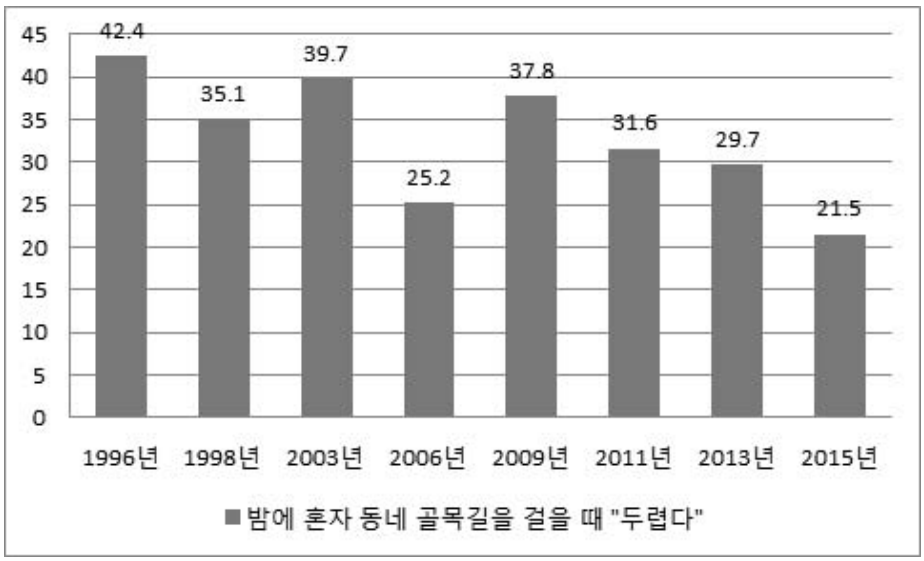

[그림 9-3]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도별 추세

2013년과 2015년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 중 일반적 두려움 척도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였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2013년 2.28(표준편차 = 1.15)에서 2015년 2.23(표준편차 = 1.01)으로 감소하였고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역시 2013년 2.60(표준편차 = 1.26)에서 2015년 2.44(표준편차 = 1.12)로 감소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뚜렷하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에는 오늘날 CCTV 설치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적용 확대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예방 앱 사용이 가능해지고 언론보도를 통해 구체적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접하여 막연하게 자신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표 9-24〉 조사연도별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개별문항) 비교

구분	조사연도	N	평균	표준편차	t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2013년	13,317	2.28	1.15	3.642***
	2015년	14,976	2.23	1.01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2013년	13,317	2.60	1.26	11.262***
	2015년	14,976	2.44	1.12	

*** p<.001

대상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2013년과 2015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범죄피해두려움, 배우자(애인)의 범죄피해두려움, 자녀의 범죄피해두려움이 모두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9-25〉 조사연도별 범죄대상별 피해 두려움 비교

구분	조사연도	N	평균	표준편차	t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2013년	13,317	2.56	1.15	18.952***
	2015년	14,976	2.31	1.08	
배우자(애인)가 범죄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2013년	9,554	2.93	1.13	20.672***
	2015년	10,718	2.60	1.15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2013년	9,178	3.54	1.15	29.833***
	2015년	10,789	3.04	1.20	

*** p<.001

마지막으로 2013년과 2015년의 범죄예방활동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변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경우 2013년(평균 = 2.62, 표준편차 = 0.86)에 비해서 2015년(평균 = 2.52, 표준편차 = 0.79)에 더 감소하였다. 반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경우에 2013년(평균 = 1.63, 표준편차 = 0.61)에 비해서 2015년(평균 = 1.74, 표준편차 = 0.67)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9-26〉 조사연도별 범죄예방활동 비교

구분	조사연도	N	평균	표준편차	t
소극적 범죄예방	2013년	13,317	2.62	0.86	9.910***
	2015년	14,976	2.52	0.79	
적극적 범죄예방	2013년	13,317	1.63	0.61	-14.144***
	2015년	14,976	1.74	0.67	

*** p<.001

제5절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의 주요결과

먼저,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면, 연령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60대(52.7%)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51.4%), 30대(51.0%), 40대(50.5%)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집단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44.2%).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48.3%), 사별이나 이혼(48.4%)을 한 집단에 비해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51.3%)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집단을 가리지 않고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불변'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았으며 집단 간 통계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에서 타집단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55.0%). 반면 교육을 안 받은 집단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45.6%). 직업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직업군인(38.5%), 학생(44.9%)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타집단보다 낮았던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5.8%),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3.5%), 기능원, 기계조작자 및 조립 종사자(52.9%) 등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을 한 비율이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추세 인식에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집단에서 가장 낮았던 반면(47.6%),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200만 원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54.9%).

범죄피해경험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범죄가 향후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률(56.4%)과 간접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률(56.0%)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을 보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 특히 높았다(27.1%). 반면 30대를 기점으로 40대(22.7%), 50대(21.0%), 60대(19.7%)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70대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14.3%). 혼인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났는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25.6%)인 경우에 가장 높았고, 현재 배우자 있는 집단(21.0%), 사별이나 이혼을 한 집단(17.6%)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우리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교육수준에 따라서 점차로 증가하여 고등학교(23.6%)와 대학교(23.9%)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교육을 전혀 안 받은 집단의 경우 10.3%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직업에 따라서도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3.1%) 집단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을 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사무종사자(25.5%),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23.6%),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3.4%), 서비스·판매 종사자, 학생(각 23.0%)의 순으로 '우리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우리동네 범죄추세 인식에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집단에서 가장 낮았던(14.1%) 반면, 우리동네 범죄추세 인식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300만 원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23.0%). 월평균소득 2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200만 원 미만인 집단보다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라서 우리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범죄추세와 달리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직접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5%였다. 직접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4%,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로 피해를 당한 집단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적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많았다. 간접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인식하는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를 보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4%,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9%로 나타나 직접범죄피해자들보다 우리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사회의 특성 및 미디어노출과 우리나라·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고 범죄 관련 미디어나 소문에 자주 노출될수록 우리나라와 우리동네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 간 참여수준이 높고, 경찰활동이 효율적일수록 우리나라 범죄추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식적인 추론과 어긋난 결과를 보여주었고 우리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과도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세 번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성폭력두려움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 전반에 걸쳐 두려움의 수준이 모두 높았다. 특히 일반적 두려움과 성폭력 두려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범죄피해 두려움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30대 이상의 연령 집단들이 10대, 20대의 연령 집단보다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폭력범죄·성폭력범죄 두려움, 네 가지 영역의 범죄두려움에서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범죄피해 두려움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미혼인 경우가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한 집단에 비해서 전반적인 범죄두려움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일반적 두려움을 제외하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두려움 수준이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혼인상태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통계적 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이 범죄두려움이 가장 낮았고, 대학교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범죄피해 두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두려움의 정도가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두려움의 정도가 높은 결과는 일반적 두려움에서 구체적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까지 일관된 결과였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직업군인,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등의 범죄피해 두려움이 낮은 편이었다. 반면, 전업주부, 학생,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등은 상대적으로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범죄피해 두려움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경험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직접피해 경험의 경우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 모든 범죄피해 두려움에 있어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입은 간접피해경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폭력범죄·성폭력 두려움 등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범죄피해 못지않게 주변 사람들의 범죄피해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피해경험자와 간접피해경험자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상식적이나 직접피해경험자의 두려움이 다섯 가지 영역 전반에서 모두 높았다.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도시규모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주택특성은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범죄두려움이 일반적 두

려움, 구체적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전반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두려움 수준이 가장 낮았다.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범죄두려움도 읍면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두려움과 성폭력범죄 두려움을 제외하면 광역시 거주자의 범죄두려움 수준은 중소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택유형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범죄 두려움을 제외하고 모든 두려움에 있어 단독주택거주자의 두려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범죄두려움 수준이 낮은 것은 아파트거주자들이었다.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주택유형거주자보다 일반적 범죄두려움과 성폭력범죄 두려움 수준이 가장 높았고 원룸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주택유형거주자보다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인식 및 미디어 노출 등의 변인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사회 특성 및 미디어 노출은 대부분 범죄두려움의 유형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웃관계는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그리고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과는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웃관계가 좋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활동 수준 역시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과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 왕래가 활발할수록,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이 효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물리적 무질서나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에 자주 노출될수록, 사람들과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할수록 모든 영역의 범죄 두려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범죄예방활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대별, 혼인상태에 따라서 범죄예방(소극적·적극적 예방)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소극적인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모두에서 예방활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범죄예방활동에 차이가 있었는데, 소극적 범죄예방은 10대에서부터 조금씩

증가하다가 30대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적극적 범죄예방은 20대~50대가 동일한 수준이었고, 나머지 10대, 60대, 70대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범죄예방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은 미혼인 경우, 현재 배우자 있는 경우, 사별이나 이혼을 한 경우로 갈수록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 혼인상태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수준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범죄예방활동수준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 간 차이가 가장 컸고,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과 대학학력을 가진 집단의 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직업에 따른 범죄예방활동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소극적 범죄예방에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예방활동 수준이 낮았고, 전업주부, 서비스·판매 종사자, 사무종사자, 학생의 예방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적극적 범죄예방에서는 무직/기타,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의 예방활동 수준이 낮은 반면, 직업군인,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예방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범죄예방활동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피해경험에 따라서 범죄예방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접피해경험에서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양쪽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간접피해경험에서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지난 1년간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양쪽 모두 더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가족, 친지, 지인들을 통한 간접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더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도 평균차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지역규모 및 주택유형별로 범죄예방활동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도시규모에 따른 범죄예방활동의 차이를 보면 소극적 범죄예방과 적극적 범죄예방

모두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활동적이었다. 앞서 범죄두려움에서도 서울거주자의 두려움이 가장 컸는데, 범죄두려움이 큰 만큼 범죄예방활동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나타나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서는 서울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광역시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거주주택의 유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보면 비거주용 건물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원룸 등의 기타 유형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범죄예방활동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범죄예방에서도 비거주용 건물과 연립/다세대주택에 사는 응답자들의 활동수준이 가장 높았다. 한편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은 범죄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는데,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도 비거주용 건물에 사는 집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활동수준을 보였다.

다섯 번째로, 범죄인식 및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추세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은 조사시행이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009년에서 2015년까지 4개년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약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과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조사에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치가 현저하게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증가에 대한 응답치는 2009년에 75.5%로 가장 높았고, 2011년에 61.4%로 감소하였지만 2013년에 다시 63.7%로 약간 증가했다가 2015년에 50.2%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을 2009년에서 2015년까지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 인식과 동일하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약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과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주지역의 범죄증가에 대한 인식도 우리나라 전체 범죄발생증가에 대한 인식과 같은 추이가

나타났다. 즉 2015년 조사에서 응답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증가에 대한 응답치와 마찬가지로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발생증가에 대한 응답치도 2009년에 36.9%로 가장 높았고 2011년에 26.8%로 감소하였지만 2013년에 다시 28.9%로 약간 증가했다가 2015년에 21.6%로 감소하였다.

범죄두려움에 관한 추세를 분석하였다. 1990년 범죄피해조사부터 범죄두려움을 측정하였지만 몇 차례 개편을 통해 척도가 변화되어 추세분석이 가능하게 일관된 문항은 일반적 두려움에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한 문항이다. 5점 척도에서 '약간 두렵다'와 '매우 두렵다'를 합산하여 '두렵다'는 하나의 응답으로 묶어 1996년 이후부터 2015년 범죄피해조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5년에서 범죄두려움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응답치가 42.4%로 가장 높았다가 98년 35.1%, 2003년 39.7%, 2006년 25.2%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 21.5% 낮아졌다. 2013년과 2015년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 중 일반적 두려움 척도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였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2013년과 2015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범죄피해두려움, 배우자(애인)의 범죄피해두려움, 자녀의 범죄피해두려움이 모두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3년과 2015년의 범죄예방활동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변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경우 2013년에 비해서 2015년에 더 감소하였다. 반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경우에 2013년에 비해서 2015년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제10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요약 및 결론

최 수 형

제10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 2014년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피해결과

(1)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한 범죄는 폭력과 재산범죄피해로 구분하였다. 폭력범죄는 강도(대인강도/주거침입강도), 폭행(상해/무상해), 성폭력(강간/성추행), 괴롭힘으로 구분되며 재산범죄는 절도(대인절도/주거침입절도/자동차(부품)절도), 사기, 손괴(주거침입손괴, 자동차(부품)손괴, 단순손괴), 단순주거침입으로 구분된다.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에서 전체 피해율은 3.7%(사건보고 기준으로 14,976명 중에서 555건, 혹은 44,039,786명 중 1,612,701건으로 추정) 정도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의 피해율은 0.4%였고, 재산범죄의 피해율은 3.3%였다. 이 같은 결과를 설문지가 동일한 2012년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피해율과 비교하면, 전체 피해율(4.6%에서 3.7%로 감소)뿐만 아니라 폭력범죄의 피해율(0.7%에서 0.4%로 감소)과 재산범죄의 피해율(3.8%에서 3.3%로 감소) 모두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67]

(2)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역시 2012년 기준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구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

67) 이러한 범죄피해율 감소에는 작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출발하여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객 300여 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로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서 일상생활의 변화까지 가지고 와 범죄피해율에까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상 범죄피해유형은 주거침입절도 및 강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의 주거침입관련 범죄와 자동차(부품)절도 및 손괴, 단순손괴의 기타 가구대상 범죄로 구분하였다. 2014년 기준 조사결과, 주거침입 관련 범죄의 피해율은 1.6%, 기타 가구대상 범죄의 피해율은 1.4%였으며 총 피해건수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건수가 123건, 기타 가구대상 범죄건수가 120건으로 나타났다.

(3)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발생 계절은 여름, 침입방법으로는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피해가구의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피해가구의 가구전체 소득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피해경험이 고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를 경험한 이후 겪은 정신적 피해를 살펴본 결과 다른 정신적 피해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공황상태나 쇼크 등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범죄 피해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4)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발생 계절은 가을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피해가구의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고소득 가구보다는 저소득 가구의 피해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범죄피해경험 이후 겪은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 경험 이후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피해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5) 연도별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변화를 살펴보면 주거침입 관련 범죄뿐 아니라 기타 가구대상 범죄 모두 감소 추세이며 반복피해경험률 역시 감소하고 있었다. 가구대상 범죄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침입 관련 범죄는 철저한 문단속만으로 예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가구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13.3%에서 2012년에는

17.8%, 2014년에는 23.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의 주택유형의 경우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2014년 모두 많았으며 해당 비율이 49.1%에서 52.4%로 다소 증가하였다.

2. 2014년 범죄피해 신고율 및 연도별 변화

(1)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결과 전체 피해사례 555건 가운데 신고된 건수는 123건으로 신고율은 22.8%로 나타났으며 폭력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율(16.3%)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신고율(23.6%)이 높았다. 폭력범죄피해 신고 이유로는 '가해자를 검거 및 처벌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재산범죄피해 신고 이유로는 '손실(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폭력범죄피해 신고 이유 가운데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았으나 재산범죄피해 신고 이유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재산범죄피해에 대한 신고 의무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폭력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22.4%)와 '보복이 두려워서'(17.8%)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폭력범죄피해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연도별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로 범죄피해신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2014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신고율이 다소 낮아진 것은 폭력범죄피해 사건에 대한 신고율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오늘날 피해자 신상 노출로 인한 문제점과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폭력범죄피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조사기준 연도별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율은 폭력범죄피해뿐 아니라 재산범죄피해 경우 모두 2012년 기준 조사에 비해 2014년 기준 조사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고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08년 기준 조사결과에 비해 높아졌다.

3. 2014년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및 연도별 변화

(1) 지역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그리고 주거침입 관련 범죄 모두 물리적 무질서가 높다고 응답한 사람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범죄와 주거침입범죄의 경우는 지역 내 경찰활동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범죄피해율이 더 낮았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범죄피해율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고, 30대에서 50대의 피해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미혼보다는 기혼집단이, 학생보다는 서비스나 판매업에 종사하는 집단의 피해율이 높았다. 한편, 폭력범죄피해율의 경우는 10대와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미혼집단이 기혼집단보다 피해율이 높았으며 학생의 피해율이 다른 직업종사자에 비해 높았다.

(3) 생활양식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는 늦게 귀가하는 집단의 피해율이 높았고 폭력범죄피해는 대중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와 매일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피해율이 높았다.

(4) 가구특성과 범죄피해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는 자가주택보다는 전세나 월세 등의 주거형태의 사람들의 피해율이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피해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폭력범죄피해의 경우는 주택유형이나 주거형태와 같은 다른 가구특성과의 관련성은 없었으나 월평균 소득과의 관계가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피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침입범죄의 경우는 주택유형과 방범수준에 따라 피해율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방범수준이 1개에서 2개를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해율이 높았다.

(5) 범죄취약성 요인의 조사연도 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조사결과는 2013년에 비해 이웃관계와 경찰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생활양식에서 늦게 귀가하는 빈도와 만취해서 귀가하는 빈도, 그리고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등을 착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올해 조사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4. 2014년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과 연도별 변화

⑴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높은 연령대 집단이,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⑵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낮은 연령대가, 미혼인 경우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⑶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우선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 전반에 걸쳐 두려움의 수준이 모두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범죄피해 두려움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30대 이상의 연령 집단들이 10대, 20대의 연령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범죄두려움에서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범죄피해 두려움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미혼인 경우가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한 집단에 비해서 전반적인 범죄두려움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일반적 두려움을 제외하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두려움 수준이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혼인상태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범죄피해경험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본 결과 직접피해경험의 경우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 모든 범죄피해 두려움에 있어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범죄피해 두려움이 컸으며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두려움에서 단독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유형의 거주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다.

⑷ 범죄예방활동 수준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소극적인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모두에서 예방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범죄예방활동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양쪽 모두 더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범죄예방활동이 다른 광역시나 중소도시, 읍면도시에 비해 활발하였다.

(5) 범죄인식 및 두려움과 범죄예방활동의 조사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증가에 대한 응답치는 2009년에 75.7%로 가장 높았고, 2011년에 61.4%로 감소하였지만 2013년에 다시 63.7%로 약간 증가했다가 2015년에 50.2%로 감소하였다. 거주지역의 범죄증가에 대한 인식도 우리나라 전체 범죄발생증가에 대한 인식과 같은 추이가 나타났다. 즉, 올해 조사에서 응답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두 번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역시 1996년부터 증감을 반복하다가 올해 조사 결과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소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은 2013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비해 올해 조사에서 더욱 감소하였고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은 증가하였다.

제2절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1. 2014년 조사방법 및 실사과정에 대한 평가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실사는 민간사회조사업체를 통해 수행되었다. 2008년 기준, 2010년 기준, 2012년 기준 조사에 걸쳐 세 차례 동안의 범죄피해조사는 통계청에서 국가통계의 초기 품질관리 차원에서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더 이상 통계청에서 조사대행이 어렵다는 통보로 2014년 기준 조사인 올해 조사부터는 민간사회조사업체를 통한 실사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2014년도 기준 범죄피해조사는 민간사회조사기관를 통해 실사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실사수행기관의 특성이 조사자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전 조사를 수행했던 통계청 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2012년도 기준으로 조사표 색상에서부터 자료과정자료(paradata) 구성형태, 조사안내장 발송, 조사표 내용, 면접원 교육 등과 같은 조사준비뿐 아니라 조사시점, 조사현장에서의 자료수집방법이나 자료검증방식 등과 같은

실사과정을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해당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하였다. 올해 연구진은 사회조사전문업체 선정이 중요한 만큼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조사기준시점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2012년 기준 조사방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조달청을 통한 용역 발주로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국가승인통계 조사 경험이 많고 전국단위의 대규모 표본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진은 조사준비에서부터 조사진행, 조사완료 및 내검, 데이터클리닝을 통한 최종 조사 자료가 생산될 때까지 끊임없는 점검과 확인을 거듭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과 읍면부 지역의 경우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조사지역 특성에 따라 상품권을 달리하여 지급함으로써 조사응답의 동기부여를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면접원이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스크리닝 질문에 대한 별도의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응답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선별질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면접조사 시 다른 가구 구성원이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비밀보호용봉투를 적극 사용하여 응답의 비밀보장의 측면을 보다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반복적인 데이터클리닝을 통해 범죄피해율 및 피해 내용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변수를 생성할 수 있었다.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는 올해 6월부터 진행되었고 6월 초부터 확산된 메르스(Mers) 감염 우려로 조사현장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연구진의 피해조사 경험과 사회조사전문기관의 지식과 기술을 통해 가구방문면접조사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처로 전국단위의 대규모 표본조사형태인 국가승인통계 조사를 완료하였다.[68] 이처럼 올해 수행한 2014년도 기준 범죄피해조사는 2014년 범죄피해발생 정도와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범죄 관련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여 연도별 비교를 통한 범죄피해 양상 및 범죄에 관한

68) 메르스로 인한 확산 상황에서 면접원의 접근 자체를 거부한 조사불응가구가 무조건적으로 대체가구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 기간 중 무리한 조사 진행보다는 조사 중단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았고 소독제 제공 등의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감염 위험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조사에 대한 불신, 조사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가구를 대체할 수밖에 없어 올해 조사의 경우 가구대체율이나 조사불응율이 이전조사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인식이나 태도 등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 학술자료로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 향후 개선 사항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년을 주기로 한 정례조사인 만큼 조사수행 연도마다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을 수정한다면 시기별 피해양상의 변화와 범죄에 대한 관련 인식의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에 2014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연도별 추세와 변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론, 국가승인통계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위해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한 수정과 보완 작업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매 정례조사마다 조사에 대한 개선작업이 행해지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조사 진행 경험과 조사결과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접근에서 장기적인 개선 방향이 설정된 후 진행하는 것이 범죄학 관련 이론적 발전뿐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피해 관련 정책 마련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올해 진행된 2014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상의 문제점 등을 통해 향후 범죄피해조사 개선작업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범죄피해조사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범죄피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피해의 원인을 개인적 수준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피해유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향후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새로운 피해자학적 관점의 이론적 요인이나 피해유형을 추가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현재 피해조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협박의 피해형태는 대면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오늘날 스마트폰, 인터넷 발달에 따라 비대면 상황에서의 위협이나 협박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협박이나 위협의 피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성 관련 범죄피해의 경우 다른 피해유형에 비해 응답 기피의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고 성 관련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조사는 피해유형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조사표 구성 방식이나 항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범죄피해조사에서 모든

범죄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성 관련 범죄피해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피해유형의 경우는 비정례조사를 통한 추가조사 실시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또한, 현재 범죄피해조사에서 가구대상 범죄를 별도로 분석하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구분하여 개인 단위의 피해유형을 살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방법은 가구방문면접조사로 가구원 전원조사이다. 일반 표본조사에서 개인을 기준으로 만 명을 조사하는 것과 가구방문의 형태로 가구원 전원조사로 만 명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자료의 정확성 면에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즉, 범죄피해유형을 분석할 때 개인단위의 분석을 한다면 제한된 예산에서 가구원 전원 조사를 하여 전체표본 만 명을 조사하기 보다는 가구 대상 1명만을 조사하여 전체 표본 만 명을 조사한다면 표본가구의 수가 증가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보다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유형과 분석수준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측정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유형에 따라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경험 선별질문과 사건조사표의 범죄피해 내용에 대한 재정비 과정이 필요하다. 2009년 개편이후 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유형은 매 조사마다 상이했고 이에 따라 해당 조사내용의 수정작업이 있었다. 하지만 전국단위의 대규모 표본조사인 국가승인통계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 설계부터 조사 완료, 분석에 이르는 과정을 1년 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내용의 수정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개편된 범죄피해조사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유형을 별도로 구성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범죄피해유형을 피해조사에서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피해유형에 따라 조사내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측정하고자 하는 피해유형과 실제로 조사표를 통한 피해 내용 관련 항목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가령, 손괴의 경우 미수만을 측정하기 위해 스크리닝 질문에서 기수에 대한 경험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으나 정작 사건내용에 대한 구체적 응답을 하도록 하는 문항에서는 '손상하려했다'는 등의 미수의 피해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괴롭힘의 경우에도 개념과 피해범주가 모호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피해유형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범죄피해선별질문을 통해 '아는 사람에 의한 괴롭힘' 피해경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사건조사표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서도 괴롭힘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는 사람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며 반복적인 형태로 제한을 두고는 있지만 실제 응답과정에서 이를 통제할 만한 기제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측정하고자 하는 피해유형과 조사표에서의 측정 항목이 다르면 측정 피해유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조사응답자는 당연히 조사표의 내용에 따라 응답을 하게 되고 이러한 조사결과는 피해유형을 분석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 조사마다 추출되는 피해유형이 다를 수 있다. 이에 향후 범죄피해조사 개편 작업에서 이러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조사응답자에게 친화적인 조사표 구성의 필요성 검토이다. 즉, 범죄피해조사에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면 최대한 응답자가 쉽고 간편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고 조사 집중도를 높이며 원활한 면접조사 진행을 위한 조사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령, 기초조사표에서 생년월일과 같은 많은 정보를 적도록 하기 보다는 본인의 연령을 간단히 적도록 하거나 자료 검증을 위한 전화번호 기입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조사에서도 실제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등의 신상노출의 두려움으로 사건조사표 작성을 거부한 경우가 많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고 결국 조사표 작성을 거부한 경우도 11건 있었다. 응답자의 전화번호 기입 방식은 본 조사의 특성을 무시한 채 기존의 다른 표본조사의 자료 검증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즉, 범죄피해조사라는 특수한 영역의 조사인 만큼 다른 차원의 조사검증 방식이 필요하다. 가령, 앱 개발을 통해 조사원 실사 진행을 관리 하거나. 양질의 조사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조사 자료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양질의 조사원을 선발하여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조사원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현장의 여건 상 응답자의 전화검증 이외의 다른 방안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전달 동의뿐 아니라 수집하여 보관된다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필수적일 것이다.

네 번째, 조사홍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조사의 경우 이전 조사에 비해 조사에 대한 항의가 많은 편이었다. 물론, 메르스 확산에 따른 위험성 인식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설문조사에 대한 거부일 수 있지만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사현장에서 범죄피해조

사뿐 아니라 본 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응답자와의 최초 접촉 자체가 어려웠다. 이전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통계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막연한 신뢰감이 형성되어 응답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었다. 범죄피해조사가 국가승인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조사 실시에 대한 홍보 역시 부족하였다. 이에 앞으로 조사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연구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범죄피해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조사 결과를 알리거나 현재 정기적으로 개최 중인 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다양한 분석결과와 함께 피해조사 연구의 의의를 더욱 크게 하는 등의 간접적 홍보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의 범죄피해조사의 경우는 조사자료 제공 및 조사결과뿐 아니라 조사의 소개 및 자료수집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자료이용자를 위한 소개책자(User Guide, Technical Report)'를 통해 학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자료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실사 기간 중 조사구 지역만이라도 조사 실시 홍보 포스터나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실사 이전에 조사안내장과 연구원 홍보 책자를 조사응답자에게 발송하는 적극적 홍보 방안이 있다. 영국의 범죄피해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조사응답자에게 발송하는 조사 안내장에 지금까지의 범죄피해조사의 주요 결과들을 포함하여 응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조사응답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안내장 발송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올해 조사의 경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본집단을 선정하여, 안내장 발송주소를 2010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주소 자체가 변경되어 반송된 경우도 많았고 5년 지난 시점의 가구주명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수신인을 '가구주님'으로 발송하여 실제로 응답자가 뜯어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장을 받고 내용을 확인한 응답자의 경우 면접원의 최초 접촉이 상대적으로 쉬웠고 조사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안내장 발송의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다섯 번째, 조사 기준 시점의 조기화가 필요하다. 이는 범죄피해조사 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범죄피해경험을 알아보는 조사가 다음 해인 6월에 실시함에 따라 기억회상의 오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조사자료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실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개편작업이 2년 주기인 정례조사 시기에 행해지기 보다는 정례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연도에 수행하여 개편 전후 조사표와 조사방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정례조사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원 내 범죄피해조사 연구진 구성형태의 특성상 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탄력적 연구수행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통계진흥원에서 '국가역량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가통계 작성기관 대상 조직컨설팅 보고서에 의하면 범죄피해조사는 2년 주기의 조사로 조사실시연도 이전에 조사통계인력을 배정하여 조사기획 및 준비 단계를 수행하고 조사실시연도에는 통계청 등의 관계기관과 조사협의, 조사전문기관 용역, 실지 현장조사관리 및 조사결과 처리, 결과분석 및 공표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지조사 관련 용역이나 현장조사관리 등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별도의 행정인력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통계청, 2015).

여섯 번째, 원표본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구원 전원을 조사하고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범죄피해조사는 조사 응답만을 위해서라도 가구 방문횟수가 최소 3회 이상이다. 이러한 방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사 협조를 위한 최초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날 1인 가구의 증가나 귀가시간의 다양화 등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일반 설문조사가 많아짐에 따라 응답자의 조사에 대한 피로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조사 불응 가구가 많아졌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주변지역에서 알려진 우범지역의 경우 낯선 사람과의 경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조사 협조 자체가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조사 역시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불응 가구라 할지라도 방문시간을 달리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가구원 외의 다른 가구원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3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원표본 대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최초 조사에 대한 호감이 없는 조사 불응 가구를 설득하여 조사를 진행했을 경우 조사응답에 대한 성실도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또한, 조사구 대체율만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조사가구 대체율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아도 조사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통계학적인 맥락은 제외하고서라도 범죄피해조사의 특성상 조사 불응 가구 가운데 실제로 범죄피해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사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 표본가구에 대한 조사협

조 노력을 최소화할 수 없다. 또한 실제로도 조사과정자료(paradata)와 범죄피해율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원표본에서의 범죄피해경험률이 대체표본에 비해 높았고 조사가구 방문 시간이나 요일 등의 요인이 원표본 성공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15)[69] 그동안 조사결과 분석에만 치중하여 간과했던 조사과정자료(paradata)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사현장에서의 노하우뿐 아니라 원표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70]

일곱 번째,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방법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편된 범죄피해조사표는 조사응답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건피해를 기억하기 쉽도록 설문지를 구성한 것이지만 이는 조사응답자가 조사원에게 모든 피해경험을 보고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조사현장에서는 조사응답자가 조사표를 통해 피해경험을 기억했음에도 면접원에게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비밀보장의 측면이 보다 강화된 온라인조사방식 자료수집방법의 효과를 지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조사방식은 조사응답의 성실도 문제나 조사독려의 어려움뿐 아니라 조사환경의 특성상 모든 표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접조사의 형태 역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현장 조사 결과 읍면부 지역의 경우 조사응답자와 면접원과의 안면이 있는 상태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범죄피해경험을 면접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즉, 조사 당일 처음 만난 조사원에게 개인적인 피해경험 내용에 대한 조사 응답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면접원에게 응답자 자신의 개인적 피해경험을 어떻게 말하도록 할 것인가가 더욱 필요한 물음일 것이다.[71] 이에 패널조사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패널조사는 조사원과 응답

---

69) 이는 국가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통계진흥원에서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올해 조사의 조사과정자료(paradata)와 최종 조사 자료의 일부분을 제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70) 한편, 답례품을 다양화하여 조사응답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조사지역의 특성에 따라 답례품이 달리하거나 응답자의 특성상 상품권보다는 실질적인 가정용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 된 답례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71) 이러한 맥락에서 면접원 교육 내용이 응답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경험을 말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기법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조사 진행에 있어서 수월할 수 있고 반복적 피해경험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조사 자료의 이용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반면, 응답자 자신이 패널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범죄피해경험 응답을 더 꺼릴 수도 있고 패널유지 비용이나 응답 사례품 관련 비용 등으로 예산 증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패널조사방식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사기관의 안정화 문제이다. 범죄피해조사는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로 조사수행을 위해 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다.[72] 올해부터 민간사회조사업체를 통한 실사가 시작되었고 다음 정례조사에서는 또 다른 민간사회조사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조사표나 조사지침서, 조사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은 동일하겠지만 실사기관이 달라짐에 따라 해당 업체의 조직적 특성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도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범죄피해조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사기관의 안정화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미국이나 호주의 범죄피해조사는 통계청을 통한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국이나 캐나다의 범죄피해조사는 통계청에서 자료 관리 및 자료제공을 하고 있다. 물론, 사회조사 전문기관의 탁월함은 인정하지만 범죄피해조사라는 특수한 영역의 조사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자료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기준 범죄피해조사를 위해 현재 통계청 자료입력 시스템인 나라통계시스템 사용을 신청한 상태이다.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수집부터 처리, 집계에 이르는 과정의 시스템으로 통계작성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가능했던 민간사회조사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관리의 차원을 넘어 양질의 조사원 채용이나 실사현황 등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조사통계 생산적 측면에서의 신뢰성 및 조사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한 효율성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조사시스템 적용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범죄피해조사가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72) 실제로 본 원과 유사한 특성이 지난 연구기관 가운데 통계작성기관에서도 실지 현장조사는 모두 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있다(통계청, 2015).

참고문헌

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 홍영오(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 황지태 · 노성훈 · 황의갑(20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수형 · 탁종연(2014), 『전국범죄피해조사(Ⅳ):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2015), 『2015년도 국가통계역량강화사업 통계컨설팅 결과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United States Census Bureau(2012), CAPI Interviewing Manual for Field Representativ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2012), NCVS Victimization Analysis Tool(NVAT) User's Guid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5), Crime in England and Wales, year Ending September 2014.

van Dijk, Jan(2010), The 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Websit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5), Crime Victimisation, Australia, 2013-14.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mf/4530.0

Bureau of Justice Statistics(2014), Data Collection: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NCVS). http://www.bjs.gov/index.cfm?ty=dcdetail&iid=245#Methodology

Abstract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4

Choi Soo-hyeong · Kim Ji-young · Hwang Ji-tae · Park Hee-jung

1. Purpose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 for the year 2014 adopted the same survey system of the Korean Crime Survey for the year 2012 in terms of sampling, survey method and survey items and compared its findings with that of the 2012 survey, to build a stable survey database for criminal victim survey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verify the victimization rates and damages and outcomes of crimes across different types of crime, identify the factors which cause vulnerability to crimes, illuminate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and attitude towards crimes, as well as verify how they changed from the year 2012. The survey also includes findings from the 2008 and 2010 surveys, if applicable, in the comparative analysis to trace the changes over time.

2. Overview

- Analyzed the victimization rates across crimes and city sizes under the crime victim categorization system, and changes in crime victimization
- Identified occurrences and outcomes of crimes across crime victim categories, and compared the findings from surveys for other years

- Surveyed crime report rates, crime victims' experience and satisfaction with crime processing, and analyzed changes in crime reporting and processing at the police
- Analyzed factors which cause vulnerability to victimization, and compared findings from different years
- Analyzed the general public's fear and perception of crimes, as well as changes therein. Perception of crime trends, fear of crime, preventive activities

3. Method

▢ Population

- Target population: Households and household members who are 14 years old or older residing in area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ubject to the country's administrative power as of the date of survey (May 29 2015)
- Survey population: All households and household members who are 14 years old or older residing in the general enumeration districts (1) and the apartment enumeration districts (A) among the overall enumeration districts for the 2010 Census.

▢ Sampling Method

- Enumeration district sampling: Stratified random probability sampling (25 strata, taking account of 16 Si/Do and Dong/Eup/Myeon)
- Household sampling: Selected 10 households from each district through systematic sampling

▢ Data collection Interview survey through personal visits to target households, in combination with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 Total number of samples surveyed

• Total number of households surveyed: 6,960 households

• Total number of persons surveyed: 14,976 persons

❑ Survey period

• Surveyor training: 2015. 5. 27. ~ 6. 10.(2 weeks)

• Survey period: 2015. 5. 29. ~ 7. 17. (7 weeks)

※ Survey delayed due to risks of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fection

❑ Survey Period and Date of Survey

• Survey period: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14

• Date of Survey: May 29 2015

4. Key Findings

1) Victimization Rates and Crime Results

• Crime Victimization Rates by Crime Types and Change Thereof: The overall victimization rate was 3.7% (555 reported crimes among 14,976 persons: estimated at 1,612,701 crimes among 44,039,786 persons). The victimization rate of violent crimes was 0.4%, and that of property crimes was 3.3%.Compared with the victimization rate found in 2012 Crime Victim Survey, which used the same questionnaire, all of the overall victimization rate, the victimization rate of violence crimes, and the victimization rate of property crimes decreased (from 4.6% to 3.7%, from 0.7% to 0.4%, from 3.8% to 3.3%, respectively).

• Victimization Rates of Crimes against Households: Victimization types of crimes against households can be divided into victimization by crimes involving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victimization by other crimes

against households. The 2014 survey found that 1.6% of the total households surveyed victimized by crimes involving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1.4% of the total households victimized by other crimes against households. The total number of crimes involving intrusion upon habitation was 123, and the number of other crimes against households was 120. The analysis of the occurrences and changes of crimes against households after the 2009 revision showed overall decrease of victimization rates for both the crimes involving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the other crimes.

- Rate of Crimes Reported to the Police: Of the 555 crimes experienced by the respondents, 123 crimes were reported to the police recording 22.8% reporting rate. The reporting rate of violence crimes (17.5%) was surpassed by the reporting rate of property crimes (22.7%). The overall reporting rate increased from 14.5% in 2008 to 22.8% in 2014, which shows the people's perception towards reporting crimes has recently become more positive. However, the overall reporting rate in 2014 decreased from 2012. This seems to be attributable to the respondents' reluctance to report the crimes because of the growing fear fueled by recent incidents where the identities of victims of violence crimes were disclosed, or crime victims fell victim to retributive crimes, as evidenced by the reasons for not reporting crimes given by the respondents.
- Processing of Reported Crimes and Satisfaction Therewith: In the 2014 survey, the percentage of violence crimes processed by the police was higher than the percentage of property crimes processed by the police. The percentage of cases where the police provided information on crime processing procedures was also higher for violence crimes than property crimes. As for satisfaction with the measures taken by the police, victims who reported violence crimes reported generally more positive opinions

compared with victims who reported violence crimes.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crimes where the police took actions or provided information on crime processing procedures found in the 2014 survey increased from those in the 2012 survey. After 2008, crime victims expressed positive opinions on the actions taken by the police against crimes.

2) Factors Causing Vulnerability to Crimes in 2014 Survey

- Victimization by Regions: ①As for property crimes, both physical disorder and social disorder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victimization rate of property crimes. While 5.1% of the respondents who reported that the areas where they reside are physically disorderly areas experienced property crimes, only 2.7% of the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 areas where they reside are not disorderly were victimized by the same type of crime. In addition, efficiency of police activities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property crimes: the property crime victimization rate of the group of respondents who viewed police activities as effective was 2.6%, lower than 4.5% of the group who answered police activities are not effective. ②The violence crime victimization rate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with relationship with neighbors, involvement with neighbors, and effectiveness of police activities. It was, however,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level of physical disorderliness.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experienced violence crimes was higher when the level of physical orderliness was high (0.8%), compared with when the level is low (0.2%) or modest (0.5%).
- Victimiza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①In case of property crimes, more women experienced than men (3.6% compared with 2.6%). In terms of age, 3.9% of the respondents in their 40's answered that they

have experienced property crimes, recording the highest victimization rate. They were followed by the respondents in their 50's (3.8%) and 30's (3.7%). Only 0.9% of the teenage respondents reported experiences with property crimes, showing the lowest victimization rate. In terms of marriage status, the unmarried respondents recorded a lower victimization rate than the married group, and the level of education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perty crime victimization rate. Across occupations, the group working in sales or service sectors showed the highest victimization rate at 4.0%, followed by respondents who are military members (3.8%), managers/professionals (3.7%), and housewives (3.4%).②As for violence crimes, al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cept for gender and level of education we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the violence crime victimization rate. In terms of ages, the respondents in their 10's and 20's showed higher victimization rates than the other age groups, and the unmarried group showed a higher victimization rate than the married group. In terms of occupations, relative higher percentage of students (0.8%) and office workers (0.4%) experienced violence crimes.

- Victimization by Lifestyle Characteristics: ① As for property crimes, the respondents who hardly or never uses public transportation reported the lowest victimization rate, and the group of respondents who return home late every night experienced less crimes compared with the group of respondents who do not. The frequency of returning home drunk, wearing fancy clothes or famous brands when going out did not produc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ictimization rate.② As for violence crimes, the respondent group who use public transportation 3~4 days a week demonstrated the highest victimization rate at 0.6%, followed by those who use public transportation 5 days or more (0.5%), 1~2 days (0.3%), and 2~3 days (0.1%) a week. The group of respondents who return home late every

night reported the highest victimization rate of 5.05%. Returning home drunk produc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iolence crime victimization rate.

- Victimization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①As for property crimes, respondents living in monthly rent-based or deposit-based rental houses or free houses experienced more crimes than those living in self-owned houses. The respondent group who earn less than 1 million Korean Won per month reported the lowest property crime victimization rate. ② Differences of violence crime victimization rates was significantly related only with the income level of respondent households: the group who earn 5 million Korean Won or more per month reported the lowest victimization rate.
- Comparison of Factors Causing Vulnerability by Years: The respondents of the survey for the year 2015 reported a higher average score for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neighbors (M = 2.79, SD = 0.98) than the survey for the year 2013 (M = 2.63, SD = 0.99). The former demonstrated a strong percep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s has improved. The perceived level of physical and social disorder deteriorated in 2015 compared with 2013. The respondents were feeling that the regions where they reside have become dirtier, more disorderly, and more noisy compared with two years ago. On the contrary, the respondents' perception towards police activities became more positive in 2015 (M = 10.21, SD = 2.12) than in 2013. The perceived level of crime prevention decreased in 2015 (M=3.87_ compared with in 2013 (M=4.01).In addition, as for the lifestyle characteristics, the frequency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n 2015 (M = 2.76, SD = 1.21) was lower than 2013 (M = 2.94, SD = 1.18). The frequency of returning home late at night in 2015 (M = 4.37, SD = 1.71) showed an increase from that in 2013 (M = 4.04,

SD = 1.92). The frequency of coming home drunk also showed an increase between 2013 (M = 5.44, SD = 1.14) and 2015 (M = 5.49, SD = 0.99).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wear luxurious clothes or accessories and famous brands when going out increased between 2013 (M = 2.02, SD = 0.85) and 2015 (M = 2.14, SD = 0.92).

3) Perception and Fear of Crime

- Perception of Crime Occurrences: The respondents' perception of the national crime trends in South Korea was compared with their perception of the crime occurrences in their respective neighborhoods. The perception of the national crime occurrences in South Korea (M = 3.45, SD = 0.76) was given a high average score than the perception of the crime occurrences in the respondents' neighborhoods (M = 3.06, SD = 0.65), demonstrat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 Factors Affecting Perception of Crime Occurrences: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terms of their perception of crime occurrences in South Korea, age, marriage status, level of education, occupation, household income, direct/indirect experience with victimizati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xposure to media were found to produce meaningful differences. In addition,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were found in perception of crime occurrences in the respondents' respective neighborhoods in terms of gender, marriage status, level of education, occupation, household income, direct/indirect experience with victimizati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xposure to media.
- Fear of Crime: The average score for fear of crime in general, which refers to the feeling of being afraid to being alone or go out alone at night,

was 2.34 (SD = 1.01). As for specific types of fear, the fear of property crimes recorded an average score of 2.18 (SD = 0.80), the fear of violence crimes scored 2.11 (SD = 0.81), and the fear of sexual crimes scored 2.01 (SD = 0.96).

-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Females were more fearful of crimes than male respondents, people in their 30's than people in their 10's and 20's, unmarried people than married people, people with higher level of education than people with lower level of education, and people with higher income than people with lower income. In addition, it was found through an analysis of whether experience with victimization produces any difference in fear of crime that people who directly experienced victimization or indirectly experienced it through people close related to them were more fearful of crimes. In addition, fear of crime diminished when neighbors are closer together, or the local police is perceived as efficient. To the contrary, the higher the level of physical or social disorder, more afraid the people were of crimes. In addition, exposure to crime-related news or TV programs and talking with others about crime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fear of crimes in all areas.
- Levels of, and Factors Affecting, Crime Prevention Activities ①The average score for pass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was 2.52 (SD = 0.79), with men giving higher scores in general than women. The average score was the lowest among teenage respondents, then gradually increased in subsequent age groups, reaching the highest average score in the 30's group, and then gradually decreasing. As for marriage status, the currently married respondents recorded a higher score than the unmarried respondents, and the respondents who lost their spouses or divorced recorded a higher score than the currently married respondents. In

addition, the respondents with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with victimization were found to be more actively engaged in pass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the respondents residing in Seoul showed a higher level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compared with respondents residing in other regions. ② As for ac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e average score was 1.97 (SD = 0.98), with men scoring higher than women, and people in their 10's, 60's and 70's scoring lower than the other age groups. Groups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scored higher, and the currently married respondents scored higher than the other groups. In addition, as for experiences with victimization, people who experienced victimization were found to be more actively engaged in ac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e respondents residing in Seoul showed a higher level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compared with respondents residing in other regions.

- Change of Perception and Fear of Crimes an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over the Years: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crime occurrences increased in South Korea was the highest in 2009 at 75.7%, decreasing in 2011 to 61.4%, slightly increasing in 2013 to 63.7%, and then decreasing again in 2015 to 50.2%.The perceived occurrences in their respective regions showed the same pattern over the years: the percentage markedly decreased in this year's survey. Secondly, fear of crime also has been alternating between decrease and increase since 1996, reaching the lowest point this year. Lastly, the level of pass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n this year's survey decreased from the result of the 2013 survey, while the level of ac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ncreased.

5. Reforms and Improvements

The National Crime Victim Surveys are conducted every other year. To ensure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it is imperative to conduct the surveys after setting the direction for long-term improvement through a comprehensive approach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findings accumula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rather than carrying out improvement works for each survey. The reforms and improvements suggested herein are as follows: 1) review the types of crime victimization to be measured through crime victim surveys; 2) improve the screening questions asking a respondent's experience with victimization in the basic questionnaire, and the questions on the details of crime in the case survey questionnaire, based on the types of crime victimization to be measured; 3) compose more respondent-friendly questionnaires, 4) review the current PR practices for the surveys; 5) Move up the reference date for the surveys; 6) come up with ways to improve the success rate of the original samples; 7) review the current data collection method; and 8) stabilize the selection of the survey agencies.

부록

승인(협의)번호
제 40301 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4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기초조사표: 가구대표 응답자]

인사 말씀

미디어리서치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아래 표는 조사원이 적어 넣습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			

실사 사무소	조사원 성명	조사원 전화번호	조사방법	가구대표 응답자 사건조사표 수
		( ) -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총 ( ) 부

가구 전체 조사표 수	가구 전체 기초조사표 수	가구 전체 사건조사표 수
총 ( ) 부	총 ( ) 부	총 ( ) 부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미디어 리서치 MillwardBrown

조사표 쓰는 요령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표를 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쓰십시오.
◆ 한 항목의 기입이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입하되, 건너뛰는 표시(→)가 있으면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쓰십시오.

H 가구 구성

H 2015년 5월 29일 현재 귀댁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모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① 남 ② 여	실제 생년·월	혼인상태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 ③ 사별이나 이혼	직업 관련 등	종사상 지위	장애인만 응답 장애인 복지카드 ① 있음 ② 없음	외국인만 응답 출신 국가	조사원이 적어 넣습니다 사유 코드
1	① 가구 대표 응답자		(양 / 음) 년 월						
2			(양 / 음) 년 월						
3			(양 / 음) 년 월						
4			(양 / 음) 년 월						
5			(양 / 음) 년 월						
6			(양 / 음) 년 월						
7			(양 / 음) 년 월						
8			(양 / 음) 년 월						

<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 >	< 직업 관련 등 보기>	< 종사상 지위 보기>
① 가구대표 응답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증손자녀 ⑩ 증손자녀의 배우자 ⑪ 조부모 ⑫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기타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⑥ 단순 노무 종사자 ⑦ 직업군인	① 임금근로자 ②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⓪ 해당 없음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H. 가구 구성

- 가 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
- 가구대표 응답자: 가구의 생활 상황을 잘 아는 사람
- 가구원: 현재 이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므로, 군 입대, 주말부부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는 제외
- 가구대표 응답자를 가장 먼저 적은 후,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 번호 순서대로 기입

I 동네와 이웃 환경

1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6)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①	②	③	④	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경찰**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4 작년(2014년) 한 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항목	매우 감소할 것	약간 감소할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증가할 것	매우 증가할 것
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Ⅱ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 배우자(애인)나 자녀가 없는 경우 '해당자 없음'에 표시해주십시오.)

항목	해당자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⓪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⓪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나를 폭행하려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항목	있었다	없었거나 모른다
1) 신체 피해	①	②
2) 재산 피해	①	②

10 귀하는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일주일 평균 며칠 정도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등 포함. 단, 택시는 제외)을 이용했습니까?

① 일주일에 5일 이상 ② 일주일에 3 ~ 4일
③ 일주일에 1 ~ 2일 ④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1 귀하는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2 귀하는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3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와 가구원이 모두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① 거의 비우지 않았음 ② 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④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⑤ 12시간 이상

14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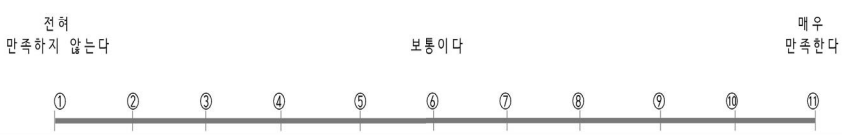

15 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 ~ 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배경 문항

17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18 최근 5년 이내(201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_____회 ② 없다

19 가구원 가운데 현재 사는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응답 후 19-1번으로 ② 없다 → 응답 후 20번으로

19-1 현재 집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상호나 간판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0 현재 사시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집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무상

2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예: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등 포함)

⓪ 안 받았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

22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 가구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① 월평균 100만 원 미만 ② 월평균 100 ~ 200만 원 미만
③ 월평균 200 ~ 300만 원 미만 ④ 월평균 300 ~ 400만 원 미만
⑤ 월평균 400 ~ 500만 원 미만 ⑥ 월평균 500 ~ 600만 원 미만
⑦ 월평균 600 ~ 700만 원 미만 ⑧ 월평균 700 ~ 1,000만 원 미만
⑨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Ⅳ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문항 23번부터 30번까지는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해 경험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각 문항마다 방법과 장소 등의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질문과 함께 예시 내용을 읽고 관련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③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⑧ 기타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① 있다 → _____건 ② 없었다

24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경험** 또는 **그럴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시
① 현금, 수표, 상품권 등
②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③ 지갑, 핸드백, 가방
④ 개인 휴대 물품(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⑤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⑥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⑦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 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 등)
⑧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⑩ 그 외 다른 물건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25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절단하여 귀하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26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구원의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 예: 누군가 귀하의 집 창문 또는 집 밖에 놓아둔 물건이나 자동차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다.)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27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서 귀하는 **폭행** 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①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②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③ 직장이나 학교
④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 등
⑤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산책로) 등
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⑦ 거리, 주차장, 승용차 등 그 밖의 장소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28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 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 전화로 위협을 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시
① 칼, 총과 같은 무기
②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③ 돌이나 병을 던짐
④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목을 조름
⑤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⑥ 귀하 앞에서 위협함
⑦ 그 외 다른 폭행, 위협(협박)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29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①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② 친구, 애인 또는 이웃
③ 가족이나 친척
④ 그 밖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30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① 낯선 사람
② 조금 아는 사람
③ 잘 아는 사람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V 조사원 확인 사항

※ 이 페이지부터는 조사원이 직접 적어 넣습니다.

1. 점검 항목

관련 문항	① 피해 경험 여부		② 상습피해 수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피해를 당했으나 구별 못 함)	③ 사건조사표 수 (상습피해는 1건만 작성)
23번 속임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4번 물건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5번 침입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6번 손상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7번 장소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8번 방법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9번 지인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30번 성추행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총 피해 경험 수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총 사건조사표 수	_____ 부

① 피해 경험 수 결정 방법

① 범죄피해 경험 관련 문항의 피해 경험 수를 옮겨 적습니다.
② 점검 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 문항에 표시된 경우 같은 피해 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될 수 있으나, 같은 피해 경험인 경우 **한 건**으로만 표시합니다.
③ 문항별 피해 경험 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 경험 수에 적어 넣습니다.
④ 총 피해 경험 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 경험 수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합니다.

② 상습피해 여부 결정 방법

※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① 문항별 피해 경험 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피해 경험 수를 상습피해 수에다 씁니다.

③ 사건조사표 수 결정 방법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같은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씁니다.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 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씁니다.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조사표 수에 씁니다.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항목	예	아니요	잘 모르겠음
1)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다	①	②	③
2)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쇠창살)이 있다	①	②	③
3)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다	①	②	③
4) 출입카드를 사용한다	①	②	③
5)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6) 경비원이 있다	①	②	③
7)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CCTV 등 감시카메라가 있다	①	②	③
8)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외부 조명이 있다	①	②	③
9)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있다	①	②	③
10)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장이 있다	①	②	③
11)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공단지역(공장 밀집 지역)이 있다	①	②	③
12)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대규모 재래시장이 있다	①	②	③

3. 주택의 유형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다세대주택
④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⑤ 기타(오피스텔 등) (　　)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
1) 단지 규모: 총_____동
2) 층수: _____층 중 _____층
3) 형태: ① 계단식 ② 복도식

※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번호를 써 주십시오.

※ 연락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응답자 성명

( )

응답자 연락번호

휴대전화 : ( ) -

집 전 화 : ( )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승인(협의)번호
제 40301 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4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사건조사표]

인사 말씀

미디어리서치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아래 표는 조사원이 적어 넣습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사건번호
			-				매 중 번

실사 사무소	조사원 성명	조사원 전화번호	조사방법
		( ) -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미디어 리서치 MillwardBrown

조사표 쓰는 요령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표를 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쓰십시오.
◆ 한 항목의 기입이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입하되, 건너뛰는 표시(→, ▶▶)가 있으면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쓰십시오.

※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10쪽, 가구원 8쪽) 점검 항목의 관련 문항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기초조사표 점검 항목

1) 관련 문항 (　　)번의 사건조사표 (　　)건 중 (　　)번째 사건
2) 상습피해인 경우 피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　　) 회
※ 관련 문항 23번 속임 피해인 경우는 18번부터 작성 하십시오.

I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1 이 사건은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에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 오기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까?

①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　② 예전 집에서 사는 동안

2 그 사건은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2014년 _____월

3 그 사건은 대략 몇 시경에 발생했습니까?

① 새벽(03 ~ 06시)　② 아침(06 ~ 09시)　③ 오전(09 ~ 12시)
④ 한낮(12 ~ 15시)　⑤ 오후(15 ~ 18시)　⑥ 저녁(18 ~ 21시)
⑦ 밤(21 ~ 00시)　⑧ 심야(00 ~ 03시)　⑨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⑩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⑪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4 피해를 당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① 현재 사는 시·군·구
② 다른 시·군·구　⇒ _____시·도 _____시·군·구

조사원 기입용 코드 [ ][ ]　[ ][ ][ ]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8 번으로

5 그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5-1 발생 장소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① 집	① 우리 집 ② 가해자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②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거주자우선주차도로 포함)	① 아파트 단지 주변 ②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 ③ 단독주택 마을 주변
③ 학교	① 교실 ② 복도·계단·옥상 ③ 화장실·라커룸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뒷산, 학교 담장 주변 ⑦ 기타(구체적으로:)
④ 주차장	① 상업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등) 주차장 ② 공공기관(관공서, 은행 등) 주차장 ③ 아파트·연립주택 단지 주차장 ④ 도로변 유료주차장이나 주차 전용 건물 ⑤ 기타(구체적으로:)
⑤ 인구 밀집 상업지	① 백화점, 시장, 가게(상점) 등 상업건물 ②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③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목욕탕 ④ 극장, 공연장 ⑤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현금자동지급기) ⑥ 의료기관 ⑦ 기타(구체적으로:)
⑥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① 동사무소, 세무서 등 관공서 ② 기업, 회사 사무실 ③ 종교기관 ④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⑤ 기타(구체적으로:)
⑦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① 유원지, 공원, 등산로, 산책로, 공터, 체육시설 운동장(학교 운동장 제외) ② 도로 상에서(주택과 인접한 도로 제외) ③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④ 대중교통 정거장, 역 또는 대합실
⑧ 그 외의 장소	① 그 외의 장소 (구체적으로:)

5-3 그 곳은 귀하의 직장(또는 영업장소)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Ⅱ 범행수법

6 그 사건은 귀하의 집에서 일어났습니까? (※ 집에 들어 올 뻔한 것도 포함)

① 예 → 응답 후 **6-1**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8** 번으로

6-1 가해자는 귀하의 집에 살았거나 귀하의 허락으로 집에 들어왔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8**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7** 번으로

7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귀하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습니까?

① 들어왔다 → 응답 후 **7-1** 번으로
②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다 → 응답 후 **7-2** 번으로

7-1 어떻게 들어왔었습니까?

① 안으로 들어오도록 직접 열어줘서
②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③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④ 문이나 문에 달린 자물쇠를 부수고
⑤ 유리창을 깨거나 방범창을 부수고
⑥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음
⑦ 그 외의 경우 (구체적으로:)

7-2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에 귀하나 가구원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응답 후 **7-3** 번으로
② 없었다 → 응답 후 **10** 번으로

7-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① 나
② 나와 가구원들 → 응답 후 **8** 번으로
③ 나 이외의 가구원들 → 응답 후 **10** 번으로

8 그 사건의 가해자는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사용했었습니까?

① 그렇다 → 응답 후 **8-1** 번으로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9** 번으로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총(가스총, 모의 총기 포함)
②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
③ 유리병, 돌, 몽둥이 등
④ 펜치, 드라이버, 줄(밧줄) 등
⑤ 마취제, 독극물
⑥ 전기충격기
⑦ 스프레이
⑧ 그 외의 물건으로(구체적으로:)

8-2 가해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

①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었다
② 현장의 것을 사용했었다
③ 모르겠다

9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을 가했습니까?

① 신체 공격을 했다 → 응답 후 **12** 번으로
② 실제로 공격은 안했지만, 폭행하겠다고 위협(협박)했다 → 응답 후 **11** 번으로
③ 신체 공격이나 위협(협박)은 없었다 → 응답 후 **10** 번으로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무언가를 몰래 또는 허락 없이 가져갔음
② 무언가를 훔치려 했거나 훔치겠다고 위협함
③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괴롭힘
④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하려 했음
⑤ 집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⑥ 자동차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⑦ 재물을 파괴했거나 손상을 입혔음
⑧ 재물을 파괴·손상하려 했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했음
⑨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음
⑩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염탐, 감시, 스토킹을 했음
⑪ 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나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혔음
⑫ 그 외의 일 (구체적으로 :)

▶▶ 응답 후 **19** 번으로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강간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② 죽이겠다고 말로써 위협
③ 살해나 강간은 아니지만 폭행을 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④ 강간은 아니지만 다른 성폭력을 하려고 말로써 위협
⑤ 무력으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⑥ 무력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⑦ 칼 등의 흉기를 보여줌으로써 위협
⑧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감
⑨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 공격을 시도함
⑩ 흉기 이외의 물건으로 신체 공격을 시도함
⑪ 나에게 물건을 던졌으나 빗나감
⑫ 뒤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쌈
⑬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할퀴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을 시도함
⑭ 그 외의 위협(협박)(구체적으로:)

▶▶ 응답 후 **13** 번으로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강간을 했다
② 강간하려 했다
③ 강간(미수) 이외의 성폭력을 했다
④ 총을 발사했다
⑤ 칼 등의 흉기로 찔렀다
⑥ 칼 등의 흉기로 신체를 공격하려 했다
⑦ 흉기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를 공격했다
⑧ 흉기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를 공격하려 했다
⑨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할퀴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
⑩ 그 외의 행동(구체적으로 :)

12-1 실제 폭행이나 성폭력을 하기 전에 가해자가 귀하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을 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Ⅲ 신체 피해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신체 피해는 없었음 → 응답 후 **15** 번으로
② 강간
③ 강간미수
④ 강간(미수) 이외의 다른 성추행
⑤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⑥ 총기(모의 총기 포함)에 의한 부상
⑦ 뼈나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짐(신체 골절)
⑧ 장기 손상
⑨ 기절함(의식 불명)
⑩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퀴거나 긁힘
⑪ 그 외의 피해(구체적으로 :)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② 종합병원·병원 응급센터
③ 의료적 처치를 받은 적 없음
④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⑤ 집에서
⑥ 학교·직장 등의 의무실 등
⑦ 그 외의 곳(구체적으로 :)

14-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14-2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14-3 번으로

14-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을 했습니까?

① 예 → _____일　　② 아니요

14-3 그 사건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 약 구입, 물리치료 등 포함)

_____만 원

(※ 예: 3천원이면 0.3만원)

14-4 그 사건으로 입은 신체 피해(상해)로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 활동이나 가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일　　② 없었다

(※ 예: 24시간 미만이면 1일)

14-5 그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신체 피해(상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① 전부 받았다　　② 일부 받았다 (전체의 _____%)

③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④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⑤ 요구하지 않았다

Ⅳ 피해자의 대응

15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귀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6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귀하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만 14세 미만 아동은 제외)이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응답 후 16-1 번으로

② 없었다,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17 번으로

16-1 그 사건이 발생할 때, 귀하와 같이 있던 사람 중 상해를 입거나, 상해 위협을 받거나,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명　　② 없었다

17 그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17-1**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19** 번으로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무기 등(물건)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대항
②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
→ 응답 후 **17-2** 번으로

③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
④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
⑤ 탈출이나 도망을 하거나 시도함
⑥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
⑦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⑧ 숨거나(숨기거나) 회피
⑨ 그 외의 행동(구체적으로 :)
→ 응답 후 **17-3** 번으로

17-2 무기 사용이나 신체 공격을 먼저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① 나 ② 가해자
③ 함께 있던 다른 사람 ④ 모르겠음

17-3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그 사건에서 신체 피해(상해)를 입었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17-4**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17-5** 번으로

17-4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한 것입니까?

① 신체 피해(상해) 입기 전 ② 신체 피해(상해) 입은 후
③ 신체 피해(상해) 발생과 동시에 ④ 신체 피해(상해) 없음
⑤ 모르겠음

17-5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음
② 가해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음
③ 탈출하거나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④ 상황을 악화시켜, 실제 상해나 재산 피해가 더 컸음
⑤ 상황을 악화시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았음
⑥ 가해자가 더 공격적, 폭력적이 되었음
⑦ 모르겠음
⑧ 그 외의 영향 (구체적으로:)

▶▶ 응답 후 **19** 번으로

V 재산 피해

18 귀하가 속임(사기)을 당해 재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한 사건에서 겪은 내용들**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③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⑧ 그 외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구체적으로:)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방송·신문을 통한 (허위)광고
② 전단지나 거리에서의 (허위)광고
③ 전화(허위)광고
④ 보이스 피싱
⑤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⑥ 인터넷 쇼핑사이트
⑦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⑧ 그럴듯한 말솜씨
⑨ 제3자나 전문가 등의 보증
⑩ 범인과 공모한 가짜 고객들을 동원함
⑪ 그 외의 수단(구체적으로 :)

▶▶ 응답 후 19-6 번으로

19 그 사건에서 귀하 또는 가구원의 물건이나 재산을 도둑맞았거나 빼앗겼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19-1** 번으로
② 피해당할 뻔했음
③ 아니요 → 응답 후 **20** 번으로

19-1 귀하는 피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① 피해 발생 당시 ② 1일 이내 ③ 2 ~ 3일 이내
④ 1주 이내 ⑤ 2주 이내 ⑥ 3 ~ 4주 이내
⑦ 1개월 이후에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②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 응답 후 **19-3** 번으로
③ 현금, 수표, 상품권 등
④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⑤ 지갑, 핸드백, 가방
⑥ 개인 휴대 물품(휴대전화, 노트북, MP3, 으류, 도서, 게임기 등)
⑦ 자동차 부품 (내비게이션, 타이어휠 캡, 위성라디오 등) → 응답 후 **19-4** 번으로
⑧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⑩ 그 외의 피해 (구체적으로:)

19-3 자전거나 차량 피해를 당했다면, 귀하가 직접 가해자에게 자전거나 차량을 사용하라고 넘겨준 것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9-4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와 직접 접촉하여(예를 들어, 귀하의 지갑, 손, 옷 등에서) 무언가를 가져갔습니까?

① 그렇다 → 응답 후 **19-5** 번으로 ② 아니다 → 응답 후 **19-6** 번으로

19-5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_____, _____, _____)

19-2 번의 예시에서 골라 해당 번호를 모두 써 주십시오.

19-6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 가격이나 돈은 얼마입니까?

① _____만원 (※ 예: 물품의 현 시가 기준 3천원이면 0.3만원)
② 모르겠다

19-7 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이나 돈을 되찾았습니까?
(※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① 모두 되찾았다 ② 일부 되찾았다
③ 전혀 되찾지 못했다

19-8 그 사건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구원 이외에도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명
② 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다
③ 없었다
④ 모르겠다

20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차량(및 부품) → 응답 후 **20-1** 번으로
② 주택의 창문, 자물쇠, 출입문
③ 정원(나무, 관목, 울타리)
④ 가구·가전 등 가정용품
⑤ 의류
⑥ 그 외의 물건(구체적으로:) → 응답 후 **20-2** 번으로
⑦ 없었음 → 응답 후 **21** 번으로

20-1 보험회사에 신고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20-2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으로 손상(파손)된 물건의 수리비(수리 가능한 경우) 또는 재구입 가격(수리 불가능한 경우)은 얼마입니까?

① _____ 만 원 ② 모르겠다

20-3 귀하는 가해자로부터 손상(파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① 전부 받았다 ② 일부 받았다(전체의 _____ %)
③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④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⑤ 요구하지 않았다

20-4 손상(파손)당한 물건을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했습니까?

① 그렇다 → 수리하거나 새로 사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_____일
② 아니다

Ⅵ 정신적 피해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①	②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①	②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5)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①	②
6)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7) 자살 충동	①	②
8) 자살 시도	①	②
9) 그 외의 고통 (구체적으로:)	①	②

21-1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일 ② 없었다

21-2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신경정신과 등에서 진료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있었다 →

1) 상담과 진료 기간	2) 상담과 진료 비용
_____일	_____만 원

② 없었다

22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귀하의 감정 변화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1)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①	②	③	④	⑤
4)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①	②	③	④	⑤

Ⅶ 가해자의 특성

23 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무언가를(예를 들어, 가해자 수,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었는지 늙었는지 등) 알았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23-1**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24** 번으로

23-1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
②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
③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
④ 경찰이 알려줘서
⑤ 그 외의 경우(구체적으로 :)

23-2 그 사건의 가해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개인(들) → 응답 후 **23-3** 번으로
② 기업이나 상점, ③ 공공기관 → 응답 후 **24** 번으로

23-3 그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____명

23-4 그 사건의 가해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③ 남녀 모두 ④ 모르겠다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12세 미만(아동) ② 10대 중반 ③ 10대 후반
④ 20대 ⑤ 30대 ⑥ 40대
⑦ 50대 ⑧ 60대 이상 ⑨ 모르겠다

23-6 그 사건 당시 가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그렇다'로 선택해 주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알면 '친인척(가족 포함)' 또는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에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3-7-1 관계	23-7-2 구체적 관계		
① 친인척 (가족 포함)	① 남편·아내 ④ 형제·자매	② (조)부모 ⑤ 전남편·전처	③ (손)자녀 ⑥ 기타 친인척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⑦ 친구 ⑩ 직장 동료 ⑬ 잘 아는 이웃	⑧ 애인(전 애인 포함) ⑪ 직장 상사 ⑭ 얼굴만 아는 사람	⑨ 학교 선후배 ⑫ 거래하던 사람
③ 전혀 모르는 사람			

Ⅷ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24 귀하는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① 신고 했다 → 응답 후 **24-1** 번으로
② 신고하지 않았다 → 응답 후 **24-9** 번으로

24-1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②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③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④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⑤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⑥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24-2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조치를 했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24-3**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24-4** 번으로

24-3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②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③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④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24-4 경찰은 귀하가 신고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① 제공했다 → 응답 후 **24-5** 번으로

② 제공하지 않았다 → 응답 후 **24-6** 번으로

24-5 귀하는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 다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①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②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③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④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⑤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24-6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만족했습니까?

① 매우 만족했다 ② 약간 만족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했다 ⑤ 매우 불만족했다

24-7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습니까?

① 모두 검거했다 ② 일부를 검거했다
③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④ 모르겠다

24-8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문항	있었다	없었다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일	②
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일	②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일	②

24-9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④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⑤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⑥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⑦ 보복이 두려워서
⑧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⑨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번호를 써 주십시오.

※ 연락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응답자 성명

( )

응답자 연락번호

휴대전화 : ( ) -

집 전 화 : ( )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14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STATISTICS KOREA

2015. 5.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미디어 리서치 MillwardBrown

CONTENTS

Ⅰ. 조사개요 ····· 1

Ⅱ. 현장조사 ····· 7
1. 조사 직원의 기본자세 ····· 9
2. 조사 직원의 역할 ····· 13
3. 현장조사 요령 ····· 15
4. 가구명부 관리 요령 ····· 22
5. 사전 준비 조사 ····· 28

Ⅲ. 조사표 작성 요령 ····· 31
1. 기본 점검사항 ····· 33
2. 기초조사표(가구대표 응답자, 가구원) ····· 34
3. 사건조사표 ····· 68

Ⅳ.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 101
1. 기본 점검사항 ····· 103
2. 조사항목별 점검사항 ····· 103
3. 조사표 편철 요령 및 제출 ····· 105
4. 파라데이터 작성 방법 ····· 106

□ 부록 ····· 109

2014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기간
5. 조사주기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7. 조사대상
8. 조사항목
9. 조사방법
10. 조사체계

Ⅰ. 조사개요

2014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1 조사목적

○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 포함)을 파악하여 **시계열 자료형태로 구축**

○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조사실시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장 제11조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조사연혁

○ 1991 : 서울시민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시험조사)
○ 1994 : 제1차 전국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실시(민간기관)
○ 1997~2006 : 제2차~제5차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민간기관)
○ 2009 : 2008년 기준『전국범죄피해조사』실시(통계청)
- 승인 통계 지정(제40301호, 2009.08.19.)
○ 2011 : 2010년 기준『전국범죄피해조사』실시(통계청)
○ 2013 : 2012년 기준『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실시(통계청)
- 조사명칭 변경
○ 2015 : 2014년 기준『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실시(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4 조사기간

○ 조사 기준 시점 : 2015. 5. 29. 0시 기준

○ 본 조 사 : 2015. 5. 29. ~ 6. 30.(4주간)

5 조사주기

○ 조사주기 : 2년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 조사모집단 정의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 및 아파트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일반조사구 중 섬조사구(2), 기숙시설 조사구(3), 특수사회시설조사구(4),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5)는 제외

○ 층화 기준 : 16개 시도 및 동부/읍면부를 고려한 25개 층

○ 표본 규모 : 전국의 696개 조사구의 6,960가구 내외

○ 표본조사구 추출

- 층별로 조사구를 주택유형, 14세 이상 인구비율, 교육정도, 조사구 번호의 분류기준으로 정렬한 후 조사구내 가구 수 기준으로 층별 표본규모에 해당하는 조사구를 확률비례추출(PPS)
- 단, 다음의 경우 추출된 조사구 교체
  . 현재 통계청의 경상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표본 조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 20가구 미만의 조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 표본 가구 선정

- 추출된 조사구 내 전체 가구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10가구 계통 추출

7 조사대상

○ 조사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전국 6,960 표본가구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
(696개 조사구, 조사구당 10가구)

8 조사항목

○ 조사표 구성 : 기초조사표(가구응답자와 가구원 구분), 사건조사표

○ 기초조사표 항목
- 가구구성, 동네와 이웃환경, 일상생활 및 범죄예방활동, 배경문항, 작년 1년간 겪은 피해경험

○ 사건조사표 항목
-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9 조사방법

○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방법
※ 응답자 희망시 응답자 기입방식 병행

10 조사체계

○ 조사인력 : 전문 조사원 채용(1인 3개 조사구 30가구 기준)

○ 조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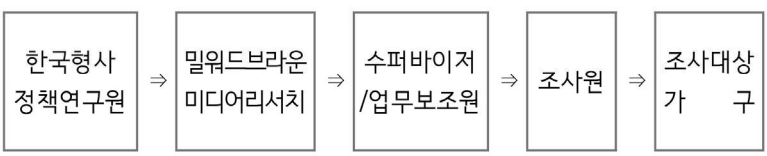

II. 현 장 조 사

1. 조사 직원의 기본자세

2. 조사 직원의 역할

3. 현장조사 요령
   - 가. 가구 방문 절차
   - 나. 면접조사 요령
   - 다.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 라. 조사용품의 종류

4. 가구명부 관리 요령
   - 가. 조사대상 가구 선정기준
   - 나. 가구 선정 방법
   - 다. 유고 가구 대체 요령
   - 라. 기타

5. 사전 조사 준비
   - 가. 조사 홍보 및 협조 요청
   - 나. 대상가구 적격 여부 확인
   - 다. 표본조사구 확인 및 교체
   - 라. 기타 준비사항

Ⅱ. 현장조사

1 조사 직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 직원의 마음가짐

○ 조사 직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미디어리서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공손하고 유쾌하며, 자신감을 갖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조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응답자에게 그들의 참여가 가치 있고 필수적임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조사 직원의 태도

○ 단정한 복장과 겸손한 태도로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사지침을 반드시 숙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 면접과정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거나 상식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례는 조사표에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고, 반드시 수퍼바이저나 담당 연구원과 상의한 후 기입하도록 한다.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8조

제8조 (현장조사 직원 기본자세) 현장조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조사지침의 정확한 이해 및 원칙에 따른 조사업무 처리
2.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
3.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실한 조사
4.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응답자 정보의 비밀엄수
5. 그 밖에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 유지

다. 조사 직원의 의무

○ 조사기간 중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리조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통계법 제39조)

○ 담당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 완성된 조사표는 수퍼바이저나 담당 연구원에게 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수퍼바이저나 담당 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통계법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공포) 관련 조문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 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라. 조사원 안전수칙

❍ 조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 조사원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상해사고에 대비한다.

❍ 부득이 야간에 조사해야 할 경우는 조사원 2인이 함께 다니거나, 가족 친지 등과 연락하여 동행하도록 한다.

❍ 조사당일의 일정을 가족에게 알려주고 도중에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 사고나 부상 시 긴급구조 요청 후 즉시 가족과 수퍼바이저에게 알린다.

❍ 긴급상황 시 연락처

- 범죄신고 : 112
- 긴급재난 · 구급차 : 119
- 응급 의료상담 : 1339
- 전국 경찰서 안내 : 1566-0112

2 조사 직원의 역할

가. 조사원

○ 가구명부, 조사구요도(사본), 조사표 등 조사관련 용품을 수퍼바이저에게 수령한다.

조사관련 용품

1 가구명부	6 답례품	11 필기도구
2 조사표	7 답례품 지급명부	12 가방
3 조사지침서	8 비밀보호용 봉투	13 파라데이터 수집표
4 조사안내문 및 공문	9 조사원증	
5 조사구요도	10 알림스티커	

○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응답내용을 조사표에 기입한다.

○ 매주 수퍼바이저에게 작성된 조사표 내용검토를 받은 후 완료된 조사표는 제출하고, 미완료 조사표는 보완 후 제출한다.

○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고 「답례품 지급명부」의 수령자 성명란에 수령자 서명을 받는다.

나. 수퍼바이저

○ 조사관련 용품 관리 및 배부
-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조사용품을 수령한 후 조사원에게 배부한다.
- 조사표류는 한 번에 모두 배부하지 말고 조사원별로 조사 진척률을 감안하여 배부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한다.

○ 조사원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지도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을 파악하고 조사부진 조사구를 독려한다.

- 중도 포기 조사원에 대해서는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대체하고, 방치된 조사구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한다.
- 반드시 교육받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다른 사람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보고 후 조치한다.
-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조사에 전념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 조사원의 질의 중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은 담당 연구원과 협의하여 답변하고, 문제점은 수시로 담당 연구원에게 보고 후 조치한다.
-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가구를 매일 파악하여 조사원과 함께 현지 방문하여 설득 조사를 하고, 담당 연구원에게 설득 지원이나 대응지침을 요청한다.
- 조사에 강력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가구를 파악하여 조사원과 함께 현지 방문하여 함께 설득하고, 담당 연구원에게 설득 지원이나 대응지침을 요청한다.
- 조사불능인 가구를 매일 파악하여 원칙에 따라 대체 가구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 조사표 내용검토 및 공지사항 전달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원별로 수시로 접수하여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다.
- 검토 후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지도한다.
- 수시로 전달되는 조사내용 관련 지침을 조사원에게 알려 준다.

❍ 완료된 조사표류 취합 및 관리

- 입력이 완료되면 조사표류를 취합하여 편철하고, 답례품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3 현장조사 요령

가. 가구 방문 절차

절차	내용	세부 내용
1차 방문	가구조사표 (가구정보 파악)	• 대상 가구 방문하여 인사장 수령 확인 후 조사동의를 구한 후 조사 시작 • 조사 대상 가구원 수 파악(만14세 이상 가구원) • 먼저, 가구 대표 조사표 작성. 설문 작성 과정을 조사원이 모니터링하며 지원 • 가구 대표 조사 후, 현장에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가구원 조사표 면접 실시 • 조사대상이지만, 부재중이어서 설문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원 수 파악하여 면접조사가 가능한 시간 확인 •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을 원하거나 약속시간을 잡고 2회 이상 방문했으나 응답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 비밀보호용 봉투에 기초조사표를 넣어 전달하고 반드시 응답 후 밀봉하도록 요청. • 가구대표가 응답을 하고 가구원이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될 경우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가구대표가 가구원에게 설명해주도록 안내 • 가구원이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될 경우 조사원이 가구원 연락처 파악하여, 가구원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독려 및 안내하고 조사표 수거 날짜 약속 • 가구 조사 완료 시 가구 사례비를 우선 제공하여 가구원 조사 독려 • 가구 부재: 알림스티커 부착 후 향후 최소 3회 이상 재방문 • 조사거부(불응): 최대한 설득을 했어도 거절 시 표본 대체 • 빈집/조사 부적격: 이사, 상가, 어린이집 등의 경우 표본 대체
2차 방문	가구원조사표 (범죄 선별)	• 약속한 날짜에 다시 방문하여 해당 가구원 전원 응답 완료 확인 후, 조사원이 응답된 설문지의 스크리닝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조사표 작성 부수를 결정하여 해당 가구원에게 조사표 전달 • 현장에 가구원이 있을 경우, 사건조사표 면접을 실시하고, 응답자가 밝히기 꺼려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 시 응답자와 다른 가구구성원을 분리하여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성실한 응답을 유도 •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을 원할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 부수를 결정하여 해당 조사표와 함께 밀봉용 회수 봉투를 제공하고 기입 후 밀봉을 요청하면서 사건조사표 작성 기입 요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사표 수거 날짜 약속 • 기초조사표가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된 경우 조사원이 해당 가구원에게 스크리닝 질문에 대한 면접을 별도로 진행하여 다시 한번 피해경험에 대해 확인. 만일, 현장 면접조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전화를 통해서라도 스크리닝 질문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함 • 스크리닝 질문은 범죄피해 조사의 목적이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하는 항목이므로 조사원이 꼼꼼히 체크 • 자기기입식 조사의 경우 작성결과에 따라 사건조사표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원이 봉투 수거 시 개봉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림 • 가구원 조사 완료 후 가구원 사례비를 우선 제공하여 사건조사표 작성 독려
3차 방문	사건조사표 (범죄피해 파악)	• 약속한 날짜에 다시 방문하여 해당 가구원의 사건조사표 응답 확인 • 수거 현장에서 응답된 내용 검수(현장에디팅) • 사건조사표 작성별 사례비 제공

나. 면접조사 요령

1) 가구를 방문하기 전

❍ 조사표의 구성 및 순서, 항목별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다.

❍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원증, 가구명부, 조사구요도, 조사표, 지침서, 조사안내문 및 공문, 알림스티커, 비밀보호용 봉투, 답례품 및 답례품 지급명부, 사무용품 등을 휴대

2) 가구를 방문할 때

❍ 조사지역에 도착하면 항상 조사원증을 잘 보이도록 패용하고, 누구에게나 공손히 대한다.

- 조사대상자가 조사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고 빈번히 왕래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조사대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
-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과 좋은 인상을 줌

❍ 방문시간은 언제라도 좋으나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 대문을 두세 번 두드리거나 벨이 있을 때는 약간 동안만 눌러야 한다.

- 특히, 아파트는 복도나 문 앞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다른 가구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선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음
  (※ 현관문은 상황을 봐 가면서 약간 열어 두는 것이 좋음)

❍ 대문이나 현관문이 열려있더라도 함부로 들어가 필요 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한다.

3) 가구원을 만났을 때

❍ 먼저 방문목적과 자신에 대해 소개한다.

❍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승인한 공식통계조사이며, 응답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 조사표를 가지고 면접을 시작한다. 성폭행, 성적접촉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모든 질문을 할 때 같은 어조로 물음으로써 응답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한다.

❍ 응답자가 그 자리에서 당장 답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다른 가구원의 사건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고, 시간을 두고 보완하도록 요청한 뒤 조사표를 회수할 재방문일시를 약속한다.

❍ 약속시간은 엄수하도록 하며, 면접을 끝내기 전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기입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되었는지, 항목 간에 상충된 내용은 없는지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한다.

❍ 조사표를 완성한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고, 서명을 받은 후 가구를 떠날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한다.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5조(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현장조사 직원은 면접조사 시 응답자의 응답부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2. 처음 조사 시에 협조공문 제시
3.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4.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5. 기타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4) 응답자 설득방법

❍ 표정과 시선

- 응답자에게 질문을 할 때 또는 답변을 들을 때 응답자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노력한다.
  ※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응답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진지하게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 대화의 요령

- 조사에 대한 불신, 응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 등 응답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하도록 한 후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한다
- 조사원과 응답자 사이에 제3자인 가족, 친구, 이웃사람 앞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응답자와 둘이서만 조사를 진행한다
- 응답자가 조사에 응해 주기로 했다면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한다.

❍ 응답의 확인

- 응답자의 응답이 분명히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의미전달이 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 응답을 받아들인 후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한 후 재질문한다.
- 응답자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도 우회적으로 한 번 더 질문하여 정확한 응답이 나오도록 재질문한다.

❍ 캐어묻기

- 응답자가 질문의 의도와 맞지 않는 엉뚱한 응답을 할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질문을 더하여 완전하고 충분한 대답을 얻는다.
- 대화의 추임새로 면접 동안에 응답자가 얘기를 할 때에 "예, 그렇겠군요?", "그럴 땐 힘드셨겠어요" 등의 문자를 써서 공감 표시를 한다.
- 응답자의 대답을 되풀이하여 얘기를 해 주고, 대답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때에는 한 번 더 명확한 답을 하도록 질문을 한다.

❍ 조사 마무리하기

- 조사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한 것은 없는지 조사표를 면밀히 검토 후 종료한다.
- 조사가 끝났더라도 끝까지 친절한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되며, 조사에 응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답례품을 반드시 전달한다.
- 혹시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해 둔다.
- 자기기입식 조사표 회수 시에는 회수 시간을 정하여 약속한 날짜에 꼭 방문하여 회수하고, 방문 전 응답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마무리 여부를 확인하고, 마무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일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자기기입식 응답자는 비밀보호용 봉투를 함께 배부하고, 조사표 회수 시 조사표 완성 여부(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다.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란?

☞ 전국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크고 작은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이미 신고되어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에 있는 범죄들도 있으나 이 외에도 사소한 범죄 또는 미신고로 묻혀버린 범죄유형들도 상당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범죄의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고, 숨은 범죄의 발생률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 이 조사는 왜 합니까?

☞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국민들이 경험한 범죄피해 정도와 위해요인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피해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 어디서 조사합니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통계청에서 승인한 국가승인통계입니다.

❍ 지금 시간이 없어서…

☞ 지금 바쁘셔서 면접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 다시 방문하면 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 응답자가 시간이 없다고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득합니다.

❍ 이러한 조사는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 통계는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정책 수립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통계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정책수립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초자료입니다.

이러한 조사가 없다면 세금이 더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결국 조사로 인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이 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대상가구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통계법 제32조)

❍ 개인 사생활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 조사 내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 조사된 내용은 모두 전산 처리되어 어느 집의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응답자 이외에는 이름을 작성하지 않도록 조사표를 설계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가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가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렬하고,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구가 표본으로 뽑힐지 모릅니다.

☞ 응답자의 가구가 이 통계에서 전국 가구를 대표하도록 선정된 것입니다.

❍ 통계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국가기본통계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실업률, 물가통계, 경기지표 등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라. 조사용품의 종류

❍ 휴대용품 : 조사원증, 조사지침서, 가방, 조사용품(필기구), 조사안내문 및 공문, 파라데이터 수집표

❍ 조사도구 : 조사표, 가구명부, 조사구요도, 답례품(상품권), 답례품 지급 명부, 비밀보호용 봉투, 알림스티커

4 가구명부 관리 요령

가. 조사대상 가구 선정기준

❍ 조사대상 가구는 조사구별로 부여된 시작번호와 추출간격으로 선정한다.

❍ 조사구별 가구 일련번호 부여

- 조사구별로 거처번호, 가구번호 순으로 정렬한 후 첫 번째 가구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빈집'도 일련번호를 부여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추출한 조사구별 가구명부를 조사원에게 제공한다.

-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의 음영 처리된 가구가 조사대상 가구이다.
- 가구명부는 현장조사에 활용하며, 변동사항은 빨간색 펜으로 수정(두 줄)하고 수정 시에는 해당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한다.
- 조사대상 조사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수퍼바이저에게 요청하여 처리한다.

❍ 불응, 불능 등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의 일련번호 다음 번호순으로 조사를 한다.

나. 가구 선정 방법

1) 1단계 : 기본 조사대상 가구 선정

❍ 조사대상 선정 : **시작번호 1, 추출간격 4, 총 41가구일 경우**

- 해당 조사구의 가구 시작번호가 1, 추출간격이 4일 경우 가구번호가 1인 가구부터 시작하여 4간격으로 10가구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면 된다.

[2014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 예시]

일련번호	실사사무소		행정구역	조사구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수			거처종류	시도/시군구	읍면동명	지번 주소	통행정리		대체사유
					시작간격	추출번호		계	남	여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	동	호수	거주층	
1	AA	경인	1101071	066-1	001	001	신인교	4	3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B01		
2	AA	경인	1101071	066-1	002	001	임명찬	3	1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B02		
3	AA	경인	1101071	066-1	003	001	이순남	2	1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101		
4	AA	경인	1101071	066-1	004	001	채선혜	2	1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102		
5	AA	경인	1101071	066-1	005	001	양현호	5	3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201		
6	AA	경인	1101071	066-1	006	001	김화영	5	1	4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202		
7	AA	경인	1101071	066-1	007	001	이오섭	5	2	3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301		
8	AA	경인	1101071	066-1	008	001	유경선	3	1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302		
9	AA	경인	1101071	066-1	009	001	라순덕	2	0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401		
37	AA	경인	1101071	066-1	013	001	김진호	3	1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102		
38	AA	경인	1101071	066-1	014	001	최명석	2	1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201		
39	AA	경인	1101071	066-1	015	001	김고임	1	0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202		
40	AA	경인	1101071	066-1	016	001	김홍진	3	2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302		
41	AA	경인	1101071	066-1	017	001	연승규	5	1	4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401		

2) 2단계 : 빈집, 불응, 불능 시 조사대상 가구 선정 방법

○ 1번 가구가 빈집, 불응, 불능 시 조사대상 가구(1번 가구)의 다음 가구인 2번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 대체한 2번, 3번, 4번 가구도 빈집, 불응, 불능 시 6번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 5번 가구는 기본 조사대상(음영처리된 가구) 가구로 선정된 가구이기 때문에 6번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2014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 예시]

일련번호	키값	조사구특성	거처번호	가구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도로명	공동주택명칭	동	호수	가구주명	가구원수	거처의종류	방문1	조사현황
1	11010720801	1	001	00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101	남윤광	4	아파트	5월 29일 10시	95
2	11010720801	1	001	00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102	홍기홍	4	아파트	5월 30일 12시	92
3	11010720801	1	001	00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103	박건창	3	아파트	6월 02일 18시	92
4	11010720801	1	001	004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201	서동근	3	아파트	6월 05일 15시	92
5	11010720801	1	002	00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202	박순남	1	아파트		
6	**11010720801**	**1**	**002**	**00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203**	**진광혁**	**3**	**아파트**	**6월 08일 15시**	**91**
7	11010720801	1	002	00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301	김정석	4	아파트		
8	11010720801	1	003	00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28번길			1 층	신종협	4	단독주택		
9	11010720801	1	003	00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성자로228번길			2 층	조영자	2	단독주택		
								∫∫								
52	11010720801	1	009	005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34번길				김상환	2	단독주택		
53	11010720801	1	010	00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34번길				김효철	3	단독주택		
54	11010720801	1	010	00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34번길				민석범	4	단독주택		
55	11010720801	1	010	00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34번길				이선근	3	단독주택		
56	11010720801	1	011	00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34번길				성기창	6	단독주택		

3) 3단계 : 기타 조사대상 변경

○ 당초 조사대상 가구(8번 가구)를 허물고 원룸, 다세대 등의 가구로 신축되었을 경우

- 당초 조사대상 가구(7번 가구)는 빈집 처리하고, 다음 가구(8번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2014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 예시]

일련번호	키값	조사구특성	거처번호	가구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도로명	공동주택명칭	동	호수	가구주명	가구원수	거처의종류	방문1	조사현황
1	11010720801	1	001	00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101	남윤광	4	아파트	5월 29일 10시	90
2	11010720801	1	001	00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102	홍기홍	4	아파트	5월 30일 12시	
3	11010720801	1	001	00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103	박건창	3	아파트	6월 02일 18시	
4	11010720801	1	001	004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201	서동근	3	아파트	6월 05일 15시	90
5	11010720801	1	002	00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202	박순남	1	아파트		
6	11010720801	1	002	00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203	진광혁	3	아파트	6월 08일 15시	
7	11010720801	1	002	00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수일로104번길	삼성아파트	209	301	김정석	4	아파트		95
8	**11010720801**	**1**	**003**	**00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28번길**			**1 층**	**신중협**	**4**	**단독주택**		**91**
9	11010720801	1	003	00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28번길			2 층	조영자	2	단독주택		
								∫∫								
52	11010720801	1	009	005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34번길				김상환	2	단독주택		92
53	11010720801	1	010	00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34번길				김효철	3	단독주택		91
54	11010720801	1	010	00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34번길				민석범	4	단독주택		
55	11010720801	1	010	00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34번길				이선근	3	단독주택		90
56	11010720801	1	011	00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34번길				성기창	6	단독주택		
54	11010720801	1	007	00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34번길				김해연	4	단독주택		
56	11010720801	1	008	00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정자로234번길				김준성	3	단독주택		99

다. 유고 가구 대체 요령

1) 응답 불응

❍ 사유 : 사생활 노출 기피, 가정 사정·불화(실직, 부부이혼 등), 바쁘거나 귀찮아서, 정부 불신 등

❍ 조사원은 조사대상 가구를 반드시 3회(1일 1회 기준)이상 방문하고, 그래도 응답을 거부할 경우 수퍼바이저와 동행하여 설득

- 통·이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이웃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 비밀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보호용 봉투에 조사표를 넣어 배부 및 회수(비밀보호용 봉투 앞면에 조사원 이름, 연락처를 기입하여 배부)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음에도 거부를 할 경우에는 대체

2) 일시 부재

❍ 사유 : 조사기간 중 출장, 취업, 교육, 병원입원(수술, 출산, 사고 등)으로 가구원 모두를 못 만나는 경우

❍ 가구원 모두 부재중인 경우 옆집이나 이웃에게 수소문하여 확인하고, 3일 이상(하루 1회 이상) 방문하여도 만나지 못할 경우 부재로 처리

3) 응답 곤란

❍ 사유 : 정신이상 및 장애, 고령, 자연재해, 언어문제 등으로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장애나 고령, 언어문제 등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도 가구대표 응답자의 대리 응답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의 사유코드(1. 대리 응답)으로 기재한다.

❍ 조사대상 가구에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만 살고 있어 조사표를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응답 곤란으로 처리하고, 다른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 남편이 한국인,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이 대리응답 가능

4) 빈집

❍ 사유 : 이사, 폐가, 재개발 등으로 공가, 폐가인 경우

5) 기타

❍ 사유 : 만 14세 미만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상가, 어린이집, 놀이방, 교회 등), 집단시설(기도원, 요양소, 기숙사, 관사 등), 철거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6) 유고 코드

❍ 조사대상 가구의 유고 형태에 따라 대체 코드를 가구명부의 대체 사유에 기재

구 분		유고 코드	대체 사유
조사된 가구		0	가구명부에서 처음부터 조사대상이면서 조사된 가구
조사대상 가구는 있으나 조사 못함	응답 불응	1	가구대표 응답자를 3일 이상 만나 설득했음에도 사생활 노출 기피, 바쁨, 가정사정, 정부불신 등의 이유로 응답을 거부함.
	일시 부재	2	조사기간 중에 3일 이상 찾아 갔으나 여행, 출장, 병원입원 등의 이유로 가구원 모두를 만날 수 없었고, 이웃집이나 방문안내장을 통해서도 조사기간 동안 연락이 어려움
	응답 곤란	3	고령, 장애, 자연재해,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가구원 모두가 조사에 응답하지 못 함
조사대상 가구가 없음	빈집	4	이사, 폐가, 재개발 등의 이유로 집에 아무도 살지 않고, 이웃집을 통해서도 확인함
	기타	9	만 14세 미만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상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기숙사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 조사구 내 대상 가구가 적은(30가구 미만) 경우 가구대체를 더욱 신중하게 실시하고, 10가구를 조사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수퍼바이저에게 알리고 담당 연구원에게 통보한다.

❍ 시작번호와 추출간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가구명부의 음영 처리된 가구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가구를 추가한 경우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기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가구를 대체할 경우 유고 코드를 가구명부에 정확히 기입하여 불응률, 무응답 집계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사전 조사 준비

가. 조사 홍보 및 협조 요청

○ 조사 시작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반장 등에 협조를 구한다.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가구 방문에 대한 사전 협조(필요 시 협조공문 전달)를 얻는다.

○ 단독주택의 경우, 통.리.반장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나. 대상가구 적격여부 확인

○ 대상 조사구를 방문하여 조사구 범위 및 지형·지물을 확인한다.

○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적격가구인지 확인한다.

○ 적격가구인 경우 사전에 발송한 인사장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한 가구는 배부 받은 인사장을 전달하고 본 조사 기간에 재방문 할 것임을 알려준다.

- 응답자가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http://www.mediaresearch.co.kr) 게시판을 통해 안내하거나 상담전화(☏02-3488-2794)를 알려주도록 한다.

다. 표본조사구 확인 및 교체

○ 조사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체하지 않고 당초 조사구로 조사한다.

- 조사구 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구 내 조사대상 적격 가구 수가 10가구 미만인 경우

조사구

조사대상 지역에 대하여 식별이 확실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지도상에서 일정한 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담당구역을 말하며, 보통 1조사구에 약 60가구 내외를 기준으로 구성

❍ 조사구 교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교체해야 할 조사구가 발생한 경우, 조사원은 수퍼바이저에게 교체를 요청하고 수퍼바이저는 담당 연구원에게 교체를 요청한 후 교체한다.

❍ 배부된 가구명부의 가구주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자료이므로 현재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수 있음

- 금번 조사는 지정된 가구를 찾아가 조사하는 것이므로 가구명부의 가구주와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부재나 빈집 등으로 유고처리하면 안됨

라. 기타 준비사항

❍ 수퍼바이저는 가구명부, 조사표, 조사용품, 가방, 통화권 등 조사에 필요한 용품을 조사원에게 배부하고, 조사원에게 배부 수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 조사원은 배부 받은 조사용품의 종류와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틀릴 경우 수퍼바이저에게 문의한다.

❍ 조사원은 조사표 표지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조사구 번호, 실사 사무소명, 조사원 성명 및 전화번호를 미리 기재하여 조사를 준비한다.

III. 조사표 작성 요령

1. 기본 점검사항

2.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

가. 기초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나.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용) 표지 작성 요령

다. 기초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3. 사건조사표

가. 사건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나. 사건조사표 표지 작성 요령

다. 사건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Ⅲ. 조사표 작성 요령

2014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1 기본 점검사항

가. 전체 조사표 구성

○ 전체 조사표는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로 구분된다.

○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응답자용(녹색)'과 '가구원용(연두색)'으로 구분된다.

- 가구원용은 가구와 관련된 문항이 삭제된 형태의 조사표로 가구원 개인에 관한 문항만 조사한다.
  (※ 가구와 관련된 문항은 13번, 17번~20번, 22번)

○ 사건조사표(청색)는 가구대표 응답자 및 가구원 모두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조사표 내용 구성

1) 기초조사표 주요 내용

H. 가구 구성
Ⅰ. 동네와 이웃 환경
Ⅱ. 일상생활과 범죄 예방 활동
Ⅲ. 배경 문항
Ⅳ.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Ⅴ. 조사원 체크 사항

2) 사건조사표 주요 내용

Ⅰ.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Ⅱ. 범행수법
Ⅲ. 신체 피해
Ⅳ. 피해자의 대응
Ⅴ. 재산 피해
Ⅵ. 정신적 피해
Ⅶ. 가해자의 특성
Ⅷ.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3) 조사표 작성 개요

○ 기초조사표는 **2014년** 한 해 동안의 범죄피해경험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구성한 것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여부와 무관하게 대상가구의 가구대표응답자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 만 14세 기준(양력 2001년 1월 이전, 음력 2000년 12월 이전)

2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

가. 기초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스크리닝 질문에서 주의해야 할 점

✔ 항상 응답자에게 조사대상기간을 재확인시켜 **작년(2014년) 한 해 동안(2014. 1.1.~12.31.)** 경험한 범죄피해만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 8회에 걸친 스크리닝 질문들은 특정 범죄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 개인이 **2014년** 한 해 동안 경험한 피해사건 총 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앞선 질문에서 피해경험이 회상된 사건이라면, 동일한 사건이 뒤이은 스크리닝 문항에서 다시 피해건수로 잡히지 않도록(**"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때, 해당 지문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응답한 문항의 번호를 직접 제시한다. 가령, 문항 26번이라면 응답자에게 앞의 문항 24번과 25번에서 있다고 하신 피해 경험 말고 또 다른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것임을 설명한다.**

✔ **스크리닝 문항에 대한 예시내용을 응답자가 주의깊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예시를 모두 듣고 난 후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23번, 26번 문항 제외)

✔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의 응답을 모두 마치면, 23번~30번 문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원이 직접 'Ⅴ. 조사원 체크 사항'을 작성한다.**

✔ **만일, 자기기입식으로 수집된 기초조사표의 경우 해당 가구원에게 스크리닝 질문에 대한 면접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범죄피해 경험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을 원했을 경우 조사표를 반드시 비밀보호용 봉투에 넣어 전달하고 응답 후 반드시 밀봉해서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 **범죄피해경험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초조사표 뿐 아니라 사건조사표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는 반드시 1:1로 진행하여 다른 가구구성원이 함께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Ⅴ. 조사원 확인 사항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 '확인 사항'은 스크리닝 문항(23번~30번)별로 응답자가 회상한 사건들의 횟수를 정리하는 것이다.

✔ 본 체크 사항은 아래의〔3단계〕를 거쳐, 각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건조사표 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 조사원은 반드시 응답자에게 확인해 가면서 전체 피해경험 총 수를 정리하여 기입한다.

[1단계] : 피해경험 수의 결정방법

① 범죄피해경험 관련 문항의 피해경험 수를 옮겨 적습니다.

② '1. 점검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문항에 표시된 경우 동일한 피해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될 수 있으나, 동일 피해경험인 경우 **1건으로만** 표시합니다.

③ 문항별 피해경험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경험 수에 기입합니다.

④ 총 피해경험 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경험 수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합니다.

[2단계] : 상습피해여부의 확인 및 결정방법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① 문항별 피해경험 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피해 경험수를 상습피해 수에 기입합니다.

[3단계] : (최종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수의 결정방법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기입합니다.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모두 기입합니다.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조사표수에 기입합니다.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상습피해가 0일 때 사건조사표 수는 피해경험 수와 같다
- **상습피해(5건 이상이면서 각 사건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와 개별피해가 있을 경우, 개별사건피해 수와 사건조사표는 같고 상습피해는 사건조사표 1부만 작성한다.**

✔ 사건조사표 수 결정방법에 따라 '1. 점검항목' 작성이 끝난 뒤, 개별 응답자가 보고한 범죄피해경험 사건 수만큼, 각 사건별로 '사건조사표' 작성을 바로 진행한다.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응답자의 기억을 자극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 만일, 응답자가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기초조사표'의 작성으로 조사를 종료하고, 타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나.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용) 표지 작성 요령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			

◆ 조사표 표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는 해당 가구명부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 가구원번호는 H. 가구 구성의 **가구원 번호**를 기입한다.
<유의사항>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검토 및 결과 집계 시 가구를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잘못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사 사무소	조사원 성명	조사원 전화번호	조사방법	가구대표 응답자 사건조사표 수
		( ) -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총 ( ) 부

◆ 조사원 관련사항	•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하기 전, 조사원이 실사 사무소명, 조사원 성명, 조사원의 전화번호를 미리 기입하여 둔다.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해당 조사표 작성 시 주로 사용한 조사 방법에 표기하도록 한다.
◆ 사건조사표 수	• 가구대표 응답자가 범죄피해 경험을 겪고 작성한 사건조사표 수를 작성한다.

가구 전체 조사표 수 총 ( ) 부	가구 전체 기초조사표 수 총 ( ) 부	가구 전체 사건조사표 수 총 ( ) 부

◆ 가구 전체 조사표 수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이 작성한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 수를 더한 조사표 수를 기입한다.
◆ 가구 전체 기초조사표 수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들이 작성한 기초조사표 수를 더하여 기입한다.(녹색+연두색 조사표)
◆ 가구 전체 사건조사표 수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들이 작성한 사건조사표 수를 더하여 기입한다.(청색 조사표)

다. 기초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H 가구 구성

H 2015년 5월 29일 현재 귀댁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모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① 남 ② 여	실제 생년.월	혼인상태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 ③ 사별이나 이혼	직업 관련 등	종사상 지위	장애인만 응답 장애인 복지카드 ① 있음 ② 없음	외국인만 응답 출신 국가	조사원이 적어 넣습니다 사유 코드
1	① 가구 대표 응답자		(양 / 음) 년 월						
2			(양 / 음) 년 월						
3			(양 / 음) 년 월						
4			(양 / 음) 년 월						
5			(양 / 음) 년 월						
6			(양 / 음) 년 월						
7			(양 / 음) 년 월						
8			(양 / 음) 년 월						

<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 >	< 직업 관련 등 보기>	< 종사상 지위 보기>
① 가구대표 응답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증손자녀 ⑩ 증손자녀의 배우자 ⑪ 조부모 ⑫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기타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⑥ 단순 노무 종사자 ⑦ 직업군인	① 임금근로자 ②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⓪ 해당 없음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 H. 가구 구성

- **조사기준일(2015. 5. 29.)** 현재 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작성한다.

※ 가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 가구 : 가구는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

	• 가구대표응답자 - **조사기준일(2015. 5. 29.)** 현재 조사 대상가구에서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는 사람(가구원) 중에서 해당 가구의 생활상황을 대표하여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 없음 • 가구원 -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2015. 5. 29.)** 현재 조사 대상 가구에서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는 가구원.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취사와 취침을 함께 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 현역군인(단, 영외거주 군인은 제외) • 취업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국내)이나 해외에 상주하는 가족 •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 요양소, 기도원에 수용된 자 • 군입대, 주말부부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제외
◆ 가구원 번호	• 1번은 가구대표응답자이며, 2번부터는 가구대표응답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 가구원번호는 기초조사표 및 사건조사표 표지에 활용된다.
◆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 해당 가구원별로 가구대표응답자와의 관계를 보기항목에서 선택 ☞ 가구대표응답자일 경우에는 ① 가구대표응답자에 해당. ☞ **'⑭ 기타'에는 ①~⑬항 이외의 관계가 있으면 기재**
◆ 성 별	• 해당 성별에 표시하여 조사한다.
◆ 실제 생년.월	• 연령별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정확히 조사한다. ☞ 가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생년(4자리)·월(2자리)과 양력 / 음력을 구분하여 기입

◆ 혼인상태	• **조사기준일(2015. 5. 29.)** 현재 가족관계등록법 등 법적 상태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혼인상태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미혼 :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 - 배우자 있음 :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사실혼 포함) - 사별이나 이혼 : 배우자의 한쪽이 사망하거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 포함)
◆ 직업 관련 등	• 가구대표응답자와 가구원의 직업을 "직업 관련 등 보기"항목에서 선택하여 기입한다.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부서관리자, 소규모기업의 경영자 등 - 교수, 교사, 학원강사, 예술인, 작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 특정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직업(각 분야 학자 및 연구(보조)원, 전문가 및 준전문가 등) ② 사무종사자 - 각종 일반 사무원·금융기관, 여행, 숙박업,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 등 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 여행·음식·조리·미용 등 각종 대인서비스·영업직·매장판매직 . 방문통신판매원 -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등 . 모델 및 홍보 종사자 등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 장치·기계조작 . 조립원 . 각종 차량운전원 등 ⑥ 단순 노무 종사자 - 건물관리 및 경비, 건물 청소, 배달, 단순조립원, 포장원, 제품 운반원 등 단순 노무 ⑦ 직업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 종사상 지위

• 가구대표 응답자와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를 해당 보기항목에서 선택하여 조사한다.

①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② 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일하는 사람
- 직장이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는 번역가, 작가, 예술인, 통역사 등의 자유직업인도 포함

③ 무급가족종사자
-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일하는 경우

⓪ 해당 없음
-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 장애인 복지카드 유무

•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파악하여 표시하되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사한다.

※ 장애가 없는 사람은 체크하지 않는다

◆ 출신국가

• 가구대표 응답자와 가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출신국가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국적취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아시아권>

1. 중국	2. 한국계중국인	3. 일본	4. 우즈베키스탄
5. 몽골	6. 베트남	7. 필리핀	8. 타이
9. 타이완	10. 인도네시아	11. 방글라데시	12. 스리랑카
13. 파키스탄	14. 네팔	15. 캄보디아	16. 미얀마
17. 인도			

<북미권>

18. 미국	19. 캐나다		

<유럽권>

20. 영국	21. 독일	22. 러시아	

<기타>

23. 기타			

◆ 사유코드

• 조사원이 조사 완료 후 가구원의 조사 최종 상태를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기입

응답 상태	코드	사 유
조사완료	0	해당 가구원의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사건이 있는 경우)를 모두 완료
대리응답	1	일시 부재, 고령, 장애,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조사가 어려운 가구원을 대신하여 가구대표응답자 등이 조사에 대리 응답함 ※ 늦은 귀가로 면접이 어려운 가구원은 대리 응답을 허용하지 않음
응답불응	2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을 3일 이상 만나 설득했음에도 응답을 거부함
일시부재	3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이 조사기간 동안 여행, 출장, 병원입원 등의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아 조사를 못 함
응답곤란	4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이 고령, 장애,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답하지 못 함
기타	9	만 14세 미만 가구원

I 동네와 이웃 환경

1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6)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①	②	③	④	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경찰**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 동네 주위 환경
◆ 동네 사람들
◆ 경찰 활동

- 살고 있는 동네의 이웃사람들 간의 관계, 물리적/사회적 환경, 그리고 경찰활동 등에 관한 질문이다.
- **동네란** 평소 자신이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가격의 주택가를 말하며, 같은 학교, 교회, 병원, 상가 및 정류장(버스나 지하철)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동네와는 차도나 담(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경찰활동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를 말한다.

<유의사항>

- **2014년 연말 살았던 동네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 가능하면 '그런(그렇지 않은) 편이다' 또는 '보통이다'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설명에 주의한다.

4 작년(2014년) 한 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항목	매우 감소 할 것	약간 감소 할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증가 할 것	매우 증가할 것
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 범죄의 증가여부

- 범죄가 앞으로 증가할 것 같은지, 감소할 것 같은지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수준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여 조사한다.
- **조사시점(2015. 5. 29.) 이후의 범죄발생 증감률**을 판단할 때, **작년(2014년) 한해와 비교**하여 답하도록 한다.

Ⅱ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 상황별 두려움

- 일상생활 중 제시된 두 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6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 배우자(애인)나 자녀가 없는 경우는 '⓪ 해당자 없음'에 표시해주십시오)

항목	해당자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⓪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⓪	①	②	③	④	⑤

◆ 이타적 두려움

- 일상생활 중에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본인 자신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것인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유의사항>

- 배우자(애인)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 '⓪해당자 없음'으로 조사한다.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 범죄유형별 두려움

-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유형별로 응답자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8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나를 폭행하려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범죄 취약성 인식

-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이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방어능력 및 피해결과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를 파악하려는 문항이다.

9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친척,친구,직장동료 등)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항목	있었다	없었거나 모른다
1) 신체 피해	①	②
2) 재산 피해	①	②

◆ 지인의 범죄피해

- 응답자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이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나 재산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이다.

10 귀하는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일주일 평균 며칠 정도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등 포함, 단 택시는 제외)을 이용하였습니까?

① 일주일에 5일 이상 ② 일주일에 3 ~ 4일
③ 일주일에 1 ~ 2일 ④ 거의 또는 전혀 없음

◆ 대중교통수단 이용 빈도

- 응답자가 평소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일주일에 얼마나 이용하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유의사항>

-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1 귀하는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 늦은 귀가 빈도

- 응답자에게 직장이나 학교 일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인하여 밤 10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늦게** 귀가한 경우가 한 달 평균 어느 정도였는지 기입하도록 한다.

12 귀하는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 만취상태의 귀가 빈도

- 응답자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술에 만취해 집에 들어간 경우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만취상태란 술이 많이 취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13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와 가구원이 모두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① 거의 비우지 않았음 ② 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④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⑤ 12시간 이상

◆ 집이 비어있는 시간

- 응답자와 응답자 가족이 전부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있는 시간이 **하루를 기준으로** 보통 몇 시간이나 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중에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집이 비어있는 시간을 계산하여 해당 항목에 표시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14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려는 문항이다.

15 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범죄대상으로서 매력성

- 응답자가 평소 외출 시 고급스런 복장이나 악세사리 또는 유명 브랜드제품(의복, 신발, 가방, 장신구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일상생활용품)을 사용하여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항이다.

◆ 범죄관련정보에 노출정도

- 응답자가 평소 범죄관련정보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항으로, 구체적으로 범죄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또는 범죄사건에 대한 대화의 빈도를 알아보려는 문항이다.

<유의사항>

- 남자의 경우 액세서리에 시계, 안경, 신발 등을 포함시킨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 ~ 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범죄예방 안전조치 여부

- 응답자가 범죄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갖추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Ⅲ 배경 문항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17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 거주기간	• 가구대표응답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얼마동안 거주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유의사항>	•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사한 경우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로 봅니다. •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 질문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조사한다.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18 최근 5년 이내(201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_____회 ② 없다

◆ 이사 경험	• 가구대표응답자에게 **최근 5년 동안** 몇 번이나 이사를 했는지 물어 조사한다.
<유의사항>	•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 질문 • **최근 5년 이내(2010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이사 경험을 물어보는 것으로 기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19 가구원 가운데 현재 사는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응답 후 19-1 번으로 ② 없다 → 응답 후 20 번으로

19-1 현재 집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상호나 간판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영업자 유무	•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구대표응답자나 가구원 가운데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 가령, 가게는 1층이고 2층에서 살고 있는 경우 등)
◆ 상호나 간판 표식	•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영업을 할 경우, 상호나 간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의사항>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20 현재 사시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집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무상

◆ 주택 소유형태	• 가구대표응답자의 주택소유(점유) 형태를 물어보고 조사한다.
<유의사항>	•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 자기집 :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가구대표 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 ✔ 전세 : 남의 집을 임차하여 집주인에게 정해진 금액을 임차기간 동안 이자 없이 맡기고 이사 갈 때 되돌려 받는 형태 ✔ 보증부 월세 : 집주인에게 임차기간 동안 일정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주택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 ✔ 월세 : 집주인에게 매월 주택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 ✔ 기타 : **무상주택**(조사대상가구의 가구대표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집이 아니고 타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의 소유 주택으로 주택임차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사는 경우)과 **사택**(가구대표응답자나 가구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나 회사 소유의 주택으로 소속 직원에게 전혀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관리비 정도의 실비를 받고 임대한 경우)이 해당

2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예시: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등 포함)

⓪ 안 받았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

◆ 최종학력	•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물어보고 조사한다.
<유의사항>	• 재학은 현재 학력 상태로 조사하고, 중퇴나 퇴학은 중퇴나 퇴학 당시의 학력을 조사하고, 졸업은 최종 학력을 조사한다. • (예시: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휴학 등을 포함한다)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22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 가구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① 월평균 100만 원 미만 ② 월평균 100 ~ 200만 원 미만
③ 월평균 200 ~ 300만 원 미만 ④ 월평균 300 ~ 400만 원 미만
⑤ 월평균 400 ~ 500만 원 미만 ⑥ 월평균 500 ~ 600만 원 미만
⑦ 월평균 600 ~ 700만 원 미만 ⑧ 월평균 700 ~ 1,000만 원 미만
⑨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 월평균 소득	• 가구대표응답자에게 가구 전체의 월평균 총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해당 소득구간에 체크하여 조사한다.
<유의사항>	•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 질문 • 총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더한 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Ⅳ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문항 23번부터 30번까지는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해 경험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각 문항마다 방법과 장소 등의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질문과 함께 예시 내용을 읽고 관련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크리닝 질문 <공통 유의사항>

- 문항 23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는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스크리닝 질문으로 사건조사표를 기입하기 위한 사전확인 문항이다. 범죄피해경험 스크리닝 질문은 각 문항마다 방법과 장소 등의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 응답자의 피해경험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예시내용 전달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예시내용을 통해 자신의 피해경험을 기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예시에 대한 범죄피해경험만으로 한정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 범죄피해경험 스크리닝 질문에서는 반드시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응답자의 응답을 조사원이 기입한다.**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23번(속임관련) 문항 및 26번(손상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스크리닝 질문(24,25,27~30번)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피해경험의 회상을 자극하기 위한 여덟 개의 스크리닝 문항들을 하나씩 질문하면서, 이미 **언급한 사건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뒤이은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된다**는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각 스크리닝 문항응답에서 '① 있었다'고 할 경우, 앞서 이미 언급한 사건과는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범죄피해 횟수로 카운트해야 한다.

* 면접조사과정에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조사표의 지시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앞의 문항 -번, -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인지'를 질문하여 확인한다. 가령, 문항 24번 문항과 25번 문항의 경우에서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의 문항 24번에서 응답하신 피해 경험에 대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여 확인한다.

☞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 **사건발생 장소, 시간, 가해자, 범행 수법이 모두 동일할 경우, 사건발생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

23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③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⑧ 기타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① 있다 → _____건　　② 없었다

◆ **속임 관련**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응답자가 누군가에게 속임이나 사기를 당한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몇 번(사건 횟수)이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조사원은 어떻게 속임(사기)를 당할 수 있는지 각각의 예시를 정확히 읽어주면서 하나의 예시마다 피해경험 여부를 바로 확인하도록 한다.

* 예시1번의 내용은 피싱(phishing)의 경험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여 돈을 빼가는 등의 피해로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는 제외됨.

* 예시2번의 내용은 파밍(pharming)의 경험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돈을 빼가는 등의 피해

* 예시3번의 실제 사례 : 지인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달아남(전북일보, 2014.5.19.).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연 40%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2억원을 빌려 갚지 않고 자신의 부채를 갚음(경상일보. 2015.3.15.)

* 예시4번부터 예시7번까지는 온라인뿐 아니라 길거리 상점 등의 오프라인에서의 피해 사실도 포함됨을 알려줘야 함

* 예시7번까지 피해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예시내용 이외의 또 다른 속임의 피해경험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가령, 스미싱(smishing)과 같이 '무료쿠폰제공', '돌잔치 초대장', '민원접수' 등의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된 경험 있는지 확인함.

☞ 주요 질의사항 가운데 사기(속임) 해당 질문 검토

- 피해사실이 있으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되는 피해사건들을 회상하게 하여, 해당 피해사건의 총 횟수를 기입한다.

24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경험** 또는 **그럴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시
① 현금, 수표, 상품권 등
②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③ 지갑, 핸드백, 가방
④ 개인 휴대 물품(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⑤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⑥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⑦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 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 등)
⑧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⑩ 그 외 다른 물건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 **물건 관련**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응답자가 돈이나 물건을 도둑 맞거나 빼앗긴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으로 **2가지 유형의 피해경험**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2가지의 피해 경험 모두 실제로 당하지는 않았지만 당할 뻔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미수까지 포함하여 도난피해 경험이 몇 번(사건 횟수)이나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 도난경험에는 **응답자가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거나** 응답자가 누군가와의 대면 상황에서 **강제로 빼앗긴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

- 조사원이 예시를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물품을 도난당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예시된 물품 이외에도 없어졌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한 번이라도 피해사실이 있으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사건(미수사건 포함)을 회상하도록 하여, 해당 피해사건의 총 횟수를 물어보고 기입한다.

25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절단하여 귀하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 침입 관련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주거 침입을 당한 적이 있는지 혹은 당할 뻔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등의 피해를 경험했거나 당할 뻔 했다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 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 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이때,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조사표의 지시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앞의 문항 -번, -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인지'를 질문하여 확인한다. 가령, 문항 **24**번 문항과 **25**번 문항의 경우에서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의 문항 **24**번에서 응답하신 피해 경험에 대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여 확인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새롭게 피해 횟수로 카운트하지 않으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집계한다.

  ☞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 사건발생 장소, 시간, 가해자, 범행 수법이 모두 동일할 경우,
    사건발생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
- 응답자가 주거침입을 당한 적이 '① 있었다'고 응답했을 경우, **사건발생 당시 응답자가 그 집의 소유주나 세입자였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중 그 발생장소가 본인의 거주 장소가 아니라면(가령, 부모님 댁 방문 시 사건경험이나 휴가철 숙소에서의 경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응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조사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 등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포함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26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구원의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 예: 누군가 귀하의 집 창문 또는 집 밖에 놓아둔 물건이나 자동차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다.)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 손상 관련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누군가 응답자의 재산이나 물품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누군가에 의한 물품손상 피해를 경험하였다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이 때 손상을 당한 뻔한 경우(미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새롭게 피해 횟수로 카운트하지 않으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집계한다. • 응답자가 물품손상피해를 당한 적이 '① 있었다'고 응답했을 경우, 응답자의 소유물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아닐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27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서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①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②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③ 직장이나 학교
④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 등
⑤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산책로) 등
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⑦ 거리, 주차장, 승용차 등 그 밖의 장소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 장소 관련

- **작년(2014) 한 해 동안, 돈이나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빼앗겼거나 누군가로부터의 위협이나 폭행피해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다.
- 이 문항은 다양한 장소의 예시들을 보면서 앞서 언급한 사건 이외의 재산 및 신체피해 사실을 기억해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돈이나 물품 도난 뿐만 아니라 위협이나 폭행 피해경험도 포함**되어 있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까지 포함하여)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하며** 돈이나 물품 도난, 누군가로부터의 위협이나 폭행 경험을 당할 수 있는 장소 관련 예시들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특히, 예시에 나온 장소 이외에 식당 술집이나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 백화점, 목욕탕, 주차장, 공원, 길거리, 택시 등의 다양한 장소를 언급해 주면서 아래에 제시된 장소 중심의 실제 사례를 얘기해 준다.

< 장소별 범죄피해 실제 사례 >
- 버스에 승차하려는 사람을 노려 핸드폰을 가로챔(뉴시스,2015.3.6.), 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훔침(중도일보, 2014.4.22.).
- 재래시장에서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과 현금 등 훔침(연합뉴스, 2014.4.11.)
- 골목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빼앗아감(뉴시스, 2012.2.22.),
- 술에 취한 손님을 대상으로 금품을 꺼내가거나 금품을 빼앗기 위해 때린 택시 기사(MBN뉴스, 2013.5.1.)
- 술집서 옆 손님과 "시끄럽다"며 폭행시비(연합뉴스, 2015.2.18.)
-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경남도민일보, 2012.12.13.)

<유의사항>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즉, 앞의 24,25,26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피해경험과는 다른 경험이어야 함을 설명한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25,26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만일, 응답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① 있었다'라고 응답했다면, 가해자가 응답자에게 전화나 문서 등을 통한 위협이었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신체적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었는지 확인하여 **전화나 문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은 제외시킨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28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 전화로 위협을 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시

① 칼, 총과 같은 무기
②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③ 돌이나 병을 던짐
④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목을 조름
⑤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⑥ 귀하 앞에서 위협함
⑦ 그 외 다른 폭행, 위협(협박)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 방법 관련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위협이나 협박, 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이 문항은 앞의 27번 문항에서 응답자가 실제 피해경험은 있으나 위협, 협박, 폭행을 당하거나 혹은 당할 뻔한 기억을 되살리지 못해서 응답을 못한 경우, 다양한 도구나 방법들에 대한 예시를 들으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문항이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즉, 앞의 24,25,26,27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제외됨을 설명한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25,26,27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새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실제 사건 발생 상황에서 가해자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기나 물건을 가지고만 있었더라도 응답하도록 한다.** 여기서의 무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피해 상황에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한다. **또한 해당 예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피해경험이 생각나도록 해야 한다.**
  - 예시 ④ : 몸을 붙잡거나 목을 조르는 것 뿐 아니라 팔, 다리, 머리 등의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차거나 하는 등의 관련된 예를 포함하여 전달한다.
  - 예시 ⑤ : 강요된 혹은 원치 않은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행위, 키스, 성행위를 시도하려는 행위 등의 피해경험으로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빈번하게 발생함.
  - 예시 ⑥ : 대면 상황에서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의 신변 협박이나 물품 등을 빼앗기 위해 위협하는 등의 피해

< 실제 사례 모음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무기로 사용된 경우 >

실제 사례 1 :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집에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할아버지가 같이 계신 걸 알고는 놀라 도망감(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보고된 피해 사례) ☞ 스프레이가 무기로 사용

실제 사례 2 : 한 중년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쇠젓가락을 들고 "눈을 찌르겠다."고 위협한 후 성폭행을 하고 금품 갈취 ☞ 쇠젓가락이 무기로 사용

실제 사례 3 :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복 벗긴 전선으로 위협 (연합뉴스.2015.5.7.) ☞ 피복 벗긴 전선이 무기로 사용

- 응답자에게 '전화로 위협한 경우는 제외'라는 내용을 읽어 줄 필요는 없지만, 만일 응답자가 위협을 당한 적이 '① 있었다'라고 응답했다면 가해자로부터 전화나 문서 등을 통한 위협이었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신체적 위협을 경고 받은 것이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나 문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은 제외**시키고 응답하도록 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29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①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② 친구, 애인 또는 이웃
③ 가족이나 친척
④ 그 밖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 지인 관련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아는 사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예시를 통해 피해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여기에서는 돈이나 물품의 없어졌거나 빼앗기는 등의 물품도난, 폭행, 위협, 성폭력 등 이미 언급된 범죄유형들과 **괴롭힘**이 모두 포함된다.
- 여기에서 의미하는 괴롭힘이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유무형의 심리적 위해행위로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성적 농담 등의 괴롭힘 포함).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와 같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시작하기 전 **"사람들은 보통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주변사람들로부터 물건이나 돈을 도난 당했거나 폭행, 위협 혹은 괴롭힘을 당한 적은 없었는지 확인한다.

<실제 사례 : 직장상사로부터의 피해 >
실제 사례 : 서울시 위탁시설 직원 A씨는 원장 B씨가 반복적으로 '돌대가리' 'X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고 책상을 내리치거나 서류나 전화 수화기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직장상사로부터의 괴롭힘(연합뉴스, 2015.4.12.)

- 여기에서는 직장 내 폭력이나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교육(훈육)목적의 체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유의사항>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즉, 앞의 24,25,26,27,28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제외됨을 설명한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25,26,27,28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30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① 낯선 사람
② 조금 아는 사람
③ 잘 아는 사람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 성추행 관련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문항이다.
- 이 문항의 경우 28,29번 문항에서 성폭력 경험에 대해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해자 유형별로 다시 한 번 질문함으로써 피해경험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관련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이 문항의 경우 응답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 응답자에게 누구나 강요된 혹은 원치 않은 성적 접촉(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행위, 키스, 성행위를 시도하려는 행위 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함께 공감하며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유의사항>

-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즉, 앞의 24, 25, 26, 27, 28, 29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제외됨을 설명한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 26, 27, 28, 29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V 조사원 확인 사항

※ 이 페이지부터는 조사원이 직접 적어 넣습니다.

1. 점검 항목

관련 문항	① 피해 경험 여부		② 상습피해 수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피해를 당했으나 구별 못 함)	③ 사건조사표 수 (상습피해는 1건만 작성)
23 번 속임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4 번 물건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5 번 침입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6 번 손상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7 번 장소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8 번 방법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9 번 지인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30 번 성추행 관련	⓪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총 피해 경험 수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총 사건조사표 수	_____ 부

◆ 조사원 체크사항

- 조사원은 기초조사표의 응답이 모두 끝난 경우, **피해경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 작성한다. 만일, 자기기입식으로 응답을 한 경우 해당 응답자에게 범죄피해경험 스크리닝 질문에 대해 별도의 면접과정을 거쳐 응답을 확인해야 한다.**

- **본 체크리스트**는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 **23**번~**30**번 문항에서 응답자가 회상한 사건들의 횟수를 정리하는 것이다. 본 체크리스트는 아래의 3단계를 거쳐, 각 개인이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건조사표 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1단계] 피해 경험 수의 결정방법

① 범죄피해경험 관련문항의 피해경험 수를 옮겨 적습니다.

② 점검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문항에 표시된 경우 동일한 피해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 될 수 있으나, 동일 피해경험인 경우 **한 건**으로 표시합니다.

③ 문항별 피해경험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경험 수에 기입합니다.

④ 총 피해경험 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경험 수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합니다.

[2단계] 상습피해여부의 확인 및 결정방법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 상습피해 실제 사례 >

- 반 친구 4명으로부터 스파링을 하자며 접근하여 3개월 가량 오른쪽 발목과 명치, 귀 등의 신체부위를 때리는 등의 상습 폭행(부산일보, 2014.7.16.)
- 며느리로부터 10여년 동안 폭언과 폭행 등의 학대(경기일보, 2015.5.1.)
-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8개월 동안 욕설과 함께 '죽인다'는 등의 협박피해(뉴시스, 2015.2.10.)

① 문항별 피해경험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 피해경험 수를 상습피해 수에 기입합니다.

◆ **조사원 체크사항**

[3단계] (최종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수의 결정방법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기입합니다.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수가 5회 이상이고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피해경험 수가 5회 이상이지만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모두 기입합니다.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조사표 수에 기입합니다.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만일 **23**번~**30**번 문항의 내용 중 피해경험이 없을 경우 나머지 조사원 기입사항과 응답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해당 조사표를 완성한다.
- 이어서 기초조사표의 첫 부분의 가구구성원 중 만 14세 이상 대상자의 다음 가구원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대상자가 모두 종료되면 완료 조사표를 정리한다.

✔ **확인사항에서 단 한번이라도 피해경험이 있다면** 그 수만큼 적고 **「사건조사표」를 바로 진행**한다.

✔ **특정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사건조사표」에서 특정 범죄피해 관련 설문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조사표」에서 모든 설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한다.** 가령, 절도관련 범죄피해라고 하더라도 「사건조사표」에서 재산피해 관련 **설문문항만을 선별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문항의 지시문에 따라 모든 「사건조사표」문항에 응답자가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 주요 질의 내용에서 '상습 범죄피해' 해당 내용 검토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항목	예	아니요	잘 모르겠음
1)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다	①	②	③
2)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쇠창살)이 있다	①	②	③
3)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다	①	②	③
4) 출입카드를 사용한다	①	②	③
5)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6) 경비원이 있다	①	②	③
7)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CCTV 등 감시카메라가 있다	①	②	③
8)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외부 조명이 있다	①	②	③
9)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있다	①	②	③
10)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장이 있다	①	②	③
11)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공단지역(공장 밀집 지역)이 있다	①	②	③
12)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대규모 재래시장이 있다	①	②	③

◆ **가구 및 주변의 방범수준**

• 주변의 방범수준을 파악하여 체크한다. 잘 알지 못할 경우 응답자에게 문의하여 완성한다.

3. 주택의 유형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다세대주택
④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⑤ 기타(오피스텔 등) (　　)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
1) 단지 규모: 총_____동
2) 층수: _____층 중_____층
3) 형태: ① 계단식 ② 복도식

◆주택 유형	•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첫째,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둘째,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셋째,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 넷째,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함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거주용 건물, 또는 기타로 분류한다.
①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종류는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②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공동주택
③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④ 다세대 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비거주용 건물 내에 사람이 살되, 그 주거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주택 - 영업 겸용 건물의 경우 주거면적이 영업용 면적보다 작으면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임
⑥ 오피스텔	• 사무실과 주거를 겸한 복합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인 경우	• 단지규모는 총 몇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입함. • 응답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체 층수와 살고 있는 해당 층수를 기입 (라인별로 층수가 다를 경우 가장 높은 층수를 기재) - (예시) 아파트 1개 동에 13층, 15층이 있는 아파트의 3층에 살고 있는 경우 : (전체 15층 중 3층) •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선택하여 기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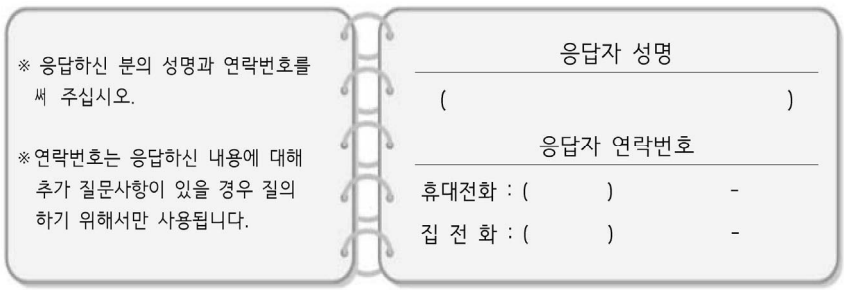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응답자 연락처

- 설문문항에 대한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해야 한다.
- 전화번호는 조사응답자가 응답한 내용 중 질문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반드시 고지한다.

3 사건조사표

가. 사건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사건조사표'는 '기초조사표'에서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각 범죄피해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원이 면접하여 조사한다. 단, 가구원 중 밤늦게 귀가, 출장 등으로 방문 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가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으로 응답이 곤란한 경우 가구대표 응답자의 대리 응답을 허용할 수 있다.

❍ '기초조사표'에서 회상 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응답한 범죄피해경험의 총 횟수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개수가 달라진다. 가령,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3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있다면 각 사건에 대해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총 3개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 각 사건의 경험은 사건 발생시간과 장소, 가해자유형, 범행수법이 상이하여 「사건조사표」를 작성할 때 응답자가 사건을 하나 하나씩 구분해서 응답이 가능해야 한다.

❍ 「사건조사표」는 사건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건조사표'는 크게 9가지의 주요 설문내용으로 구분된다. 점검항목/사건발생 일시와 장소/범행수법/신체 피해/피해자의 대응/재산 피해/정신적 피해/가해자의 특성/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으로 구성되었다.

❍ 사건조사표 질문 문항은 별도의 지시문이 없다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단, 지시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문에 따라 질문 번호로 이동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피해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응답 문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시문을 따른다.

❍ 응답자가 경험한 특정 범죄피해 관련 문항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조사표」의 모든 질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절도관련 범죄피해일 경우 재산피해 관련 질문 문항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문 문항의 지시문에 따라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3) 「사건조사표」를 작성한 후에는 타 가구원의 「기초조사표」 작성을 진행한다.

나. 사건조사표 표지 작성 요령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			

◆ 조사표 표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는 해당 가구명부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 **가구원번호**는 기초조사표의 H. 가구 구성의 응답자 가구원 번호를 기입한다.
- **사건번호**는 기초조사표의 '조사원 체크 사항'에 작성한 총 사건조사표 수 중 몇 번째 사건을 작성하는지 작성한다.

<유의사항>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검토 및 결과 집계 시 가구를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잘못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사 사무소	조사원 성명	조사원 전화번호	조사방법
		( ) -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 조사원 관련사항

-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하기 전, 조사원이 실사 사무소명, 조사원 성명, 조사원의 전화번호를 미리 기입하여 둔다.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해당 조사표 작성 시 주로 사용한 조사 방법에 표기하도록 한다.

다. 사건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10쪽, 가구원 8쪽) 점검 항목의 관련 문항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기초조사표 점검 항목

1) 관련 문항 ( )번의 사건조사표 ( )건 중 ( )번째 사건
2) 상습피해인 경우 피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 ) 회

※ 관련 문항 23번 속임 피해인 경우는 18번부터 작성 하십시오.

◆ 점검 항목

- 기초조사표 조사원 체크사항의 '1. 점검항목'에 작성한 범죄피해경험의 관련문항 번호와 작성할 총 사건조사표 수, 그 중 몇 번째 사건인지를 작성한다.
- 만일 관련 사건피해가 2회 이상일 경우, 해당 사건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사건 순서는 발생시간 순서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정도의 순서일 수도 있다. 응답자의 기준에 따라 범죄피해사건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각 사건을 별도의 「사건조사표」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 만일, 조사원 점검항목에서 속임 관련 피해가 3회 있었고 각기 구분할 수 있는 사건들일 경우,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총 수는 3개이고, 본 피해사건이 총 3개 가운데 몇 번째인지 기입하면 된다.
- 만일 관련문항의 피해사건이 상습피해(가령, 학교폭력,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에 해당될 경우, 기초조사표 체크사항의 '1. 점검항목'을 보고 그 총 피해횟수를 기록한다.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 상습 피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1건**만 작성한다.

<유의사항>

- 점검항목은 기초조사표의 Ⅴ. 조사원 체크 사항의 1.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만일, 응답자가 사건조사표의 응답을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항목은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미리 기입해 주도록 한다.
- 만일, 관련 문항이 **23번 문항일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은 **18번 문항(재산피해)부터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I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1 이 사건은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에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 오기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까?

①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 ② 예전 집에서 사는 동안

◆ **동일 주소지 여부**	• 본 사건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 집(이사 오기 전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동안 발생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유의사항>	• 현재는 조사기준일(2015. 5. 29.) 시점으로 응답하게 한다.

2 그 사건은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2014년 _____월

◆ **사건 발생 시기**	• 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정확한 월을 적고 필요하다면 달력을 보여주거나 당시의 큰 사건을 부각시키면서 응답을 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응답자가 정확한 월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한다면 휴일이나 다른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때를 얘기하면서 응답자로 하여금 사건을 경험한 월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 성적 괴롭힘과 같이 사건 발생장소는 다르다 하더라도,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상습피해인 경우, 가장 심한 피해발생 시점을 기록하도록 한다.**

3 그 사건은 대략 몇 시경에 발생했습니까?

① 새벽(03 ~ 06시) ② 아침(06 ~ 09시) ③ 오전(09 ~ 12시)

④ 한낮(12 ~ 15시) ⑤ 오후(15 ~ 18시) ⑥ 저녁(18 ~ 21시)

⑦ 밤(21 ~ 00시) ⑧ 심야(00 ~ 03시) ⑨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⑩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⑪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 사건 발생 시간	•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간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시간부터 시간 전까지임. 가령, 새벽은 03시부터 06시 전까지이며 아침은 06시부터 09시 전까지를 의미한다. • 낮인지 밤인지는 확실히 기억은 나지만 그 정확한 시간을 기억해 내는 것이 어려울 경우 '⑨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이나 '⑩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음'을 선택하도록 한다. 가령, 응답자가 낮인지 밤이지도 모르겠다고 할 경우 '⑪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을 선택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만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사기인 경우 범죄피해 시간을 물품 금액을 결제한 시간, 즉 피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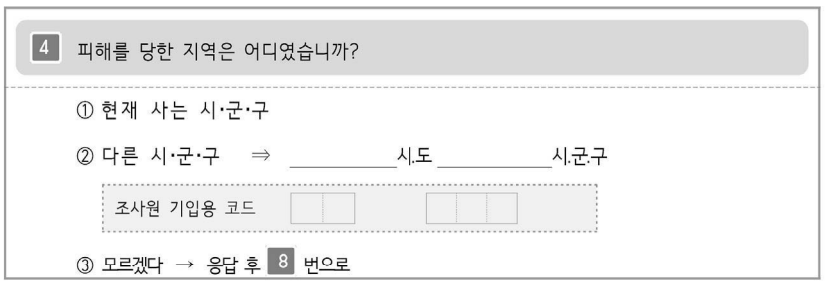

◆ 사건 발생 지역	•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 단위)인지, 다른 지역(시군구 단위)인지 물어보고 조사한다. • 만일, 사건발생지역이 다른 시군구인데, 시군구는 모르고 읍면동만 알고 있을 경우 빈 여백에 읍면동을 기재한다. • 만일, 피해지역을 잘 모를 경우, '③ 모르겠음'을 선택하고 6번 문항으로 바로 넘어가서 응답하도록 한다. • 조사원 기입용 코드는 조사표 회수 후, 응답자가 기입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분류코드를 찾아 아래 칸에 기입하도록 한다. * 행정구역분류코드 기입 시 부록에 수록된 행정구역코드를 참고한다
<유의사항>	• 만일, 사건이 시작된 곳과 실제 피해가 발생된 곳이 다르다면 **피해를 당한 지역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 만일, 인터넷을 통한 범죄피해의 경우, 인터넷을 접속.사용한 지역으로 기록한다.

5 그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5-1 발생 장소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① 집	① 우리 집 ② 가해자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②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거주자 우선 주차도로 포함)	① 아파트 단지 주변 ②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 ③ 단독주택 마을 주변
③ 학교	① 교실 ② 복도 • 계단 • 옥상 ③ 화장실·라커룸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뒷산 • 학교 담장 주변 ⑦ 기타(구체적으로:)
④ 주차장	① 상업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등) 주차장 ② 공공기관(관공서, 은행 등) 주차장 ③ 아파트 • 연립주택 단지 주차장 ④ 도로변 유료주차장이나 주차 전용 건물 ⑤ 기타(구체적으로:)
⑤ 인구 밀집 상업지	① 백화점, 시장, 가게(상점) 등 상업건물 ②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③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목욕탕 ④ 극장, 공연장 ⑤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현금자동지급기) ⑥ 의료기관 ⑦ 기타(구체적으로:)
⑥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① 동사무소, 세무서 등 관공서 ② 기업, 회사 사무실 ③ 종교기관 ④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⑤ 기타(구체적으로:)
⑦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① 유원지, 공원, 등산로, 산책로, 공터, 체육시설 운동장(학교 운동장 제외) ② 도로 상에서(주택과 인접한 도로 제외) ③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④ 대중교통 정거장, 역 또는 대합실
⑧ 그 외의 장소	① 그 외의 장소 (구체적으로:)

5-3 그 곳은 귀하의 직장(또는 영업장소)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사건 발생 장소

-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다.
- 7개 대분류 장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난 후 구체적 장소를 체크한다.
- 만일 제시된 7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⑧ 그 외의 장소'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도록 한다.
- **5-3**번 문항에서 본 사건발생장소가 응답자의 직장이나 영업장소인지를 확인한다.

<유의사항>

- 7개 대분류 장소를 응답자에게 알려줄 때 **'거주자우선주차도로'**의 경우에는 **'②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포함**됨을 알려준다.
- 그 외의 장소로 기입하였으나 7개 대분류 장소에 포함될 경우 기타를 삭제하고 각 해당내용으로 체크한다.

Ⅱ 범행수법

6 그 사건은 귀하의 집에서 일어났습니까? (※ 집에 들어 올 뻔한 것도 포함)

① 예 → 응답 후 **6-1**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8** 번으로

6-1 가해자는 귀하의 집에 살았거나 귀하의 허락으로 집에 들어왔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8**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7** 번으로

7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귀하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습니까?

① 들어왔다 → 응답 후 **7-1** 번으로
②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다 → 응답 후 **7-2** 번으로

7-1 어떻게 들어왔었습니까?
① 안으로 들어오도록 직접 열어줘서
②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③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④ 문이나 문에 달린 자물쇠를 부수고
⑤ 유리창을 깨거나 방범창을 부수고
⑥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음
⑦ 그 외의 경우 (구체적으로:)

7-2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에 귀하나 가구원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응답 후 **7-3** 번으로
② 없었다 → 응답 후 **10** 번으로

7-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① 나
② 나와 가구원들 → 응답 후 **8** 번으로
③ 나 이외의 가구원들 → 응답 후 **10** 번으로

◆ 주거침입 여부

- 6번과 7번 문항은 모두 본 사건이 주거침입과 연관된 것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 먼저 본 사건이 응답자 집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묻는다.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만일,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 경우, 8 문항으로 넘어간다.
- 만일 집에서 발생한 사건일 경우, 뒤이어 6-1번 문항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부를 묻는다. 만일 동의하에 들어온 경우라면, 8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만일 응답자의 동의 없는 경우라면, 실제로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 포함)에 들어왔는지를 묻는다. 만일 가해자가 실제로 들어왔다고 응답했다면, 7-1번 문항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가해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기 항목에서 선택한다. 보기에 해당하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⑦ 그 외의 경우'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한다.
- 만일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을 경우엔 7-2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7-2번 문항은 가해자가 사건 당시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다고 응답한 경우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나 응답자의 가구원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을 당시 응답자나 가구원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있었는지 7-3번 문항에서 선택한다.
-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을 당시 아무도 없었다면, 10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8 그 사건의 가해자는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사용했었습니까?

① 그렇다 → 응답 후 **8-1** 번으로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9** 번으로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총(가스총, 모의 총기 포함) ②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
③ 유리병, 돌, 몽둥이 등 ④ 펜치, 드라이버, 줄(밧줄) 등
⑤ 마취제, 독극물 ⑥ 전기충격기
⑦ 스프레이 ⑧ 그 외의 물건으로(구체적으로:)

8-2 가해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
①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었다
② 현장의 것을 사용했었다
③ 모르겠다

◆ 흉기 사용 여부

-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사용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 만일, 본 사건에서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8-1**번 문항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고, **8-2**번 문항에서 그 무기나 위험한 물건이 미리 준비된 것인지 체크한다.
- 만일,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사용하지 않았거나 잘 모를 경우, **9**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유의사항>

-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할 수 있다
- 본 사건 당시 가해자가 **무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들고만 있었더라도 '① 그렇다'로 응답한다.**
- 가해자가 들고 있었거나 사용한 무기의 유형은 **모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 만일, 가해자가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온 무기와 현장의 것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사전에 '① 준비하여 들고 왔었다'를 선택하도록 함

9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을 가했습니까?

① 신체 공격을 했다 → 응답 후 **12** 번으로

② 실제로 공격은 안했지만, 폭행하겠다고 위협(협박)했다 → 응답 후 **11** 번으로

③ 신체 공격이나 위협(협박)은 없었다 → 응답 후 **10** 번으로

◆ 위협·폭행이나 성폭행 여부

-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응답자에게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이나 위협을 가하였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 본 사건에서 가해자로부터 실제 어떠한 신체적인 공격(성폭행 포함)을 경험하였다면, **12**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응답하도록 한다. 만일 실제 신체적인 공격은 안했지만, 말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했다면 **11**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진행한다. 본 사건에서 아무런 신체적 공격(성폭력 포함)이나 위협이 없었던 경우라면, 뒤이어 **10**번 문항으로 진행한다.

<유의사항>

- 보기 항목 ②번의 경우는 신체 공격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이다.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무언가를 몰래 또는 허락 없이 가져갔음
② 무언가를 훔치려 했거나 훔치겠다고 위협함
③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괴롭힘
④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하려 했음
⑤ 집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⑥ 자동차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⑦ 재물을 파괴했거나 손상을 입혔음
⑧ 재물을 파괴·손상하려 했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했음
⑨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음
⑩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염탐, 감시, 스토킹을 했음
⑪ 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나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혔음
⑫ 그 외의 일 (구체적으로 :)

▶▶ 응답 후 **19** 번으로

◆ 신체공격이나 위협이 전혀 없는 사건내용	• 아무런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이 없는 사건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신체적 피해가 없는 사건유형들로서 (1) 피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령, 절도, 강도, 기물파손 등), (2)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범죄(가령, 주거침입, 모욕, 협박(위협), 지속적 괴롭힘 또는 스토킹) 및 (3) 원치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성폭력) 등과 같은 유형이 주로 해당된다. •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⑫그외의 일'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 응답 후에는 **19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유의사항>	• 본 사건에서 응답자가 경험한 피해내용 모두를 표시하도록 한다. •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폭행 이외에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적인 성적인 접촉과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 때로는 물리적 폭행이나 강한 협박이 없이도 원치 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강간 이외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보기항목 ③번의 경우에는 대면상황에서의 말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한 괴롭힘도 포함되며 성적 농담도 포함될 수 있다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강간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② 죽이겠다고 말로써 위협
③ 살해나 강간은 아니지만 폭행을 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④ 강간은 아니지만 다른 성폭력을 하려고 말로써 위협
⑤ 무력으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⑥ 무력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⑦ 칼 등의 흉기를 보여줌으로써 위협
⑧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감
⑨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 공격을 시도함
⑩ 흉기 이외의 물건으로 신체 공격을 시도함
⑪ 나에게 물건을 던졌으나 빗나감
⑫ 뒤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쌈
⑬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할퀴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을 시도함
⑭ 그 외의 위협(협박)(구체적으로:)

▶▶ 응답 후 13 번으로

◆ 신체공격시도 및 위협 있는 사건내용	• 실제로 신체적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공격을 당할 뻔하거나 위협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말 포함)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피해자에게 신체피해를 주겠다는 위협(협박)이나 공격시도행위, 원치 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강간이외 성폭력) 등이 주로 해당된다. 하지만 강간이나 강간미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해자의 신체공격을 시도하려 할 때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기 항목에서 모두 선택한다. •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⑭ 그외의 위협'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 응답 후에는 **13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유의사항>	• 본 사건에서 경험한 피해내용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 강간이나 강간미수사건의 경우엔 12번 문항에서 응답하도록 한다. •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폭행 이외에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적인 성적인 접촉과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 때로는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원치 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강간 이외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강간을 했다
② 강간하려 했다
③ 강간(미수) 이외의 성폭력을 했다
④ 총을 발사했다
⑤ 칼 등의 흉기로 찔렀다
⑥ 칼 등의 흉기로 신체를 공격하려 했다
⑦ 흉기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를 공격했다
⑧ 흉기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를 공격하려 했다
⑨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할퀴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
⑩ 그 외의 행동(구체적으로 :)

12-1 폭행이나 성폭력을 하기 전에 가해자가 귀하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을 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신체공격 있는 사건내용

- 실제로 신체적 공격을 당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주었거나 주려고 시도한 행위가 해당된다.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강간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나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 가해자가 신체적 공격을 할 때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기 항목에서 모두 선택한다.
-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⑩ 그외의 행동'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항목에서 선택 후, 12-1번 문항에서 신체공격을 가하기 전에 가해자가 신체위협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응답받는다.
- 응답 후에는 **13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Ⅲ 신체 피해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신체 피해는 없었음 → 응답 후 15 번으로
② 강간
③ 강간미수
④ 강간(미수) 이외의 다른 성추행
⑤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⑥ 총기(모의 총기 포함)에 의한 부상
⑦ 뼈나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짐(신체 골절)
⑧ 장기 손상
⑨ 기절함(의식 불명)
⑩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퀴거나 긁힘
⑪ 그 외의 피해(구체적으로 :)

◆ 신체피해내용

- 본 사건으로 인하여 응답자가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는지, 경험하였다면 어떤 유형의 피해를 당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가 경험한 신체적 피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다.
- '① 신체 피해는 없었음'에 응답하면 ②~⑪은 응답하지 않고 15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유의사항>

-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 이외에 다른 피해가 있을 경우 '⑪ 그 외의 피해'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② 종합병원·병원 응급센터
③ 의료적 처치를 받은 적 없음
④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⑤ 집에서
⑥ 학교·직장 등의 의무실 등
⑦ 그 외의 곳(구체적으로 :)

◆ **신체피해의 치료 여부**

- **13**번 문항에서 응답자가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했다면, 그 당시 입은 신체적 피해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하였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보기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경우에는 '⑦ 그 외의 곳'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14-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14-2**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14-3** 번으로

14-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을 했습니까?

① 예 → _____일
② 아니요

◆ **입원 및 치료 여부**

- **14-1**번 문항에서는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여 기입한다. 치료를 받았다면 **14-2**번 문항에서 입원여부를 별도로 질문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14-3**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조사한다.
- **14-2**번 문항에서는 병원치료를 위해 입원 여부를 묻고, 입원을 했다면 며칠 했는지 질문하여 기입한다.
- 100일 이상이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14-3 그 사건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 약 구입, 물리치료 등 포함)
약 _____만 원 (※ 예: 3천원이면 0.3만원)

◆ 의료비 지출

- **14-3**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인한 신체피해 치료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는 총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보고 기입한다.

<유의사항>

-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불한 의료비의 총 금액은 **병원치료비 외에도 진단서 비용, 물리치료비 등의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 피해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이며 1만원 미만은 소숫점을 사용하여 조사한다.(3천원인 경우 '0.3'으로 작성한다)

14-4 그 사건으로 입은 신체 피해(상해)로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 활동이나 가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약_____일 (※ 예: 24시간 미만이면 1일) ② 없었다

◆ 신체피해로 인한 일상활동 손실

- **14-4**번은 그 사건으로 인한 신체피해로 인하여 응답자의 일상 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간 손실이 대략 며칠이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본 사건으로 인한 **신체피해**로 학교나 학원(혹은 직장)을 못 간다거나 평상시 할 수 있었던 가사 일을 못한다거나 등의 일상적인 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24시간 미만은 1일로 계산하며, 100일 이상이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14-5 그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신체 피해(상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① 전부 받았다 ② 일부 받았다 (전체의 _____%)
③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④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⑤ 요구하지 않았다

◆ 신체피해에 대한 배상 여부

- **14-5**번은 응답자가 **가해자로부터 상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② 일부 받았다'에 응답하면 전체의 몇% 정도를 받았는지 내용을 기록한다.

Ⅳ 피해자의 대응

15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귀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 음주 여부

- 본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가볍게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를 하였다고 표시한다.

<유의사항>

-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의 음주상태 판단기준 역시 응답자 본인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가급적 최대한 그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떠올리도록 해야 한다.

16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귀하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만 14세 미만 아동은 제외)이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응답 후 16-1 번으로
② 없었다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17 번으로

16-1 그 사건이 발생할 때, 귀하와 같이 있던 사람 중 상해를 입거나, 상해 위협을 받거나,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명 ② 없었다

◆ 동반피해 여부

- 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사건 당시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14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사건 발생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16-1번 문항을 조사하고, 사건 당시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14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거나 모르겠으면, 17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16-1번 문항은 사건이 발생 당시 범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본 사건에서 응답자와 더불어 다치거나 위협을 받았거나 강도를 당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있다면 '① 있었다'를 선택하고, 몇 명인지 대략의 숫자를 적는다.

17 그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17-1**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19** 번으로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무기 등(물건)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대항
②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
→ 응답 후 **17-2** 번으로

③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
④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
⑤ 탈출이나 도망을 하거나 시도함
⑥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
⑦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⑧ 숨거나(숨기거나) 회피
⑨ 그 외의 행동(구체적으로 :)
→ 응답 후 **17-3** 번으로

17-2 무기 사용이나 신체 공격을 먼저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① 나 ② 가해자
③ 함께 있던 다른 사람 ④ 모르겠음

17-3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그 사건에서 신체 피해(상해)를 입었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17-4**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17-5** 번으로

17-4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한 것입니까?

① 신체 피해(상해) 입기 전 ② 신체 피해(상해) 입은 후
③ 신체 피해(상해) 발생과 동시에 ④ 신체 피해(상해) 없음
⑤ 모르겠음

17-5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음
② 가해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음
③ 탈출하거나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④ 상황을 악화시켜, 실제 상해나 재산 피해가 더 컸음
⑤ 상황을 악화시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았음
⑥ 가해자가 더 공격적, 폭력적이 되었음
⑦ 모르겠음
⑧ 그 외의 영향 (구체적으로:)

▶▶ 응답 후 **19** 번으로

◆ 피해자 방어행동	• 본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어행동이나 대응을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방어나 대응을 하였다고 응답했다면, 17-1번 문항으로 진행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인 19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피해자의 구체적 대응방법	• 17-1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나 대응을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본 사건 당시 응답자 및 함께 있던 사람이 했던 **방어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다. •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 이외에 다른 피해가 있을 경우 '⑨그 외의 행동'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 만일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의 대응행동 가운데 '① 무기나 물건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대항'하거나, '② 주먹이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하였다면, 17-2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조사한다. 그 외의 대응행동(③~⑨)이 있었던 경우는 17-3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진행한다. • ① 또는 ②번에 응답하고, ③~⑨번에도 응답할 경우 17-2번 문항부터 조사한다
◆ 선제공격자	• 17-2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무기를 사용하거나 신체적 공격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 신체피해여부	• 17-3번 문항은 실제로 대응과정에서 응답자 혹은 함께 있던 사람이 신체피해(상해)를 당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 본 사건에서 신체피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7-4번 문항으로 진행하고, 만일 피해(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7-5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방어행동과 신체피해와의 관계	• 17-4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 자신 또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행동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 그것이 상해피해를 입기 전에 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물어보고자 한다.
◆ 방어행동의 효과	• 17-5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대응행동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사건이 진행될 당시 방어행동나 대응행동에는 가령,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해자와의 협상을 시도했거나 가해자와 신체적으로 격투를 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인 행동의 예는 17-1번 문항을 참고하도록 한다.

V 재산 피해

18 귀하가 속임(사기)을 당해 재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한 사건에서 겪은 내용들**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③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⑧ 그 외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구체적으로:)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방송·신문을 통한 (허위)광고
② 전단지나 거리에서의 (허위)광고
③ 전화(허위)광고
④ 보이스 피싱
⑤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⑥ 인터넷 쇼핑사이트
⑦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⑧ 그럴듯한 말솜씨
⑨ 제3자나 전문가 등의 보증
⑩ 범인과 공모한 가짜 고객들을 동원함
⑪ 그 외의 수단(구체적으로 :)

▶▶ 응답 후 19-6 번으로

◆ 사기피해 경험

- 18번 문항은 응답자가 누군가에게 속아 금전적인 손해(사기피해)를 겪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① 있었다'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당할 뻔한 적(미수)은 해당되지 않는다.
- 만일, 본 사건이 사기피해에 해당된다면, 18-1번과 18-2번 문항을 계속 진행하고, **본 사건이 사기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19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18-1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겪은 구체적인 피해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건에서 겪은 내용들만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 이외에 다른 주요피해가 있을 경우 '⑧ 그 외의 피해'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 18-2번 문항은 본 사건의 주요 사기수법(수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건에서 겪은 사기수법들만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만일, 보기에 제시한 내용이외에 다른 방법일 경우 '⑪ 그 외의 수단'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유의사항>

- 기초조사표 23번 관련 문항에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본 문항부터 작성하도록 한다.
- 사기피해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넷을 통한 피해도 포함된다.

19 그 사건에서 귀하 또는 가구원의 물건이나 재산을 도둑맞았거나 빼앗겼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19-1 번으로
② 피해당할 뻔했음
③ 아니요 → 응답 후 20 번으로

19-1 귀하는 피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① 피해 발생 당시 ② 1일 이내 ③ 2 ~ 3일 이내
④ 1주 이내 ⑤ 2주 이내 ⑥ 3 ~ 4주 이내
⑦ 1개월 이후에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②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 응답 후 19-3 번으로
③ 현금, 수표, 상품권 등
④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⑤ 지갑, 핸드백, 가방
⑥ 개인 휴대 물품(휴대전화, 노트북,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⑦ 자동차 부품 (내비게이션, 타이어휠 캡, 위성라디오 등) → 응답 후 19-4 번으로
⑧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⑩ 그 외의 피해 (구체적으로:)

19-3 자전거나 차량 피해를 당했다면, 귀하가 직접 가해자에게 자전거나 차량을 사용하라고 넘겨준 것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9-4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와 직접 접촉하여(예를 들어, 귀하의 지갑, 손, 옷 등에서) 무언가를 가져갔습니까?

① 그렇다 → 응답 후 **19-5** 번으로

② 아니다 → 응답 후 **19-6** 번으로

19-5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_____, _____, _____)

19-2 번의 예시에서 골라 해당 번호를 모두 써 주십시오.

19-6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 가격이나 돈은 얼마입니까?

① _____만 원 ② 모르겠다

19-7 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이나 돈을 되찾았습니까?

(※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① 모두 되찾았다 ② 일부 되찾았다

③ 전혀 되찾지 못했다

19-8 그 사건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구원 이외에도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명

② 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다

③ 없었다

④ 모르겠다

◆ 재산피해 여부

- **19**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응답자 혹은 가구원이 재산피해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 피해경험이 '① 있었다'면 **19-1**번 문항으로 진행하며, 실질적인 피해경험은 없었지만 '② 당할 뻔했다'거나 피해경험이 '③ 없었다'면 **20**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재산피해 인지시점	• 19-1번 문항은 응답자 혹은 가구원이 가진 물품이나 재산을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피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재산피해 물품	• 19-2번 문항은 응답자 혹은 가구원이 가진 물품이나 재산을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피해를 당한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어보고자 한다. • 피해물품 가운데 '①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이나 '② 차량(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이 있다면, 19-3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응답받는다. 만일 피해물품이 이외의 유형(③~⑩)이라면, 19-4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①, ②에 응답하고, ③~⑩에도 응답할 경우 19-3번 문항부터 조사한다.
◆ 차량 직접인도 여부	• 19-3번 문항은 피해물품이 자전거(부속품 포함)나 차량(오토바이 포함)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응답자가 직접 범인에게 그 물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건넨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 직접접촉에 의한 재산피해	• 19-4번 문항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본 사건 당시에서 가해자가 응답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경우 접촉시도했으나 미수된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 19-5번 문항에서는 응답자가 19-4번 문항에서 '① 그렇다'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앞서 19-2번 문항의 보기에서 골라, 해당번호를 모두 기입한다.
◆ 재산피해 정도	• 19-6번 문항은 재산피해(사기피해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본 사건으로 인한 피해물품이나 재산의 현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질문이다. • 현금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①번을 선택 후 구체적인 금액을 적고, 잘 모를 경우 ②번을 선택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현금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 - 사기,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물품의 현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현 시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입금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 피해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이며 1만원 미만은 소숫점을 사용하여 조사한다.(3천원인 경우 '0.3'으로 작성한다)
◆ 재산 피해물품 회수 여부	• 19-7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재산피해(사기피해 포함)를 입었다고 응답한 경우, 피해물품이나 돈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유의사항>	✔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것은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한다.
◆ 본 사건의 동반피해자 존재 여부	• 19-8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경우(사기피해 포함), 같은 사건으로 응답자 이외에도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몇 명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만일, 본 사건에 응답자 이외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① 있었다'를 선택하고, 몇 명인지 대략의 숫자를 적는다.

20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차량(및 부품) → 응답 후 **20-1** 번으로
② 주택의 창문, 자물쇠, 출입문
③ 정원(나무, 관목, 울타리)
④ 가구·가전 등 가정용품
⑤ 의류
⑥ 그 외의 물건(구체적으로:) → 응답 후 **20-2** 번으로
⑦ 없었음 → 응답 후 **21** 번으로

20-1 보험회사에 신고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20-2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으로 손상(파손)된 물건의 수리비(수리 가능한 경우) 또는 재구입 가격(수리 불가능한 경우)은 얼마입니까?

① _____ 만 원 ② 모르겠다

20-3 귀하는 가해자로부터 손상(파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① 전부 받았다 ② 일부 받았다(전체의 _____ %)
③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④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⑤ 요구하지 않았다

20-4 손상(파손)당한 물건을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했습니까?

① 그렇다 → 수리하거나 새로 사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_____일
② 아니다

◆ 파손(손괴) 피해

- **20**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물품에 파손(손괴)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이다.
- 만일, 본 사건으로 인해 물품파손피해가 있었다면, 보기항목에서 해당하는 물품을 모두 선택한다. 보기항목에 없을 경우에는 '⑥ 그 외의 물건'를 선택 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 본 사건에서 아무런 물품의 파손이나 손괴가 없어 '⑦ 없었음'에 응답하면 **21**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본 사건에서 파손(손상)된 물품이 '① 차량(및 부품)'인 경우에는 **20-1**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피해내용을 보험사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외 다른 항목(②~⑥)인 경우에는 **20-2**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응답한다
- '① 차량(및 부품)'에 응답하고, '②~⑥' 항목에도 응답할 경우 **20-1**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파손(손상)된 물품의 현금가치	• 20-2번 문항은 손상된 피해물품의 현금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현금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①번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적고, 잘 모를 경우 ②번을 선택한다
<유의사항>	• 손상된 피해물품의 현금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 - 물품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나 교체 등으로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입**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현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 시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입금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 파손(손괴)에 피해배상	• 20-3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물품의 파손(손괴)이 있었을 경우, 가해자로부터 손상된 피해물품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파손(손괴) 피해 물품의 수리나 대체여부 및 시간손실	• 20-4번 문항은 수리 및 대체(새로 구입)여부와 여기에 걸린 시간을 파악한다.

Ⅵ 정신적 피해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①	②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①	②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5)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①	②
6)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7) 자살 충동	①	②
8) 자살 시도	①	②
9) 그 외의 고통 (구체적으로:)	①	②

21-1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일 ② 없었다

21-2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신경정신과 등에서 진료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있었다 →

1) 상담과 진료 기간	2) 상담과 진료 비용
_____일	_____만 원

② 없었다

◆ 정신적 피해	• 21번 문항은 본 사건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보기 문항에 응답한다. 만일 보기 문항 이외에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경우 '9) 그 외에 고통'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 심리상담이나 신경정신과 경험	• 21-1번 문항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등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의 중지, 일상생활의 중단 등을 경험했는지 질문하고, 만일 있었다면, 그 시간손실이 대략 며칠쯤으로 추산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 21-2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심리상담소나 신경정신과 등에 간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만일 있었다면, 그 상담 및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실제 소요된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는지 기입하도록 한다. 만약, 그 사건으로 인해 현재도 상담 및 치료 중에 있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대략적 치료비까지 합하여 기입한다.
<유의사항>	•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건 이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소나 신경정신과에 간 경험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즉,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간 경험은 응답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치료기간과 치료비용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한다.

22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귀하의 감정 변화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1)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①	②	③	④	⑤
4)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①	②	③	④	⑤

◆ 사건 전후의 감정변화	• 22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이전과 비교하여 활동, 감정 및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려는 문항으로 5가지 문항 각각에 대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가급적 해당 사건조사표의 내용을 중심(기준)으로, 본 피해사건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현재 어떠한지 응답하도록 유의한다.

Ⅶ 가해자의 특성

23 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무언가를(예를 들어, 가해자 수,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었는지 늙었는지 등) 알았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23-1**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24** 번으로

23-1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 ②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
③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 ④ 경찰이 알려줘서
⑤ 그 외의 경우(구체적으로 :)

23-2 그 사건의 가해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개인(들) → 응답 후 **23-3** 번으로
② 기업이나 상점, ③ 공공기관 → 응답 후 **24** 번으로

23-3 그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_____명

23-4 그 사건의 가해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③ 남녀 모두 ④ 모르겠다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12세 미만(아동) ② 10대 중반 ③ 10대 후반
④ 20대 ⑤ 30대 ⑥ 40대
⑦ 50대 ⑧ 60대 이상 ⑨ 모르겠다

23-6 그 사건 당시 가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그렇다'로 선택해 주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알면 '친인척(가족 포함)' 또는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에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3-7-1 관계	23-7-2 구체적 관계
① 친인척 (가족 포함)	① 남편·아내 ② (조)부모 ③ (손)자녀 ④ 형제·자매 ⑤ 전남편·전처 ⑥ 기타 친인척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⑦ 친구 ⑧ 애인(전 애인 포함) ⑨ 학교 선후배 ⑩ 직장 동료 ⑪ 직장 상사 ⑫ 거래하던 사람 ⑬ 잘 아는 이웃 ⑭ 얼굴만 아는 사람
③ 전혀 모르는 사람	

◆ 가해자 인지여부	• 23번 문항은 응답자에게 본 사건의 가해자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만일 안다면, 23-1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가해자 인지방법 및 특성에 대한 질문에 계속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만일 모른다면, '② 아니오'를 선택하고, 다음 24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가해자 인지방법	• 23-1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 경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인지방법을 묻는 것이다. 보기에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⑤ 그 외의 경우'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 가해자 유형	• 23-2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경우, 본 사건의 가해자의 유형을 물어보는 것이다. • 만일, 가해자가 '① 개인(들)'이라면 23-3번 문항으로 계속 진행하여 응답하고, 가해자가 '② 기업이나 상점', 혹은 '③ 공공기관'인 경우 24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유의사항>	✔ 기업이나 상점 -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단위의 기업이나 상인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점포인 상점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유령회사인 줄 모르고 사기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 -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구청(시청, 군청, 동사무소), 보건소, 교육청, 우체국, 경찰서(파출소), 소방서, 법원, 철도청,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가령, 우체국의 예금횡령 사건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가해자 수	• 23-3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에게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모두 몇 명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유의사항>	• 실질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 발생 당시 있었던 사람의 수를 모두 기입하도록 한다.
◆ 가해자 성별	• 23-4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해자의 성별을 알아보는 것이다.

◆ 가해자 연령	• 23-5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해자의 연령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응답하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음주 상태 여부	• 23-6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사건 당시 가해자가 술을 미신 상태였는지 알이보고자 히는 것이다.
<유의사항>	• 사건 당시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응답했다면 가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적 요인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가해자와의 관계	• 23-7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그 사건 가해자와 응답자와의 관계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먼저 23-7-1번 문항에서 관계분류를 선택하고 난 후, 23-7-2번 문항에서 구체적인 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만일,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알면, '친인척(가족포함)'이거나 '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에 누구인지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다.

Ⅷ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24 귀하는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① 신고 했다 → 응답 후 **24-1** 번으로
② 신고하지 않았다 → 응답 후 **24-9** 번으로

24-1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②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③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④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⑤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⑥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24-2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조치를 했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24-3**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24-4** 번으로

24-3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②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③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④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24-4 경찰은 귀하가 신고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① 제공했다 → 응답 후 **24-5** 번으로
② 제공하지 않았다 → 응답 후 **24-6** 번으로

24-5 귀하는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①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②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③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④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⑤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24-6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만족했습니까?
① 매우 만족했다 ② 약간 만족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했다 ⑤ 매우 불만족했다

24-7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습니까?
① 모두 검거했다 ② 일부를 검거했다
③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④ 모르겠다

◆ 경찰신고 처리	• 24번 문항은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상관없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 만일, 본 사건을 신고를 한 경우에는 24-1번부터 24-8번까지 응답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4-9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유의사항>	• 경찰은 지역 내 경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항경찰, 순찰 공무원 등 특정 지역에서 체포 권한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즉, 사설보안직원, 건물 경비원 등은 제외된다. • 응답자가 사설보안직원, 건물 경비원 등에게 신고하는 등 신고 과정이 공식적인 신고절차가 아니었다면 '② 신고하지 않았다'에 표시해야 한다.
◆ 경찰신고이유	• 24-1번 문항은 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으로 5가지의 보기에서 골라, 가장 주된 이유와 차 순위의 이유를 각각 기입한다. 만일, 보기에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⑥ 그 외의 경우'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 응답자가 사건 당시 신고했던 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 그 당시 응답자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장소나 시간, 가해자 등에 대한 정보를 다시 상기시켜준다. • 조사원은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유도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 경찰조치여부	• 24-2번 문항은 응답자가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이다.
◆ 경찰조치내용	• 24-3번 문항은 응답자가 경찰신고 후, 경찰이 취한 조치내용을 묻는 것이다.

◆ 경찰사건처리 절차정보제공	• 24-4번 문항은 본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응답자에게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 응답자가 경찰에게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한다면, 24-5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응답받으며,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했을 경우 24-6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 사건처리설명 이해정도	• 24-5번 문항에서 경찰로부터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응답자가 경찰의 설명 과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경찰조치 만족도	• 24-6번 문항에서 경찰신고 후, 응답자가 본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조치에 대해 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 범인검거여부	• 24-7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범인)가 실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24-8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문항	있었다	없었다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일	②
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일	②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일	②

24-9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④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⑤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⑥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⑦ 보복이 두려워서
⑧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⑨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 사법활동 협조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 24-8번 문항은 본 사건 경찰신고 후, 조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서 사건의 사법처리로 인하여 응답자가 학업, 직장업무, 가사업무에 시간손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 경찰, 검찰, 법원 관련 활동 각각에 대해 그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시간손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대략 얼마나 있었는지를 기입하도록 한다.
- 24시간 미만은 1일로 조사한다.

◆ 경찰 미신고 이유

- 24-9번 문항에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보기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와 차순위, 두 가지를 선택하여 각각 기입하도록 한다. 만일, 보기에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⑨ 그 외의 경우'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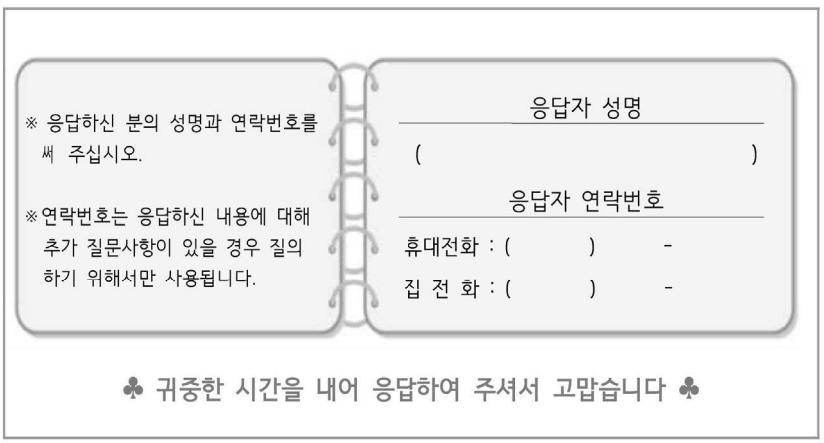

◆ 응답자 연락처

- 설문문항에 대한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해야 한다.
- 전화번호는 조사응답자가 응답한 내용 중 질문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반드시 고지한다.

IV.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1. 기본 점검사항

2. 조사항목별 점검사항

3. 조사표 편철 요령 및 제출

4. 파라데이터 작성 방법

Ⅳ.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1 기본 점검사항

○ 지시문에 따라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건너 뛰어야 할 문항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한 가지 보기만 선택하는 것인데, 복수 응답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 표시내용이 수정된 경우, 마지막 수정된 값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숫자를 기입하는 문항의 경우, 단위에 맞게 조사되었는지 어떤 숫자인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보기 중 '기타'에 표시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입된 내용이 다른 보기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포함될 경우, 해당 보기에 수정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2 조사항목별 점검사항

가.「기초조사표」점검사항

○ 조사표 표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호,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가 해당 가구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행정구역분류(시·도, 시·군·구, 읍·면·동)코드가 해당 지역에 맞게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구원 번호는 '가구대표응답자의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의 가구원 번호를 기재한다.

- 가구 전체 조사표의 총 부수가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부수의 합과 같은지 확인하고, 적힌 부수대로 조사표가 회수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대상 누락 확인

- 가구대표응답자의 기초조사표 H.가구구성에 기재된 만14세 이상 가구원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한다.
- H. 가구 구성에 기재된 만14세이상의 가구원 수와 회수된 가구원의 기초조사표 수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동일하지 않다면 H.가구 구성의 '조사원이 기입합니다(사유코드)'란에 조사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가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예, 가구대표응답자와 관계가 '배우자'로 조사된 사람이 혼인상태에서는 '미혼 또는 사별 및 이혼' 으로 기재된 경우와 직업관련 등에 '전업주부'로 기재한 사람이 종사상 지위에 '임금 근로자'로 기재된 경우 등은 반드시 재확인하여 수정한다.)

❍ 조사원이 직접 작성하는 체크 사항은 본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사건조사표 수와 조사된 사건조사표 수가 일치하는지 재확인한다.

❍ 조사대상 가구 및 주변의 방범수준은 가구 방문 시 주변을 세심히 살펴서 작성하고, 모를 경우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조사표에 기재한다.

❍ 주택의 유형은 조사시점(2015.5.29.)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나. 「사건조사표」 점검사항

❍ 조사표 표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가 해당 가구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행정구역분류코드(시·도, 시·군·구, 읍·면·동)가 해당 지역에 맞게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사건조사표의 사건번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가구원별로 1부터 순서대로 매겨졌는지 확인한다.

※ 예시 : A와 B가 사는 가구에 A는 2건의 범죄피해가 있었고, B는 1건의 범죄피해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A의 사건조사표 사건번호는 2매중 1번, 2매중 2번으로 기재해야 하며, B의 사건조사표 사건번호는 1매중 1번으로 기재한다.

❍ 지시문에 따라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건너뛰어야 할 문항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 조사표 편철 요령 및 제출

가. 조사표 편철

❍ 조사표의 내용검토가 끝나면 가구별로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 순), '사건조사표'의 순으로 정리한다.

-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응답자, 가구명부상 가구원 번호 순으로 정리한다.
- 사건조사표는 가구원 번호별 사건번호 순으로 정리한다.
- 정리한 조사표의 수가 '가구대표응답자의 기초조사표' 표지에 기재된 조사표의 수와 일치하는지 세어본다.

❍ 거처번호 및 가구번호가 빠른 조사표가 위로 오도록 정리하여, 조사구별로 10가구씩 편철한다.

❍ 조사표 편철 표지 작성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			

사무소	조사원 성명	조사원 전화번호	조사방법	가구대표 응답자 사건조사표 수
		( ) -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총 ( ) 부

가구 전체 조사표 수	가구 전체 기초조사표 수	가구 전체 사건조사표 수
총 ( ) 부	총 ( ) 부	총 ( ) 부

- 편철할 가구의 조사구 번호를 확인하고 조사지역과 행정구역분류코드, 조사구 번호를 조사표와 동일하게 정확히 기입한다.

- 가구별 '가구대표응답자의 기초조사표' 표지의 조사표 부수를 참고하여, 해당 조사구에서 회수된 조사표의 총부수와 「기초조사표」, 「사건조사표」 각각의 총 부수를 계산하여 기입한다.
- 기입한 수대로 조사표가 빠짐없이 회수되었는지 재확인 한다.
- 해당 실사 사무소 명을 기입하고, 조사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한다.

나. 조사표와 가구명부 제출

○ 부여된 시작번호와 추출간격 순서대로 처음 10가구를 조사하지 못하고, 대체한 가구가 있는 경우 가구명부에 가구별로 해당 사유(불응, 불능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한다.

○ 가구명부와 함께 편철한 조사표를 수퍼바이저에게 제출한다.

○ 제출서류는 공문발송, 조사표, 가구명부, 조사구요도, 답례품 지급명부, 조사원 설문지, 전화검증지, 답례품 잔량 등

○ 조사표 제출 후 종합 검증 과정 중 질의 시 성실히 응답한다.

4 파라데이터 작성 방법

가. 개요

○ 정의 : 파라데이터란 조사 과정 중 발생하는 가구 접촉 기록을 말한다.

○ 수집자료 : 조사기간 중에 가구별 방문횟수, 접촉 날짜 및 시간대, 접촉가구원, 가구방문 결과 등을 수집한다.

나. 파라데이터 작성방법

○ 파라데이터 수집표는 조사원에게 배부되는 가구명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방문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작성한다.

○ 한 가구당 최대 4회의 방문기록을 남길 수 있다.

○ 유고와 관계없이 최초 조사대상가구와 대체 가구 모두 작성한다.

- 1번 가구가 최초 조사대상 가구인데 유고이고, 2번 가구를 대체했으나 다시 유고라서 3번 가구를 대체하여 조사를 완료한 경우 1번, 2번, 3번 가구 각각의 파라데이터를 모두 작성한다.

○ 파라데이터 수집표 예시

일련번호	키 값	조사구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번호
1	11010720801	066	001	001
2	11010720801	066	002	002

방문1	조사 현황	방문2	조사 현황	방문3	조사 현황
__월 __일 __시		__월 __일 __시		__월 __일 __시	
__월 __일 __시		__월 __일 __시		__월 __일 __시	

다. 가구 조사현황 작성법

조사 진행 중 코드		조사 완료 코드	
대체코드	내용	대체코드	내용
10	부분 조사	90	조사완료-원표본 가구
11	재방문 약속	91	조사완료-대체 가구
12	응답 불응	92	종료(응답 불응)
13	부재	93	종료(일시 부재)
14	응답 곤란	94	종료(응답 곤란)
		95	종료(빈집)
		99	종료(기타_____)

○ **<조사 진행 중 코드>** :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작성하는 코드

- 부분 조사(10) : 조사표를 작성했으나, 완료하지 못함
- 재방문 약속(11) : 응답자가 바쁘거나, 미성년자만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함
- 응답 불응(12) : 가구대표 응답자가 불응했으나, 추가 설득해야 함
- 부재(13) : 조사기간 중에 찾아 갔으나 응답자를 만나지 못함
- 응답 곤란(14) : 방문시 고령, 장애, 언어문제로 집에 있는 가구원을 조사하지 못하고, 다음에 다른 가구원이 있는지 방문할 예정임

○ **<조사 완료 코드>** : 조사 완료 후에 작성하는 코드

- 조사완료-최초 조사가구(90) : 원표본 가구를 조사 완료함
- 조사완료-대체 조사가구(91) : 대체된 가구를 조사 완료함
- 종료(응답 불응)(92) : 3번 이상 찾아가 설득했으나 응답을 거부함
- 종료(일시 부재)(93) : 3번 이상 찾아가고, 이웃집이나 안내문을 통해서도 응답자를 만나지 못함
- 종료(응답 곤란)(94) : 고령, 장애, 언어문제로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지 못함
- 종료(빈집)(95) : 이사, 폐가, 재개발 등의 이유로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걸 확인
- 종료(기타)(99) : 만14세 미만의 가구원만 있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상가 등)이거나, 기숙사 등 집단시설이어서 조사하지 못함.

V. 부 록

1. 색인 목록

2. 행정구역(시군구) 분류부호

3. 주요 질의사례

V. 부 록

1 색인 목록

색인명	의미
가구대표 응답자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가구원) 중에서 해당가구의 생활 상황을 대표하여 응답하여 줄 수 있는 사람(가구원)
가구원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2015. 5. 29.)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하는 사람. ☞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은 가구원에 해당됨.
가정폭력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 흔히 물리적 폭력, 욕설, 방임 및 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대 행위로 나타나며, 가정폭력은 범죄로서, 폭행죄 중의 하나이다.
강간	강간(強姦)은 성폭력(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교하는 것을 의미.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경우, 또는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콜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로서 성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경우에도 강간으로 간주됨.
경찰활동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
괴롭힘	괴롭힘이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유무형의 위해행위로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 ☞ 특히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함.

색인명	의미
구타	물리적 혹은 상해를 포함하는 비합법적인 학대의 한 형태로서, 때리거나 치는 행위
근로소득	피고용자가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봉급·급료·임금·세비(歲費)·연금·상여금 등
동네	**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 : 평소 자신이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가격의 주택가를 말하며, 같은 학교, 교회, 병원, 상가 및 정류장(버스나 지하철)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동네와는 차도나 담(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지역
만취	**만취상태**란 술이 많이 취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
무기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종료함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는 그 실행에 착수하여 처음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소기의 결과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그 중도에서 좌절되는 것도 있고 또 스스로 중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범죄	**국가의 형사법령(법규)을 위반한 행위.** (유의어) 범법, 위법행위, 범행(범죄행위) ☞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거나(절도)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모욕)로부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경제범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에 이르기까지 그 해당범위는 매우 넓음 ☞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스토킹과 같은 행위도 우리나라 현행법령에 따라서 모두 범죄로서 처벌되는 행위임
사기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사람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欺罔)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이 착오에 빠졌음을 요건으로 함
사업소득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따위에서 생기는 소득. 총수입액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한 금액

색인명	의미
상습피해	상습피해란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 자극, 흥분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함
성폭력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폭행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하며, 강간(强姦)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손괴	어떤 물건을 망가뜨림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손상	일반적으로 재료의 모든 특성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흔히 손괴와 유의어로 사용 1.물체가 깨지거나 상함 2.병이 들거나 다침 3.품질이 변하여 나빠짐
스토킹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
위험한 물건	사람 신체에 대한 가해력을 가진 기구
위협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 협박과 동의어
이전소득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2 행정구역(시군구) 분류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서울특별시	11	부평구	23060	연천군	31350	공주시	34020	경상북도	37
강남구	11230	서구	23080	영통구	31014	금산군	34310	경산시	37100
강동구	11250	연수구	23040	오산시	31140	논산시	34060	경주시	37020
강북구	11090	옹진군	23320	오정구	31053	당진시	34080	고령군	37370
강서구	11160	중구	23010	용인시	31190	동남구	34011	구미시	37050
관악구	11210	광주광역시	24	원미구	31051	보령시	34030	군위군	37310
광진구	11050	광산구	24050	의왕시	31170	부여군	34330	김천시	37030
구로구	11170	남구	24030	의정부시	31030	서북구	34012	남구	37011
금천구	11180	동구	24010	이천시	31210	서산시	34050	문경시	37090
노원구	11110	북구	24040	일산동구	31103	서천군	34340	봉화군	37410
도봉구	11100	서구	24020	일산서구	31104	아산시	34040	북구	37012
동대문구	11060	대전광역시	25	장안구	31011	예산군	34370	상주시	37080
동작구	11200	남구	26020	중원구	31022	천안시	34010	성주군	37380
마포구	11140	대덕구	25050	처인구	31191	청양군	34350	안동시	37040
서대문구	11130	동구	25010	파주시	31200	태안군	34380	영덕군	37350
서초구	11220	동구	26030	팔달구	31013	홍성군	34360	영양군	37340
성동구	11040	북구	26040	평택시	31070	전라북도	35	영주시	37060
성북구	11080	서구	25030	포천시	31270	고창군	35370	영천시	37070
송파구	11240	울주군	26310	하남시	31180	군산시	35020	예천군	37400
양천구	11150	유성구	25040	화성시	31240	김제시	35060	울진군	37420
영등포구	11190	중구	25020	강원도	32	남원시	35050	의성군	37320
용산구	11030	중구	26010	강릉시	32030	덕진구	35012	청도군	37360
은평구	11120	세종특별자치시	29	고성군	32400	무주군	35330	청송군	37330
종로구	11010	세종시	29010	동해시	32040	부안군	35380	칠곡군	37390
중구	11020	경기도	31	삼척시	32070	순창군	35360	포항시	37010
중랑구	11070	가평군	31370	속초시	32060	완산구	35011	경상남도	38
부산광역시	21	고양시	31100	양구군	32380	완주군	35310	거제시	38090
강서구	21120	과천시	31110	양양군	32410	익산시	35030	거창군	38390
금정구	21110	광명시	31060	영월군	32330	임실군	35350	고성군	38340
남구	21070	광주시	31250	원주시	32020	장수군	35340	김해시	38070
동구	21030	구리시	31120	인제군	32390	전주시	35010	남해군	38350
동래구	21060	군포시	31160	정선군	32350	정읍시	35040	마산합포구	38113
부산진구	21050	권선구	31012	철원군	32360	진안군	35320	마산회원구	38114
북구	21080	기흥구	31192	춘천시	32010	전라남도	36	밀양시	38080
사상구	21150	김포시	31230	태백시	32050	강진군	36390	사천시	38060
사하구	21100	남양주시	31130	평창군	32340	고흥군	36350	산청군	38370
서구	21020	단원구	31092	홍천군	32310	곡성군	36320	성산구	38112
수영구	21140	덕양구	31101	화천군	32370	광양시	36060	양산시	38100
연제구	21130	동두천시	31080	횡성군	32320	구례군	36330	의령군	38310
영도구	21040	동안구	31042	충청북도	33	나주시	36040	의창구	38111
중구	21010	만안구	31041	괴산군	33360	담양군	36310	진주시	38030
해운대구	21090	부천시	31050	단양군	33380	목포시	36010	진해구	38115
대구광역시	22	분당구	31023	보은군	33320	무안군	36420	창녕군	38330
남구	22040	상록구	31091	상당구	33011	보성군	36360	창원시	38110
달서구	22070	성남시	31020	영동군	33340	순천시	36030	통영시	38050
동구	22020	소사구	31052	옥천군	33330	신안군	36480	하동군	38360
북구	22050	수원시	31010	음성군	33370	여수시	36020	함안군	38320
서구	22030	수정구	31021	제천시	33030	영광군	36440	함양군	38380
수성구	22060	수지구	31193	증평군	33390	영암군	36410	합천군	38400
중구	22010	시흥시	31150	진천군	33350	완도군	36460	제주특별자치도	39
인천광역시	23	안산시	31090	청원군	33310	장성군	36450	서귀포시	39020
강화군	23310	안성시	31220	청주시	33010	장흥군	36380	제주시	39010
계양구	23070	안양시	31040	충주시	33020	진도군	36470		
남구	23030	양주시	31260	흥덕구	33012	함평군	36430		
남동구	23050	양평군	31380	충청남도	34	해남군	36400		
동구	23020	여주군	31320	계룡시	34070	화순군	36370		

3 주요 질의 사례

1. 조사대상 가구인지 여부

Q1. 조사대상 가구가 사찰(절)인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됩니까?

◇ 사찰(절)에서 주로 먹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대상입니다.

Q2. 대상가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낮에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야 합니까?

◇ 영업이 주된 목적이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주로 먹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대상이 됩니다.

Q3.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A가 한 곳의 전세가 나가게 되면서 2곳 모두에서 A가 생활하고 있는데 2곳 모두 조사대상인 경우 대체를 해야 하는지요?

◇ 두 가구 중 응답자가 주로 거주하는 집을 조사하고, 나머지 한 가구는 다른 집으로 대체해서 조사합니다.

Q4. 외국인도 조사하나요?

◇ 외국인도 조사해야 합니다. 단, 가족 모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응답곤란으로 처리하고, 가구대체 요령에 따라 다른 가구로 대체합니다.

Q5. 여러 번 방문하였는데도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대체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사람이 사는 것이 확실하다면 일시 부재로 처리하고, 폐가 등 빈집이면 빈집으로 처리합니다.

Q6. 가구명부의 가구대표 응답자 이름과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대표 응답자의 이름이 틀린데 조사해야 하나요?

◇ 금번 조사의 가구명부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작성되어 이사 등의 사유로 가구명부의 이름과 현재 사는 사람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동 조사는 주소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명부의 가구대표 응답자 이름과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대표 응답자 이름이 다르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Q7. 빈집, 공장, 응답불응인 경우 대체해도 되나요?

◇ 빈집, 공장 : 사람이 숙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응답불응 : 몇 번을 방문하여도 못해주겠다고 화를 내고 불응함
⇒ 두 경우 모두 다음 가구로 대체합니다.

Q8. 중증치매이신 분, 정신지체 장애자, 정신질환자분들은 조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빙성있는 답변을 얻기 어렵고 스스로의 상황판단이 잘 안되시므로 대리응답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응답곤란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조사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구원의 경우 기초조사표 1번~22번의 인식항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피해경험 여부는 보호자(가구대표 응답자)가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며, 사건이 있는 경우 사건조사표도 대리작성 가능할 것입니다.

Q9. 재개발로 인해서 1번 가구부터 11번 가구까지 허물고 현재 건물 신축중인 경우 대체사유 빈집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 재개발로 집이 없어지고 신축 중이므로 빈집처리하면 됩니다.

Q10. 작년부터 10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지 며칠 안 된 경우 대상가구에 해당 되는 지요?

◇ 대상가구에서 제외하고 빈집 처리 후 다른 가구로 대체합니다.

Q11. 주소지에 아예 건물이 없는 경우 대체 사유를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요?
(폐가도 아니고 아예 주소오류)

◇ 유고코드 5는 빈집, 폐가 외에 건물이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 가구구성표 작성

Q12. 조사표의 가구구성에서 부부만 살고 있는데 한명이 일시 출장 등으로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 H. 가구구성 항목에서 두 명 모두 조사해야 하는지?, 한 명만 조사해야 하는지?

◇ 기초조사표 H. 가구 구성 항목에 두 명 모두 조사하고, 출장 중인 가구원은 가능한 다른 가구원이 대리응답하게 합니다.

Q13. 기초조사표의 H. 가구구성 항목에 개인 이름은 조사하지 않나요?

◇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만 정확히 기재합니다.

Q14. 2014년에는 일을 했으나, 조사시점 현재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기초조사표 H.가구구성 항목의 직업항목과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초조사표 H 항목은 조사시점(2015년 5월 29일 기준) 현재 상태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직업 관련 항목은 무직, 종사상 지위는 해당없음으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Q15. 가구원 모두가 만 18세 미만이면 가구대표 응답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 만 14세이상인 가구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구대표 응답자로 정합니다.

Q16.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직업과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공부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직업과 종사상 지위는 학생으로 조사하고,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일의 종류에 따라 직업과 종사상 지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Q17. 타지에서 공부하다 주말에만 오는 자식도 조사하나요?

◇ 주 거처가 타지에 있으면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Q18. 스님이나 목사님은 종사상 지위를 어떻게 하나요?

◇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재단에 소속 되어 있어 상용임금근로자로 처리합니다.

Q19. H.가구구성원에서 1999년 6월생과 2004년 10월생 구성원을 조사해 왔는데 시스템에 입력하나요?

◇ 당연히 이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므로 가구구성표에는 조사해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만 14세 이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기초조사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Q20. 성당 신부님과 수녀님의 직업관련 등과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표기할까요?

◇ 지위는 상용임금근로자로 봅니다.

3. 기초조사표 배경문항 작성

Q21. 최종 학력 조사 시 재학, 중퇴, 휴학인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재학중인 경우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력을 최종 학력으로 기재하며, 휴학, 중퇴의 경우 휴학, 중퇴한 시점의 학력을 최종학력으로 기재합니다.

Q22. 응답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응답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내검시 재질문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으로 응답자에게 기재하는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응답을 거부하면 응답자 성명란에 가구구성표의 관계를 참고하여 "가구대표 응답자","가구대표 응답자 배우자","첫째 자녀","둘째 자녀" 등으로 작성하되, 전화번호는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Q23. 자녀가 주는 용돈, 생활비 및 연금도 소득에 해당 되나요?

◇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 생활비는 이전소득이며, 연금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초조사표 22번 문항 가구소득에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Q24.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거주하는 남편의 소득은 부인 가구의 소득에 포함하나요?

◇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는 부인 가구의 소득으로 포함합니다.

Q25. 17번 문항에서 20년동안 같은 동네에서 수차례 이사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동네로 보고 18번 문항에서 경험없음으로 조사하는 게 맞는지요?

◇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내에서 수차례 이사한 경우라도 이사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8번 문항에 '이사를 한 경험 있다.'에 해당되며, 횟수를 조사해야 합니다

Q26. 아파트에 회사직원 2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가구대표응답자 22번 문항에 소득부분에 직원 2명 소득을 합한 금액인가요?

◇ 가구 소득이므로, 타인과 살 경우라도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산합니다.

4. 기초조사표 동내와 이웃환경,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작성

Q27. 1급 시각 장애인의 경우 '동네와 이웃환경' 조사가 어렵습니다.

◇ 실태조사인데 해당없음이 없으므로 공란으로 넘어가고 조사표 제출시 사유를 적어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반드시 조사 하셔야 합니다

Q28. 기초조사표 6번 문항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같이 살지 않는 자녀와 배우자도 포함하는 건가요?

◇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응답하셔야 합니다.

Q29. 장애나 고령, 언어문제 등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대표응답자가 대리응답시 일상생활과 범죄예방활동 문항에서 '보통이다'라고 체크하고 9~12문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9~12번 문항도 대리응답자의 인식경험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5. 조사대상 범죄피해인지 여부

Q30. 범죄피해란 무엇이며, 조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면 범죄피해사건으로 봅니다.
◇ 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살인, 유괴, 약물남용, 도박, 성매매, 교통사고 등 입니다.

Q31. 본인 부주의로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된 경우와, 잃어버린 핸드폰 사용으로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범죄피해에 해당됩니까?

◇ 단순한 분실의 경우는 범죄피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실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금액피해가 있었다면, 본 조사대상 피해에 해당됩니다.

Q32. 시골집에서 고물상에 팔려고 모아 둔 빈병, 비닐, 깡통 등을 누군가가 몰래 가져간 경우 범죄피해에 해당됩니까?

◇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응답자가 범죄피해라고 생각한다면 범죄피해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33. 자택이 아닌 식당, 가게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됩니까?

◇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식당 물건이 없어진 경우에도 사업체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Q34. 10세 아이의 자전거를 도둑 맞았으면 조사하나요?

◇ 사건 장소가 집이면 가구침입사건이므로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조사하고, 집 밖이면 만 14세 미만인 가구원이 도둑맞은 사건이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Q35. 경운기를 도둑 맞았으면 조사하나요?

◇ 농부가 도둑 맞은 경운기는 조사하나, 대리점의 도난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로 소 목장 등 외부에서 농축산업 사업체로 인식이 가능한 경우 발생한 도난사건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Q36. 도박하다가 속임을 당한 경우 조사하나요?

◇ 도박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Q37. 별거중인 남편이 부인의 컴퓨터를 가져갔다면 도난으로 조사하나요?

◇ 공식 이혼한 경우가 아니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Q38. 이메일로 위협한 경우도 조사하나요?

◇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위협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Q39. 편의점에서 일어난 도난도 조사하나요?

◇ 편의점의 물건이 도둑맞은 경우 조사하지 않으나, 편의점 점원이나 고객이 개인물건(지갑 등)을 도둑 맞은 경우는 조사합니다.

Q40.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잠시 비운 사이 책상위의 책을 잃어버렸다면?

◇ 응답자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누군가 고의로 물건을 가져갔으므로 도난사건으로 봅니다.

Q41. 직장동료들이랑 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다음날 고가의 시계가 없어진 걸 알고, 동료 중 한 명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면?

◇ 응답자가 동료가 훔쳐갔다고 확신한다면 도난사건으로 조사합니다.

Q42. 극장에서 가죽옷을 빈자리에 놔두었는데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 쳐다보니 훔치려던 사람이 일어나 극장을 나간 경우 조사하나요?

◇ 미수에 그친 도난 사건으로 조사합니다.

Q43. 문구점에서 학생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간 피해가 수십 건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사업체의 물건이 도둑맞으면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Q44. 청소년이나 성인여성이 골목에서 바바리맨을 만났을 경우 30번 문항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 위협이나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이 되며, 신체를 보여주기만 한 것은 조사대상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Q45.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도 범죄 피해에 해당되나요?

◇ 폭행이나 위협이 있었으면 범죄피해에 해당이 되나 단순히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만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Q46. 오토바이를 도로에 잠시 놓고 볼 일 보러 간 사이 오토바이가 없어졌는데 20일 후에 다시 찾은 경우 도난으로 보나요?

◇ 본인이 오토바이를 어디다 놓았나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는 도난으로 보지 않으나 분명히 누가 가져간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난으로 봅니다.

Q47. 사업장에서 지나가던 술취한 취객이 들어와 폭행당할 뻔한 적이 있는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하나요?

◇ 사업장에서 본인이 위협을 느끼고 폭행당할 뻔했기 때문에 범죄피해에 해당이 되고 사건조사표 작성해야 됩니다.

Q48.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업체에 맡겨서 결제까지 했는데 부도가 나서 결제금액 되돌려 못 받은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하나요?

◇ 일부러 속여서 부도를 낸 것이 아니므로 사기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조사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Q49. 통장에서 5개월 정도 본인도 모르게 출금이 되어 경찰에 신고해서 나중에 찾은 경우 사건으로 보나요?

◇ 본인 통장으로 돈이 다시 입금 되었다 해도 일단 5개월 동안 출금이 되어 사건으로 봅니다.

Q50.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집에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서 할머니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할아버지가 옆에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놀라 도망간 경우는?

◇ 가구침입해서 할머니를 위협했기 때문에 할머니 사건조사표 1건 작성하고 할아버지는 아무런 위협이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조사표 작성하지 않습니다.

◇ 할머니 사건조사표 작성 시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51. 부부가 자고 있는 새벽에 창문을 깨고 도둑이 들어와 각각 송곳으로 위협한 경우 몇 개의 사건조사표 작성하나요?

◇ 가구침입해서 부부 중 한사람만 위협하고 해를 입혔으면 사건조사표 1건이지만 부부가 각각 신체피해는 없었지만 송곳으로 위협을 느껴서 사건조사표 2개 작성합니다.

6. 범죄피해 사건 수 결정

Q52. 두 형제가 길거리가다 강도에게 위협당했다면 몇 개의 사건인가요?

◇ 두 형제 각각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53. 부부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남편이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가 아내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의 범죄피해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모두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54.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면서 다른 범죄피해 경험이 기억나면?

◇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 경험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사건조사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Q55.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의 폭행과 도난에 각각 응답했으나 사건조사표 작성시 동일한 사건임을 알았으면?

◇ 기초조사표를 수정하고 사건조사표를 한 건만 작성합니다.

Q56. 가구대표 응답자 차량과 배우자 차량이 각각 파손 되었을 경우 각각의 사건으로 보는지,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두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지?

◇ 2개의 사건을 별개로 보고 가구대표 응답자와 배우자에게 조사해야 합니다. 단, 동일 시점 및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당한 사건일 경우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1건의 범죄피해로 조사합니다.

Q57. 주거침입이 3건 있었는데 1건은 범인과 마주쳤고, 2건은 침입할 뻔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초조사표 25번 문항에 3건으로 조사하고, 사건조사표는 사건별로 3개 작성합니다.

7. 사기(속임)

Q58. 인터넷에 경품을 준다고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했는데 경품은 안 오고, 보험가입 권유 전화만 걸려오는 경우 기초조사표 23번 문항 예시의 ③에 해당 되나요?

◇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본 조사대상 피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59. 곗돈을 사기 당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초조사표 23번 문항 "기타의 속임(사기)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60. 가족끼리 돈을 갚겠다고 빌려간 후 갚지 않았을 때 속임(사기)에 해당 됩니까?

◇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u>갚을 능력이 되지 않거나 또는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u>**를 의미합니다. 만일 갚을 의사는 있지만, 형편상 못 갚는 경우는 사기죄는 아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본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에서도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속임(사기)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61. 아는 사람이 보험업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금만 가로채고 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었을 경우 속임(사기)에 해당됩니까?

◇ 기초조사표 23번 문항 "상점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62. 전화가 걸려 와서 받았는데 과도한 요금이 빠져나간 경우 사기에 해당 됩니까?

◇ 기초조사표 23번 문항 "우체국, 전화국,~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63. 홈쇼핑에서 물건 구입 후 반품 처리 했다면 사기인가요?

◇ 반품 요청하여 반품 또는 환불 처리 등이 이루어졌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 홈쇼핑에서 명확히 1kg이라고 명시 후 500g만 배송하고 환불 등을 거부했다면 사기에 해당됩니다.
◇ 화면상과 실제가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기 아닙니다.

Q64.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번호,이름 등 개인 정보 보낸 경우 재산상의 피해로 보나요?

◇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번호, 이름 등의 개인정보 노출은 피해로 보지 않고 보안카드 유출 같은 경우는 재산상의 피해로 봅니다. 단, 파밍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상습 범죄피해

Q65. 소량의 농작물을 여러 차례 도둑 맞았는데, 누가, 언제 훔쳐갔는지 모른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되나요?

◇ 기초조사표 24번 문항 ⑩그 외의 물건에 표시하고, 도둑맞은 피해횟수를 적습니다. 피해횟수가 5건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 수는 1개만 작성합니다.

Q66. 직장동료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5번당했는데 상습피해로 보나요?

◇ 5번 각각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나, 구별할 수 없다면 상습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는 1부만 작성합니다.

Q67. 학교 근방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에게 여러 번 돈을 빼앗긴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의 반복적인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나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상습피해라 하며, 이 경우에는 가장 심각했던 범죄피해 1건을 사건조사표에 작성합니다.

◇ 만일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했더라도, 각각의 범죄피해사건을 잘 구분할 수 있다면 개별 사건으로 보며, 그 피해사건 수만큼 사건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Q68. 같은 주차장에서 5건의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4건은 누군가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에 물건을 훔쳐갔고, 1번은 성추행을 당했다면 상습피해로 보는지?

◇ 같은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범죄피해 유형이 다르므로 상습피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5건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9. 사건조사표 조사항목

Q69. 한 가구원이 여러 개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순서는?

◇ 기초조사표의 관련문항 순서로 작성하되, 관련문항이 동일한 경우 범죄피해 일시가 제일 빠른 사건부터 조사합니다.

Q70. 도난과 관련하여 범죄피해 물건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되어야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범죄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71. 단순 폭력사건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와 현장에서 합의했을 경우 범인검거 여부는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응답자가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면 기초조사표 27번 또는 28번에 응답하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또한 사건조사표 24-7번 범인 검거에는 "모두 검거하였다"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Q72. 드라이버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위험한 물건(사건조사표 8번)으로 보나요?

◇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공격했을 때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Q73. 무력은 아니지만 원치않는 성적인 접촉이란 무엇인가요?

◇ 힘을 사용(밀거나 잡음)하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포옹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Q74. 가해자의 공격으로 안경이 깨져 새로 구입했는데, 이것도 의료비로 보나요?

◇ 안경 구입도 의료비로 봅니다.

Q75. 무언가를 훔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는?

◇ 예를 들어 '재킷을 달라. 안 그러면 벗겨 가겠다'고 하든가, 피해자에게 급히 다가가 목걸이를 만지는 것을 훔치겠다는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Q76. 수리공이 집에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던 중 물건을 훔치면 주거침입인가요?

◇ 피해자의 허락으로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은 아니나, 도난사건입니다.

Q77. 택배원으로 속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하여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인가요?

◇ 피해자를 속여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봅니다.

Q78.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현금을 승객에게 도난당한 경우 사건 발생장소는?

◇ 교통시설 내부이면서, 택시기사의 직장으로 봅니다.(사건조사표 5 번)

Q79. 아파트 계단에 있는 자전거를 누가 훔쳐 간 경우 발생장소를 어디로 보아야 하나요?

◇ 발생장소를 우리집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아파트 단지주변으로 파악해서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80. 사건조사표 21-1 문항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시간손실에 어떻게 체크해야 하나요?

◇ 2014년 중에 시간손실을 묻는 항목이므로, 그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다면 그만둔 다음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Q81. 차량을 손상시키고 도주한 사건일 경우 가해자를 알 수 없기에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요구할 수 없었다.>라는 답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답안이 없어 <5.요구하지 않았다>에 체크했습니다. 상황상 맞지 않는 답변인지요?

◇ 가해자를 몰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구하지 않았다'로 조사합니다.

10. 조사원 확인사항 작성

Q82. 주택유형에서 빌라는 어떻게 하나요? 가구명부는 4인데 조사표에는 아파트로 해야 하나요?

◇ 가구명부거처의 종류 조사표
1. 단독주택 -> 1. 단독주택
2. 아파트 -> 2. 아파트
3. 연립주택 -> 3. 연립주택/다세대주택
4.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다세대주택
5.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 4.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6. 오피스텔 -> 5. 기타
10.기타 -> 5. 기타

◇ 빌라의 경우 3번으로 기입합니다.

Q83. 기초조사표의 가구원 응답자 연락번호에서 핸드폰번호 꼭 받아야 하나요?

◇ 응답자가 본인 이름과 개인 핸드폰번호 노출 싫어하면 집 전화번호 받아도 가능합니다

Q84. 주택의 유형에서 아파트일 경우 단지 규모 기입란 에서 아파트 총 동수를 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한 단지 내에 1단지면 1단지만, 2단지면 2단지 총수만 기입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해당 단지의 동수를 기입합니다.

<부록 4> 비밀보호용 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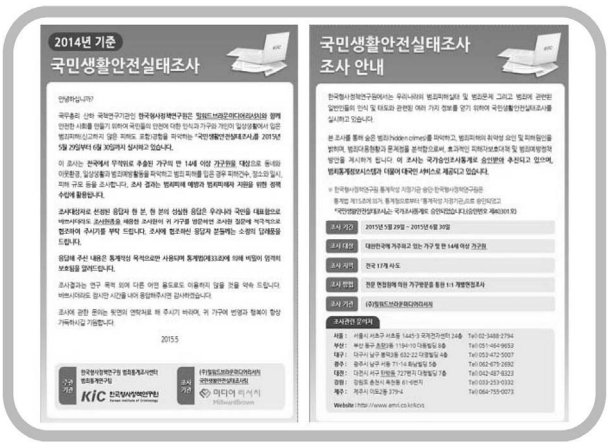

<부록 5> 조사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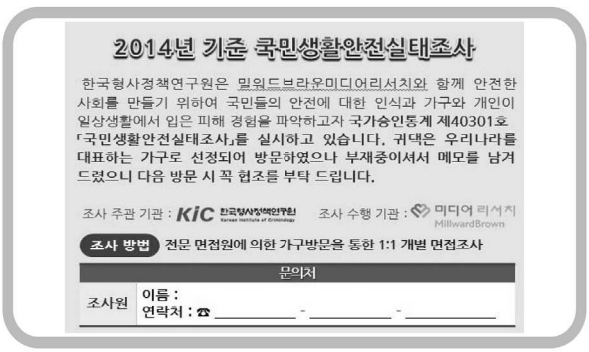

<부록 6> 부재중 가구에 대한 조사 진행 안내문

연구총서 15-B-1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발 행 | 2015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김 진 환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 페 이 지 | www.kic.re.kr
정 가 | 15,000원
인 쇄 | 삼신인쇄 (02)2285-6478
I S B N | 978-89-7366-676-8 9333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